

2021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1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1. 11.

기 획 재 정 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사

2021년 1월 기준 35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금융,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산·소비·투자 심리 등이 위축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일하는 현장에서도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9조 원이 증가한 약 61조 원의 투자를 집행하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SOC와 에너지 분야 등에 64.8조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약의 디딤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이는 공공기관 부채, 인력, 채용규모, 경영성과 등 구체적인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 개별 기관의 경영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반영하여 안전 및 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양립 등과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신설하여 공시정보를 보완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현황편람』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 책자를 통해 공공기관 일반현황과 최근 시행된 주요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다양한 경영정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주요 정보(인력·손익·재무현황, 보수수준 및 외부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에 의한 공공기관 모니터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 현황편람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공공기관 주요 정보로의 접근 용이성과 경영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보다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켜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책자가 향후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 차

I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19
가. 공공기관의 지정	19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20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26
2. 2021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6
가.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26
나. 전년 대비 주요 변동내역	33
다. 2021년 공공기관 변동	38

II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43
가. 공정채용 정착 지원	43
나.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확대정책	49
다.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촉진	52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58
가.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58
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65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	78
가. 공공기관 혁신 추진경과	78

나. 2021년 공공기관 혁신방향	79
다. 2021년 분야별 추진과제	82
라. 2021년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91
마.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점검 및 지원	98
4.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주요 동향	99
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및 운영	99

Ⅲ 2021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 일반현황	123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123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	127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139
라.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141
마.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144
바.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58
사. 상장 공공기관 현황	175
2. 인력현황	192
가. 임직원 수 현황	192
나. 신규채용 현황	200
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현황	206
라.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209
3. 재무현황	214
가. 총평	214
나. 부채 현황	217
다. 자산 현황	226
4. 손익현황	230

5. 보수수준	237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237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	240
다. 복리후생비 수준	247
6. 외부 평가결과	253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253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88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311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336
참고문헌	357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365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371
〈부록 3〉 이전 공공기관별 2020년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431
〈부록 4〉 2021년 기금 현황	444
〈부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452
〈부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455
〈부록 7〉 2020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492

표 차 례

<표 I -1> 공공기관 유형 구분 요건	21
<표 I -2>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구분 기준	22
<표 I -3> 2021년 공공기관(350개, 2021. 1월 기준)	27
<표 I -4> 2021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21. 1월 기준)	32
<표 I -5> 2021년 연구개발목적기관(74개)	32
<표 I -6>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21. 1월 기준)	33
<표 I -7>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21. 1월 기준)	35
<표 I -8> 2021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37
<표 II-1>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43
<표 II-2>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 요약	46
<표 II-3>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47
<표 II-4> 외부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DB활용	48
<표 II-5>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목표 및 실적	50
<표 II-6> 평가편람 지표 개선사항	54
<표 II-7> 추진 일정 및 추진내용	55
<표 II-8> 47개 대상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 인원	56
<표 II-9> 47개 대상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충족률	56
<표 II-10> 전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2020년 기준 340개)	56
<표 II-11> 2020년도 및 2021년도 항목별 편성지침 주요내용	60
<표 II-12> 예산집행지침 개정 사항	65
<표 II-13>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근거법령	66
<표 II-14>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67
<표 II-1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전망	70
<표 II-16>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71

<표 II-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부채비율 전망	72
<표 II-18> 금융부채 전망치 비교	73
<표 II-19>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73
<표 II-20>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	73
<표 II-2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2020~2024년)	75
<표 II-22> 2021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제외 대상 공공기관	92
<표 II-23> 기관별 중점과제 수	97
<표 II-24>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	102
<표 II-25>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유형	103
<표 II-26> 심사범주별 주요 심사내용	104
<표 II-27> 위험요소별 안전수준 가중치	105
<표 II-28> 심사항목 총괄표	105
<표 II-29>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목차	107
<표 II-30>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종합표	109
<표 II-31> 공공기관 유형별 안전관리등급 분포	111
<표 II-32> 공기업 중 안전관리등급 4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112
<표 II-33> 준정부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4·5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113
<표 II-34> 기타공공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4·5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114
<표 II-35>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5대 제도개선 과제	118
<표 III-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21. 1월 기준)	123
<표 III-2> 주무부처별 연구개발목적기관 분포(2021. 1월 기준)	125
<표 III-3> 2021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126
<표 III-4>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30개 기관)	130
<표 III-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7개 기관)	131
<표 III-6>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65개 기관)	133
<표 III-7>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 현황(2020. 12월말 기준)	134
<표 III-8>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법령 기준)	138
<표 III-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9개 기관)	140
<표 III-10>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20개 기관)	141

<표 Ⅲ-11>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21. 9월 기준)	145
<표 Ⅲ-12> 2021년도 신규 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146
<표 Ⅲ-13>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148
<표 Ⅲ-14>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150
<표 Ⅲ-15> 이전 공공기관을 제외한 의무채용 대상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151
<표 Ⅲ-16>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151
<표 Ⅲ-17> 2020년도 이전 지역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153
<표 Ⅲ-18>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주요 수립 항목	154
<표 Ⅲ-19> 2021년 지역별 발전계획	155
<표 Ⅲ-20>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61
<표 Ⅲ-2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21년 기준)	163
<표 Ⅲ-2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164
<표 Ⅲ-23>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168
<표 Ⅲ-2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169
<표 Ⅲ-25>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중	173
<표 Ⅲ-26> 상장 공공기관 개요	176
<표 Ⅲ-27>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177
<표 Ⅲ-28>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178
<표 Ⅲ-29>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8~2020년)	179
<표 Ⅲ-30>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8~2020년)	183
<표 Ⅲ-31>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8~2020년)	185
<표 Ⅲ-32>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8~2020년)	187
<표 Ⅲ-33>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6~2020년)	193
<표 Ⅲ-34>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2016~2020년)	194
<표 Ⅲ-35>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2016~2020년)	196
<표 Ⅲ-36> 2020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198
<표 Ⅲ-37> 2020년 인력 감원 기관	199
<표 Ⅲ-38>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2016~2020년)	200
<표 Ⅲ-39> 신규 채용 현황(2016~2020년)	201
<표 Ⅲ-40>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2016~2020년)	202

<표 III-41> 2020년 신규 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203
<표 III-42> 2020년 신규 채용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	204
<표 III-43>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2016~2020년)	205
<표 III-44>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2011~2020년)	207
<표 III-45> 청년 신규고용 현황(2015~2020년)	208
<표 III-46>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현황(2015~2020년)	208
<표 III-47>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2016~2020년)	209
<표 III-48>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211
<표 III-49>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212
<표 III-50> 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213
<표 III-51>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2016~2020년)	215
<표 III-52>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2016~2020년)	218
<표 III-53>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2016~2020년)	224
<표 III-54> 2020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226
<표 III-55>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6~2020년)	227
<표 III-56>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2016~2020년)	229
<표 III-57> 2020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230
<표 III-58> 당기순손익 현황(2016~2020년)	231
<표 III-59> 2020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234
<표 III-60> 정부 배당수입 추이(2017~2021년)	235
<표 III-61> 39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235
<표 III-62> 직원 평균보수 현황(2016~2020년, 정규직 기준)	238
<표 III-63>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2016~2020년)	242
<표 III-64>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6~2020년)	247
<표 III-65>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2016~2020년)	251
<표 III-66>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6~2020년)	252
<표 III-67> 2020년도 기관평가 대상기관(131개)	256
<표 III-68> 2020년도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상대평가)	260
<표 III-69> 2020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상대평가)	261
<표 III-70> 전년 대비 2020년도 평가등급 변동 요약(상대평가)	265

<표 III-71> 전년 대비 2020년도 평가등급 변동 현황(상대평가)	266
<표 III-72> 2020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분포(상대평가)	267
<표 III-73> 2020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현황(상대평가)	268
<표 III-74>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공기업 유형)	272
<표 III-75>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	273
<표 III-76>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강소형 유형)	275
<표 III-77> 2020년도 평가유형별 평가등급 분포(상대·절대평가)	277
<표 III-78> 2020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절대평가)	278
<표 III-79>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공기업 유형)	282
<표 III-80>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	283
<표 III-81> 2020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준정부기관)	287
<표 III-82> 「공운법」 제13조	288
<표 III-83>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290
<표 III-8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경영평가 반영안	292
<표 III-85>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295
<표 III-86>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2021. 4월 기준)	296
<표 III-87> 2020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300
<표 III-88>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303
<표 III-89> 전년 대비 2020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	305
<표 III-90> 전년 대비 2020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305
<표 III-91> 전년 대비 2020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306
<표 III-92>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목표 달성도 등급별 분포	308
<표 III-93> 2020년도 수준등급과 목표달성도 비교	311
<표 III-94>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청렴도 측정 유형별)	312
<표 III-95>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공공기관 유형별)	319
<표 III-96> 2019년 측정대상 공공기관 중 2020년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	320
<표 III-97> 2020년도 유형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321
<표 III-98>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유형 변경 현황	323
<표 III-99> 2019년도 및 2020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비교	325
<표 III-100> 2020년도 청렴도 측정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326

<표 III-101> 2020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 대비 등급 개선수준	329
<표 III-102> 2020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330
<표 III-103>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0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 대비 개선수준	332
<표 III-10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0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333
<표 III-105>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관련 「공운법」 조항 및 주요 변동내역	337
<표 III-106>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21. 9월 기준)	339
<표 III-107>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별점 부과 체계	345
<표 III-108> 통합공시 점검 별점에 따른 사후조치	346
<표 III-109>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항목	348
<표 III-110> 공공기관 통합공시 별점 현황(2014~2020년)	349
<표 III-111>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351
<표 III-112>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	352
<표 III-113>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	354
<표 III-114>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 대비 변동 현황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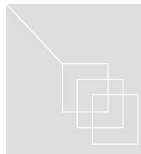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I -1> 공공기관 지정 추이(2007~2021년)	27
<그림 II-1> 공공기관 통합채용 모델	45
<그림 II-2>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과정	46
<그림 II-3> 장애인 고용컨설팅 주요 내용 및 프로세스	53
<그림 II-4> 장애인 고용컨설팅 추진체계	57
<그림 II-5>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70
<그림 II-6>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 전망치 비교	71
<그림 II-7> 2020년 및 2021년 혁신과제 비교	81
<그림 II-8> 안전관리등급별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	108
<그림 III-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128
<그림 III-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167
<그림 III-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167
<그림 III-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169
<그림 III-5>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172
<그림 III-6>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자산 규모 비교	174
<그림 III-7>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182
<그림 III-8>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 순이익 변동 현황	182
<그림 III-9>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6~2020년)	193
<그림 III-10> 사회형평적 채용 추이(2016~2020년)	206
<그림 III-11>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2016~2020년)	216
<그림 III-12>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2017~2020년)	216
<그림 III-13> 부채 규모 추이(2016~2020년)	219
<그림 III-14> 부채 증감 추이(2017~2020년)	219

<그림 III-15> 부채비율 추이(2016~2020년)	220
<그림 III-16>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7~2020년)	220
<그림 III-17>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2016~2020년)	221
<그림 III-18>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2017~2020년)	222
<그림 III-19>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2016~2020년)	223
<그림 III-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7~2020년)	223
<그림 III-21>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6~2020년)	227
<그림 III-2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2017~2020년)	228
<그림 III-23>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2016~2020년)	232
<그림 III-24> 직원 평균보수 추이(2016~2020년, 정규직 기준)	238
<그림 III-25>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2016~2020년, 정규직 기준)	240
<그림 III-26>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2016~2020년)	244
<그림 III-27>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2016~2020년)	244
<그림 III-28>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2016~2020년)	245
<그림 III-29>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2017~2020년)	246
<그림 III-30>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2017~2020년)	246
<그림 III-31>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2017~2020년)	246
<그림 III-32>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6~2020년, 무상지원 기준)	249
<그림 III-33>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2017~2020년, 무상지원 기준) ...	250
<그림 III-34>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2016~2020년)	251
<그림 III-35>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6~2020년)	253
<그림 III-36> 전년 대비 2020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평가)	262
<그림 III-37> 최근 3년 평균 대비 2020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평가)	262
<그림 III-38> 2020년도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평가)	264
<그림 III-39> 평가유형별 전년 대비 평가등급 분포 비교(상대평가)	264
<그림 III-40> 전년 대비 2020년도 평가등급 분포 비교(절대평가)	277
<그림 III-41> 2020년도 평가유형별 평가등급 분포(절대평가)	280
<그림 III-42> 2020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절대평가)	281
<그림 III-43>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개편(2018년)	292
<그림 III-44>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 분포	304

<그림 Ⅲ-45>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314
<그림 Ⅲ-46>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316
<그림 Ⅲ-47>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318
<그림 Ⅲ-48> 2020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329
<그림 Ⅲ-49>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별점(2014~2020년)	349
<그림 Ⅲ-50>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2014~2020년)	350
<그림 Ⅲ-51>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353
<그림 Ⅲ-52>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유형별)	353

2021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1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2. 2021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21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가. 공공기관의 지정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및 <별표1>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요건별 산정기준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지원액¹⁾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정부지원액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관)
 - 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1)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

- 제5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6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그러나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대표적인 기관으로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이 이에 해당함.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이에 해당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관리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통적으로 동법 제11조의 경영공시, 제12조의 통합공시, 제13조의 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조사, 제14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제15조의 공공기관의 혁신, 제52조의3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2조의4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52조의5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제52조의6 인사감사 등의 적용대상이 됨.
 - 이 외에도 「공운법」 보칙 제53조에서 제53조의3에 이르는 규정과 별칙 조항(제55조 및 제56조)을 적용받음.
 -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은 「공운법」에 따른 공통된 관리·감독대상이 되지 않고 소관 주무부처의 재량적 관리대상이 됨.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공운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기관의 업무특성과 중요도를 반영한 맞춤형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수준의 설계를 위해 동법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운법」 적용범위가 달라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기한 공통사항²⁾ 이 외에도 이사회, 임원 임명 및 구성, 예산회계, 경영감독 등 「공운법」 제16조에서 제52조의2에 이르는 규정과 보칙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됨.
- 공공기관 유형 구분 요건을 살펴보면 <표 I-1>과 <표 I-2>와 같음.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 기준과 유형별 세부 유형 구분 요건 등은 「공운법」 제5조와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표 I-1〉 공공기관 유형 구분 요건

유형 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총수입액이 3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②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총수입액이 3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공공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③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공기관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시행령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현황'과 「공운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작성

2)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운법」 조항은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등(제11조~제15조),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제52조의3~제52조의6), 보칙 제53조~제53조3 및 벌칙 제55조~제56조임

〈표 I-2〉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구분 기준

현행 「공운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128호, 2020. 3. 31., 일부개정]	「공운법」 시행령(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타법개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5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30억 원 이상 3.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 ②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 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표 I-2〉의 계속

현행 「공운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128호, 2020. 3. 31., 일부개정]	「공운법」 시행령(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타법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법무·준사법 업무, 합의·조정 업무나 국제 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됨.

○ 「공운법」은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기 위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의 기관 규모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50인, 총수입액 30억 원, 그리고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함.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우선 분류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운법」 제5조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세부 유형을 구분함.
 - 공기업은 직원 정원 50인, 총수입액 30억 원 및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으로 지정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세분함.
 - 시장형 공기업: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이상인 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50인, 총수입액 30억 원 및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기관으로 지정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세분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직원 정원(50인 이상), 총수입액(30억 원 이상) 및 자산규모(10억 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우선 구분됨.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모 기준(직원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을 충족하는 기관일지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표 I-2>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7조2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규정되어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세부유형인 연구개발목적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규정 되어 있음.
 - 제1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제2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제3호: 그 밖의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
- 제3호에 의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설립근거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고유업무와 실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업무의 비중(예산,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함.
-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혁신지침’)」의 일부 조항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대한 고려사항과 예외적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침 제6조 제5항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기능조정 계획 수립 및 경영혁신 추진 시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지침 제10조 제2항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영혁신 진단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에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경영혁신 진단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지침 제19조 제2항에서는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에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침 제22조 제3항은 공정채용을 위한 채용 면접 시 지원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구실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침 제24조는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정규직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침 제46조 제9항은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을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며,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해당 기관을 신규 지정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공운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침.

2. 2021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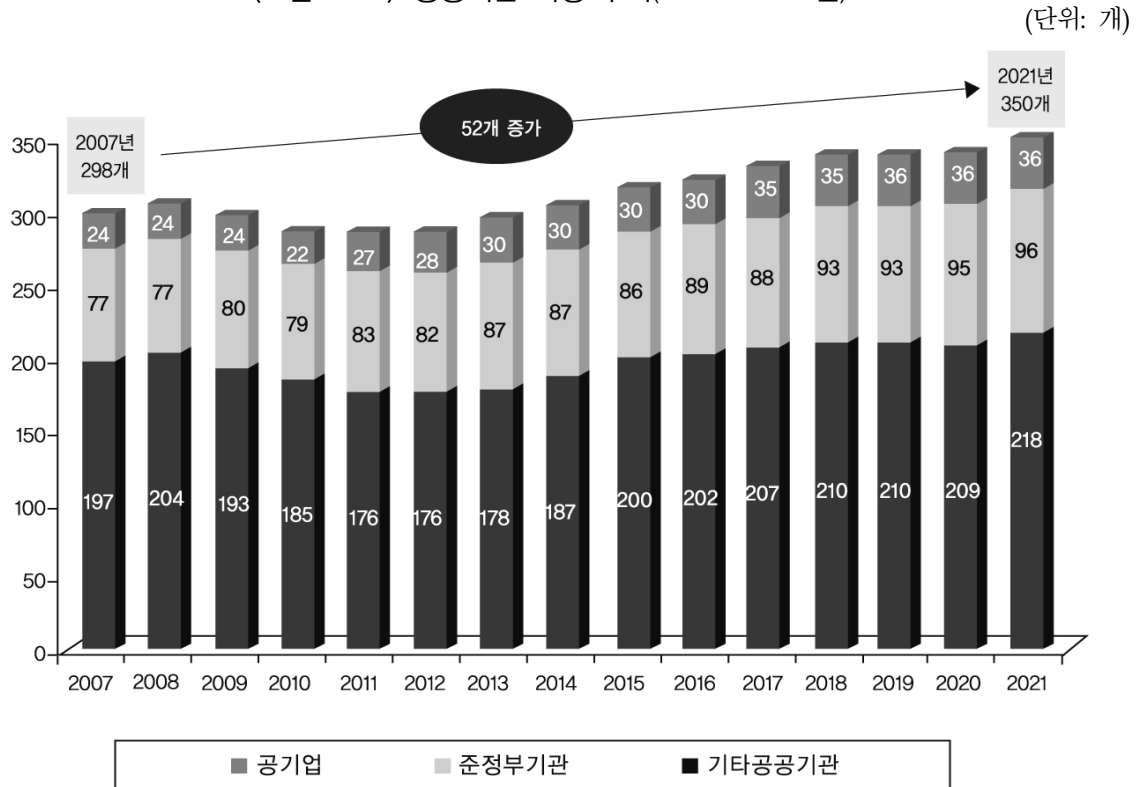
가.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 2021년 1월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공운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2021년 공공기관의 수(350개)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2007년의 298개보다 52개 기관이 증가한 것임.
 - 2007년 최초 지정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공공기관 지정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1>과 같음.
 - 2021년 공공기관 수는 2020년(340개, 12월 기준) 대비 10개 기관이 증가함.

3)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이 지정 해제되고 12개 기관⁴⁾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공공기관 수가 전년 대비 10개 증가함.
- 2021년 1월 현재 공공기관(350개)은 <표 I-3>과 같음.

〈그림 I-1〉 공공기관 지정 추이(2007~2021년)



주: 2016년과 2017년은 연중 수시 지정된 공공기관을 반영한 기관수로 당해연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수와 다른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20. 10.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표 I-3〉 2021년 공공기관(350개, 2021. 1월 기준)

유형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6개)	(산업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4) <표 I-7> 참고

〈표 I-3〉의 계속

유형구분	기관명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3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표 I-3〉의 계속

유형구분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3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218개)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표 I-3〉의 계속

유형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18개)	(문화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MCS(주)
	(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환경부) (주)위터웨이플러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표 I-3〉의 계속

유형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18개)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주: 1. 밑줄 표시된 기관(1개)은 2021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 지정된 기관임

2. 이탤릭 표시된 기관(12개)은 2021년 1월 신규 지정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 2021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분포(<표 I-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은 총 36개 기관으로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 16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20개 기관임.
- 준정부기관은 총 96개 기관으로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3개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83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은 218개 기관이며 이 중 연구개발목적기관(<표 I-5>)은 74개임.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63.5%인 47개 기관은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1호5)와 제2호6)에 해당하는 기관임.
 - 이외 27개의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제3호에 따라 공운위 의결을 거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해당함.
 - 2021년 신규 연구개발목적기관은 5개 기관으로 이 중 건축공간연구원,⁷⁾ 한국재료연구원,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⁹⁾ 등 3개 기관은 종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5)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1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구.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정보연구소

8) 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9) 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법정법인으로 신설 출범한 기관이며 나머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2020년 하반기 신설 출범 기관으로 유관·유사 기관의 공공기관 유형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신규 지정됨.

〈표 I-4〉 2021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21. 1월 기준)

(단위: 개, %)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소계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기금 관리형	위탁 집행형	소계	연구개발 목적기관
350 (100)	36 (10.3)	16 (4.6)	20 (5.7)	96 (27.4)	13 (3.7)	83 (23.7)	218 (62.3)	74 (21.1)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표 I-5〉 2021년 연구개발목적기관(74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5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2개)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7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재)APEC기후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표 I-5〉의 계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5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2개)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7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 1.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

2. 밑줄 표시된 기관(5개)은 2021년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신규 분류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나. 전년 대비 주요 변동내역

□ 2021년 공공기관 수는 2020년의 340개보다 10개 기관 증가한 350개임.

- 2020년 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이 지정 해제되고 12개 기관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¹⁰⁾ 2021년 공공기관 수가 전년 대비 10개 증가함.
- 2020년 대비 2021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와 신규지정, 지정해제, 유형변경 등 기관수 변동은 <표 I-6>과 같음.

〈표 I-6〉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21. 1월 기준)

(단위: 개)

유형구분	2020년 말 (A)	20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변동내역)		
				신규	해제	유형 변경
① 공기업	36	36	-	-	-	-
시장형	16	16	-	-	-	-
준시장형	20	20	-	-	-	-
② 준정부기관	95	96	+1	-	-	+1
기금관리형	13	13	-	-	-	-
위탁집행형	82	83	+1	-	-	+1
③ 기타공공기관	209	218	+9	+12	△2	△1
계	340	350	+10	+12	△2	-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10) <표 I-7> 참고

- 공공기관 유형별로 기관수 변화 및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수는 2020년과 동일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0년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서민금융진흥원이 2021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기관수가 전년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하여 83개임.
 - 서민금융진흥원은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3년이 경과하여 「공운법」에 따른 지배구조, 경영지침, 경영평가 등에 대응할 조직 및 인력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기관 정비 기간을 거쳤으므로 법상 요건에 맞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함.
 - 2021년 기타공공기관은 유형 변경(1건), 지정 해제(2건) 및 신규 지정(12건)된 기관의 영향으로 기관수가 전년 대비 9개 증가한 218개임.
 -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서민금융진흥원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
 - 2020년 기타공공기관 중 기능이관 및 기관 통폐합 등으로 1~2년 내에 기관 해산이 예정된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¹¹⁾과 (주)한국건설관리공사¹²⁾는 2021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 2021년 신규 지정된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MCS(주) 등 12개 기관 모두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은 <표 I-7>과 같음.

1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로 기능 이관

1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구.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통합

〈표 I-7〉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21. 1월 기준)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비고
신규 지정 (12개)	고용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타 공공기관	-
	과기부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토부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업부	한전MCS(주)		
	환경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해제 (2개)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지정해제	기관 기능 이관 및 통폐합 예정 기관
	국토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유형 변경 (1개)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20)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 2021년 신규로 공공기관에 지정된 12개 기관의 현황을 요약하면 <표 I-8>과 같음.

○ 2021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부속기관이 독립법인으로 신설 출범한 기관임.

-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국토연구원 부설이었던 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20년 11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기관으로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한국재료연구원은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 소재 연구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소재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구.재료연구원이 2020년 11월 독립하여 신설 출범한 기관임.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또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구.국가핵융합연구소가 2020년 11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기관으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0년 3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제정하여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이었던 구.고용노동연수원을 2020년 10월 독립법인으로 출범시킨 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 등에게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3개 기관은 개별 설립 근거법을 제정하거나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신설 출범한 기관임.
 - 국립항공박물관은 2019년 8월 「국립항공박물관법」 제정을 통해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설 출범한 기관임.
 -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신설된 기관임.
 - 2020년 8월 설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함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법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¹³⁾한 후 설립한 기관임.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와 한전MCS(주)는 모(母)기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이나 유사 자회사와

13)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교육의 총괄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담수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이어,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가 각기 다른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을 개선하기 위해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함.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2021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유료도로에 대한 이용료 수납 및 이에 관련된 콜센터와 교통방송 제공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요금수납, 과적 단속, 교통방송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
- 한전MCS(주)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하는 전력서비스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전기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및 수금, 전기 관련 설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 전력계량설비의 시험 및 공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2개 기관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신설 출범기관임.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련 정책 및 연구 개발 등을 통해 공간정보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함.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함.
-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은 1978년 구.건설직원훈련원으로 설립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국가기간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사업을 대행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표 I-8〉 2021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단위: 명, 백만 원)

주무 부처	기관명	공공 기관 유형	설립 시기	설립근거	기관규모('20년말)	
					직원 정원	자산 규모
국토부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기타 공공 기관	'78. 4월	「민법」 제32조	82	55,378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20. 1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89	7,456
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19. 11월	「민법」 제32조	64	2,989
국토부	국립항공박물관		'19. 12월	「국립항공박물관법」	45	3,669

〈표 I-8〉의 계속

(단위: 명, 백만 원)

주무 부처	기관명	공공 기관 유형	설립 시기	설립근거	기관규모('20년말)	
					직원 정원	자산 규모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기타 공공 기관	'20. 5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7	1,122
환경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20. 8월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117	10,101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20. 9월	「민법」 제32조	111	2,754
고용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 10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13	-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19. 5월	「상법」 제317조	6,768	54,585
과기부	한국재료연구원		'20. 1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346	127,403
과기부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		'20. 1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346	1,112,027
산업부	한전MCS(주)		'19. 3월	「상법」 제317조	4,386	59,227

주: 1. '직원 정원'은 2021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공개된 2020년 말 기준 일반 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정원 불포함)을 기재한 것으로 2021년 10월 현재 정규직 정원과 다를 수 있음

2.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0년 10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구.고용노동연수원)이 독립법인으로 신설 출범한 기관으로 2020년까지는 별도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결산서에 포함하여 처리함에 따라 2020년 말 자산 규모를 공란으로 처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기관별 공시정보(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다. 2021년 공공기관 변동

□ 공공기관은 관계법령 개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청산·해산, 기관 통폐합 등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운법」상의 공공기관 지위도 달라짐.

○ 기관이 청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공운법」상 공공기관에서 자동적으로 해제됨.

- 복수의 「공운법」상의 공공기관이 통합하여 신설 출범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되 통합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유형을 새로이 분류한 후 당해연도에 수시 지정¹⁴⁾하거나 차년도에 지정함.
- 2021년 지정된 350개의 공공기관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아시아문화원 등 3개 기관이 관계 법령 개정¹⁵⁾에 따라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이관 등이 예정되어 있음.
-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21년 3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2021. 9. 10. 시행)에 따라 2021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신설 출범함.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바, 정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됨.
 -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과 광산피해 관리 전반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신설 출범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광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직원 고용 등을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종전 기관의 공공기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신설 기관의 수행업무와 수입구조(자체수입비율)¹⁵⁾를 고려하여 공공기관 유형이 정해질 예정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8조에 근거

14) 「공운법」 제6조에 근거

15) 공공기관 유형이 다른 두 개 기관의 통합이기 때문에 신설 출범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자체수입비율을 산출하여 공공기관 유형을 재분류해야 함

하여 설립된 아시아문화원은 동 조항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전면 개정¹⁶⁾됨에 따라 기관 해산이 진행 중임.

- 종전 법률에서는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그 운영의 전부를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의 교류·교육·연구와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등 공공성이 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당위성이 있고, 문화전당-문화원이라는 이원체제로 운영함에 따른 의사결정의 혼선,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추진됨.
- 개정 법률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조직을 흡수·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여 당초 문화전당의 설립목적에 맞게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발현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이원화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체계를 정상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무상양여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에 따라 해산 예정인 아시아문화원의 권리와 의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승계하고 아시아문화원의 재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에서 승계할 예정임.
- 2021년 중 아시아문화원 해산이 완료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는 2021년 1월 기준 83개 기관에서 82개 기관으로 감소할 예정임.

□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아시아문화원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2021년 12월 말 공공기관 수는 1월 정기 지정 기준 350개에서 348개로 2개 기관 감소할 예정임.

16) 2021년 3월 23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2021년 9월 24일 시행 예정임

2021

공공기관 현황편람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
4.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주요 동향

II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정채용 정착 지원¹⁷⁾

1) 공정채용 추진실적 및 문제점

- 2017년 7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이래 공공기관에 공정채용 도입 확산과 기반 확립을 위해 컨설팅·정보제공·모니터링 지원, 경영평가에의 반영, 공무원 채용 기법의 도입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옴.
- 공정채용 도입으로 인해 채용방법이 능력위주 평가로 변화하고, 채용 비위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남.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19.2~4월)에 따르면, 능력위주 평가를 위한 전형방법(필기, 2차 면접 등) 실시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구조화된 면접이 실시되고 면접시간 증가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남.
 - 2019년 전수조사에서 채용비위라고 볼 수 있는 '수사의뢰' 내지 '징계요구' 건수는 총 40건(수사 4건, 징계 36건)으로 2017년 특별점검에 비해 76.5%, 2018년 전수조사에 비해서는 52.4% 대폭 감소함.

〈표 II-1〉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단위: 건)

구분	채용비위			업무 부주의			합계
	수사의뢰	징계요구	소계	주의경고	제도개선 등	소계	
2017년	47	123	170	1,210	931	2,141	2,311
2018년	19	65	84	420	385	805	889
2019년	4	36	40	206	345	551	591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정착지원 추진 현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10. 30.

1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정착지원 추진 현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10. 30. 참고

- 정부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채용 비위에 대한 책임·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의 개정을 완료하고,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공정채용 컨설팅을 연중 10회 실시하였으며, 2020년 2월에는 업무가이드북을 배포하였음.
- 또한 2020년 2월,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구성하여¹⁸⁾ 부처별 공정채용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한편 공정채용 도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채용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채용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해짐.
 -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전형 방식을 다양화 및 세분화한 결과, 소규모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이를 경감해 줄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채용 응시규모 확대 및 NCS(직무능력표준) 시험 도입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채용비용이 증가함.
 - 공공기관 업무부담으로 인해 채용위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채용위탁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채용위탁 기관비율은 2015년 8.4%에서 2018년 23.8%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민간 위탁업체의 잦은 채용오류로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하됨.
 -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평가위원 구성 시 외부 평가위원 구성 기준이 강화되어¹⁹⁾ 외부위원의 섭외가 기존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외부평가위원 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지원방안

가) 통합채용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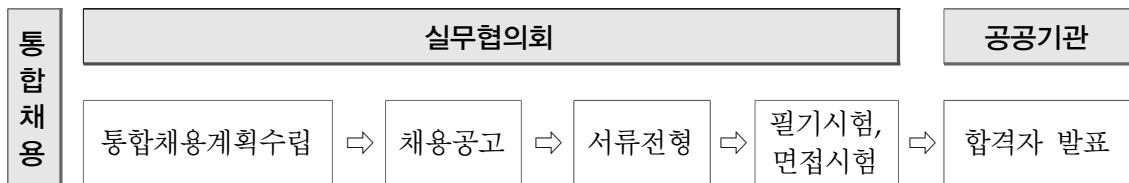
- 정부는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다수의 소규모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관간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18) ('20. 2. 4.) 제1차 협의회, ('20. 5. 27.) 제2차 협의회, ('20. 9. 28.) 제3차 협의회, ('20. 12. 29.) 제4차 협의회

19) 공공기관은 「경영지침」에 따라, 면접전형 전체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 이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고, 상호 모니터링을 통한 채용비위 감소, 채용업무 중복 제거 등 채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 2017년부터 4개 항만공사는 매년 협약서를 체결하고 번갈아 대표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채용 이후 1인당 채용비용이 38% 절감되고 중도 퇴직률 또한 17.6%에서 3.2%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임.
- 항만공사의 선행 사례를 참조하여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채용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통해 채용절차 단계별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정부가 마련한 매뉴얼은 통합채용 절차를 예시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여건과 관계 법령 등에 맞게 이를 수정하여 적용가능함.
- 공공기관 대상으로 간담회, 수요조사, 컨설팅 등을 통해 통합채용의 선행사례 및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항만공사, 발전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통합채용모델을 실시할 예정임.

〈그림 II-1〉 공공기관 통합채용 모델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정착지원 추진 현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0. 30.

나)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채용 공정성 강화,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민간 위탁업체를 통한 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잦은 채용오류 발생으로 공정채용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함.
 - 일부 부적격·역량미달 업체가 위탁계약을 수주한 후 이를 다시 하도급 주거나 비전문가를 통해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등의 시험 관리의 부실사례가 발생함.
 - 시험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업체의 출제·채점·집계오류, 기출문제 중복 사용 등 시험운영 관리부실에 따른 채용결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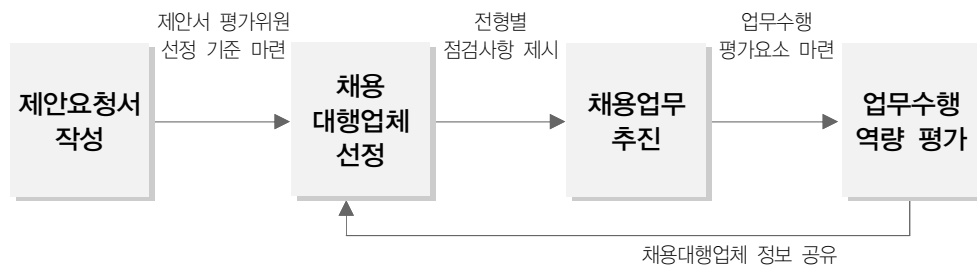
- 정부는 채용위탁 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12월 공공기관의 관리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채용대행업체에 채용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가 채용대행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채용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됨.
 -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시된 기본요건을 평가하여 채용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모니터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방안을 마련하여 위탁채용의 전반적인 공정성 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함.
 -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채용위탁 기준 및 절차를 채용대행업체 관리에 활용함으로써 공정채용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II-2〉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 요약

- **(입찰단계)** 위탁업무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하거나 정규직 인원만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 진행
- **(필기전형)** 출제문제 사전검증 절차 마련, 관리부실시 불이익 부과 등을 통해 위탁업체가 채용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
- **(보안사항)** 채용관련 기록물 및 개인정보관련 문서를 파기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파쇄증명서를 요청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정착지원 추진 현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0. 30.

〈그림 II-2〉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과정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정착지원 추진 현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0. 30.

〈표 II-3〉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단계	점검항목
제안요청서 작성	전형별 특성을 고려한 채용 설계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고려사항
	중요 채용업무의 하도급 금지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검증 강화
채용대행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기준 마련
	제안서 평가 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 시 고려사항
서류전형	서류전형 시 고려사항
	서류 심사의 전문성·실효성 확보
	유형별 자격검증 방법
필기전형	필기전형 시 고려사항
	필기전형 시험출제 관리 강화
	필기전형 감독 및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진행
면접전형	면접전형 시 고려사항
	면접위원 선정 방식 다양화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안내
	공공기관 채용 시험 평가위원 인력풀 활용 안내
	면접위원 교육자료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시 고려사항
사후 관리	채용대행 업체에 최종 산출물 요청
	보안관리 강화
	채용대행업체의 수행업무 만족도 조사
	채용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범위 구체화
	공정채용을 위한 채용대행업체의 행동지침 마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 2020. 12., p.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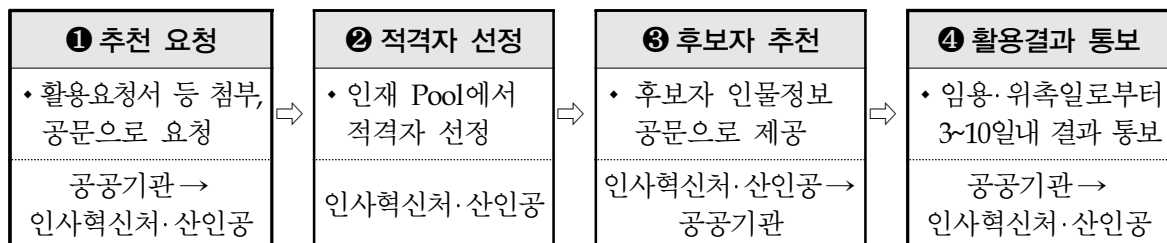
다) 국가인재 DB 활용한 외부위원 풀 확대

- 「경영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인력 채용시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의 외부위원 참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외부위원 참여 1인 이상에서 전체위원의 1/2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었고, 동일 분야 연속선정이 불가능함.²⁰⁾

20) 「경영지침」 제16조 제3항

-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과 응시자가 채용과정에 연계되지 않도록 제척·기피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위촉을 배제하도록 함.²¹⁾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만 제공되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DB의 활용을 공공기관에도 허용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평가위원 풀을 구축하여 다양한 직종의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국가공무원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²²⁾ 공공기관에 제공할 근거를 마련함.
 - 기관장, 상임·비상임 임원 및 개방형 계약직 임용,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및 개방형 계약직 선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정규직(무기계약은 제외) 채용시험 위원(면접위원 등) 위촉 등에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정규직 채용시험 과정에서 외부 평가위원의 정보가 필요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공공기관 퇴직 예정자 또는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가위원 Pool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20년 10월 기준 공공기관 출신 474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평가위원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위원으로 양성함.
 - 기간제·일용직·단기근로자 채용 평가위원, 공공기관 인턴 채용 평가위원,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 평가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은 채용시험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정보가 필요한 날로부터 3일 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문으로 정보제공을 신청하여야 함.

〈표 II-4〉 외부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DB활용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정착지원 추진 현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0. 30.

21) 「경영지침」 제16조 제4항

22)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 '20. 1월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 7월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20. 7월말)

나.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확대정책²³⁾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는 국정과제 ‘66.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의 세부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11월에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동안 공공기관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려는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17.9%에서 22.1%로 대폭 증가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설정한 목표가 적절한지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그 성과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직급별 여성 관리자 현원을 정기공시에 포함하였음.²⁴⁾
- 2019년 7월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전면 시행하고, 2020년 3월에는 각 기관별 5개년(‘20~’24)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공공기관 여성임원 수는 2018년 647명에서 2020년 810명으로 163명이 증가하였고, 2020년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수는 2018년 13,008명 대비 5,824명이 증가함.
- 정부는 당초 목표를 20%로 설정하였으나 2020년에 조기 달성함에 따라 2022년까지 여성 비율을 각각 임원 23%, 관리자 28%로 목표를 상향 조정함.
-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균형잡힌 시각을 반영할 수 있게 됨.

23)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수립」, 보도자료, 2013. 12. 29., 「공무원·공공기관·군·경찰 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보도자료, 2020. 8. 31., 및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 심의」, 보도자료, 2020. 2. 1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실적 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4. 9. 참고

24)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수립」, 보도자료, 2013. 12. 29.

〈표 II-5〉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목표 및 실적

(단위: %, 명)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목표
임원	비율	-	11.8	13.4	17.9 (+4.5%p)	18.4	21.1 (+2.7%p)	21.8	22.1 (+0.3%p)	22.4	23.0
	인원	-	406	-	647	-	772	-	810	-	-
관리자	비율	-	18.8	22.8	23.8 (+1.0%p)	24.1	25.1 (+1.0%p)	25.4	26.4 (+1.0%p)	26.6	28.0
	인원	-	11,473	-	13,008	-	16,774	-	18,832	-	-

주: 1. 관리자: 인사·예산상 권한을 가진 부서장 직위에 포함 수 있는 최저 직급 이상

2. () 안은 목표 대비 실적간 차이를 의미함

자료: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3.do(검색일자: 4월 13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실적 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참고

2)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시행 및 지원

□ 기획재정부는 임원²⁵⁾임명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 임명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공운법」을 개정하였음.²⁶⁾

○ 「공운법」 제5조에 따른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운법」 제24조의²⁷⁾를 따라야 함.

○ 각 공공기관은 매년 임원(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과 그 점검 결과,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 및 이행 계획 등을 작성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정하되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성(性)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여야 함.

25) 여기에서 임원이란, 「공운법」에 따라 대통령, 주무기관장, 기획재정부장관, 기관장이 임명하는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를 의미하며, 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선임되는 비상임이사(감독부처 국장, 관련단체 임원 등 당연직)는 미포함됨

26) '18. 12. 28 공포, '19. 7. 1 시행

27)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수립·이행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각 기관은 「경영지침」에 따른 여성임원 목표를 고려하여 여성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여야 함.
 - 2018년 12월 「경영지침」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여성임원 비율이 20% 이상 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였음.
 - 일률적으로 여성임원 의무비율을 설정할 경우 여성 인재풀이 부족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기관이 발생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 성격의 ‘여성임원 최소 비율’ 제시함.
 - 여성임원이 20%를 초과하는 기관이라도 균형 있는 임원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임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기관장은 여성인력 풀, 임원교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임명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경영지침」 개정²⁸⁾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성비 또한 한 성(性)의 비율이 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기관 내 관리자 후보 풀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방형 계약직 제도 활성화²⁹⁾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간 여성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성임원 및 관리자 임명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2019~20년 경영평가 평가편람을 수정하여, 공공기관의 여성임원·관리자 임명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행을 유도함.
 - 2020년에는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도 정부혁신평가에 따른 주무부처 평가³⁰⁾를 통해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는 2022년까지 설정된 여성목표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공공기관의 여성임용 확대 지원을 위해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를 조사하여 공공기관의 성별 균형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분석, 개선안 도출, 우수사례·제도 확산 등을 추진할 것임.

28) 경영지침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영지침 제36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3대 인사혁신과제」 추진(’20. 4월)을 통해 민간 전담직위 도입 의무화하였음

30)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에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여부(실적)를 반영하도록 함

- 정부는 공공기관이 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성을 비롯하여 장애인·고졸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지수를 개발하고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지원할 것임.
- 여성임용 실적 점검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여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업하여 이행을 독려할 예정임.
- 또한 해당 사항을 인포그래픽 또는 카드뉴스 제작 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SNS 등에 배포하여 홍보할 것임.

다.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촉진³¹⁾

1) 추진배경

-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일정비율³²⁾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실적³³⁾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2019년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3%로 국가(3.56%), 지자체(3.99%)에 비해 낮은 실정임.
 -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로 공기업(3.45%)과 준정부기관(3.8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19년 법정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공공기관은 159개³⁴⁾로 전체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323개)의 절반 수준임.
- 이에 모범고용주가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3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6. 5.,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 추진실적 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12. 29. 참고

32) ('16) 3.0% → ('17·'18) 3.2% → ('19~) 3.4%(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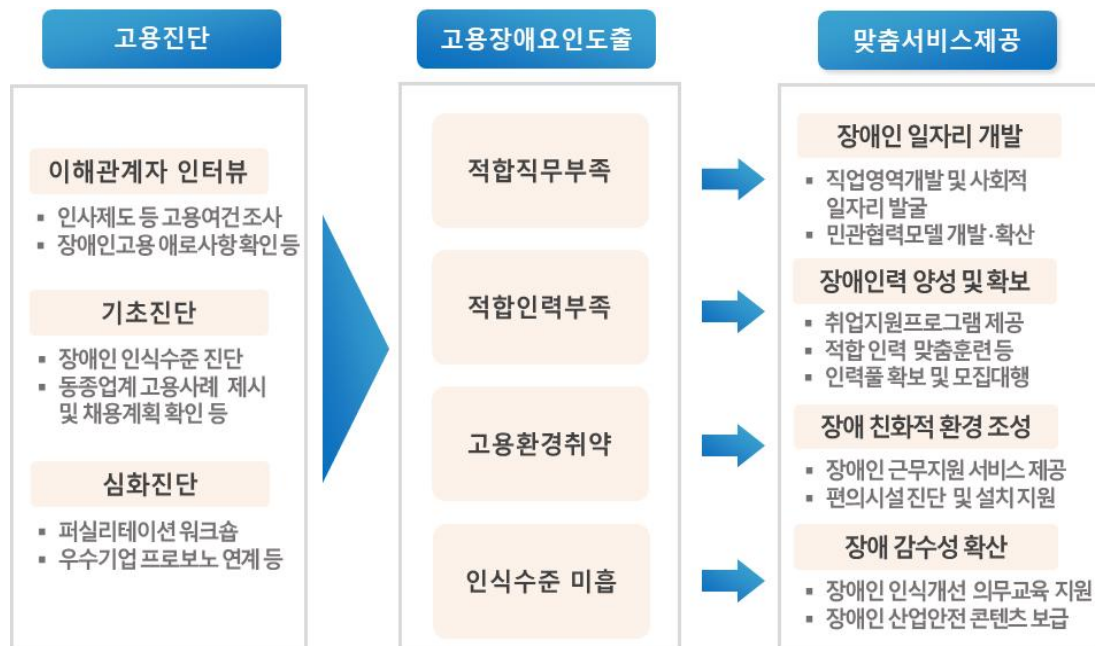
33) ('16) 2.83% → ('17) 2.89% → ('18) 3.03% → ('19) 3.23%

34) 공기업 14개, 준정부기관 18개, 기타공공기관 127개

2) 추진내용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음.
- 먼저 장애인 고용실적이 미흡한 기관³⁵⁾ 93개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종합컨설팅을 실시함.
- 또한 장애인 고용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계량) 기준을 강화하고 종합컨설팅이 실제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종합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방안에 대한 기관의 이행 노력을 비계량 평가에 반영하기로 함.

〈그림 II-3〉 장애인 고용컨설팅 주요 내용 및 프로세스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5.

35) ①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 ② 최근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고용노동부 지침상 실적저조기관으로 공표되는 기준)인 기관('19년 기준 93개)이 해당됨

〈표 II-6〉 평가편람 지표 개선사항

지표	현행	개선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 (계량) ① 장애인 고용 실적(0.3~0.5점) ②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0.5) ③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0.2~0.4) ○ (비계량) ① 채용 공정성 ② 사회형평 채용 ③ 여성인력 활용 ④ 처우상 차별 해소 ⑤ 임원임명의 양성평등 노력(2~3점)	○ (계량) 좌동 ○ (비계량) ①~⑤+⑥장애인 고용 노력(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컨설팅 이행 노력, 미해당 기관은 자체 노력)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5.

□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점을 반영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음.

○ 기타공공기관까지 적용되는 「혁신지침」에 부진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의무화 하고³⁶⁾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³⁷⁾에 대한 근거규정³⁸⁾을 마련함.

3) 추진실적

□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종합컨설팅은 협약체결, 고용진단, 실행계획 수립, 이행지원 등으로 진행되었음.

36) 「혁신지침」 제21조의2(장애인 고용개선)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장애인 고용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7) 정원을 초과하는 채용(단, 3년 내 해소)을 허용하는 제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既도입('19. 12월)

38) 「혁신지침」 제21조의2(장애인 고용개선) ⑤ 기타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해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표 II-7〉 추진 일정 및 추진내용

구분	시기	내용
협약 체결	7~8월	○ 대상기관(47개)에 대해 컨설팅 지원계획 공지 ○ 각 기관별 지원협약(상호간의 역할·책임 규정) 체결
고용 진단	8~9월	○ 인사제도 등 정보수집과 이해관계자 인터뷰, 직무개발 워크숍 개최 ○ 기관별 장애인 고용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논의
실행계획 수립	10월	○ 컨설팅 결과 보고회(해결방안에 대한 기관과의 토론 등) ○ 장애인 고용개선 실행계획 확정 - 연도별 장애인 채용계획(목표)과 구체적 이행방안(채용시기·방법, 채용예정직무, 홍보, 부서별 역할분담 등)을 마련
이행지원	10~12월	○ 실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모니터링 ○ 기관요청에 따라 수시로 지원상담 실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 추진실적 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2. 29. 참고하여 정리

□ 장애인 고용촉진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써, 대상기관인 47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개선되었음.

- 2020년 6월, 47개 대상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한 후, 총 483명 규모의 장애인 신규 채용이 이루어짐.
 - 이는 컨설팅 대상기관의 2019년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인원(1,587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대상기관의 전체 미달인원인 1,138명의 42%에 해당하는 규모임.
 - 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 미달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함으로써³⁹⁾ 2020년도 의무인원을 초과하였음.
- 47개 기관의 의무고용인원 충족률⁴⁰⁾도 전년 대비 20.8%p 상승하여 77.4%로 나타남.
 - 대학병원과 연구기관 등 구조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부진했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충족률이 절반 수준에서 70%대로 상승하였음.
 - 또한, 14개 기관에서 의무고용률(3.4%)을 달성함.

39) 미달인원 충족률 101%

40)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충족률 = 장애인 고용인원 수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표 II-8〉 47개 대상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 인원

(단위: 명, %)

구 분	'19년 장애인 고용 인원	'20. 6월 장애인 고용 현황		컨설팅 이후 신규 고용 인원(b)	미달 인원 총족률(b/a)
		의무인원	미달인원(a)		
전 체	1,587	2,861	1,138	483	42.4
공 기 업	299	390	94	77	81.9
준정부기관	246	344	96	97	101.0
기타공공기관	1,042	2,127	948	309	32.6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 추진실적 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2. 29.

〈표 II-9〉 47개 대상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총족률

(단위: %)

구 분	'19년	'20. 6월	'20년
전 체	56.6	60.5	77.4
공 기 업	73.5	75.9	95.6
준정부기관	72.1	74.1	102.3
기타공공기관	50.7	55.5	70.0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 추진실적 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2. 29.

□ 장애인 고용개선 컨설팅을 통해 2020년 기준 전체 340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또한 제고되었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용한파로 장애인 고용이 정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2020년 하반기 전체 공공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38%로 추정됨.

〈표 II-10〉 전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2020년 기준 340개)

구분	'18년 12월	'19년 12월	'20년 6월	'20년 12월(추정)
장애인 고용률	3.03%	3.23%	3.23%	3.38%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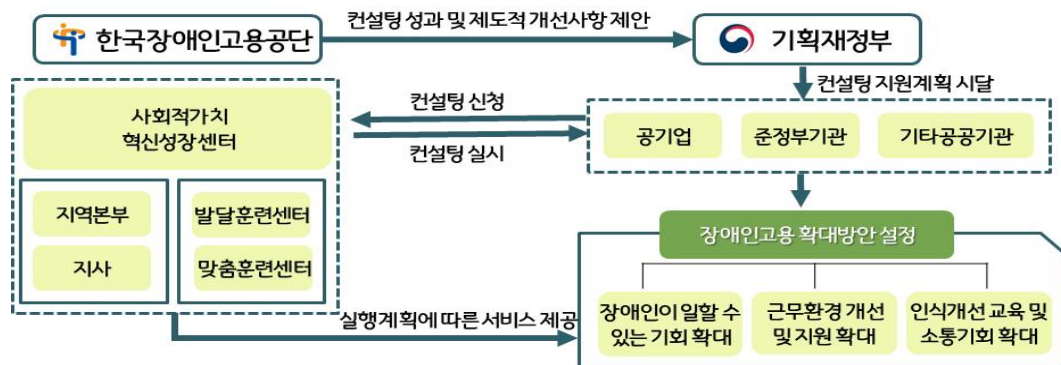
주: 2020년 12월 기준 고용률 추정치(3.38%)는 2018년 이후 각 반기별 장애인 고용 증가율을 가중 평균한 값으로 증가율을 적용하여 2020년 장애인 고용인원(자연증가분)을 추정하고, 동 인원에 컨설팅 후 실적(자연증가분 제외)을 반영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 추진실적 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2. 29.

4) 향후 계획

- 정부는 수요자 및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컨설팅의 장애인 고용촉진 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 맞춤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임.
- 정부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수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이행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문제해결 중심형’ 컨설팅을 추진할 것임.
- 단기에 장애인 고용확대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운영할 것임.
-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여건 및 기반 확충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그림 II-4〉 장애인 고용컨설팅 추진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 추진실적 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2. 29.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⁴¹⁾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운법」 제50조⁴²⁾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과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시달하고 있음.
- 예산편성지침은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등을 내용으로 하며,⁴³⁾ 차년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확정되어 시달됨.
- 예산집행지침은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일반지침과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등을 내용으로 함.
-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모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함.
 - 기타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른 지침 적용대상은 아니나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준용을 명문화하고 있음.

1)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 2020년과 2021년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고, 모범적 고용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임.
- 2021년의 경우, 임금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등에 활용하는 등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을 강조함.

41)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9. 12. 4.,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20. 12. 8.,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20. 1. 29.,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21. 4. 9. 참고

42) 「공운법」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주요 항목으로는 인건비, 경비(경상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사업비, 자금 및 기타 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

- 먼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및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모범적 고용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기관 간 협업 및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직무능력중심의 채용 제도를 확립하고, 고졸·지역인재·청년인턴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17. 10월)’에 따라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야 함.
 - 정규직 전환자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기관 여건에 따라 정현원차 축소, 교대제 변경, 유연근무제, 탄력정원제 실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여야 함.
 -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임금 피크제 인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임금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의 객관적 특성이 임금에 반영되는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재무건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민간경합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축소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복리후생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는 등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제품·창업기업제품 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함.
 -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에 따른 절감 재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자체자금 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함.
- 매년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함께 사업비, 인건비, 경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편성지침을 공공기관에 시달하고 있으며, 2020년도 및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항목별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표 II-11>과 같음.
-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공공기관 관련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항목별 예산편성 시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임.

〈표 II-11〉 2020년도 및 2021년도 항목별 편성지침 주요내용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사업비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 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 ▪ 해외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사업은 국내사업 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노력	▪ 좌동

〈표 II-11〉의 계속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인건비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 대비 2.8%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유지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 4.3% 이내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 3.8% 이내 - 산업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 1.8% 이내 -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차등 인상률 적용을 제외 가능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 대비 0.9%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저·고임금 기관에 대한 차등인상률은 기준인상률(0.9%)이 예년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완화(+1.0%p ~ △0.5%p) -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유지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 1.9%(+1.0%p)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 1.4%(+0.5%p) - 산업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 0.4%(△0.5%p) -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차등 인상률 적용을 제외 가능
경비	-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1% 증액 -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부진기관은 경상경비 예산 삭감(△0.5%p ~ △1%p) - 업무추진비는 '19년 예산액 이내에서 편성	-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 -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부진기관은 경상경비 예산 삭감(△0.5%p ~ △1%p) -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0% 삭감하여 편성하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0.5%p ~ △1.0%p 추가 삭감
기타	임직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연구개발 강화, 자기개발 및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	좌동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9.12.4. 및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수정)」, 2020.12.8.을 참고하여 작성

2)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⁴⁴⁾

- 2021년도 「예산집행지침」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집행 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성 및 안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4)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21.4.9. 참고

□ 특별히 2021년 「예산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이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함.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⁴⁵⁾」을 준용하여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하고,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계약특례⁴⁶⁾를 연장 적용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함.
-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한 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대체사업 발굴 및 예산의 전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대응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출장·홍보성 행사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필요시 행사·회의 등은 비대면 방식(온라인·서면 등)으로 실시하도록 함.
- 이로 인해 절감된 재원(경상경비)은 방역관리 강화 및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에 활용하도록 함.

□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야 함.

-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과 같이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함.
- 2021년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설계·발주·계약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함.
- 조기 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인건비를 조기 집행하여야 함.
- 특히 예산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국내 경기부양과 무관한 외자구매 사업 등 외화관련 사업은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집행함.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에 따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46) ① 수의계약 한도상향(예: 물품·용역 0.5억 원 → 1억 원), ②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③ 대금 지급기한 단축(5일 → 3일)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특례 연장('20년 → '21년 상반기)

-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함.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 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
- 각 공공기관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물가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물품·용역 구매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비품구입·용역계약 등 예산 집행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가격인하, 옥외가격표시제 등)로부터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을 유도하여야 함.
 - 물품·용역 구매 시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고,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함.
- 각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방만경영 개선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 등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⁴⁷⁾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에 따라 편성된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4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함.

- 「혁신지침」 제21조(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활용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각 기관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개개인의 업무역량 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함.
 -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집행하고, 외부 회계감사, 경영공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함.
 -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경상적 경비가 최대한 절감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각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는 2021년 4월 「경영지침」 개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성과평가 최하위등급(E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예산집행지침」상의 성과급 지급규정을 정비하였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채용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함.⁴⁸⁾

48) 「경영지침」 제26조 제7항

〈표 II-12〉 예산집행지침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관별 지급률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 차등 등급 수는 5개 등급 이상,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및 최저 등급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은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⁴⁹⁾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과거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었음.

49) 기획재정부,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4. 9. 22,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및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8. 26. 등 참고

- 이에 정부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함(「국가재정법」 제9조의2).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 및 투자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계획에는 전년 계획(2019~2023년) 대비 변동 사항, 재무관리 방안 등 종합적 평가·분석이 포함됨.

〈표 II-13〉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근거법령

【「공운법」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수준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함.
 - 재무현황과 5년간의 재무관리 방안 등을 보여줌으로써 공공기관 재무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3대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공기업 신용평가 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음.
- 2012년 최초로 39개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제출되었음.
 - 법률상 작성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해당하는 기관은 <표 II-14>와 같음.
 - 정부 손실보전 기관은 대한석탄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개 기관임.
 - 이에 따른 작성대상 기관 수는 2013년 41개, 2014년 40개, 2015년 39개, 2016년 39개, 2017년 38개이었으며, 2018년부터는 39개 기관으로 동일함.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작성대상 기관에 포함되었으나 자산규모 축소로 인해 2017년에 제외됨.
- 대한석탄공사는 2013년부터 작성대상에 포함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4년부터 대상으로 포함됨.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서도 제외됨.
- (주)강원랜드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부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시작함.

〈표 II-14〉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구분	'14년 (40개)	'15년 (39개)	'16년 (39개)	'17년 (38개)	'18년~'20년 (39개)
공 기 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표 II-14〉의 계속

구분	'14년 (40개)	'15년 (39개)	'16년 (39개)	'17년 (38개)	'18년~'20년 (39개)
공 기 업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	-	-	-	(주)강원랜드
준 정 부 기 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거래소	-	-	-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명이 2020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됨

자료: 기획재정부,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8. 26. 등을 참고하여 작성

2)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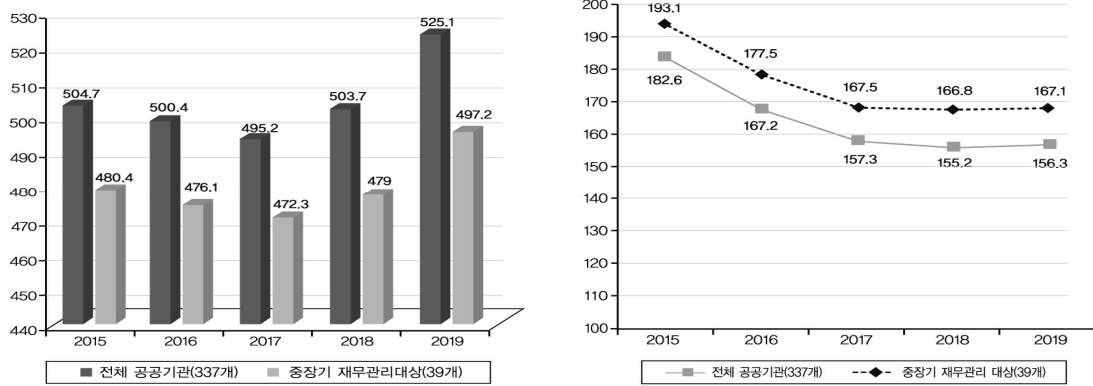
-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그간의 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추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였음.
- 정부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적정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주거복지로드맵, 한국판 뉴딜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음.
 - 다만, 투자 확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투자 이행에 따른 재무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 또한 기관별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은 책임경영에 기반한 자율적 재무관리를 하도록 하되,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
 - 자본잠식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경영효율화, 사업 조정 등 자구노력을 계속하여 선제적으로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함.
- 전체 공공기관(2020년 기준 337개⁵¹⁾) 및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규모 및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전체 공공기관(337개)의 부채에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기관(39개)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함.
 - 부채규모는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2019년에 증가세로 전환됨.
 - 2018년 대비 2019년 공공기관 총부채규모는 21.4조 원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1.1%p 증가하였음.
 - 이 중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기관의 총부채는 18.2조 원, 부채비율은 0.3%p 증가함.

50)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8. 2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기본 전제 중 경제성장률, 환율 등 거시지표는 '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일치시키고 에너지(가스·전기 등) 매출액 전망은 장기 수급계획 활용하였으며, 분야별 정부 상위계획 및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51) 알리오 공시 대상 340개 중 은행 3사(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는 제외

〈그림 II-5〉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조 원, %)



주: 전체 공공기관은 2020년 지정된 337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0. 9. 1.를 참고하여 작성

□ 향후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024년까지 171.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자산과 부채규모는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20~'24년) 각각 150.6조 원, 94.2조 원 증가하여, 2024년에는 975.1조 원, 615.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가 인프라 확충으로 향후 5년간 39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자산 97.0조 원이 증가하며, 한국전력공사 그룹사를 중심으로 송배전설비·발전소·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따라 자산이 22.1조 원 증가할 것이 예상됨.

〈표 II-1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전망

(단위: 조 원)

구 분	'19년 (실적)	'20년 (A)	'21년	'22년	'23년	'24년 (B)	증감 (B-A)
■ 자산(39개)	794.6	824.5	860.4	901.0	934.2	975.1	150.6
- SOC(10개)	334.6	350.1	372.6	402.5	425.2	447.1	97.0
- 에너지(12개)	266.3	271.1	276.4	279.2	287.0	293.2	22.1
- 금융(12개)	169.7	179.2	186.0	193.1	195.7	207.9	28.7
- 기타(5개)	24.0	24.1	25.4	26.2	26.4	27.0	2.9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0. 9. 1.참고

- 향후 5년간 부채규모는 94.2조 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0.8%p 하락할 전망이다.
- 부채비율은 2020년 172.2%로 전년 대비 5.1%p 상승하나, 2023년부터는 감소하여 2024년에는 171.4%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2019~2023년 계획과 비교할 때, 2020~2024년 계획의 부채규모 및 비율이 모두 증가함.
 -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지출증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역할 증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기관의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함.

〈표 II-16〉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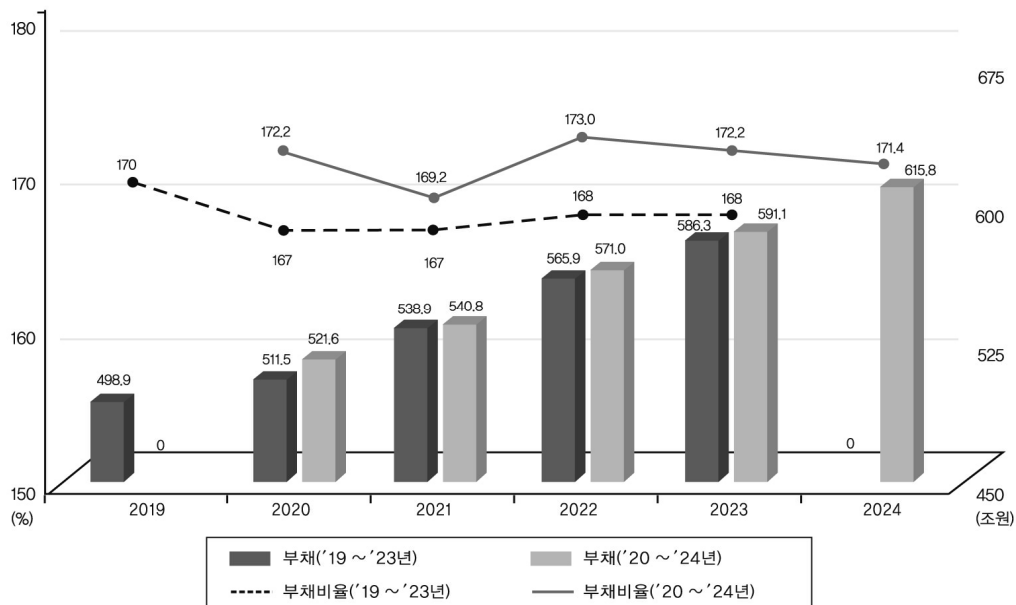
(단위: 조 원)

구 분	'19년 (실적)	'20년 (A)	'21년	'22년	'23년	'24년 (B)	증감 (B-A)
부채비율	167.1%	172.2%	169.2%	173.0%	172.2%	171.4%	△0.8%p
부채규모	497.2	521.6	540.8	571.0	591.1	615.8	94.2
자본	297.5	302.9	319.6	330.0	343.2	359.3	56.4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0. 9. 1.

〈그림 II-6〉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 전망치 비교

(단위: 조 원, %)



자료: 기획재정부,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및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8. 26. 참고

□ 분야별로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금융·기타 부문의 부채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SOC·에너지 부문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SOC 부문의 부채비율은 2020년까지 180.5%수준이나, 공공주택 공급 지속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190.8% 수준으로 전망됨.

- 부채규모는 2020~2024년간 68조 원 증가하여 2020년 225.3조 원에서 2024년 293.3조 원 수준으로 전망됨.

○ 에너지 부문의 부채비율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소 건설 등 신규 투자의 영향으로 2020년 268.5%에서 2024년 305.6%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부채규모는 2020~2024년간 23.4조 원 증가하여 2020년 197.5조 원에서 2024년에는 220.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됨.

○ 금융 부문의 부채비율은 2020년 93.2%에서 2024년 74.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부채규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만기상환 관련 차입 증가 등으로 2020년 86.4조 원에서 2024년 88.5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II-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 원, %, %p)

분야	'19년 (실적)	'20년 (A)	'21년	'22년	'23년	'24년 (B)	증감 (B-A)
전체(39개) (부채비율)	497.2 167.1	521.6 172.2	540.8 169.2	571.0 173.0	591.1 172.2	615.8 171.4	94.2 △0.8
- SOC(10개)	214.4 178.4	225.3 180.5	240.7 182.5	263.2 189.1	278.7 190.2	293.3 190.8	68.0 10.3
- 에너지(12개)	190.8 252.4	197.5 268.5	201.1 267.2	205.2 277.4	213.4 290.0	220.9 305.6	23.4 37.1
- 금융(12개)	80.5 90.2	86.4 93.2	85.9 85.9	89.3 86.0	86.1 78.5	88.5 74.1	2.1 △19.1
- 기타(5개)	11.5 91.7	12.4 104.9	13.1 105.8	13.3 102.5	12.9 96.3	13.0 93.7	0.6 △11.2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8. 26.

□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2020~2024년간 48%로 안정된 수준을 보임.

○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향후 5년간(2020~2024년) 77.4%이내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표 II-18〉 금융부채 전망치 비교

(단위: 조 원, %)

구 분	'19년 (실적)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금융부채	378.4	400.8	415.2	438.4	456.6	476.6
(총자산 대비)	47.6	48.6	48.3	48.7	48.9	48.9
(총부채 대비)	76.1	76.8	76.8	76.8	77.3	77.4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8. 26.

- 당기순이익은 2020년 3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3.5조 원이 감소하나, 2021년 이후에는 다시 흑자를 실현하여 연 3.4~6.6조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 및 지출증가에 기인함.

-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0.7수준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하나, 2021~2024년에는 1.7~2.0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표 II-19〉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단위: 조 원, 배)

구분	'19년 (실적)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당기순이익	0.5	△3.0	5.2	3.4	4.6	6.6
영업이익(A)	7.7	4.6	13.4	10.8	10.7	11.6
이자비용(B)	7.0	6.9	6.6	6.3	6.4	6.3
이자보상배율(A/B)	1.1	0.7	2.0	1.7	1.7	1.8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8. 26.

〈표 II-20〉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

(단위: 배, %, 억 원)

기관명	이자보상배율(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억원)	
	'20년	'24년	'20년	'24년	'20년	'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7.3	8.3	246.3	257.1	16,630	16,894
한국도로공사	1.7	1.3	82.7	93.3	1,218	1,474
국가철도공단	0.9	1.7	무자본특수법인		112	3,463

〈표 II-20〉의 계속

(단위: 배, %, 억 원)

기관명	이자보상배율(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억원)	
	'20년	'24년	'20년	'24년	'20년	'24년
한국수자원공사	1.6	2.1	163.3	142.7	1,248	1,877
한국철도공사	영업손실	0.8	284.1	243.2	△9,094	△80
인천국제공항공사	영업손실	9.5	52.3	93.6	△4,307	5,689
부산항만공사	2.7	3.9	63.0	65.4	624	1,074
인천항만공사	0.0	2.1	45.7	59.2	1,068	1,243
한국산업단지공단	0.7	영업손실	80.3	58.3	128	392
한국전력공사	2.0	영업손실	117.2	153.9	8,998	△20,741
한국수력원자력(주)	2.6	0.9	135.7	137.0	5,535	805
한국중부발전(주)	영업손실	3.4	284.4	248.3	△1,453	4,309
한국서부발전(주)	영업손실	0.5	187.0	228.4	△1,615	152
한국동서발전(주)	영업손실	1.5	119.6	161.6	△901	2,170
한국남부발전(주)	영업손실	2.0	173.2	171.6	△2,354	2,007
한국남동발전(주)	영업손실	3.1	134.3	187.0	△2,018	3,058
한국가스공사	1.8	2.0	365.3	323.9	578	5,802
한국석유공사	영업손실	1.9	자본잠식		△15,232	△818
한국지역난방공사	1.0	2.0	282.0	232.9	8	575
한국광물자원공사	영업손실		자본잠식		△10,612	△1,718
대한석탄공사	영업손실		자본잠식		△1,264	△1,303
예금보험공사	7.9	20.5	무자본특수법인		17,938	18,703
한국주택금융공사	1.2	1.2	75.5	87.1	1,880	2,429
한국자산관리공사	1.8	0.5	194.2	274.7	528	37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16.6	267.2	35.4	21.3	△443	66
주택도시보증공사	27.5	64.8	33.8	27.8	2,143	4,232

주: 1. 국가철도공단과 예금보험공사는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2.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지표는 별도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연결기준으로는 이자보상배율은('20)1.4 → ('24)영업손실, 부채비율은('20)195% → ('24)234%, 당기순이익은('20)0.6조 원 → ('24)△1.3조 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8. 26.

〈표 II-2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2020~2024년)

(단위: 조 원)

구분	기관명	항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9개 기관 전체	자산	824.5	860.4	901.0	934.2	975.1
		부채	521.6	540.8	571.0	591.1	615.8
		부채비율	172.2%	169.2%	173.0%	172.2%	171.4%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186.0	200.2	222.5	237.1	250.6
		부채	132.3	142.4	160.8	171.0	180.4
		부채비율	246.3%	246.4%	260.5%	258.8%	257.1%
2	한국도로공사	자산	69.6	73.5	77.4	81.5	84.9
		부채	31.5	33.6	36.1	38.9	41.0
		부채비율	82.7%	84.1%	87.6%	91.3%	93.3%
3	국가철도공단	자산	19.6	20.2	21.3	22.9	24.1
		부채	21.1	21.4	22.2	23.4	24.3
		부채비율	107.6%	106.0%	104.2%	102.2%	101.2%
4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3.3	24.5	25.8	27.2	28.4
		부채	14.5	15.0	15.5	16.2	16.7
		부채비율	62.2%	61.2%	59.7%	59.6%	58.8%
5	한국철도공사	자산	22.1	23.0	21.2	19.7	20.9
		부채	16.3	17.2	15.1	13.7	14.8
		부채비율	73.8%	74.8%	71.2%	69.5%	70.8%
6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	12.9	13.8	15.7	17.8	18.7
		부채	4.4	5.5	6.8	8.5	9.0
		부채비율	33.7%	39.9%	43.3%	47.7%	48.1%
7	부산항만공사	자산	6.4	6.8	7.3	7.5	7.0
		부채	2.5	2.8	3.2	3.3	2.8
		부채비율	39.1%	41.2%	43.8%	44.0%	40.0%
8	인천항만공사	자산	3.3	3.4	3.7	3.8	3.9
		부채	1.0	1.2	1.4	1.5	1.4
		부채비율	30.3%	35.3%	37.8%	39.5%	35.9%
9	한국공항공사	자산	4.8	5.0	5.4	5.7	6.6
		부채	0.7	0.9	1.2	1.4	2.1
		부채비율	14.6%	17.8%	22.2%	24.6%	31.8%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산	2.2	2.1	2.2	2.1	2.1
		부채	1.0	0.8	0.9	0.8	0.8
		부채비율	45.5%	38.1%	40.9%	38.1%	38.1%
11	한국전력공사	자산	113.7	117.0	120.6	123.9	126.8
		부채	61.4	63.2	67.3	71.8	76.9
		부채비율	53.9%	53.9%	55.8%	57.9%	60.7%
12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산	61.6	62.9	63.9	64.0	63.4
		부채	35.5	36.2	37.3	37.3	36.6
		부채비율	57.6%	57.6%	58.4%	58.3%	57.7%
13	한국중부발전(주)	자산	13.7	13.8	14.2	15.2	16.0
		부채	10.1	10.2	10.3	10.9	11.4
		부채비율	73.7%	73.9%	72.5%	71.7%	71.3%

〈표 II-21〉의 계속

(단위: 조 원)

구분	기관명	항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4	한국서부발전(주)	자산	10.5	11.2	11.6	12.0	12.6
		부채	6.8	7.7	7.9	8.2	8.8
		부채비율	187.0%	216.5%	215.5%	219.1%	228.4%
15	한국동서발전(주)	자산	10.1	10.2	10.9	12.0	12.9
		부채	5.5	5.7	6.3	7.3	8.0
		부채비율	119.6%	126.9%	134.6%	152.6%	161.6%
16	한국남부발전(주)	자산	11.2	11.4	11.6	11.8	12.0
		부채	7.1	7.4	7.6	7.6	7.6
		부채비율	173.2%	187.9%	185.6%	179.3%	171.6%
17	한국남동발전(주)	자산	11.4	12.4	13.2	13.9	14.0
		부채	6.5	7.8	8.6	9.0	9.1
		부채비율	134.3%	168.2%	186.5%	184.9%	187.0%
18	한국가스공사	자산	36.3	37.3	38.0	38.7	39.4
		부채	28.5	28.9	29.2	29.7	30.1
		부채비율	365.3%	346.2%	332.2%	328.9%	323.9%
19	한국석유공사	자산	19.9	19.6	16.6	16.9	17.7
		부채	20.4	20.9	19.3	19.5	20.2
		부채비율	자본잠식				
20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	6.2	6.3	6.6	6.9	7.0
		부채	4.6	4.7	4.6	4.8	4.9
		부채비율	282.0%	286.7%	226.0%	231.8%	232.9%
21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3.4	2.2	0.8	0.7	0.7
		부채	6.9	4.8	3.5	3.7	3.8
		부채비율	자본잠식				
22	대한석탄공사	자산	0.9	0.9	0.9	0.8	0.8
		부채	2.1	2.2	2.3	2.3	2.4
		부채비율	자본잠식				
23	예금보험공사	자산	18.7	18.8	19.5	20.5	25.2
		부채	11.1	8.5	7.6	6.6	5.6
24	한국장학재단	자산	12.1	12.0	11.9	11.8	11.8
		부채	11.3	11.2	11.1	11.1	11.0
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산	22.8	24.3	24.9	25.0	24.9
		부채	19.7	19.8	19.6	18.9	17.9
26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2.2	12.8	12.9	12.7	12.8
		부채	10.1	10.6	10.7	10.4	10.5
		부채비율	474.9%	490.5%	488.0%	466.8%	464.9%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	29.1	28.6	28.5	28.2	30.1
		부채	13.0	13.1	14.2	14.9	16.2
		부채비율	80.6%	85.0%	100.0%	112.8%	116.1%

〈표 II-21〉의 계속

(단위: 조 원)

구분	기관명	항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8	공무원연금공단	자산	18.8	19.0	19.5	19.9	20.5
		부채	6.4	6.4	6.6	6.6	6.8
		부채비율	51.6%	50.2%	50.8%	49.8%	49.6%
29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	21.1	22.4	26.1	26.6	30.9
		부채	9.1	9.2	11.9	11.2	14.4
		부채비율	75.5%	70.3%	83.7%	73.3%	87.1%
30	신용보증기금	자산	12.2	12.8	12.9	12.4	11.6
		부채	5.1	5.6	6.0	4.3	4.1
		부채비율	71.2%	78.3%	86.1%	53.1%	54.3%
31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	5.0	5.4	5.6	5.6	5.6
		부채	2.6	2.8	2.8	2.8	2.7
		부채비율	112.1%	102.8%	99.9%	99.8%	96.4%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5.9	7.1	7.6	7.8	8.1
		부채	3.9	5.0	5.5	5.7	5.9
		부채비율	194.2%	245.6%	260.8%	266.6%	274.7%
33	기술보증기금	자산	3.1	3.7	3.6	3.5	3.6
		부채	1.6	1.5	1.5	1.5	1.4
		부채비율	103.2%	70.0%	71.9%	74.0%	68.7%
34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5.6	5.8	6.0	6.2	6.4
		부채	1.5	1.3	1.3	1.2	1.1
		부채비율	35.4%	29.4%	26.3%	23.7%	21.3%
35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	7.8	8.2	8.4	8.7	9.0
		부채	2.0	2.0	2.0	2.0	2.0
		부채비율	33.8%	32.9%	30.8%	29.2%	27.8%
3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자산	22.5	23.6	24.7	25.7	26.7
		부채	0.7	0.6	0.6	0.5	0.5
		부채비율	3.2%	2.7%	2.4%	2.1%	1.8%
37	한국마사회	자산	2.4	2.4	2.4	2.4	2.4
		부채	0.2	0.2	0.2	0.2	0.2
		부채비율	8.7%	8.8%	9.3%	9.4%	9.8%
3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산	0.2	0.2	0.2	0.2	0.2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213.7%	201.7%	199.7%	198.3%	196.9%
39	(주)강원랜드	자산	3.7	4.3	4.7	4.9	5.2
		부채	0.5	0.8	1.0	1.0	1.0
		부채비율	14.6%	23.7%	25.7%	25.1%	24.5%

주: 1. 자본금 및 기본재산이 0인 국가철도공단과 예금보험공사는 부채비율 산출이 불가능

2. 한국장학재단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8. 26.

-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관련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⁵²⁾할 계획임.
- 또한 정부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수적인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⁵³⁾

가. 공공기관 혁신 추진경과

-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하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시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그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의 추진체계를 마련함.
- 공공기관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매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획재정부는 다음해에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기관의 혁신 추진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하여 평가함.⁵⁴⁾
-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혁신·협업·시민참여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지난 3년간 한국판 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
- 공공기관은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한국판 뉴딜 관련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옴.
 - 디지털 뉴딜 관련하여 지역항만에 스마트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주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52) 현재 경영평가 지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목표 부채비율(계량) 달성 여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비계량) 등 반영

53) 기획재정부, 「21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4. 9. 및 「20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6. 5.을 참고하여 작성

54) 『2020년도 경영평가편람』 기준, 비계량지표인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3점)을 통해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

-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기후·지형 등 고려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 노력을 기울임.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경제적인 부담과 비용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사회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5% 상한으로 제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다만, 최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의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공공부문의 행태일탈로 정책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관 내 윤리규정 및 처벌규정을 정비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2021년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의 행태일탈로 정책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주안점을 두기로 함.
-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이 혁신계획 추진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별 혁신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함.
- 종전에는 정부가 혁신 가이드라인을 6월에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기관별 혁신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2021년에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2021년 4월에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시달하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도록 함.
 -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과정에서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차년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종전보다 혁신계획 수립 후 이행실적 점검 시기까지 약 3개월을 더 확보할 수 있어 계획의 충실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2021년 공공기관 혁신방향

- 기획재정부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매년 3월, 관계부처 합동)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4월 「2021년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시달함.

- 2021년 공공기관 혁신의 목표는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혁신의 지향점을 국민에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촉진하고자 함.
- 2021년 혁신 추진방향은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 활력 제고, 건전한 기관 운영 및 국민신뢰 제고 등 크게 3대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로 5~6개의 세부 혁신과제를 담고 있음.
 - 2021년 혁신과제는 2020년 혁신과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2021년 경제정책방향」(2020. 12., 기획재정부)과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2021. 3., 관계부처 합동) 등 정부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과제를 반영하고 있음.
- 2021년 세부 혁신과제 수는 16개로 전년 대비 1개 감소하였음.
 - 2020년 혁신과제 중 2020년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 인사운영 3대 혁신(인사교류, 특별승진, 개방형 계약직제)’ 과제는 2021년에는 제외되었으며, 2020년의 ‘공공기관 혁신장터 구축’과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등 2개 과제는 2021년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로 통합됨.
 - 2020년 혁신과제 중 ‘한국형 뉴딜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상생’,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확산’ 등은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함.
 - 2021년에는 LH 사태로 인한 윤리경영의 강조 측면에서 세부 혁신과제에 비위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내용을 보강함.
 - 2021년 신규 과제로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현장실증형 K-테스트베드 구축·운영’ 과제를 추가함.

〈그림 II-7〉 2020년 및 2021년 혁신과제 비교

【2020년 혁신과제】

【2021년 혁신과제】

목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혁신 과제	①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② 안전관리 체계 강화 ③ 투명윤리경영 및 공정경제 강화 ④ 사회형평적 인사운영 ⑤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상생	①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① (윤리)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 ② (일자리) 신규채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마무리 ③ (안전) 안전등급제 시행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④ (형평) 여성, 장애인, 고졸 등 사회형평적 채용 ⑤ (지역균형) 지역산업 발전, 지역인재 양성, 지역 사회 기여
	②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⑥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한국형뉴딜 선도 ⑦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 강화 ⑧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친기업환경 조성 ⑨ 공공기관 혁신장터 구축 ⑩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②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⑥ (한국판뉴딜)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전환 촉진 ⑦ (경제활력) 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⑧ (규제완화)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⑨ (혁신조달) 통합기술마켓 내실화 ⑩ (K-테스트베드) 현장 실증 가능한 테스트베드 제공
	③ 국민신뢰 제고 ⑪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확산 ⑫ 임금피크제 대상인력의 효율적 활용 ⑬ 공공기관 투자활성화·재무건전성 관리 ⑭ 공공기관 적극행정 및 업무방식 변화 유도 ⑮ 공공기관 인사운영 3대 혁신 ⑯ 과도한 복지방지 등 방만경영 점검 ⑰ 알리오 및 알리오플러스 사용자 편의성 강화	③ 건전한 기관 운영 및 국민신뢰 제고 ⑪ (직무급)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⑫ (임금피크제) 임금피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 ⑬ (재무건전성) 총사업비 관리 강화, 출자회사 정비 ⑭ (적극행정) 적극행정 보상 강화, 소극행정 혁파 ⑮ (방만경영 방지) 복리후생 점검시스템 구축 ⑯ (국민참여) 알리오 사용자 편의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20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5., 및 「'21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를 참고하여 작성

다. 2021년 분야별 추진과제

1)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위해 아래의 5개 과제에 주력해야 함.
 -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회형평적 인사운영, 지역상생 등 5개 과제가 이에 해당함.
 - 5개 과제 모두 2020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이 중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 과제는 올해 더욱 보강됨.
- 먼저 공공기관은 2020년에 이어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처벌 등 제재 강화, 윤리경영시스템 점검, 윤리문화 확산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우선 처벌 등 제재 강화를 위하여 비위행위로 중징계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여 성과급과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징계규정 조사를 통해 기관별 징계수준을 파악하여 제재 수위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
 - 공공기관은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윤리경영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의 윤리경영시스템 점검을 실시해야 함.
 -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1년 9월까지 기관별 행동강령·징계규정, 모니터링 체계, 성과평가시스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표준 모델을 도출하고 안내할 계획임.
 - 또한, 공공기관에 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 및 자체 재취업심사제를 도입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은 부정부패·비리 근절 정책, 매뉴얼, FAQ, 적발 사례, 우수사례 등을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윤리경영 우수사례 및 관련 담당자 인터뷰 등이 담긴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두 번째 혁신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을 위해 공공기관은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혁신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함.
- 공공기관은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관의 고유 업무영역 내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확대해야 함.
 - 공공부문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2017.10., 고용노동부)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함.
- 세 번째 혁신과제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안전지침 점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해야 함.
- 공공기관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2021년 61개), 안전경영책임계획⁵⁵⁾ 수립, 안전 인력 및 투자 확대, 기관장 책임 강화 등을 이행하고 그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함.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 안전 수준 향상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안전등급심사단⁵⁶⁾은 공공기관⁵⁷⁾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 등 3개 분야를 심사하여 위험요소별(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기관별 안전등급을 부여함.
 - 공공기관은 매년 2월 기관별 사고현황, 안전계획, 사고 감축목표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해야 함.⁵⁸⁾

55) 2020년 6월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개편을 통해 종전 안전기본계획을 안전경영책임계획으로 변경함

56) 안전등급심사단은 정부위원(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보조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외부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매년 안전등급을 심사하여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을 부여함

57) 2021년 기준 안전등급 심사 대상기관은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61개) 및 연구기관(37개) 등 98개 기관임

58)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알리오시스템 ‘17.안전관리 및 환경

-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안전관리 추진계획 및 점검결과, 중대사고 감축목표, 안전조직 및 인력현황 등을 포함함.⁵⁹⁾

□ 네 번째 혁신과제인 ‘사회형평적 인사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은 여성, 장애인, 고졸 인재 등과 관련한 채용 제도를 정비하고 실적 관리를 강화해야 함.

- 먼저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여성관리자 임용 5개년 계획」에 따라 여성임원 및 관리자 임용 목표비율을 달성해야 함.
 - 공공기관은 기관 임원 중 여성 비중을 2021년 22.4%, 2022년 23.0%까지 달성해야하며 여성 관리자 비중도 2021년 26.6%, 2022년 28.0%까지 도달해야 함.
- 공공기관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⁶⁰⁾을 준수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장애인 고용 부진 공공기관은 기관의 고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⁶¹⁾이 제공하는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⁶¹⁾을 활용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고졸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고졸 채용목표에 맞춰 기관별 목표를 설정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그 실적을 점검해야 함.
 - 정규직 전환 채용을 제외한 고졸 채용목표 비율은 2021년 9.3%, 2022년 9.6%, 2023년 10.0%임.

□ 다섯 번째 과제인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상생’은 지역산업 발전,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 기여 등의 활동을 강조함.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주도로 지자체·지역대학·기업 등과 연계하여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⁶²⁾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보호’ 공시항목 하위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59) 2021년 1월 개정된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차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주무부처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4월에 공시함

60)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에서 3.4%로 정하고 있음

6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은 기획재정부가 2020년 6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장애인 고용 여건을 진단하여 장애인 고용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그 기관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62) 10대 협업과제: ①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 ② 대구, 한국가스공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 ③ 울산, 한국석유공사)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 / ④ 경북, 한국도로공사) 남부권 스마트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공공기관에 일학습병행제⁶³⁾를 도입하여 지역 직업계고 학생의 조기취업을 지원하고 핵심 인재로 육성할 계획임.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지역 생산물품 구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공동 직장어린이집 투자 활성화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함.

2)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 「2021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5개의 세부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세부 혁신과제는 공공기관의 한국형 뉴딜 선도,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 강화,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활력 제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신기술 현장 실증형 K-테스트베드 구축·운영 등 5개임.
-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2020년의 ‘공공기관 혁신장터 구축’과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등 2개 과제가 2021년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과제로 통합되었으며, K-테스트베드 과제는 2021년에 신규로 추가됨.

□ 여섯 번째 혁신과제인 ‘공공기관의 한국형 뉴딜 선도’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의 혁신 활동을 전개해야 함.

- 공공기관은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 주요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함.
 - 디지털 뉴딜 사례로는 한국도로공사의 IoT기반 스마트 도로관리 서비스 확대가 있음.
-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그린모빌리티·그린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로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해야 함.
 - 그린 뉴딜 사례로는 한국서부발전(주)의 해양바이오수소 생산 플랜트 고도화 기술 개발이 있음.

물류 거점도시 육성 / (⑤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이전·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 (⑥ 전북,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 (⑦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에너지밸리 조성 / (⑧ 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 (⑨ 충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스마트 교육시험도시 구축 / (⑩ 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스마트 MICE 활성화

63)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직업계고 학생 등을 학습근로자로 선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는 보완적 이론교육을 하여 숙련형성과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임

- 공공기관은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 가속화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 일곱 번째 혁신과제인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투자 및 구매 확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활동을 추진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최종구매자인 공공기관의 투자를 가속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2021년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추진함.
 - 공공기관은 대규모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수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전 타당성 검증⁶⁴⁾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사업 준비 미흡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여덟 번째 과제인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은 수행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야 함.
 -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관별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로서 혁신성장 저해규제 등 각종 기업 규제애로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발굴·접수하고 연계 처리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함.
 - 특히, 규제애로 중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큰 준조세 및 조달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함.
 - 공공기관은 기관별 규제현황을 공개하고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정착시키고 규제 개선 성과의 기업 홍보를 강화해야 함.
 -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이 민원인 보호와 서비스 질 제고를 약속하여 안심하고 자유롭게 규제를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창업·벤처기업의 사업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기관 특성에

64)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 사전점검 항목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

부합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기술·시설·인력 등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초기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아홉 번째 과제인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를 위해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고 통합기술마켓 운영을 내실화해야 함.
 - 공공서비스 향상과 혁신성장 산업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혁신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평가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혁신제품이란 혁신성이 인정되는 국가 R&D 결과물(패스트트랙 I), 민간시제품(패스트트랙 II)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품(패스트트랙 III)을 의미함.
 - 공공기관은 SOC 기술마켓, 에너지 기술마켓 등 통합기술마켓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ICT 분야 중소기업의 신기술 발굴을 지원함.
- 열 번째 과제는 ‘신기술 현장 실증형 K-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으로 실증 지원,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협력 지원 등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함.
 - 공공기관에 접목 가능한 신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에게 현장 실증 가능한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함.
 - 대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기술 실증할 수 있도록 물관리 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지역별, 기술 분야별 테스트베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연락처 등의 자료를 등록함.
 - 공공기관은 내부 직원을 실증 단계에 배정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거나 신기술에 대한 법·제도를 검토하는 등 컨설팅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함.
 - 일정 기간 현장 실증 후에는 실증장소, 실증기간, 업체명, 제품명 등이 기재된 실증확인서를 발급 및 관리하고, 우수 신기술과 제품은 혁신조달 혁신시제품으로 연계를 추진함.

3)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은 다음의 6개 세부 혁신과제를 추진해야 함.

-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도입’, ‘임금피크제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적극행정 보상 강화 및 소극행정 혁파’, ‘방만경영 점검’ 등 6개임.
 - 2020년에 이행 완료한 ‘공공기관 인사운영 3대 혁신’ 과제는 2021년 과제에서 제외하고 방만경영 점검 과제는 전년도보다 내용을 보강함.
- 열한 번째 과제인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도입’을 위해 내부 도입 기반 조성, 직무급 내용의 내실화 및 노사합의를 통합 추진 등을 기관별 혁신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함.
- 경영효율화 및 직무급 도입의 첫 단계로 공공기관은 체계적인 직무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여 도입기반을 조성해야 함.
 - 기관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직무 분류, 직무기술서 도출 및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가치를 평가하고, 직무가치 등급평가에 따른 보수체계를 설계해야 함.
 - 생산성과 보수수준을 연계하는 보수체계인 직무급을 주요 보수항목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직무급 내용으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직무가치와 보수수준의 연계, 직무급의 기본급 반영, 비간부직(일반직원)을 포함한 적용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직무급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무가치를 반영한 조직·인사 운영 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함.
 - 각 공공기관은 기관 내부구성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준비 및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합의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도입준비·설계·운영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를 통한 보수규정을 개정해야 함.
- 열두 번째 혁신과제는 ‘임금피크제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인력의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과 인사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함.
-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거나 지자체 또는 지역대학에 대한 컨설팅·교육·R&D지원을 수행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을 확대해나감.
 -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재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며 직원에 대한 성과 및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함.

- 성과 및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고 우수성과자를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열세 번째 혁신과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이며 이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관리, 출자회사 정비 등과 관련한 혁신 활동을 추진해야 함.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된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로 면밀히 관리되어야 함.
 - 2021년 9월 정부는 총사업비 증액 억제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수요 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검토 및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은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출자목적 달성여부, 재무건전성, 조직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자율진단을 시행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출자기관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 열네 번째 혁신과제는 '공공기관 적극행정 보상 강화 및 소극행정 혁파'로 2019년부터 꾸준히 추진되는 과제임.

- 공공기관은 적극행정 면책 및 적극행정 임직원 대상 특별승진·포상 등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국민의 아이디어가 공공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플랫폼'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주무부처의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자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정부는 「2021 적극행정 운영지침」(인사처 배포, 2021. 2월)을 마련하여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대행 운영하도록 할 예정임.
 - 공공기관은 국민과 기업 간 아이디어를 손쉽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특허청이 개통한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 플랫폼(www.idearo.kr)'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청취하여 기관 혁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기관별로 소극행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립하고, 빈발분야 재발방지 등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제도를 운영하거나 기관 홈페이지 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

□ 열다섯 번째 혁신과제는 2020년 신규 추가된 ‘과도한 복지방지 등 방만경영 점검’으로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임.

- 각 공공기관은 복리후생 공시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기관별 개선계획을 제출·시행하는 등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주택자금⁶⁵⁾, 학자금, 보육비 등 3대 중점 관리항목 위주로 공시내용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함.
 - 수시공시 대상인 단체협약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 시 협약내용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시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점검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는 단체협약,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공시항목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을 사후적으로 확인함.
- 공공기관의 방만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겸직의무 위반, 갑질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방만·윤리경영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함.
 - 방만·윤리경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사항을 각 주무부처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인사·감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열여섯 번째 혁신과제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알리오 및 알리오 플러스 사용자 편의성 강화’임.

- 공공기관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관의 주차장, 연수원 등 생활편의시설(H/W)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이 관심 있는 공공기관 정보(S/W)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 알리오플러스, 공공기관이 제작한 멀티미디어 정보, 빅데이터 우수 사례 등을 신설하여 제공함.

65)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기타 복리후생 제도) ⑤ 공공기관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 안정자금의 용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야한다.

-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알리오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통계검색 서비스의 대상항목을 추가하여 사용자 맞춤형 통계검색을 확대하는 한편 통합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갈 계획임.

라. 2021년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 2021년 혁신계획의 수립 대상·절차·범위와 혁신 추진체계는 2020년과 대동소이함.
- 우선 공공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년도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21년 혁신계획' 및 '2021~2025년 중기혁신방향'을 수립하여야 함.
 - 수립한 혁신계획 및 중기혁신방향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 2021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350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타공공기관(33개)과 연구개발 목적기관(74개)을 제외⁶⁶⁾한 243개 기관임.
 - 2021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혁신계획 수립 대상 유형 또한 2020년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에서 2021년 '대규모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혁신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하는 중점과제 수도 종전 1개에서 3개로 늘어남.
 - 202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12개 기관은 기관 규모에 따라 혁신계획 수립 대상 유형이 정해짐.
 - 한전MCS(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은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중점과제 1개를 포함한 혁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5개 기관은 '연구목적개발기관'에 해당하여 혁신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됨.
 -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항공박물관 등 2개 기관은 '50인 미만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여 혁신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됨.

66) 제외 기관은 주무부처 주관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혁신계획 수립·점검

〈표 II-22〉 2021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제외 대상 공공기관

유형	기관명	비고
공기업 (36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중점과제 3개
대규모 준정부기관 (55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u>서민금융진흥원</u>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점과제 3개

〈표 II-22〉의 계속

유형	기관명	비고
대규모 준정부기관 (55개)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중점과제 3개
소규모 준정부기관 (41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문체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중점과제 2개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111개)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중점과제 1개

〈표 II-22〉의 계속

유형	기관명	비고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111개)	(과기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문체부)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예술의전당,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림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MCS(주) (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위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해수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중점과제 1개

〈표 II-22〉의 계속

유형	기관명	비고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111개)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중점과제 1개
연구개발 목적기관 (74개)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복지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해수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가이드 라인 대상제외

〈표 II-22〉의 계속

유형	기관명	비고
50인 미만 기타공공기관 (33개)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해수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조사협회, 국립해양과학관 (국토부) 국립항공박물관 (농림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재)축산환경관리원 (복지부)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문체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학번역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중기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가이드 라인 대상제외

주: 1. 50인 미만 기타공공기관 분류는 2020년 4분기 일반 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기준임

2. 밑줄 표시된 기관(1개)은 2021년 공공기관 유형 변경에 따라 2021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 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3. 이탤릭 표시된 기관(12개)은 2021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1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 혁신계획 수립대상인 243개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모든 대상기관은 16대 세부 혁신과제를 포괄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세부 내용은 기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함.
- 혁신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각 기관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공공기관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서 중점과제 수를 달리함.

〈표 II-23〉 기관별 중점과제 수

(단위: 개)

구분	공기업 및 대규모 준정부기관	소규모 준정부기관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중점과제 수	3	2	1

주: 1.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구분기준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명시된 강소형 분류 기준을 준용(위탁 집행형: 직원 정원 300인 미만, 기금관리형: 자산 1조 원 & 직원 정원 300인 미만)
2.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분류는 2020년 4분기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직원 정원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21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 공공기관은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향식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관 내부적으로는 임직원 토론, 혁신동아리 등을 통해 다양한 내부 혁신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함.
 - 외부적으로는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혁신도시별 혁신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공공기관 간 교류를 통해 혁신계획을 상호 검증하여야 함.
 - 공기업과 대규모 준정부기관은 시민참여혁신단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하고, 그 외 기관은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함.
 - 시민참여혁신단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구성·규모 등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함.
 - 2021년 혁신 가이드라인은 혁신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 교류를 통해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혁신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간 상호검증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경영평가 시 공공기관 간 교류 실적을 반영하기로 함.
- 혁신의 추진에 있어 각 공공기관은 경영진·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내부역량을 집중하여 기관운영 전반을 혁신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기관별 혁신책임관 및 혁신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실무자·경영진 대상 혁신 교육, 직급·업무별 학습그룹 등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활성화하며, 자율적으로 기관별 성과관리를 운영하여야 함.
 -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하여 혁신을 활성화해야 함.
- 기관별 혁신계획은 시민참여혁신단 의견 반영, 주무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립하며 2021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야 함.

마.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점검 및 지원

-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 점검에 있어 주무부처와 혁신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함.
 - 주무부처는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시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계획 이행 과정에서는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혁신네트워크에서는 혁신도시 내 분야별 간사기관을 정하고 간사기관은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있는 경우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혁신도시 이외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별도로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⁶⁷⁾를 통해 기관별 혁신계획의 내용과 이행성과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지원함.
 - 경영평가에서는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혁신도시별 기관 간 협업, 혁신 성과 홍보 노력을 중점적으로 반영함.
 - 혁신계획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은 그 밖의 평가지표와 연계해서 평가에 반영함.⁶⁸⁾
 - 2021년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한 점검 및 성과 평가는 2022년 실시되는 경영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경영평가 외 지원체계로는 표창과 우수사례 발굴 및 반영이 활용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혁신 동기부여를 위해 혁신계획 우수작성 기관에 대해서는 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⁶⁹⁾, 파급·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혁신·협업·시민참여 분야의 우수사례 후보군에 우선 포함하고 있음.
 - 2021년 혁신 우수사례집은 2022년 상반기 중 발간될 예정임.
- 공공기관 혁신성과의 확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위주로 홍보와 공유를 추진함.

67)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으로 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계획·성과 등 평가

68) (예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과제는 ‘일자리 창출’ 지표와 연계

69) 2020년 혁신계획 우수작성 기관으로 부총리 표창을 수상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임

- 국민 체감형 혁신 우수사례를 취재하여 기획보도하고 디지털 영상이나 카드뉴스 제작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임.
-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통한 혁신사례 공유와 기관별 자체행사 시 관련 영상이나 판넬 제작을 통한 홍보를 모색함.
- 성과 공유를 위해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우수기관과 각 기관 시민참여단 등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함.

4.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및 운영

1) 안전관리등급제 개요⁷⁰⁾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임.
-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등급제의 조속한 정착과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하여 2020년 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시범사업 심사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며 5등급이 가장 낮고 1등급이 가장 높은 안전관리 수준을 의미함.
 - 안전관리등급제 시범사업 심사 결과, 안전등급이 보통인 3등급 기관(26개)이 가장 많고, 높은 등급 2등급은 21개, 낮은 등급 4·5등급은 17개임.
 - 최고 1등급 기관은 없으나, 안전등급이 높은 2등급과 보통인 3등급 기관이 전체의 73.4%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안전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이어 2020년 10월에 심사 보조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총평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시범사업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운영지침」⁷¹⁾을 제정함.

70) 기획재정부,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1.2.23. 및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편람』, 2021.2. 참고

- 2020년 12월에는 시범사업 당시 안전등급이 낮았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⁷²⁾의 안전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함.
- 기획재정부는 2020년 시범사업 이후 2021년 2월,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을 확정하여 발표함.
 - 시행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이하 '심사단')은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진행하며, 5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한 후 6월 공운위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심사단은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3개 분야를 심사하여 5단계의 안전관리등급(Safety-Cap)을 부여하게 됨.
 - 안전역량은 안전관리 체계구축 현황을, 안전수준은 실제 현장의 안전활동에 대한 실태를, 안전성과 및 가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사고현황 등을 평가하게 됨.
 - 확정된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은 외부에 공개하며, 하위 등급(Cap2~Cap1)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관리자 및 직원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함.
 - 또한 지속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지적된 미흡사항을 다음 연도에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등급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였음.
- 2021년에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 기관⁷³⁾(61개) 및 연구기관(37개) 등 총 98개 기관을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함.
 - 심사 대상기관은 202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92개 공공기관과 6개 부설기관을 포함함.

71) 안전등급 심사단 구성 및 운영, 안전등급 심사기준(서면, 현장검증), 안전등급 결정 방법, 심사결과 활용 등을 규정

7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등과 협의

73)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 심사 대상에 포함된 6개 부설기관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뇌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등이 이에 해당함.
- 심사 대상기관은 사고현황, 업무특성 등 사고발생의 상대적인 위험도에 따라 Yellow(보통)과 Red(높음) 그룹으로 구분하며, 심사유형은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에 따라 3가지(심사 I ~ III)로 구분함.
-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과 심사유형은 <표II-24> 및 <표II-25>와 같음.

〈표 II-24〉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

기관 분류	Yellow 그룹(65개)	Red 그룹(33개)
공 기 업 (31개)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PS(주), 한국마사회
준 정 부 기 관 (28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기 타 공 공 기 관 (39개)	코레일유통(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뇌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방과학연구소

주: 밑줄 친 기관은 공공기관 부설기관에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1. 2. 23.

〈표 II-25〉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유형

구분	위험요소	공공기관명 (98개)
심사 I 형 (73개)	작업장(29개)	근로복지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유통(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건설현장(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설물(7개)	(주)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심사 II 형 (8개)	연구시설 (36개)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뇌연구원
	작업장 +건설(1개)	한국환경공단
	작업장 +시설물(6개)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심사 III 형 (17개)	건설현장 +연구(1개)	국방과학연구소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17개)	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밑줄 친 기관은 공공기관 부설기관에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공공기관안전관리등급제 심사편람』, 2021. 2.

- 공공안전지수(PSI, Public Safety Index)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점수(1,000점 만점)를 산출함.
- <표Ⅱ-26>과 같이 안전 역량, 성과 및 가치 범주는 모든 기관에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안전수준 범주는 위험요소별로 개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표Ⅱ-27>) 하며, 심사범주별 가중치는 범주마다 달리함.
- 범주별 심사항목과 가중치는 <표 Ⅱ-28>과 같음.

〈표 Ⅱ-26〉 심사범주별 주요 심사내용

심사범주	주요 심사내용	
안전역량 [공통기준] (300점)	공공기관이 안전활동을 통하여 안전성과 및 가치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체계역량과 관리역량으로 구성	
	체계역량	· 경영진의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수준 등
	관리역량	·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 및 이용국민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안전활동 실행능력
안전수준 [개별기준] (450점)	공공기관이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를 계획·실행·점검·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준	
	작업장	· 작업장 내 잠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건설현장	· 건설발주 공사단계별 발주자 의무 수행과 시공자의 안전 조치 점검 및 안전환경조성 노력 · 발주기관의 건설안전 체계구축 수준 및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지원,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건설안전 목표달성 및 피해최소화 노력
	시설물	·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점검 실시 및 성능수준, 보수·보강,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
	연구시설	· 연구실 안전 및 보건 유지·관리 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 [공통기준] (250점)	공공기관이 안전역량과 안전활동을 통해 실현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의 성과와 가치(안전경영책임보고서), 사고사망 감소 성과 등	

주: 공공안전지수(1000) = 안전역량(300)+안전수준(450)+안전성과 및 가치(250)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공공기관안전관리등급제 심사편람』, 2021. 2.

〈표 II-27〉 위험요소별 안전수준 가중치

위험요소	위험1(중점분야)	위험2	위험3	위험4
1 유형	100%			
2 유형	60%	40%		
3 유형	45%	30%	25%	
4 유형	40%	25%	20%	15%

주: 위험요소별 가중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 수량과 조합에 따른 위험요소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차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공공기관안전관리등급제 심사편람』, 2021. 2.

〈표 II-28〉 심사항목 총괄표

범 주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가중치
총 점			1,000
① 안전역량 [300점]	안전역량 합계		300
	1. 체계역량 [170점]	소 계	170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30
	2. 관리역량 [130점]	소 계	130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30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40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② 안전수준 [450점]	1. 작업장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공단	450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50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50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2. 건설현장	【건설발주 안전관리】 - 안전보건공단	450
		①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조치	60
		②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조치	60
		③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조치	60

〈표 II-28〉의 계속

범 주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가중치
② 안전수준 [450점]	2. 건설현장	④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90
		⑤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120
		⑥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60
		【건설발주 안전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450
		① 건설안전체계 구축 수준	70
		②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140
		③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수준	110
		④ 건설안전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30
	3.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450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40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50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50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	100
		⑤ 시설물 안전성능 수준	60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50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50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50
	4. 연구시설	【연구실 안전관리】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450
		① 연구실 일반 안전 유지·관리 수준	30
		② 연구실 기계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③ 연구실 전기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④ 연구실 화공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⑤ 연구실 소방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⑥ 연구실 가스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⑦ 연구실 위생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⑧ 연구실 생물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③ 안전성과 및 가치 [250점]	공통	안전성과 및 가치 합계	250
		① 안전보건경영 성과측정	30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	100
		②-1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이력관리('22년 적용)	(30)
		③ 안전문화 확산	20
		④ 사망사고 발생 및 감소 성과	100

주: 안전수준 범주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공공기관안전관리등급제 심사편람』, 2021. 2.

-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영역부터 선도적으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을 기대함.
 - 또한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원청업체는 다시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개선시키는 선순환적인 유기적 사고예방시스템이 정착되어 나갈 것이 기대됨.
 - 또한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사고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등급제와 병행하여 「안전관리지침」 제6조의1을 통해 안전경영 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의무화함.
 - 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알리오시스템에 이를 공시⁷⁴⁾하여야 함.
 - 이에 후속하여 『2020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가이드』를 마련하여 시달함.

〈표 II-29〉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목차

목차	
본 보고서	I. 2020년도 기본현황 1.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4. 안전 예산 현황 5.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II. 2020년도 실적 및 평가 1.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실적 2.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3.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4.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III.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증빙자료	1. 일반현황 2. 첨부자료

주: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대상 기관에 한하며, 본 보고서에는 수록하지 않고 별도 책자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가이드」, 2021. 1.

74) 알리오시스템의 '17.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항목을 통해 공시

2)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결과 발표⁷⁵⁾

-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를 위해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 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갖은 98개 공공기관(6개 부설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기관별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함.
- 안전관리등급제는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해당 기관이 어떻게 위험 작업현장별로 안전 활동을 이행하고 그 결과 산재사고율이 감소했는가 등을 평가하여 기관의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을 판정하는 제도임.
- 안전관리등급별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은 <그림 II-8>과 같음.

〈그림 II-8〉 안전관리등급별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

등급	점수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
1등급	900점 이상	구성원 전체(하나의 팀)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전사적)되어 있고, 작업 현장의 <u>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u> (종합 안전관리 능력 : 우수)
2등급	800점 이상	구성원 전체보다는 개인의 안전관리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 현장의 <u>안전 활동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u> (종합 안전관리 능력 : 양호)
3등급	700점 이상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일상화되어 있으나, 구성원 개인의 참여는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u>안전 활동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u> (종합 안전관리 능력 : 보통)
4-1등급 (주의)	600점 이상	구성원 개인 또는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일상화되어 있고, 작업현장의 <u>안전 활동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u> 이나, 산재 사고 사망자 발생으로 낮은 등급(90점 감점)을 받은 상태 (종합 안전관리 능력 : 주의)
4-2등급 (미흡)	600점 이상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 담당자의 안전의식이 낮고, 구성원 참여는 부진하고, 작업 현장의 <u>안전 활동이 부족한 상태</u> (종합 안전관리 능력 : 미흡)
5등급	600점 미만	안전 전담조직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안전전문가가 없고, 구성원들의 참여도 매우 낮으며 작업현장의 <u>안전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u> (종합 안전관리 능력 : 매우 미흡)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8. 26.

75)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8. 26. 참고

□ 2021년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는 <표 II-30>과 같음.

<표 II-30>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종합표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계	31개	28개	39개
1등급 【우수】	-	-	-
2등급 【양호】 (8개)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5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2개)	한국원자력연구원 (1개)
3등급 【보통】 (57개)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14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8개)	광주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세계김치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25개)

〈표 II-30〉의 계속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4 등급 (31개)	4-1 【주의】 (15개)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9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2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4개)
	4-2 【미흡】 (16개) 대한석탄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해양환경공단 (3개)	국가철도공단, 근로복지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5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개)
	5등급 【매우미흡】 (2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개)

주: 밑줄 친 기관은 공공기관 부설기관에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8. 26.

□ 안전관리등급별 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2등급(양호) 8개(8.2%), 3등급(보통) 57개(58.2%), 4-1등급(주의) 15개(15.3%), 4-2등급(미흡) 16개(16.3%), 5등급(매우미흡) 2개(2.0%)로 나타남.

- 1등급은 이상적인 수준의 안전능력을 의미하며,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가 최초로 실시된 점을 감안하여, 동 기준에 도달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심사함.
- 2~3등급은 심사 대상기관의 66.4%인 65개 기관이 해당하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제(안전역량)와 안전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4등급은 41등급과 42등급으로 세분하여 판정⁷⁶⁾하였으며 41등급 이상인 기관이 전체의 77.6%(76개)을 차지하여 심사 대상인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통상적인 수준의 안전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41등급인 15개 기관 중 11개 기관은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안전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산재 사고로 인한 패널티로 안전관리등급이 4등급으로 하락한 기관에 해당함.
- 미흡 이하인 42등급과 5등급은 심사 대상기관의 18.3%인 18개 기관이 해당하며 심사단의 높은 기준 대비 안전능력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 유형별로 상이한 분포를 보임.

- 대형 SOC·에너지 기관이 대부분인 공기업은 전체의 90.3%(28개)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안전 능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기관이 다수 포함된 준정부기관은 전체의 78.5%(22개)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안전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출연연구기관(37개)이 대부분인 기타공공기관(39개)은 전체의 76.9%(30개)가 안전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표 II-31〉 공공기관 유형별 안전관리등급 분포

(단위 : 개수, %)

구 분	기관수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5등급 (매우미흡)
					4-1 (주의)	4-2 (미흡)	
공기업	31개	-	5(16.1)	14(45.2)	9(29.0)	3(9.7)	-
준정부기관	28개	-	2(7.1)	18(64.3)	2(7.1)	5(17.9)	1(3.6)
기타공공기관	39개	-	1(2.6)	25(64.0)	4(10.3)	8(20.5)	1(2.6)
합 계	98개	-	8(8.2)	57(58.2)	15(15.3)	16(16.3)	2(2.0)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8. 26.

76)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4등급 중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항목 모두 3등급 이상이면 4-1등급으로,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4등급 이하가 있는 경우는 4-2등급으로 분류함. 기타공공기관은 대부분이 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고 안전 전담부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실험실 내에서 안전수준 항목이 3등급 이상은 4-1등급으로, 4등급 이하는 4-2등급으로 분류함.

- 31개 공기업의 안전관리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2등급 5개, 3등급 14개, 4·1등급(주의) 9개, 4·2등급(미흡) 3개로 통상적인 수준의 안전역량을 확보한 기관(4·1등급 이상)이 전체의 90.3%를 차지함.
- 2등급에 해당하는 5개 기관⁷⁷⁾은 안전경영체계가 구축(안전역량)되어 있고, 실제 작업현장에서 안전 활동(안전수준)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수하게 평가됨.
 - 4등급인 12개 기관 중 9개 기관⁷⁸⁾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은 보통 이상이지만, 산재 사고로 인해 4·1등급(주의)으로 분류됨.
 - 나머지 3개 기관⁷⁹⁾은 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안전역량은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4·2등급(미흡)으로 심사됨.

〈표 II-32〉 공기업 중 안전관리등급 4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종합 등급	기 관 명	세부 심사기준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4·1등급 (9개)	한국남동발전(주)	2등급	3등급	5등급
	한국도로공사	2등급	3등급	5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2등급	3등급	5등급
	인천항만공사	3등급	3등급	5등급
	한국공항공사	3등급	3등급	5등급
	한국수력원자력(주)	3등급	3등급	5등급
	한국수자원공사	3등급	3등급	5등급
	한국전력공사	3등급	3등급	5등급
	한국철도공사	3등급	3등급	5등급
4·2등급 (3개)	한국중부발전(주)	2등급	4등급	5등급
	대한석탄공사	3등급	4등급	5등급
	해양환경공단	3등급	4등급	5등급

주: 산재 사고사망 발생으로 배점 90점 감점 적용으로 5등급 부여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8. 26.

77)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주)

78)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79) 한국중부발전(주),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

- 28개 준정부기관은 2등급 2개, 3등급 18개, 4·1등급(주의) 2개, 4·2등급(미흡) 5개, 5등급 1개로 분류되어 전체의 78.5%가 통상적인 수준의 안전역량을 확보한 4·1등급 이상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2등급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주된 심사 대상이 시설물로, 건물 안전진단 결과 및 안전역량 등이 양호한 것으로 심사됨.
 - 4등급인 7개 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 2개 기관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보통 이상인 4·1등급으로, 나머지 5개 기관⁸⁰⁾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한 4·2등급으로 분류됨.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안전전담 조직 미비, 안전작업허가제도 관련 지침 부재 등으로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이 가장 미흡한 5등급으로 평가됨.

〈표 II-33〉 준정부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4·5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종합 등급	기 관 명	세부 심사기준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4·1등급 (2개)	한국농어촌공사	3등급	3등급	5등급
	한국환경공단	3등급	3등급	5등급
4·2등급 (5개)	근로복지공단	3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	4등급	3등급	5등급
	국가철도공단	4등급	4등급	5등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등급	4등급	3등급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5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1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등급	5등급	4등급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8. 26.

- 39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등급 1개, 3등급 25개, 4·1등급(주의) 4개, 4·2등급(미흡) 8개, 5등급 1개로 분류되어 통상적 수준의 안전역량을 확보(4·1등급 이상)한 기관이 전체의 7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80)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심사대상인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연구원만 2등급에 해당하는데,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안전능력)이 철저히 관리되어 온 결과로 보임.
- 출연연구기관 11개⁸¹⁾와 코레일유통(주) 등 12개 기관은 4등급으로 분류됨.
 - 이 중 4개 기관은 실험실 안전활동 기준을 충족하여 4·1등급으로 평가되었고, 8개 기관은 안전활동 수준이 낮아⁸²⁾ 4·2등급으로 평가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안전 전담인력이 부재하고, 정상적인 안전 활동이 미비⁸³⁾하여 5등급으로 판정됨.

〈표 II-34〉 기타공공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4·5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종합 등급	기 관 명	세부 심사기준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4·1등급 (4개)	한국나노기술원	5등급	2등급	4등급
	국방과학연구소	4등급	3등급	5등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재료연구원	5등급	3등급	3등급
4·2등급 (8개)	코레일유통(주)	4등급	4등급	3등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등급	4등급	3등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등급	4등급	4등급
	한국세라믹기술원	5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등급	5등급	3등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1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등급	5등급	4등급

주: 1. 기타공공기관 39개 중 2개(코레일유통(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제외한 기관은 출연연구기관(37개)에 해당

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8. 26.

81) 출연연구기관은 별도의 안전전담 조직 없이 운영되고 있어, 안전역량이 4등급 이하로 평가됨

82) 실험실 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 위험물질의 기초 정보자료 및 취급주의 부착 안내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음

83) 시약 폐기, 보관 및 특별관리 대상 물질 등의 관리 체계가 미흡함

3)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 98개 공공기관의 2020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는 알리오시스템을 비롯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기획재정부는 개선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내년도 안전등급 심사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 또한 2022년부터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이 미흡 이하에 해당하는 4·2등급(미흡) 및 5등급(매우 미흡)인 18개 기관은 전사적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안전역량)과 작업 현장별 안전관리 활동(안전수준) 등에서 권고받은 개선사항에 대해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함.
- 주무부처는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9월말 부처 합동 안전 점검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함.
 - 공정한 이행 평가를 위해 부처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9월 중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신속한 이행을 촉진할 계획임.
 - 이행 실적 부진기관은 10월 공운위에 추진실적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능력을 확보하도록 점검함.
- 또한 2021년 12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안전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해당기관의 경영진과 안전관리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추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안전 전문 인력과 일대일로 안전 개선조치 방안 등을 상시 지원받도록 할 계획임.

- 안전관리등급상 4·1등급(주의)에 해당하는 15개 기관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안전능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함.
- 해당기관은 2021년 8월까지 개선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10월 말까지 개선과제를 조기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주무부처는 10월 말 부처 합동 안전 점검 회의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4-1등급에 해당하는 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산재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안전업무에 별도로 반영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안전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안전관리등급 2·3등급(우수·보통)에 해당하는 65개 기관은 9월말까지 추가 보완 권고사항을 개선하는 이행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2021년 11월 말까지 개선과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11월 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임.
-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 조직을 보강하고 안전문화 확산 방안도 마련함.
 - 안전전담조직이 없는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9월 말까지 신속히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안전 자격증 소지자 등 안전 전문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정기 직제에 11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안전 전담인력 14명을 기 반영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안전 인력에 대한 증원 요구를 받을 경우 수시 직제를 적극 검토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임.
 - 안전등급 하위기관(4·2등급 및 5등급)인 1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과제의 조기 이행 후 필요한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조치함.
 - 공기업·준정부기관(9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⁸⁴⁾을 2021년 말까지 받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9개)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⁸⁵⁾을 2021년 말까지 받도록 할 예정임.
 - 공공기관의 작업 환경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기관별로 자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건설현장, 작업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임.
 - 매년 11월 11일을 「공공기관 안전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안전등급제 우수 기관, 개선 권고과제 이행 실적 우수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경제부총리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

84) KOSHA-MS: 최고 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 정책을 반영하여 계획·실행·점검 등 결과를 검토하는 안전보건 체계로 국제표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

85)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출연연구기관의 안전능력을 인증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

- 표창 수상 기관의 안전 혁신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모든 공공기관에게 공유·전파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임.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먼저 「안전관리지침」 및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요령(계약특례)」 등의 개정을 추진함.
 - 공사계약 단계에서는 협력사(시공사·하청업체)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산재율이 높거나 안전능력이 낮은 업체 등에 대한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약특례를 개정하고 11월 말에 이를 시행할 예정임.
 - 공공기관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할 계획임.
 - 입찰참가 단계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하고, 낙찰자 결정단계에서는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점수 폭을 확대할 예정임.
 - 공사단계에서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⁸⁶⁾를 내실화 하고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 공공기관의 작업 현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작업 중지 요건⁸⁷⁾을 마련·시행할 것임.
 - 또한, 협력사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더라도 발주자(공공기관)가 협력사에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침을 12월까지 마련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영세업체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허가 기준 이하의 노후장비의 현장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현장 출입자 점검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공사발주 모든 단계에서, 발주자(공공기관)가 안전 관련 모든 부서에 안전관리와 연계된 내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안전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장기 보직을 위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마련하는 등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임.

86)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제도

87)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임

〈표 II-35〉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5대 제도개선 과제

공사계약 단계 (입찰·낙찰)	⇒	공사 단계 (공사현장)
5 대 제 도 개 선 과 제	① (안전능력 우수 업체 선정) 공사 계약단계에서 안전역 량이 낮은 업체 등의 입찰 제한 강화	② (위험성 평가) 작업 공정별 사전 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대책 수립 ③ (작업중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후 대피 ④ (영세업체 안전역량 강화) 영세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⑤ 발주자(공공기관)의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 (안전관리 성과지표 설정, 안전부서 전문성 강화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8. 26.

2021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1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 일반현황
2. 인력현황
3. 재무현황
4. 손익현황
5. 보수수준
6. 외부 평가결과

III

2021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제3장에서는 202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과 외부평가결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2021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는 350개 공공기관(2021년 1월 기준)과 20개 부설기관이 2021년 4월 말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정기 공시한 경영정보⁸⁸⁾⁸⁹⁾를 기준으로 작성함.
- 또한 2020년도 경영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청렴도 측정결과 등 외부평가결과는 주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함.
-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 및 개별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 일반현황은 관계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공공기관 설립형태,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부설기관 현황,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⁹⁰⁾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⁹¹⁾ 상장 공공기관 현황⁹²⁾ 등을 정리함.
-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은 2021년 4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내용과 알리오시스템의 주요통계 및 기관별 통합공시 정보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외부평가결과는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그리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과 주요 특징을 정리함.

88)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89) 2021년 1월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및 그 부설기관(20개)은 「공운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말까지 2020년 말 기준의 경영정보를 정기공시 하여야 함

90)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혁신도시 홈페이지(Innocity, <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 홈페이지 참고

91)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 참고

92)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20) 참고

-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실시하고 있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주요 결과를 정리함.⁹³⁾
 - 따라서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운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를 포함함.
 -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⁹⁴⁾를 참고하여 주요 특징을 분석함.⁹⁵⁾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중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 정리함.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측정 결과, 전년 대비 특징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⁹⁶⁾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는 「공운법」 제12조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에 공공기관이 공시한 경영정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점검한 결과를 정리함.
 -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통합공시 정보에 대해 정확성 및 충분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⁹⁷⁾를 토대로 항목별 점검결과, 별점현황, 전년 대비 개선 수준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93) 외부평가결과 중 기관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4. 23. 및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6. 25. 참고

94) 매년 1분기 정기공시(매년 4월 말) 시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6.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해 공개되는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95) 주무부처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알리오시스템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공시되지 않은 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96)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중 「청렴조사평가」 부분에 공개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0. 6.,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을 활용하여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자료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3>)

97)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4. 9. 및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4. 9.을 활용하여 작성

1. 일반현황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⁹⁸⁾

- 「공운법」에 따라 2021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을 주무부처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35개 정부 부처가 산하에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2020년과 마찬가지로 35개 부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수(47개)가 가장 많고 인사혁신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은 각 1개로 나타남.
 - 35개 부처 중 23개 부처가 산하에 10개 미만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수 및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과 같음.

<표 Ⅲ-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21. 1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350)	시장형 공기업 (16)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3)	기타 공공기관 (218)
기획재정부	4	0	1	0	1	2
교육부	22	0	0	1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0	0	0	10	37
외교부	3	0	0	0	1	2
통일부	2	0	0	0	0	2
법무부	3	0	0	0	0	3
국방부	3	0	0	0	0	3
행정안전부	3	0	0	0	1	2
문화체육관광부	32	0	1	2	4	25
농림축산식품부	12	0	1	0	5	6
산업통상자원부	40	12	5	1	13	9
보건복지부	27	0	0	1	8	18
환경부	12	0	1	0	4	7
고용노동부	12	0	0	1	4	7
여성가족부	5	0	0	0	3	2

98)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유형별 분포 현황)은 <부록 1> 참고

〈표 III-1〉의 계속

(단위: 개)

구 분	계 (350개)	시장형 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3개)	기타 공공기관 (218개)
국토교통부	28	2	7	0	6	13
해양수산부	17	2	3	0	4	8
중소벤처기업부	11	0	0	2	3	6
국무조정실	25	0	0	0	0	25
방송통신위원회	2	0	1	0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0	0	3
금융위원회	8	0	0	4	1	3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1	1
국가보훈처	3	0	0	0	2	1
인사혁신처	1	0	0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0	0	1	3
관세청	1	0	0	0	0	1
방위사업청	2	0	0	0	0	2
경찰청	1	0	0	0	1	0
소방청	1	0	0	0	1	0
문화재청	1	0	0	0	0	1
산림청	4	0	0	0	3	1
농촌진흥청	1	0	0	0	1	0
특허청	5	0	0	0	1	4
기상청	3	0	0	0	1	2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 산하 공공기관이 30개 이상인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임.

○ 3개 부처 소관의 공공기관 수는 119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34.0%를 차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은 분야 특성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0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37개 기관)만 분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29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해당하며 전체 연구개발목적기관의 39.2%를 차지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2020년과 동일한 40개 기관이며 공공기관 유형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부 부처로 36개 공기업 중 17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중 (주)강원랜드를 제외한 16개 기관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 해당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32개이며 이 중 25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공기업은 1개 기관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이에 해당함.
-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019년부터 별도 분류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공공기관 지정 시에는 14개 부처의 74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되어 2020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함.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73.0%인 54개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9개로, 이 중 22개 기관이 「과학기술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며 나머지 7개 기관은 개별설립근거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임.
 - 국무조정실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5개 기관으로 모두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부처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2>와 같음.

<표 III-2> 주무부처별 연구개발목적기관 분포(2021. 1월 기준)

(단위: 개)

주무부처	기관수	주무부처	기관수
교육부	1	해양수산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	중소벤처기업부	1
국방부	1	국무조정실	25
문화체육관광부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산업통상자원부	2	방위사업청	2
보건복지부	3	특허청	1
환경부	2	기상청	2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분포를 2020년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8개 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 수 변화가 발생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상청 등 8개 부처는 신규 공공기관 지정 및 기존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관 기관수가 달라짐.
- 2020년 대비 2021년 소관 공공기관에 변화가 있던 부처와 전년 대비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표 III-3>과 같음.

〈표 III-3〉 2021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전년 대비 변동내역	
	'20년	'21년	제외(지정 해제)	추가(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47 (+2)	-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40	40 (±1)	(재)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한전MCS(주)
환경부	11	12 (+1)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고용노동부	11	12 (+1)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토교통부	25	28 (+3)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해양수산부	16	17 (+1)	-	국립해양과학관
국무조정실	24	25 (+1)	-	건축공간연구원
기상청	2	3 (+1)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⁹⁹⁾

1)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설립형태¹⁰⁰⁾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¹⁰¹⁾
- 2021년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III-1>과 같음.
 - 350개 공공기관의 83.7%인 293개 기관이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전체의 16.3%인 57개 기관임.
 - 공기업은 개별 설립근거법령 또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은 전체 36개 기관 중 23개임.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 13개 중 12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1개), 한국전력공사(9개), 한국철도공사(1개) 및 한국관광공사(1개)의 자회사에 해당함.¹⁰²⁾
 - 반면 준정부기관은 전체 96개 기관 중 90개 기관(93.8%)이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없으며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6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은 대부분의 기관(180개, 82.6%)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됨.
 -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은 24개 기관이며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은 14개 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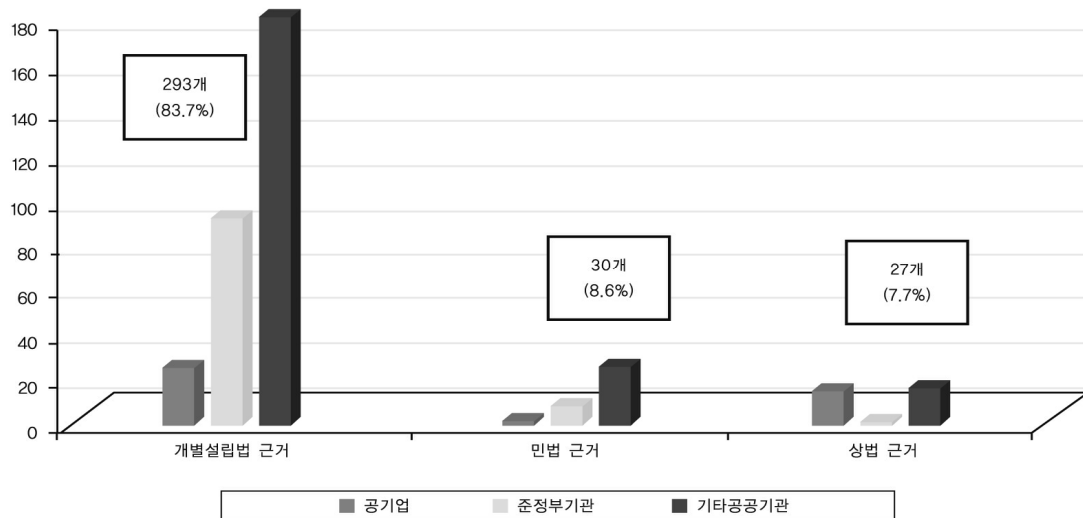
99) 2021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100) 기관별 설립근거는 <부록 2> 참고

101)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없이 상법에만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을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

102) <표 III-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참고

〈그림 III-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1. 10.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기관은 2020년(281개 기관)보다 12개 증가한 293개(83.7%)로 이를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법률상 명문화된 기관 설립근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통상적으로 특수법인으로 일컬으며,¹⁰³⁾ 법령상 기관 설립근거는 특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정기관의 설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에 근거하는 경우로 구분됨.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이 전자에 해당함.
 -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조항을 둔 기관으로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1조에 각각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대표적임.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식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5개 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기관임.

103) 개별 법률에 설립근거는 있으나 법조문상 기관명이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는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종전 「민법」상 재단법인이었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식진흥원 등 4개 기관은 다른 법률에 기관의 설립근거 조항¹⁰⁴⁾을 마련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함.
- 한국벤처투자는 당초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었으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조항(제66조의1)을 신설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기관임.
- 2021년에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건축공간연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관계법령 개정¹⁰⁵⁾을 통해 법령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종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기관에서 독립법인으로 신설 출범한 기관임.
-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30개 기관(8.6%, <표 Ⅲ-4>)임.
 -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함.
 - 「민법」상 사단법인인 공공기관 수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1개 기관이나 「민법」상 재단법인은 2020년 대비 2개 기관으로 감소(31개 → 29개)함.
 - 2021년 공공기관 지정 시,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고 대신 2021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¹⁰⁶⁾이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여 전년 대비 2개 기관인 증가하였으나 종전 「민법」상 재단법인이었던 4개 기관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개 기관이 감소함.¹⁰⁷⁾

104)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의11,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발명진흥법」 제55조의2, 한식진흥원은 「한식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함

105) 「정부출연기관법」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및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106)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10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식진흥원

〈표 III-4〉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30개 기관)

구 분	기관명	
재단 법인 (29개)	준정부기관 (6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타 공공기관 (23개)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단 법인 (1개)	기타 공공기관 (1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 밑줄 친 기관은 2021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1. 4. 30.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개별 설립근거법령이나 「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2020년과 동일한 27개 기관(7.7%, <표 III-5>)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간 부문의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은 13개 공기업과 14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준정부기관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없음.
 - 88관광개발(주)¹⁰⁸을 제외한 26개 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로 모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2020년 공공기관 중 (주)한국건설관리공사가 2021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고, 한국벤처투자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년 대비 2개 기관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중 2개 기관¹⁰⁹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해당하여 전년 대비 기관수에 변동이 없음.

108) 88관광개발(주)는 국가보훈처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출자기관임

109)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전MCS(주)

〈표 III-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7개 기관)

구 분	기관명
공기업 (13개)	(주)강원랜드,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기타공공기관 (14개)	(주)공영홈쇼핑,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MSC(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88관광개발(주)

주: 1.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 88관광개발(주)는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님

2. 밑줄 친 기관은 2021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사내용(2021. 4. 30.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2)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른 설립형태 구분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받아 설립하는 기관과 이 외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본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민간 등이 납입한 자금으로 구성함.

- 일부 기관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근거하여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주식 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함.

○ 자본금 출자가 아닌 다른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민간 등의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구성하여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¹¹⁰⁾가 있음.

□ 외부기관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표 III-6>)은 전체 공공기관 중 65개 기관임.

○ 외부기관 출자를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2020년 64개에서 2021년 65개로 1개 기관 증가함.

- 2020년 공공기관 중 (주)한국건설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고 2021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와 한전MCS(주)가 공공기관 출자를

110)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 설립 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

통해 설립된 기관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33개, 준정부기관은 8개, 기타공공기관은 24개 기관임.
 - 전체 공기업 36개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33개 공기업은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임.
 - 출자방식을 통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 2020년 7개 기관에서 2021년 8개 기관으로 증가한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 기타공공기관 중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24개 기관으로 이는 지정 해제 및 유형 변경으로 2개 기관¹¹¹⁾이 감소하였으나 신규 지정 공공기관 중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이 2개¹¹²⁾ 존재하여 기관수에 변동이 없음.
- 65개 기관 중 47개 기관이 설립근거법령 또는 기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있음.¹¹³⁾
 - 기관은 설립근거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만큼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출자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됨.
- 주식을 발행하는 47개 기관 중 상장기관은 8개 기관임.
 -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이상 공기업), 중소기업은행(기타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111) (지정 해제)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유형 변경) 서민금융진흥원

112)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전MCS(주)

113)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18개 공공기관의 출자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 또는 출자증서를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음

〈표 Ⅲ-6〉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65개 기관)

구 분	주식 발행 기관(47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기관(18개)
공기업 (33개)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22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준정부기관 (8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3개)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
기타공공기관 (24개)	88관광개발(주), (주)공영홈쇼핑, 새만금개발공사,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한전MCS(주) (22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개)

주: 1. 상장 공공기관(8개)은 이탤릭으로 표시

2. 밑줄 친 기관은 2021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4.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0. 12. 31.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출자 주체는 정부,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
자치단체와 이 외 민간 등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표 Ⅲ-7>).

○ 정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은 14개 기관임.

-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준정부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기타공공기관 중 88관광개발(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4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전체 지분 중 공공기관 보유 지분이 30% 이상인 기관은 36개로 이 중 29개 기관이 공공기관 자회사에 해당함.
 -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보유지분이 30~50% 미만이나 지분 보유 공공기관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 자회사로 분류함.
 - 공공기관 보유 지분이 30% 이상인 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닌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 기관임.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30% 미만인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2개 기관임.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을 통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및 보험사 등 민간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임.
 - 한국예탁결제원은 2015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임.

〈표 III-7〉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 현황(2020. 12월말 기준)

(단위: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주)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	36.27	10.18	53.55
부산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87.3	12.7	-	-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	-	-	-
인천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80.7	19.3	-	-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26.15	20.47	7.93	45.45
한국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	-	-	-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장형 공기업	99.86	0.14	-	-

〈표 III-7〉의 계속

(단위: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한국남동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남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동서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서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석유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8.2	41.52	-	40.28
한국중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장형 공기업	34.55	30.08	10.36	25.01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100	-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시장형 공기업	-	63.77	-	36.23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	-	-	-
여수광양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71.2	28.8	-	-
울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7.3	12.7	-	-
주식회사 에스알	준시장형 공기업	-	100	-	-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8.25	-	-	31.75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8.06	11.93	-	0.0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	-	-	-
한국부동산원	준시장형 공기업	49.4	30.6	-	20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93.49	6.43	0.08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준시장형 공기업	-	67.83	-	32.17
한국조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	-	-	-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7.7	12.3	-	-
한전KDN	준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	58.93	-	41.07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0.93	30.78	-	8.29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2.6	-	-	37.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	-	-	-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12.21	-	87.79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5.2	44.46	-	0.34

〈표 III-7〉의 계속

(단위: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	-	-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	-	-	-
한국전력거래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100	-	-
(주)공영홈쇼핑	기타공공기관	-	50	-	50
(주)위터웨이플러스	기타공공기관	-	100	-	-
88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100	-	-	-
새만금개발공사	기타공공기관	100	-	-	-
주택관리공단(주)	기타공공기관	-	100	-	-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공공기관	-	100	-	-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59.21	9.11	-	31.68
코레일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	60.8	-	39.2
코레일네트웍스(주)	기타공공기관	-	97.18	-	2.82
코레일로지스(주)	기타공공기관	-	97.27	-	2.73
코레일유통(주)	기타공공기관	-	100	-	-
코레일테크(주)	기타공공기관	-	97.98	-	2.02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기타공공기관	-	100	-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	100	-	-
한국벤처투자	기타공공기관	-	100	-	-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100	-	-	-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67.99	22.66	-	9.35
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	-	-	100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타공공기관	-	100	-	-
한국투자공사	기타공공기관	100	-	-	-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53.1	44.7	-	2.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기타공공기관	39.86	50.57	-	9.57
한전MCS(주)	기타공공기관	-	100	-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	100	-	-

주: 출자 주체는 중앙정부(정부), 공공기관(「공공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기타(민간, 우리스주, 외국인투자자 등 포함)로 구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4.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0. 12. 3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을 설립근거법령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표 III-8>),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27개)과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38개)으로 구분됨.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은 8개 기관으로 모두 개별 설립근거법령이 있는 기관임.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기업(33개) 중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20개 기관임.
 - 「상법」상 주식회사¹¹⁴⁾인 공기업은 13개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자회사에 해당함.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타공공기관(24개) 중 10개 기관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상법」상 주식회사인 기타공공기관은 14개 기관으로 88관광개발(주),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를 제외한 12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자회사에 해당함.

114)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주식을 발행하는 기관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분류함

〈표 III-8〉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법령 기준)

구 분	공기업 (33개)	준정부기관 (8개)	기타공공기관 (24개)
개별 설립 법령 근거 (38개)	(주식 발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개)	(주식 발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3개)	(주식 발행) 새만금개발공사,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개)
상법 근거 (27개)	(주식 발행)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13개)	-	(주식 발행) (주)공영홈쇼핑, (주)위터웨이플러스, 88관광개발(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14개)

주: 밑줄 친 기관은 2021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4.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사내용(2019. 4. 30. 기준) 및 기관 정관을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공공기관 자회사란 「공운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중 모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회사인 기관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였거나, 모기관의 소유지분이 50% 미만이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지배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의미함.
- 2021년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2020년보다 2개 기관이 증가한 29개임. (<표 III-9>).
 - 2021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전MCS(주)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각각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2개 기관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29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인 15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 공기업 유형인 자회사는 13개 기관으로 이 중 9개 기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며 나머지 4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자회사에 해당함.
 - 준정부기관 유형인 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는 한국전력거래소임.
- 공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공공기관은 2021년에 한국도로공사가 추가되어 12개 기관임.
 - 12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공기업 유형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 유형이 4개 기관이며 기타공공기관 유형은 2개 기관임.
 - 공기업에 해당하는 6개 자회사는 에너지 및 SOC 분야의 공공기관임.¹¹⁵⁾
 - 공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은 공공기관인 자회사를 1개씩 보유하고 있음.

115) 공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에너지 분야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2개 기관이며, SOC 분야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임

〈표 III-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9개 기관)

모기업		공공기관 자회사인 기관(29개)	
기관명	유형	기관수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2개	▪ (시장형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거래소 ▪ (기타공공기관)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1개	▪ (준시장형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개	▪ (준시장형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 (기타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주)위터웨이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주)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광해관리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 (시장형 공기업) (주)강원랜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 (기타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개	▪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공공기관	1개	▪ (기타공공기관) (주)공영홈쇼핑

주: 1. 공공기관 자회사 중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국한하여 자료 작성

2. 주식회사 에스알과 (주)강원랜드는 모회사가 보유한 지분은 각각 41%, 36.27%로 50% 미만에 해당하나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자회사로 분류함

3. 밑줄 친 기관은 2021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6.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0. 12. 3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라.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 2021년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이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20개 부설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기준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¹¹⁶⁾을 요약하면, <표 III-10>과 같음.

<표 III-10>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20개 기관)

부설기관명	주무부처	모기관인 공공기관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녹색기술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고등과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나노융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식품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요양원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1. 4. 30.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116)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정리

□ 2020년까지는 19개 공공기관의 23개 부설기관에 대한 경영정보가 공시되었으나 2020년 하반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기관이었던 3개 기관이 독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 2021년에는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부설기관 수가 전년 대비 3개 기관이 감소함.

○ 종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재료연구소 등 3개 부설기관이 2020년 11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하여 부설기관에서 제외됨.

-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이었던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독립 하여 국무조종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신설 출범하였으며 2021년 공공 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이었던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 원의 부설기관이었던 재료연구소가 독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신설 출범하였으며 202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종전 부설기관이었던 3개 기관이 독립법인화 됨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경 영정보를 공시하는 부설기관을 보유한 공공기관 수 또한 2020년 19개에서 2021년 16개로 3개 기관 감소함.

○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부설기관 정보를 공시하는 16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 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 16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각 1개의 부설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한국과학기술원은 산하에 3개의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산하에 각 2개의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부설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알리오 시스템에 부설기관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 부설기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연구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임.

○ 부설기관을 설치한 16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른 연구기관에 해당함.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개 기관은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임.
-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5개 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함.¹¹⁷⁾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 3개 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함.
- 나머지 3개 기관은 연구기관적 성격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병원, 한국특허정보원이 이에 해당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고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 분야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해당함.

□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본원 정관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¹¹⁸⁾

- 20개 부설기관 중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은 8개 기관임.
- 나노종합기술원·한국과학영재학교(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서울요양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 한국뇌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 부설기관(분원)의 설치에 대한 사항¹¹⁹⁾은 상급기관인 본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통상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관에서는 본원의 소재지 관련 조항이나 부설기관 운영에 대한 조항을 통해 부설기관(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공공기관의 부설기관(분원)은 독립된 법인 형태는 아니나 본원(또는 상급기관)과

117)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4개 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도 해당

118) 부설기관의 설립근거는 <부록 2> 참고

119) 부설기관 부지·건물의 확보, 인력·예산운영 등 사업추진계획 등

분리되어 별도의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및 인력·조직(인사) 관리상 독립성을 보장받음.

- 일반적으로 부설기관은 본원 정관과 별도로 부설기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예컨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제27조의3 제2항에서 분당병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설기관의 장과 임원은 본원 정관 및 직제 규정상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20개 공공기관 부설기관 중 부설기관의 장 및 임원이 본원의 임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특허정보원(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1개 기관뿐임.¹²⁰⁾

마.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¹²¹⁾

1) 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 2021년 4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표 III-11>)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117개 공공기관(33.4%)이 소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율을 보임.
- 공공기관 분포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33.4%), 대전(10.0%), 경기(8.3%), 세종(6.9%), 부산(6.0%) 순이며 5개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중 64.6%를 차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17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공기업은 광주, 세종, 충북,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공기업 유형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¹²²⁾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의 비중(7개 기관¹²³⁾, 19.4%)이 낮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다수의 기관¹²⁴⁾이

120)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5조(임원) 제1항 제3호에서 부설기관 소속 대표 3인(부설기관장 포함)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임원이 됨을 규정하고 있음

121)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와 2021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일반현황 자료의 소재지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122) 다른 두 유형의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 비중은 준정부기관 34.4%(96개 중 33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48.6%(218개 중 106개)임

12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기 때문임.

- 준정부기관 중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은 33개 기관으로 전체 준정부기관의 34.4%를 차지함.
- 기타공공기관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에 소재한 기관이 106개로 전체 기타공공기관의 48.6%를 차지함.

〈표 Ⅲ-11〉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21. 9월 기준)

(단위: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350개)	117 (33.4)	21 (6.0)	15 (4.3)	7 (2.0)	4 (1.1)	35 (10.0)	10 (2.9)	24 (6.9)	29 (8.3)	13 (3.7)	13 (3.7)	7 (2.0)	10 (2.9)	16 (4.6)	10 (2.9)	14 (4.0)	5 (1.4)
공기업 (36개)	5 (1.4)	3 (0.9)	2 (0.6)	2 (0.6)	0 (0.0)	4 (1.1)	3 (0.9)	0 (0.0)	2 (0.6)	3 (0.9)	0 (0.0)	2 (0.6)	0 (0.0)	4 (1.1)	3 (0.9)	2 (0.6)	1 (0.3)
준정부기관 (96개)	26 (7.4)	6 (1.7)	6 (1.7)	1 (0.3)	1 (0.3)	6 (1.7)	4 (1.1)	5 (1.4)	7 (2.0)	7 (2.0)	7 (2.0)	2 (0.6)	4 (1.1)	8 (2.3)	2 (0.6)	3 (0.9)	1 (0.3)
기타공공기관 (218개)	86 (24.6)	12 (3.4)	7 (2.0)	4 (1.1)	3 (0.9)	25 (7.1)	3 (0.9)	19 (5.4)	20 (5.7)	3 (0.9)	6 (1.7)	3 (0.9)	6 (1.7)	4 (1.1)	5 (1.4)	9 (2.6)	3 (0.9)

주: 1. () 안은 각 지역별 공공기관 비중

2. 공공기관별 상세 소재지(본사 기준)는 <부록 2>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사내용(2021. 4. 30.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1월 신규로 지정된 12개 공공기관은 서울, 경기, 전남, 인천, 대전, 세종, 경남, 경북, 전남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재 기관은 <표 Ⅲ-12>와 같음.
- 서울 지역에 소재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 등 3개 기관은 2019~2020년 사이 신설 출범한 기관임.
- 경기 지역에 소재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또한 2019~2020년 사이 신설 출범한 기관임.
-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은 1978년 설립된 기관으로 인천 지역에 소재함.
- 종전 부설기관에서 2020년 11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부설기관 당시 소재지인 대전 지역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음.
- 종전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이었던 건축공간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2015년 세종 지역으로 이전한 이래 현재까지 소재지 변동은 없음.

서울에 소재하며 한국마사회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지역에 소재함.

124) 공기업 중 지방 이전한 기관은 18개 기관임

-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에서 2020년 11월 독립법인으로 신설 출범한 한국재료 연구원은 부설기관 당시 소재지인 경남 지역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음.
- 국립해양과학관은 2020년 5월 신규 출범한 기관으로 경북 지역에 소재함.
- 2020년 8월 신설 출범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2019년 3월 설립된 한전MCS(주)¹²⁵⁾는 전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표 III-12〉 2021년도 신규 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서 울	3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경 기	2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인 천	1개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대전	1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세종	1개	건축공간연구원
경남	1개	한국재료연구원
경북	1개	국립해양과학관
전남	2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전MCS(주)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1. 4. 30.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함.
 - 2003년 정부의 기본구상 발표를 시작으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지정·발표하였으며, 2007년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개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함.¹²⁶⁾
 -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은 정부부처(소속조직 포함)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153개 기관¹²⁷⁾이며 2020년 6월 기준으로 모든 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함.¹²⁸⁾

125)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와 동일 지역에서 신설 출범함

126) 국토교통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보도자료, 2019. 12. 25.

127) 이전대상 기관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108개 기관이며 이 중 (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21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128)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submain.jsp?sidx=6&style=1>)

-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시로 이전할 지역별 대상기관을 선정함.
- 부산 혁신도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분야, 금융산업 분야, 영화진흥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대구 혁신도시는 산업진흥 분야, 교육·학술진흥 분야, 가스산업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력산업 유관 공공기관과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울산 혁신도시로는 에너지산업 분야, 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등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기로 함.
 - 강원 혁신도시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광업진흥 및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건강생명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기로 함.
 - 충북 혁신도시는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과 인력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전북 혁신도시는 식품연구 관련 공공기관과 국민연금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경북 혁신도시로는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기로 함.
 - 경남 혁신도시로는 주택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진흥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국방·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기로 함.
 - 제주 혁신도시는 국제교류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세종특별시로는 정부부처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지역별 「공운법」상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표 III-13>과 같으며 108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2019년 12월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됨.
- 이로써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2003년 기본구상 발표 이후 16년 만에 모두 완료됨.

〈표 III-13〉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단위: 개)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수	108	18	47	43
부산	11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구	9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광주/전남	13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울산	7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원	10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충북	10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 III-13〉의 계속

(단위: 개)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충남	2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	-
전북	6	-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경북	8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	10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¹²⁹⁾ 국토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제주	3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세종	19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 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주: 밑줄 친 (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21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임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submain.jsp?sidx=6&stype=1>)

129) 2016년 7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설 출범함

3)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이전지역의 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고 있음.
- 여기서 지역인재는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의미함.
 - 이전 공공기관은 기관별 채용규모, 이전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며 정부는 매년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함.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및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표 III-14〉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단위: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채용비율	18.0	21.0	24.0	27.0	30.0

자료: 「혁신도시법 시행령」 <별표1>의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정부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혁신도시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던 대전·충남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에 후속하여 2020년 5월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 개정을 통해 신규 의무채용 대상범위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소재한 기관 등으로 규정함.
 -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함.

- 신규 대상기관에 적용되는 의무채용 비율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음.

〈표 III-15〉 이전 공공기관을 제외한 의무채용 대상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단위: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후
채용비율	18.0	21.0	24.0	27.0	30.0

자료: 「혁신도시법 시행령」 <별표1>의 '2.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에 후속하여 2020년 5월 27일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21개임.
- 신규 대상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전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17개로 가장 많으며 이 외 부산, 세종, 충북 및 충남 지역에 소재한 기관은 각 1개 기관임.

〈표 III-16〉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이전시기 또는 변경설립 시기	주무부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	국방과학연구소	서울 → 대전	'83. 1월	방사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 → 대전	'90. 7월	과기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 → 대전	'74. 10월	환경부
	한국조폐공사	서울 → 대전	'73. 4월	기재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 → 대전	'04. 2월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 → 대전	'89. 7월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 → 대전	'85. 12월	과기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 → 대전	'76. 5월	과기부
	한국화학연구원	서울 → 대전	'78. 4월	과기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 → 대전	'10. 11월	산업부
	한국특허정보원	서울 → 대전	'14. 4월	특허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 → 대전	'13. 3월	중기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 → 충남	'97. 5월	과기부
	한국향로표지기술원	서울 → 세종	'18. 2월	해수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서울 → 대전	'10. 2월	산림청

〈표 III-16〉의 계속

구분	기관명	소재지	이전시기 또는 변경설립 시기	주무부처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 (6개)	한국철도공사	대전	'05. 1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대전	'04. 1월	국토부
	코레일테크(주)	대전	'04. 12월	국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01. 1월	과기부
	기술보증기금	부산	'89. 4월	중기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북	'17. 2월	식약처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에서도 지역인재 뽑는다」, 보도자료, 2020. 5. 27.

-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발표한 2020년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¹³⁰⁾을 살펴보면, 108개¹³¹⁾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¹³²⁾은 28.6%로 2020년 법정 채용비율인 24%를 초과하여 달성함.
- 2020년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은 4,129명이었으며, 이 중 1,181명을 이전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함.
 -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의무채용 비율이 목표치인 24%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도시 중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은 세종(46.2%, 13명 중 6명)과 충북(40.1%, 62명 중 25명)으로 나타남.
 - 세종은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연구기관이 대부분이나, 2020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4명)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9명)가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해당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이행함.
 - 이 외에 지역인재 채용률은 대구(34.5%, 358명 중 124명), 충남(34.2%, 158명 중 54명), 부산(33.9%, 300명 중 10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별 실적¹³³⁾을 살펴보면, 전체 108개 기관 중 의무채용 대상인 61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108개 기관 중 나머지 47개 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없음.

130) 국토교통부, 「2020년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 2021. 3. 5.

131) 2020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21개 추가기관과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

132)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역본부별 채용 등 의무채용 예외규정에 따른 인원을 제외한 의무채용 대상 중 지역인재 채용인원으로 산출함

133) <부록3> 참고

〈표 III-17〉 2020년도 이전 지역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단위: 개, 명, %)

이전 지역	기관수	2019			2020		
		채용목표제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인원 (B)	지역인재 채용률 (B/A)	채용목표제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인원 (B)	지역인재 채용률 (B/A)
합계	108	5,886	1,527	25.9	4,129	1181	28.6
부산	11	431	154	35.7	300	102	33.9
대구	9	426	122	28.7	358	124	34.5
광주·전남	13	1,611	396	24.6	1280	346	27.0
울산	7	371	101	27.2	120	35	29.2
강원	10	650	166	25.5	330	87	26.4
충북	10	212	58	27.4	62	25	40.1
전북	6	400	102	25.5	346	98	28.3
경북	8	711	184	25.8	616	170	27.6
경남	10	822	185	22.5	518	126	24.3
제주	3	23	5	21.7	28	9	32.1
충남	2	230	55	23.9	158	54	34.2
세종	19	-	-	-	13	6	46.2

주: 1.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고등·대학교인 신규채용 인원임

2. 2021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주)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지역)는 이전대상 공공기관(108개)에 포함되며,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 지역 소재)과 2020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기관(21개)은 제외

3. 기관별 지역인재 의무 채용 실적은 <부록3>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20년도 이전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 2021. 3. 5.를 참고하여 작성

4)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별 지역발전계획 주요내용¹³⁴⁾

□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 제29조의3조 및 제29조의5,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함.

134) 국토교통부, 「2020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2021. 7. 7.

- 「혁신도시법」에 따른 기관별 지역발전계획은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및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표 III-18>

〈표 III-18〉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주요 수립 항목

구분	세부 내용
지역산업 육성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학 사업, 직무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 양성에 대한 사업
지역주민 지원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 기관 시설 개방 등에 대한 사업
유관기관 협력	지자체-기업-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협의회 운영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사업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2021. 7. 7.

□ 2021년 5월 국토교통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2021년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함.¹³⁵⁾

-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전체 이전 대상기관(152개)은 개별 혁신도시(10개 지역)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약 3조 6,128억 원 규모의 사업(총 3,353건)을 시행할 계획임.
- 특히 지역산업 육성(43.1%)과 지역경제 기여(36.6%, 지역물품 구매)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되어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21년 지역발전계획 기준으로 이전 대상기관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107개 기관¹³⁶⁾이며 각 지역별 발전계획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I-19>와 같음.

135) 국토교통부, 「국토부·이전기관 손잡고 경제활성화·지역인재 힘 모은다」, 보도자료, 2021. 5. 4.

136) (주)한국건설관리공사가 2020년까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 대상이었으나 2021년 1월 「공운법」상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어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발전계획 수립대상 기관수가 2020년 108개에서 2021년 107개로 감소

- 107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발전을 위해 2021년 중 약 3조 4,330억 원 규모의 사업(총 2,841건)을 추진할 예정임.

〈표 III-19〉 2021년 지역별 발전계획

(단위: 개, 건, 백만 원)

구분	기관 수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기타사업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합계	107	408	1,536,378	426	56,895	820	44,385	395	60,053	118	554,461
부산	11	50	15,132	58	4,426	87	6,016	21	2,649	3	5,920
대구	9	49	122,694	37	27,998	97	8,063	39	2,573	3	250
광주·전남	13	69	206,855	57	6,098	83	6,621	60	14,086	17	289,859
울산	7	28	94,371	20	676	69	2,106	21	5,775	11	206,043
강원	10	34	143,285	36	976	130	2,307	45	1,604	18	2,787
충북	10	23	35,621	32	1,287	69	405	41	704	17	39,263
전북	6	47	71,641	36	996	45	472	40	596	5	4,800
경북	7	26	21,249	24	6,763	45	6,469	21	5,512	16	551
경남	10	50	808,724	50	4,311	110	5,451	45	17,830	6	2,694
제주	3	5	1,039	6	30	15	7	15	919	9	709
충남	2	20	11,390	14	2,653	14	6,229	19	6,124	10	1,505
세종	19	7	4,377	56	681	56	239	28	1,681	3	80

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2021. 7. 7.를 참고하여 작성

□ 이전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¹³⁷⁾를 중심으로 2021년 중 추진할 지역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산 혁신도시는 금융·해양 분야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 기여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구 동남통계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해양·영상·게임 등 부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한국남부발전(주)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연구 장비 지원을 통해 클린에너지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임.

137) 12개 이전 지역 중 충남과 세종 지역 제외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인 첨단 해양산업 오픈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해양 신산업 발굴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 대구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한국장학재단은 지역대학생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형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유희공간을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하여 대구지역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력 분야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밸리 기업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R&D) 지원, 판로개척 지원, 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에너지밸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 한국KPS(주)는 중소·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건축설비 검교정 지원, 품질교육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 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구내식당 계약 시 로컬푸드 사용 비율 의무화, 전남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이용 등 로컬푸드 구매·공급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 울산 혁신도시는 에너지 분야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계획을 수립함.
 - 한국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 플랫폼을 재활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등 친환경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한국동서발전(주)는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사랑의 햇빛에너지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근로복지공단은 규모 300명상, 18개 진료과목 및 인력 585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울산 지역에 건립할 계획을 수립함.
- 강원 혁신도시는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의료 기기 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관 운영 및 인력양성 등 실버의료기기 메카를 조성할 계획임.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도내 광산업체 대상으로 국내자원산업 융자지원 및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임.
-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에 생태 체험·교육 인프라 조성하여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고, 치악산의 유희시설을 재생하여 체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 충북 혁신도시는 교육 분야 공공기관이 다수 이전해 있는 지역으로 지역 교육 수요 충족에 기여하고자 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및 언택트 교육특화, 5G 실감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대학교 등 6개 지역대학과 합동으로 수소에너지 및 안전실무 특론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오픈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임.
 - 한국소비자원은 충북지역 내 기업의 동반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코칭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전북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을 전개할 계획임.
 - 국민연금공단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금융 빅데이터 수집·가공, 금융 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금융산업 데이터 기반을 통한 금융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 규명이 가능한 전기재해분석센터(ESS 실험동)를 신축할 계획임.
 -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지역 식품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상담, 우수 중소기업 패밀리기업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상시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경북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
 - 한국도로공사는 물류기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공간을 구축 및 제공하고, 스마트 물류 센터를 건립하여 김천혁신도시를 남부권 물류중심 지이자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임.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기술공개 및 기술이전, 산학연 통합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계획임.

- 경남 혁신도시는 지역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업 지원 공간 제공을 통해 창업과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자 이전공공기관 협업형 기업 지원 공간(가칭 스테이션-K)을 건립할 계획임.
 -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역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진 안전 기술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기획 연구를 추진하여 UAM 분야 신규 진입과 항공 시험인증 경쟁력을 강화해 갈 계획임.
- 제주 혁신도시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양 사업을 전개할 예정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서귀포 시민대학을 수탁 운영하며 인문학, 건강관리 등의 교양 강좌를 운영할 계획임.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도서관, 전시실을 운영하여 미술품 전시, 홍보 공간 운영, 영화상영 등 복합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바.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¹³⁸⁾

1) 공공기관 관리 기금 개요

- 정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국한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동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기금이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을 의미함.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음.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 계정성 기금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¹³⁹⁾

138)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 참고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거나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 등이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기도 함.
- 정부가 직접 설치한 기금 중 일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등 정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도 함.
-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고 동법 제102조 제6항¹⁴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탁하고 있음.

□ 2021년 9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동법 <별표2>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은 총 67개로 <부록 4>와 같음.

- 2020년 5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¹⁴¹⁾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이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변경됨.¹⁴²⁾
- 67개 기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6개, 금융성 기금이 8개, 사업성 기금이 48개, 계정성 기금이 5개임.
- 67개 기금의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정부가 소속 조직이나 소관 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기금은 23개로 67개 기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은 총 35개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 관리하는 기금은 19개임.
 -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¹⁴³⁾으로, 농협중앙회가 기금의 주체임.
 -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¹⁴⁴⁾이며, 위탁관리기관은 한국은행, 농협경제지주¹⁴⁵⁾,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손해보험협회¹⁴⁶⁾ 등 4개 기관이 있음.

139) 기획재정부,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1. 2., p. 299

140)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6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41) 종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한 법률임

142) 한국재정정보원, 『2021 회계기금 운용구조』, 2021. 4. 21., p. 37 참고

14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에 근거

14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이상 한국은행 위탁관리),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기금, 축산발전기금(이상 농협경제지주 위탁관리), 수산발전기금(수협중앙회 위탁관리),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손해보험협회 위탁관리)

145)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기관임

- 67개 기금 중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운용하거나 정부가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금은 총 35개(<표 III-20>)로 전체 기금(67개) 중 52.2%를 차지함.¹⁴⁷⁾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 중 사회보험성 기금은 3개, 금융성 기금은 6개, 사업성 기금은 26개임.¹⁴⁸⁾
 - 금융성 기금(6개)은 모두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음.
 - 관리방식에 따라 구분해 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 관리하는 기금은 19개¹⁴⁹⁾임.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은 16개 정부 부처 소관으로 부처별로는 1~5개 이내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표 III-20>).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기금 수가 5개로 정부 부처 중 설치 기금 수가 가장 많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금을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이 중 13개 기관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함.
 - 이 외 공기업이 2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8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이 7개 기관임.
 -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6개 기관은 관리 기금이 각각 2개이고 나머지 24개 기관¹⁵⁰⁾은 각 1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146)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에 근거하여 손해보험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와 손해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설립된 민간기관임

147)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기금 현황 및 기금별 개요는 <부록 5>과 <부록 6> 참고

148)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 중 계정성 기금은 없음

149)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 중이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각각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150) 원자력기금 중 연구개발계정과 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음. 원자력기금 중 연구개발계정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 관리하고, 안전규제계정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 관리함

〈표 Ⅲ-20〉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관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기금	위탁관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관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관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무역보험기금	직접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제교류기금	직접관리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타공공기관
	국제질병퇴치기금	위탁관리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관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남북협력기금	위탁관리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기타공공기관
	농지관리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표 III-20〉의 계속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사업성 기금 (26개)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기타공공기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통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학진흥기금	직접관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위탁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언론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영화발전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기타공공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타공공기관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택도시기금	위탁관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되며 이 중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Ⅲ-2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21년 기준)

(단위: 개)

주무부처	소관 기금	
	개수	기금명
문화체육관광부	5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산업통상자원부	4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관리), 정보통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기획재정부	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3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금융위원회	3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교육부	2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외교부	2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고용노동부	1	근로복지진흥기금
국토교통부	1	주택도시기금
보건복지부	1	국민연금기금
통일부	1	남북협력기금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발전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기금
16개 부처	35개 기금	

주: 원자력기금은 2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16개 부처의 소관 기금 수는 35개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를 참고하여 작성

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표 III-22>와 같음.

<표 III-2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9 (실적)	'20 (실적)	'21 (계획)	'19말 (누계)	'20말 (누계)	'21계획 (당년)	'21계획 (누계)
2021년도 기금 전체(67개 기금)				6,335,903	8,154,198	7,736,661	18,185,312	19,993,579	1,392,051	21,385,630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5개 기금)				3,115,345	3,732,806	3,278,455	10,369,287	11,040,102	482,230	11,522,332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209,621	227,450	240,614	100,231	89,666	3,428	93,094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1,454,176	1,640,734	1,337,688	6,063,088	6,493,363	397,284	6,890,64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93,280	90,529	130,135	207,045	232,046	12,879	244,925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1,757,077	1,958,713	1,708,437	6,370,364	6,815,075	413,591	7,228,666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28,510	33,401	29,106	16,751	21,504	748	22,252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30,662	38,448	46,146	19,696	24,534	5,768	30,302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6,488	7,129	6,464	8,027	8,345	371	8,716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77,544	103,620	95,862	53,377	81,922	△7,176	74,746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26,436	28,896	30,529	-	-	-	-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56,582	62,986	44,957	100,141	102,131	6,985	109,116
	금융성 기금 소계			226,222	274,480	253,064	197,992	238,436	6,696	245,132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1,818	2,665	3,068	396	465	161	626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29,708	27,183	26,838	25,012	26,096	2,195	28,291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19,772	16,081	16,664	9,386	7,402	△2,782	4,620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1,503	1,278	1,697	1,912	1,594	△229	1,365

〈표 Ⅲ-22〉의 계속

(단위: 억 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9 (실적)	'20 (실적)	'21 (계획)	'19말 (누계)	'20말 (누계)	'21계획 (당년)	'21계획 (누계)
사업성 기금 (26개)	국제질병퇴치기금	위탁	한국국제 협력단	868	572	651	460	86	137	223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 공단	3,411	4,481	5,104	4,013	5,043	△16	5,027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4,008	7,941	16,756	29,741	29,793	1,959	31,752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23,390	22,743	26,051	38,407	36,848	2,230	39,078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4,136	1,193	5,279	617	687	△16	671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35,017	31,845	28,507	90,300	93,639	4,907	98,546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12,781	11,427	13,668	62,085	67,510	10,895	78,405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4,321	4,461	5,239	1,604	1,672	28	1,700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48,480	56,533	64,812	73,130	79,103	6,079	85,182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2,429	13,109	14,418	4,354	1,573	637	2,210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 진흥재단	3,983	4,034	4,703	15,829	16,048	1,279	17,327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2,033	2,377	2,652	756	480	△18	462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33,533	99,516	56,218	3,456	4,459	△3,456	1,003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 진흥재단	291	328	340	78	118	42	160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 위원회	2,637	2,272	3,052	3,472	2,433	△547	1,886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4,342	4,528	4,911	1,699	1,633	△75	1,558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6,647	7,472	5,512	13,081	13,176	△668	12,508

〈표 III-22〉의 계속

(단위: 억 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9 (실적)	'20 (실적)	'21 (계획)	'19말 (누계)	'20말 (누계)	'21계획 (당년)	'21계획 (누계)
사업성 기금 (26개)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31,536	44,775	63,940	55,649	54,986	335	55,321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2,731	14,735	16,185	4,890	2,213	831	3,044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 보증공사	745,935	1,003,031	824,862	3,163,386	3,308,293	16,173	3,324,466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86,634	114,929	105,728	197,188	231,213	21,867	253,080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 진흥재단	102	104	99	30	28	△5	23
	사업성 기금 소계			1,132,046	1,499,613	1,316,954	3,800,931	3,986,591	61,943	4,048,534

주: 1. 기금운용은 기금수입 중 수납순액을 의미

2. 기금조성은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순조성액을 의미

3.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최근 3년간 운용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2>와 같음.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금 전체(67개 기금) 규모와 비슷한 추이를 보임.

- 전체 기금은 2020년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도 2020년까지 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함.

○ 기금 유형별 운용 규모 추이는 유형별로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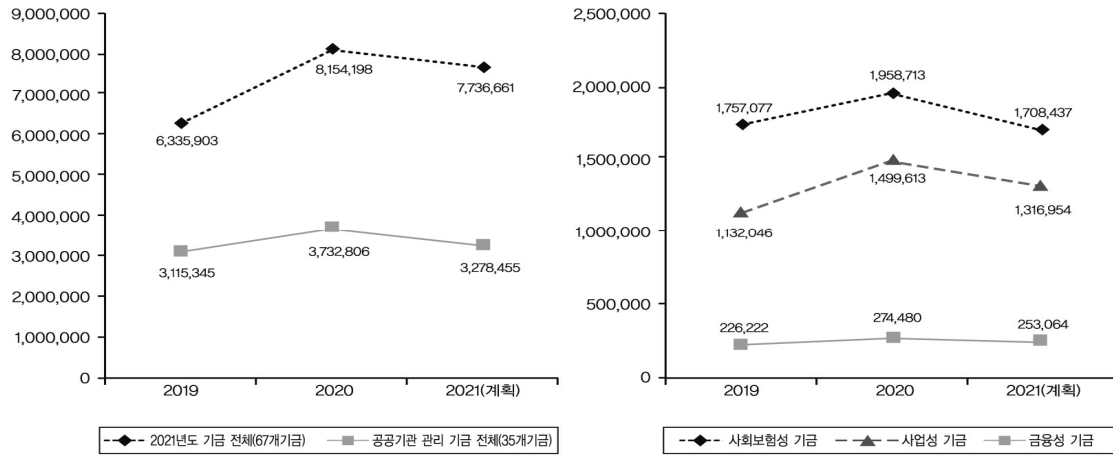
-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0조 원이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25조 원이 감소하여 2019년 운용 규모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금융성 기금은 2020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함.

- 사업성 기금은 2020년에 증가하다 2021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은 2020년 대비 2021년 감소 규모가 큼.

〈그림 Ⅲ-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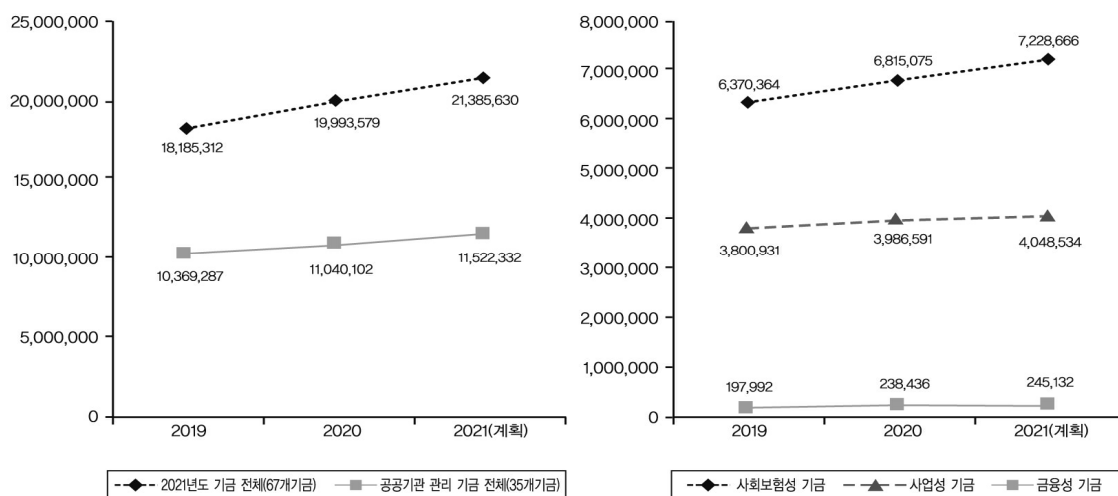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최근 3년간 기금 조성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Ⅲ-3>과 같음.

- 기금 조성 규모는 전체 기금과 공공기관 관리 기금 모두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증가 추세는 기금 유형별 조성 규모 추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사회보험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 모두 조성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과 2021년 증가세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Ⅲ-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를 참고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 회계연도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III-23>과 같음.
- 기금 운용 규모 측면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67개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하락(49.2% → 45.8%)하였으며, 2021년 계획상 규모도 꾸준히 하락(45.8% → 42.4%)하는 모습임.
 - 전체 기금 조성 규모에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조금씩 하락하고 모습을 보임.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에 있어 기금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최근 3개년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업성 기금은 40% 내외를 차지하고 금융성 기금은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여 3개 유형 중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관리 기금 대비 기금 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금 운영 규모와 기금 조성 규모의 비중 추이가 다른 모습을 보임.
 - 기금 운용 규모 측면에서 공공기관 관리기금의 기금 유형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은 2020년 큰 폭으로 하락(△3.9%p)했다가 2021년에는 비중이 소폭 감소(△0.4%p)하였고 사업성 기금은 2019년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3.9%p)했다가 2021년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 기금 조성 규모 측면에서 공공기관 관리기금의 기금 유형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고 사업성 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인 반면 금융성 기금은 2020년 증가했다 2021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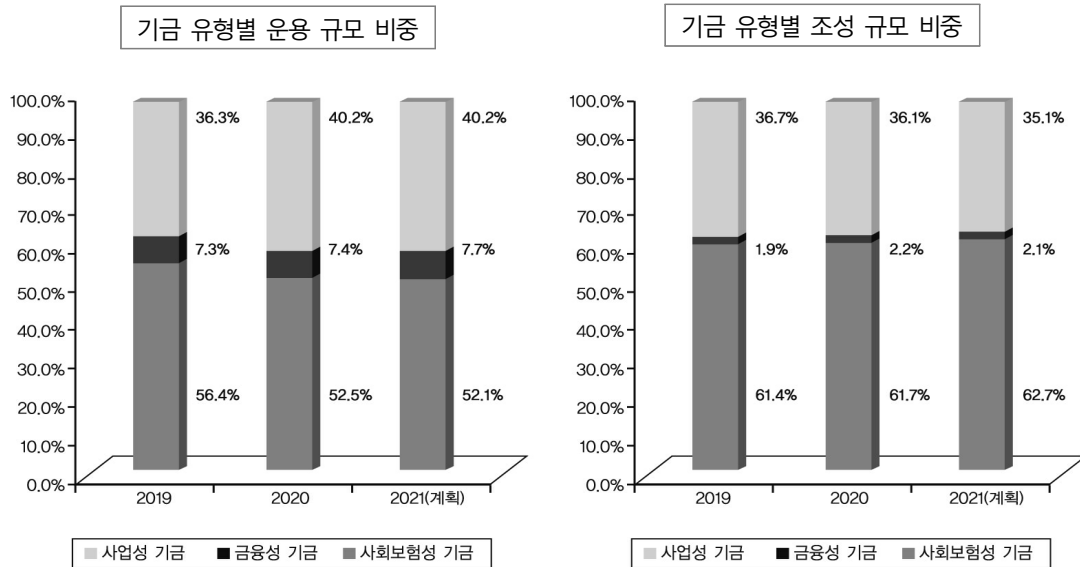
〈표 III-23〉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

구 분	기금 운용			기금 조성			
	'19 (실적)	'20 (실적)	'21 (계획)	'19말 (누계)	'20말 (누계)	'21계획 (당년)	'21계획 (누계)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 35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49.2	45.8	42.4	57.0	55.2	34.6	53.9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56.4	52.5	52.1	61.4	61.7	85.8	62.7
▪ 금융성 기금	7.3	7.4	7.7	1.9	2.2	1.4	2.1
▪ 사업성 기금	36.3	40.2	40.2	36.7	36.1	12.8	35.1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를 참고하여 작성

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자산규모와 2021년 결산 기준 자산 구성항목별 규모를 살펴보면, <표 Ⅲ-24>와 같음.

〈표 Ⅲ-2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9말 (실적)	'20말(실적)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2021년도 기금 전체(67개 기금)				20,023,619	22,627,946	11,856,719	7,894,271	171,154	315,366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5개 기금)				10,653,127	11,930,770	11,354,633	232,782	110,742	232,613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188,770	198,071	82,066	100	53,099	62,806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7,367,754	8,339,331	8,333,099	-	-	6,23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214,495	239,038	209,128	-	2,744	27,166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7,771,019	8,776,440	8,624,293	100	55,843	96,204

〈표 III-24〉의 계속

(단위: 억 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9말 (실적)	'20말(실적)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29,535	35,711	28,616	1,950	1,421	3,724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41,176	49,586	41,906	-	1,583	6,097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8,624	9,034	9,003	-	-	31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80,789	119,595	103,594	2,500	4,879	8,622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35,845	31,317	3,968	-	-	27,349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89,396	88,802	80,260	5,300	-	3,242
	금융성 기금 소계			285,365	334,045	267,347	9,750	7,883	49,065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399	467	467	-	-	-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36,109	38,527	10,560	9,270	3,385	15,312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12,577	15,335	7,801	7,516	-	18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2,005	1,664	409	1,181	42	32
	국제질병퇴치기금	위탁	한국국제 협력단	460	86	86	-	-	-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 공단	5,321	5,831	4,867	500	220	244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29,741	29,793	28,217	-	577	999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38,690	37,006	4,777	-	2,647	29,582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617	687	687	-	-	-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136,358	140,637	77,994	23,180	31,587	7,876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62,116	67,539	67,539	-	-	-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6,746	7,015	2,419	-	4,523	73

〈표 III-24〉의 계속

(단위: 억 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9말 (실적)	'20말(실적)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사업성 기금 (26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73,130	79,103	33,793	21,160	-	24,150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7,400	4,777	3,815	-	426	536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 진흥재단	16,102	15,921	15,733	-	173	15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1,136	835	579	120	-	136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74,395	74,390	71,687	-	300	2,403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 진흥재단	60	173	112	-	40	21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 위원회	5,133	4,364	3,381	750	109	124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1,699	1,633	1,633	-	-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13,090	13,186	13,186	-	-	-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55,649	54,986	12,727	39,600	-	2,659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5,162	2,420	2,187	-	-	233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 보증공사	1,821,892	1,994,186	1,872,959	119,655	-	1,572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90,728	229,698	225,352	-	2,987	1,359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 진흥재단	28	26	26	-	-	-
	사업성 기금 소계			2,596,743	2,820,285	2,462,993	222,932	47,016	87,344

주: 1.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 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용자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정부내부거래는 타회계 및 타기금 예탁금을 합산한 금액

3. 기타 자산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

4.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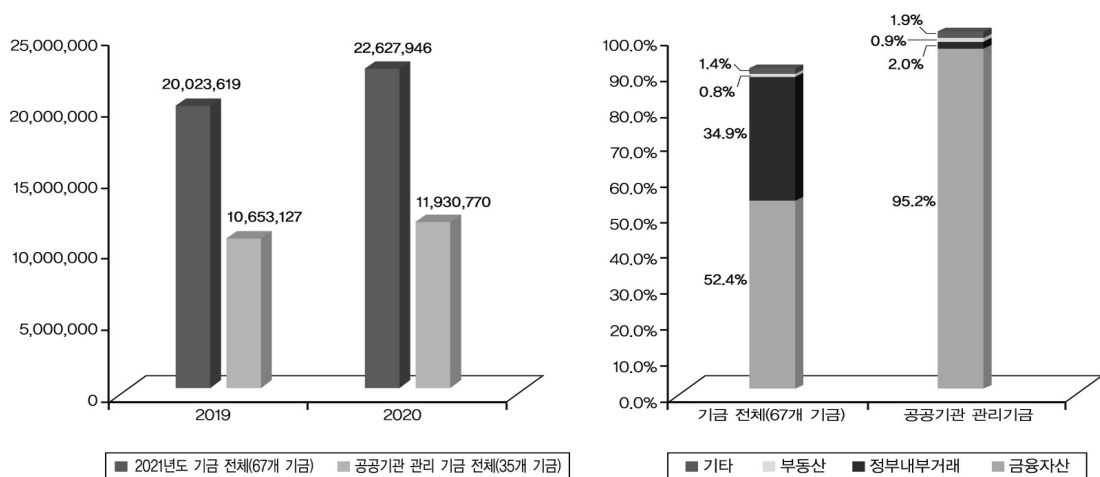
5. 전체 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환시장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되어, 2021년 결산 기준 자산 구성항목별 규모에 반영되지 않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대비 2020년 말 기금 자산 규모는 전체 기금과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III-5>).
- 67개 전체 기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0%이고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은 12.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19년 전체 기금 자산의 증가율은 11.0%이며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의 증가율은 12.3%임.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유형별 자산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 금융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전체 기금과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구성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유사하나 구성항목별 비중은 큰 차이를 보임.¹⁵¹⁾
 - 67개 기금의 자산 중 금융자산이 52.4%, 정부내부거래가 34.9%, 부동산이 0.8%, 기타 항목이 1.4%를 차지함.¹⁵²⁾
 - 반면, 공공기관 관리 기금은 금융자산이 95.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내부거래가 2.0%, 나머지 기타항목과 부동산이 각각 1.9%, 0.9%를 차지함.

〈그림 III-5〉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를 참고하여 작성

151)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 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용자 등으로 구성됨

152) 정부내부거래는 타 회계나 타 기금 위탁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타 항목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임

□ 2019년 대비 2020년말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III-25>).

- 67개 전체 기금의 자산 중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3.2%에서 2020년 52.7%로 감소함.
- 2019년과 2020년 자산 중 각 기금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성 기금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그림 III-6>).
 - 사회보험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사업성 기금은 전년 대비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을 기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산 구성내역을 비교해보면, 항목별 비중 분포상 차이를 보임(<표 III-25>).

- 사회보험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98.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1.1%, 부동산이 0.6%를 차지함.
 - 사회보험성 기금은 정부 내부거래가 0%임.
- 금융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80.0%를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14.7%를 차지함.
 - 다른 기금 유형은 기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나 금융성 기금은 14.7%로 다소 높은 수준임.
 - 이 외 정부 내부거래가 2.9%, 부동산이 2.4%를 차지함.
- 사업성 기금도 금융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으로 87.3%를 차지함.
 - 사업성 기금은 다른 기금 유형에 비해 타 회계나 타 기금의 예탁 등 정부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7.9%)이 다소 높음.
 - 이 외 기타 항목이 3.1%, 부동산이 1.7%를 차지함.

〈표 III-25〉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중

(단위: %)

구 분	자산 규모 비중		'20말(실적) 자산 구성항목별 비중			
	'19말 (실적)	'20말 (실적)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 35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53.2	52.7	95.8	2.9	64.7	73.8

〈표 III-25〉의 계속

(단위: %)

구 분	자산 규모 비중		'20말(실적) 자산 구성항목별 비중			
	'19말 (실적)	'20말 (실적)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72.9	73.6	76.0	0.0	50.4	41.4
▪ 금융성 기금	2.7	2.8	2.4	4.2	7.1	21.1
▪ 사업성 기금	24.4	23.6	21.7	95.8	42.5	37.5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	-	98.3	0.0	0.6	1.1
▪ 금융성 기금	-	-	80.0	2.9	2.4	14.7
▪ 사업성 기금	-	-	87.3	7.9	1.7	3.1

주: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은 67개 기금 대비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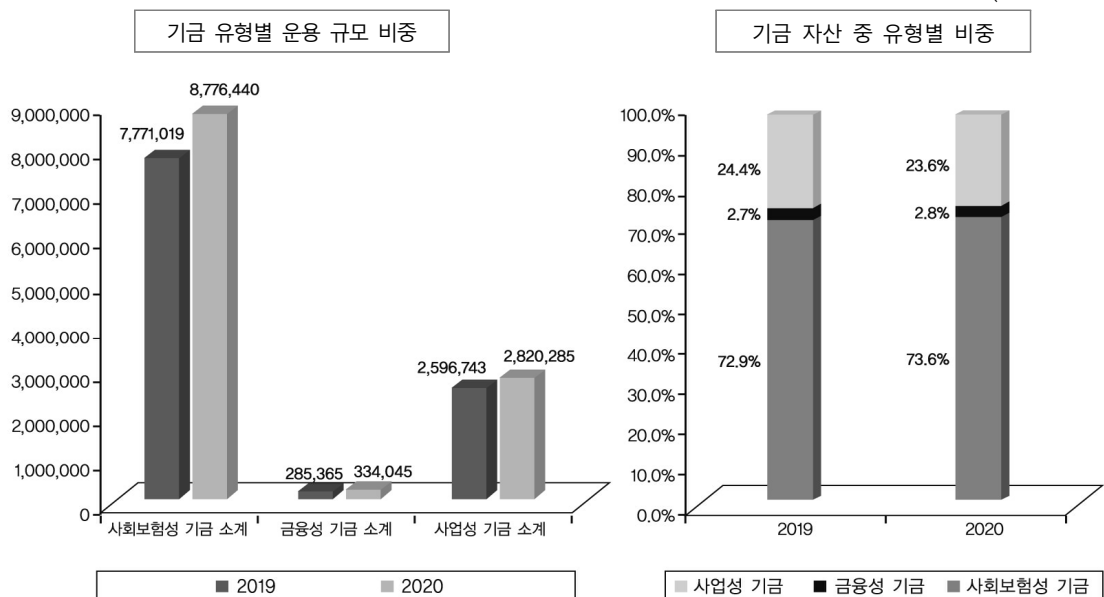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은 당해 연도 자산 규모에서 각 기금유형이 차지하는 비중(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도 자산 내역별 소계에서 각 기금 유형별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은 2020년 각 유형별 자산규모 중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6〉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자산 규모 비교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6. 4.를 참고하여 작성

사. 상장 공공기관 현황¹⁵³⁾

- 공공기관 중 일부기관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있으며, 그중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된 공공기관은 8개 기관임.
- 상장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공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가 정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일반기업의 상장은 규모요건, 분산요건, 경영성과 요건,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나,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의 ‘공적법인 등과 지주회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
 -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공공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은 분산요건,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상장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7개 기관이 공기업에 해당함.
 - 상장 공기업 7개 중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3개 기관임.
 - 주무부처별로 분류해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6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이고, 나머지 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임.
 -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개요는 <표 III-26>과 같음.

153)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결산서(2020) 및 사업보고서(2020) 참고

〈표 III-26〉 상장 공공기관 개요

(단위: 명, 백만 원)

기관명	부처	유형	설립연도 (설립근거(법))	상장일	임직원 총계	총자산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2년 (「한국전력공사법」)	1989.08.10.	23,409	203,142,111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3년 (「한국가스공사법」)	1999.12.15.	4,274	35,909,774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5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2010.01.29.	2,146	6,073,139
(주)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98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3.09.04.	3,758	3,641,632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1975년 (「상법」 제317조)	2009.12.24.	2,382	700,292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1984년 (「상법」 제317조)	2007.12.24.	6,619	1,349,869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준시장형 공기업	2005년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9.11.19.	1,890	708,446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	2003.12.24.	13,698	361,616,177

주: 임직원 총계(상임임원+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정원)와 총자산은 2020년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1. 4. 30. 기준) 및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주)강원랜드를 제외한 7개 상장 공공기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유 지분율이 40% 이상을 차지함.

○ (주)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보유 지분이 전체의 36.27%를 차지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주)강원랜드의 전체 주식 중 36.27%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출자회사 성격을 지님.

○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9.21%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정부 지분율이 높음.

- 이 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4개 기관은 정부 지분 없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외국인·기타주주 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음.

- 상장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는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기관의 지분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음.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한전KPS(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지분율이 각각 65.77%, 51%를 차지함.

〈표 III-27〉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단위: %)

기관	정부	공공기관	기타
한국전력공사	18.20	한국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32.90 8.62	외국인 기타 16.58 23.70
한국가스공사	26.15	한국전력공사 20.47	지자체 우리사주조합 외국인 자기주식 일반주주 7.93 3.17 8.51 7.03 26.74
한국지역난방공사	34.55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19.55 10.53	서울시 우리사주조합 일반 10.36 4.55 20.46
(주)강원랜드	-	한국광해관리공단 36.27	강원도개발공사 자사주 지자체 기타 4.57 5.24 10.18 43.75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65.77 2.06	기타 32.17
한전KPS(주)	-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51.00 7.93	우리사주조합 기타 0.44 40.6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한국관광공사 국민연금공단 51.00 12.77	외국인 기타 5.94 30.29
중소기업은행	59.21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7.25 1.86	기타주주 31.6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1. 4. 30.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20)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 중 납입자본금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납입자본금이 약 4조 1,831억 원 규모이고, 납입자본금이 가장 작은 상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로 약 24억 원 규모임.

-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은 납입자본금이 3조 원 이상임.
- 반면에 납입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100억 원 이하)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와 한전KPS(주)가 있음.

〈표 III-28〉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단위: 백만 원, 주)

기관	납입자본금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	발행한 주식
한국전력공사	3,209,820	1,200,000,000	641,964,077
한국가스공사	461,565	200,000,000	92,313,000
한국지역난방공사	57,894	40,000,000	11,578,744
(주)강원랜드	106,970	1,000,000,000	213,940,500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458	300,000,000	38,220,000
한전KPS(주)	3,656	300,000,000	45,000,00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0,928	120,000,000	61,855,670
중소기업은행	4,183,183	2,000,000,000	791,789,642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1. 4. 30.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20)를 참고하여 작성

□ 배당과 관련하여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의 영향을 받음.
 -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기관은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 또한 증가함.
 -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부터 2년간 현금배당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 흑자로 전환되어 현금배당을 실현함.
 - 한국가스공사, (주)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현금배당을 실현하지 못함.
- 2020년에 현금배당수익률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 3개 기관임.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현금배당수익률이 2018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함.

- 이와 반대로 한전KPS(주)는 현금배당수익률이 2018년부터 3년간 꾸준히 감소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현금배당수익률이 2018년부터 2년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는 현금배당을 시행하지 못함.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 순이익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수익률이 증가하였으나, 주당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함.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이 함께 증가하고, 한국가스공사, (주)강원랜드, 한전KPS(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은행은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이 동시에 감소하였음.
 - 한국전력공사는 주당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20년에는 주당순이익이 3,102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정부출자기관 중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배당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전년에 정부 배당을 실현하지 못했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1년 정부 배당을 실현하였음.¹⁵⁴⁾
 - 한국가스공사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여 정부 배당을 실현하지 못하였음.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년 무배당기관에서 2021년 유배당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각 1,421억 원, 39억 원의 정부 배당을 실현함.

〈표 Ⅲ-29〉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8~2020년)

기관	구분	'18년	'19년	'20년
한국전력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314,567	△2,263,535	2,092,469
	주당순이익(원)	△2,048	△3,654	3,10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780,628
	(연결)현금배당성향(%)	-	-	40.00
	현금배당수익률(%)	-	-	4.50
	주당현금배당금(원)	-	-	1,216

154)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하여,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보도자료, 2021. 5. 14.을 참고

〈표 III-29〉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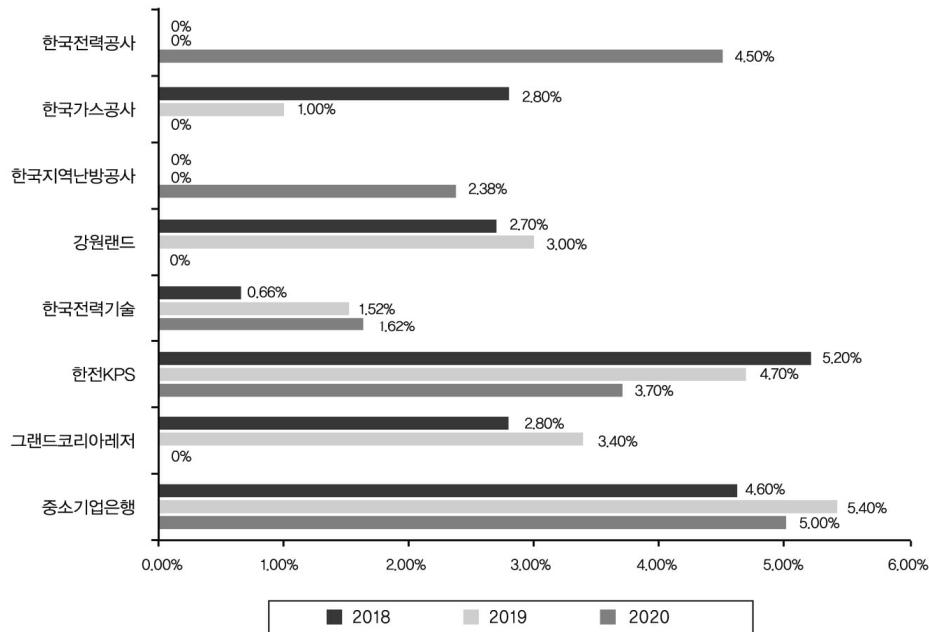
기관	구분	'18년	'19년	'20년
한국가스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526,745	58,269	△160,683
	주당순이익(원)	5,766	395	△1,989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19,187	33,302	-
	(연결)현금배당성향(%)	23.40	85.90	-
	현금배당수익률(%)	2.80	1.00	-
	주당현금배당금(원)	1,360	380	-
한국 지역난방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26,524	△25,580	27,936
	주당순이익(원)	△19,564	△2,209	2,279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11,173
	(연결)현금배당성향(%)	-	-	40.00
	현금배당수익률(%)	-	-	2.38
	주당현금배당금(원)	-	-	965
(주)강원랜드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97,237	334,654	△275,879
	주당순이익(원)	1,467	1,651	△1,361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82,465	182,465	-
	(연결)현금배당성향(%)	61.37	54.52	-
	현금배당수익률(%)	2.70	3.00	-
	주당현금배당금(원)	900	900	-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2,937	26,398	20,160
	주당순이익(원)	340	694	53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5,326	11,793	10,728
	(연결)현금배당성향(%)	41.20	44.70	53.20
	현금배당수익률(%)	0.66	1.52	1.62
	주당현금배당금(원)	140	310	282

〈표 III-29〉의 계속

기관	구분	'18년	'19년	'20년
한전KPS(주)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61,331	153,331	87,058
	주당순이익(원)	3,585	3,407	1,935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80,550	86,400	51,570
	(연결)현금배당성향(%)	49.90	56.30	59.20
	현금배당수익률(%)	5.20	4.70	3.70
	주당현금배당금(원)	1,790	1,920	1,146
그랜드 코리아레저(주)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77,740	72,396	△ 64,327
	주당순이익(원)	1,257	1,170	△ 1,04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43,917	40,763	-
	(연결)현금배당성향(%)	56.60	56.60	-
	현금배당수익률(%)	2.80	3.40	-
	주당현금배당금(원)	710	659	-
중소기업은행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764,278	1,614,261	1,547,918
	주당순이익(원)	2,531	2,242	1,97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410,107	382,614	372,933
	(연결)현금배당성향(%)	25.73	28.02	24.09
	현금배당수익률(%)	4.60	5.40	5.00
	주당현금배당금(원)	690(우선주690)	670(우선주670)	471(우선주471)

주: () 안은 우선주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1.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20)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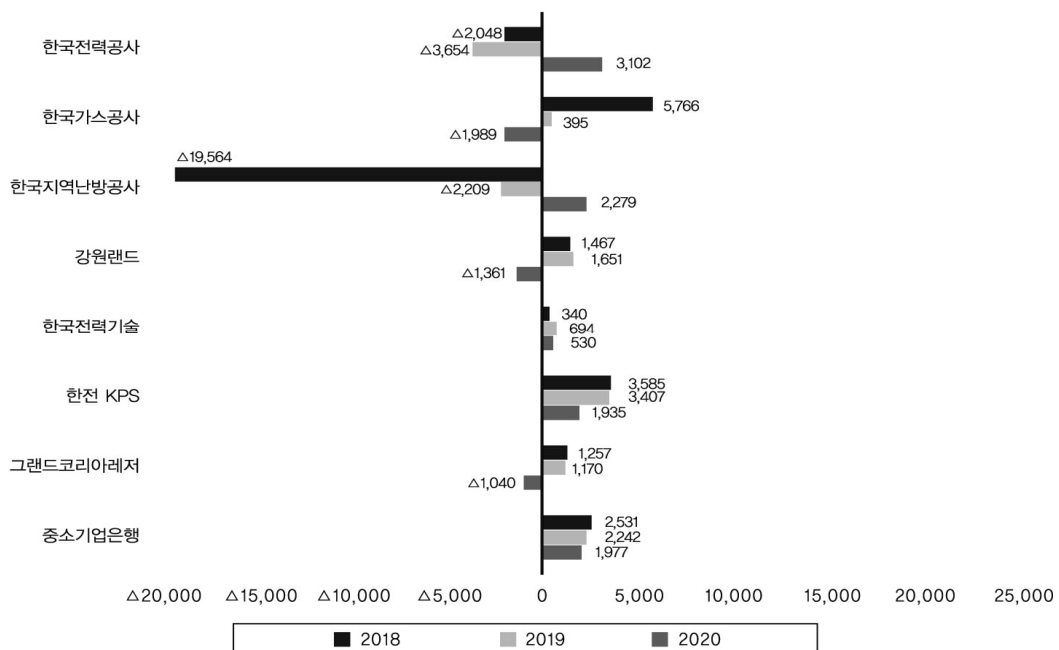
〈그림 III-7〉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1.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20)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8〉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 순이익 변동 현황

(단위: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1.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20)를 참고하여 작성

- 매출액과 총포괄손익을 중심으로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9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전년 대비 11.0%의 증가율을 보임.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한 기관은 (주)강원랜드로 전년 대비 6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장 공공기관 중 한전KPS(주)와 중소기업은행은 2018년부터 3년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 한전KPS(주)와 중소기업은행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총포괄손익은 감소함.
 - 이에 비해 한국가스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개 기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과 총포괄손익이 모두 감소함.

〈표 III-30〉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8~2020년)

(단위: 백만 원, %)

기관	구분	'18년	'19년	'20년	전년 대비 증감률(%)	
					'19년	'20년
한국전력공사	매출액	60,627,610	59,172,890	58,569,314	△2.4	△1.0
	영업이익	△208,001	△1,276,521	4,086,275	△513.7	420.1
	당기순이익	△1,174,498	△2,263,535	2,092,469	△92.7	192.4
	지배지분순이익	△1,314,567	△2,345,517	1,991,347	△78.4	184.9
	총포괄손익	△1,281,423	△2,128,339	1,872,628	△66.1	188.0
한국가스공사	매출액	26,185,038	24,982,640	20,833,722	△4.6	△16.6
	영업이익	1,276,859	1,334,514	898,855	4.5	△32.6
	당기순이익	526,745	58,269	△160,683	△88.9	△375.8
	지배지분순이익	509,350	38,764	△172,060	△92.4	△543.9
	총포괄손익	407,688	116,852	△286,210	△71.3	△344.9
한국지역난방공사	매출액	2,487,331	2,367,906	2,098,906	△4.8	△11.4
	영업이익	14,521	42,213	132,853	190.7	214.7
	당기순이익	△226,524	△25,580	27,936	88.7	209.2
	지배지분순이익	△226,524	△25,580	27,936	88.7	209.2
	총포괄손익	△234,718	△30,755	26,085	86.9	184.8

〈표 III-30〉의 계속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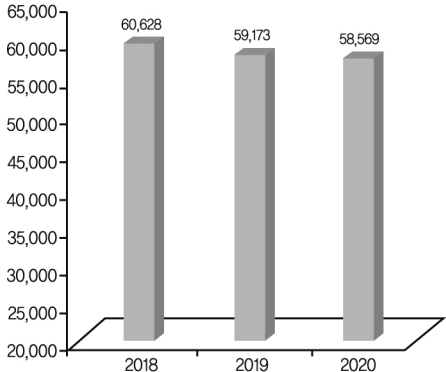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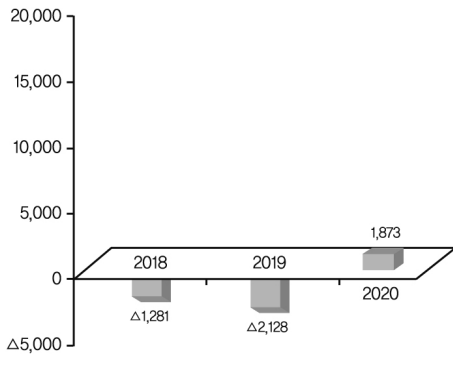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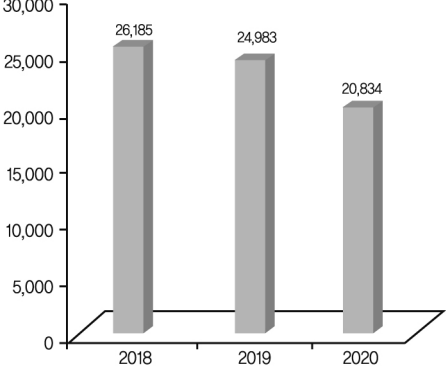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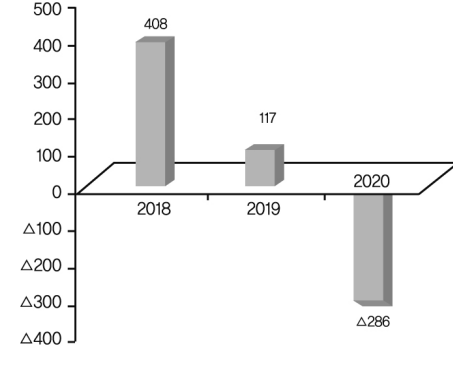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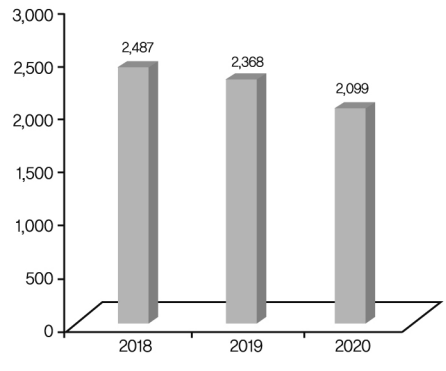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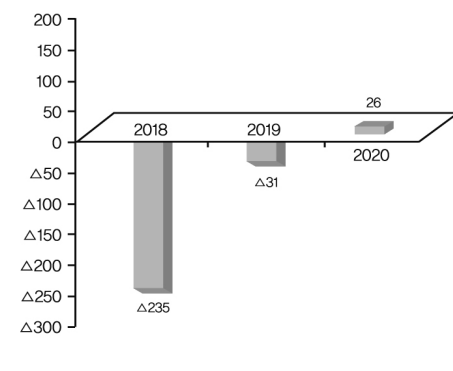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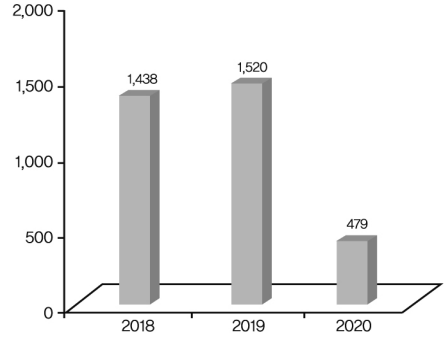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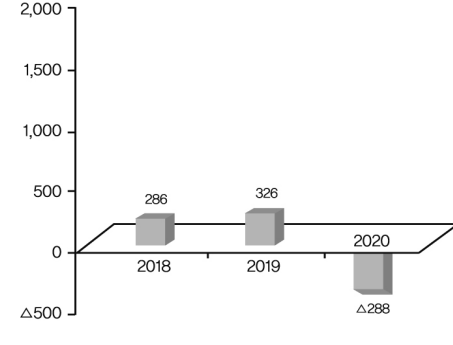
기관	구분	'18년	'19년	'20년	전년 대비 증감률(%)	
					'19년	'20년
(주)강원랜드	매출액	1,438,059	1,520,080	478,579	5.7	△68.5
	영업이익	430,700	501,153	△431,584	16.4	△186.1
	당기순이익	297,237	334,654	△275,879	12.6	△182.4
	지배지분순이익	297,326	334,658	△275,860	12.6	△182.4
	총포괄손익	286,295	326,152	△288,265	13.9	△188.4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매출액	433,701	448,635	431,723	3.4	△3.8
	영업이익	21,499	44,069	29,571	105.0	△32.9
	당기순이익	12,937	26,398	20,160	104.1	△23.6
	지배지분순이익	-	-	20,160	-	-
	총포괄손익	12,718	36,159	18,655	184.3	△48.4
한전KPS(주)	매출액	1,242,452	1,246,950	1,303,202	0.4	4.5
	영업이익	191,519	193,939	135,402	1.3	△30.2
	당기순이익	161,331	153,331	87,058	△5.0	△43.2
	지배지분순이익	161,331	153,331	87,058	△5.0	△43.2
	총포괄손익	145,212	159,832	74,663	10.1	△53.3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매출액	480,339	490,752	184,462	2.2	△62.4
	영업이익	105,058	96,802	△88,811	△7.9	△191.7
	당기순이익	77,741	72,396	△64,327	△6.9	△188.9
	지배지분순이익	77,741	72,396	△64,327	△6.9	△188.9
	총포괄손익	75,189	71,225	△66,060	△5.3	△192.7
중소기업은행	매출액	17,871,430	19,317,448	21,437,351	8.1	11.0
	영업이익	2,396,435	2,227,915	2,125,516	△7.0	△4.6
	당기순이익	1,764,278	1,614,261	1,547,918	△8.5	△4.1
	지배지분순이익	1,754,243	1,605,847	1,535,705	△8.5	△4.4
	총포괄손익	1,711,329	1,627,255	1,507,761	△4.9	△7.3

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 12월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지역난방플러스(주), 지역난방안전(주) 등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도 결산부터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1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20)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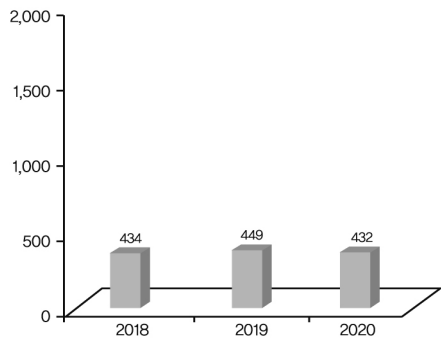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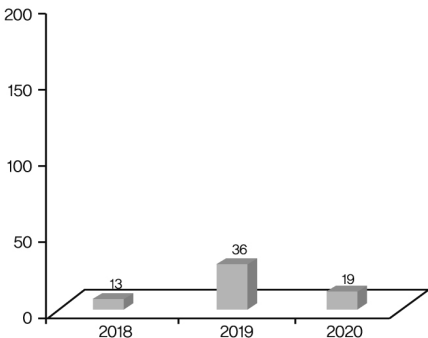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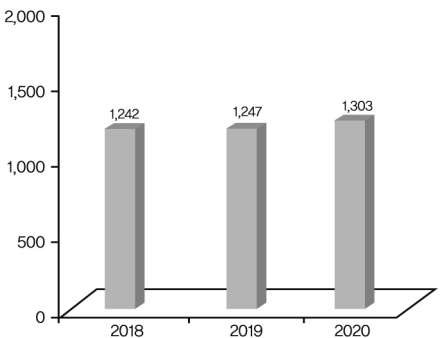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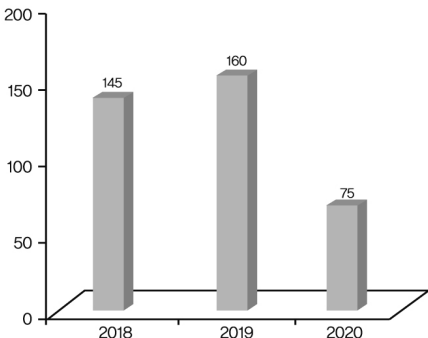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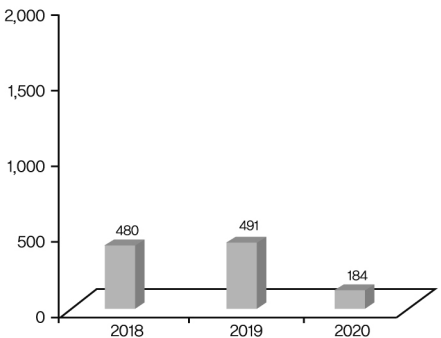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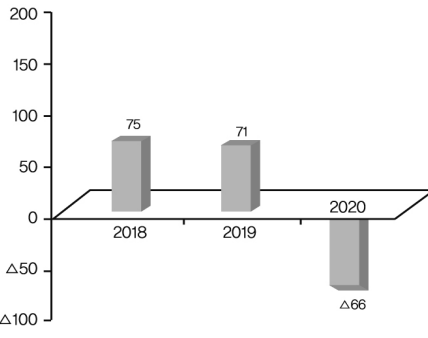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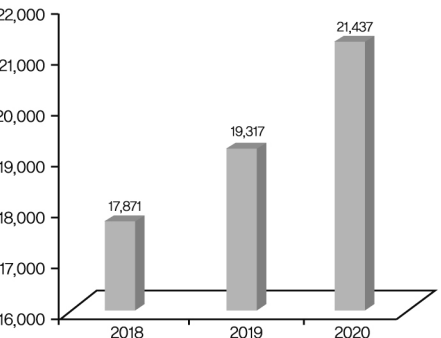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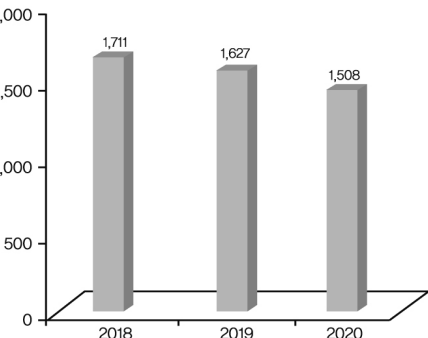
〈표 Ⅲ-31〉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8~2020년)

(단위: 십억 원)

기관	매출액	총포괄손익																
한국전력공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8</td><td>60,628</td></tr><tr><td>2019</td><td>59,173</td></tr><tr><td>2020</td><td>58,569</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8	60,628	2019	59,173	2020	58,569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8</td><td>△1,281</td></tr><tr><td>2019</td><td>△2,128</td></tr><tr><td>2020</td><td>1,873</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8	△1,281	2019	△2,128	2020	1,873
연도	매출액																	
2018	60,628																	
2019	59,173																	
2020	58,569																	
연도	총포괄손익																	
2018	△1,281																	
2019	△2,128																	
2020	1,873																	
한국가스공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8</td><td>26,185</td></tr><tr><td>2019</td><td>24,983</td></tr><tr><td>2020</td><td>20,834</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8	26,185	2019	24,983	2020	20,834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8</td><td>408</td></tr><tr><td>2019</td><td>117</td></tr><tr><td>2020</td><td>△286</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8	408	2019	117	2020	△286
연도	매출액																	
2018	26,185																	
2019	24,983																	
2020	20,834																	
연도	총포괄손익																	
2018	408																	
2019	117																	
2020	△286																	
한국 지역난방공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8</td><td>2,487</td></tr><tr><td>2019</td><td>2,368</td></tr><tr><td>2020</td><td>2,099</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8	2,487	2019	2,368	2020	2,099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8</td><td>△235</td></tr><tr><td>2019</td><td>△31</td></tr><tr><td>2020</td><td>26</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8	△235	2019	△31	2020	26
연도	매출액																	
2018	2,487																	
2019	2,368																	
2020	2,099																	
연도	총포괄손익																	
2018	△235																	
2019	△31																	
2020	26																	
(주)강원랜드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8</td><td>1,438</td></tr><tr><td>2019</td><td>1,520</td></tr><tr><td>2020</td><td>479</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8	1,438	2019	1,520	2020	479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8</td><td>286</td></tr><tr><td>2019</td><td>326</td></tr><tr><td>2020</td><td>△288</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8	286	2019	326	2020	△288
연도	매출액																	
2018	1,438																	
2019	1,520																	
2020	479																	
연도	총포괄손익																	
2018	286																	
2019	326																	
2020	△288																	

〈표 III-31〉의 계속

(단위: 십억 원)

기관	매출액	총포괄손익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8</td><td>434</td></tr><tr><td>2019</td><td>449</td></tr><tr><td>2020</td><td>432</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8	434	2019	449	2020	432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8</td><td>13</td></tr><tr><td>2019</td><td>36</td></tr><tr><td>2020</td><td>19</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8	13	2019	36	2020	19
연도	매출액																	
2018	434																	
2019	449																	
2020	432																	
연도	총포괄손익																	
2018	13																	
2019	36																	
2020	19																	
한전KPS(주)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8</td><td>1,242</td></tr><tr><td>2019</td><td>1,247</td></tr><tr><td>2020</td><td>1,303</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8	1,242	2019	1,247	2020	1,303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8</td><td>145</td></tr><tr><td>2019</td><td>160</td></tr><tr><td>2020</td><td>75</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8	145	2019	160	2020	75
연도	매출액																	
2018	1,242																	
2019	1,247																	
2020	1,303																	
연도	총포괄손익																	
2018	145																	
2019	160																	
2020	75																	
그랜드 코리아레저(주)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8</td><td>480</td></tr><tr><td>2019</td><td>491</td></tr><tr><td>2020</td><td>184</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8	480	2019	491	2020	184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8</td><td>75</td></tr><tr><td>2019</td><td>71</td></tr><tr><td>2020</td><td>△66</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8	75	2019	71	2020	△66
연도	매출액																	
2018	480																	
2019	491																	
2020	184																	
연도	총포괄손익																	
2018	75																	
2019	71																	
2020	△66																	
중소기업은행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8</td><td>17,871</td></tr><tr><td>2019</td><td>19,317</td></tr><tr><td>2020</td><td>21,437</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8	17,871	2019	19,317	2020	21,437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8</td><td>1,711</td></tr><tr><td>2019</td><td>1,627</td></tr><tr><td>2020</td><td>1,508</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8	1,711	2019	1,627	2020	1,508
연도	매출액																	
2018	17,871																	
2019	19,317																	
2020	21,437																	
연도	총포괄손익																	
2018	1,711																	
2019	1,627																	
2020	1,50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1.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20)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 지표를 살펴보면 <표 III-32>와 같음.

<표 III-32>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8~2020년)

(단위: %, %p)

기관	지표		'18년	'19년	'20년	증감(%p)	
						'19년	'20년
한국 전력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9	6.7	2.8	4.8	△3.9
		유형자산증가율	1.2	7.8	2.4	6.6	△5.4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1.4	△2.4	△1.0	△3.8	1.4
		순이익증가율	△181.5	△92.7	192.4	88.8	285.1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0.3	△2.2	7.0	△1.9	9.2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1.9	△3.8	3.6	△1.9	7.4
		총자본순이익률	△0.6	△1.2	1.0	△0.6	2.2
		자기자본순이익률	△1.9	△3.4	2.9	△1.5	6.3
	안정성	유동비율	90.4	80.4	79.4	△10	△1.0
		부채비율	160.57	186.83	187.50	26.26	0.67
		자기자본비율	38.4	34.9	34.8	△3.5	△0.1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11.13	△62.37	204.78	△51.24	267.15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15,940,192	16,379,082	23,527,423	-	-
		부가가치율	26.3	27.7	40.2	1.4	12.5
		노동소득분배율	33.6	37.5	28.2	3.9	△9.3
		총자본투자효율	8.7	8.6	11.7	△0.1	3.1
		설비투자효율	12.8	12.6	17.2	△0.2	4.6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85.28	85.9	82.88	0.62	△3.02
		총자본회전율	0.3	0.3	0.3	0	0
한국 가스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6.87	△0.95	△8.65	△7.82	△7.7
		유형자산증가율	0.17	△1.56	△5.1	△1.73	△3.54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18.1	△4.59	△16.61	△22.69	△12.02
		순이익(손실)증가율	△144.2	△88.94	△375.76	55.26	△286.82

〈표 III-32〉의 계속

(단위: %, %p)

기관	지표		'18년	'19년	'20년	증감(%p)	
						'19년	'20년
한국 가스공사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4.88	5.34	4.31	0.46	△1.03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2.01	0.23	△0.77	△1.78	△1.0
		총자본순이익률	1.37	0.15	△0.43	△1.22	△0.58
		자기자본순이익률	6.36	0.48	△2.24	△5.88	△2.72
	안정성	유동비율	100.54	103.73	104.37	3.19	0.64
		부채비율	367.05	382.56	364.24	15.51	△18.32
		자기자본비율	21.41	20.72	21.54	△0.69	0.82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1.63	1.66	1.26	0.03	△0.4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3,918,713	3,424,035	2,873,428	-	-
		부가가치율	14.97	13.71	13.79	△1.26	0.08
		노동소득분배율	13.8	17.85	22.13	4.05	4.28
		총자본투자효율	10.2	8.67	7.64	△1.53	△1.03
		설비투자효율	17.49	14.97	12.54	△2.52	△2.43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308.13	306.67	269.34	△1.46	△37.33
		총자본회전율	0.68	0.63	0.55	△0.05	△0.08
한국 지역난방 공사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35.6	△4.8	△11.36	△40.4	△6.56
		영업이익증가율	△87.9	191	214.93	278.9	23.93
	수익성	매출액순이익률	△9.1	△1.08	1.33	8.03	2.41
	안정성	부채비율	262.66	285.29	236.70	22.63	△48.59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59.43	154.83	116.36	△4.6	△38.47
(주)강원랜드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09	4.89	△17.95	3.8	△22.86
		유형자산증가율	1.24	4.3	△1.55	3.06	△5.85
		매출액증가율	△7.09	5.7	△68.52	12.79	△74.22
		순이익증가율	△32.07	12.59	△182.44	44.66	△195.03

〈표 Ⅲ-32〉의 계속

(단위: %, %p)

기관	지표		'18년	'19년	'20년	증감(%p)	
						'19년	'20년
(주)강원랜드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29.95	32.97	△90.18	3.02	△123.15
		영업이익(매출액) 순이익률	20.67	22.02	△57.65	1.35	△79.67
		총자본수익률	7.06	7.72	△6.83	0.66	△14.55
		자기자본(지배지분) 순이익률	8.39	9.16	△7.92	0.77	△17.08
	안정성	유동비율	276.57	288.36	454.03	11.79	165.67
		부채비율	17.97	19.38	12.15	1.41	△7.23
		자기자본비율	84.77	83.77	89.16	△1	5.39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183,465.68	25,555.99	△23,009.49	△157,910	△48,565
	생산성	부가가치액(백만원)	865,017	953,349	66,577	-	-
		부가가치율	60.15	62.72	13.91	2.57	△48.81
		노동소득분배율	33.41	30.6	519.4	△2.81	488.8
		총자본투자효율	20.55	21.99	1.65	1.44	△20.34
		설비투자효율	69.36	72.76	5.02	3.4	△67.74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40.09	40.89	14.74	0.8	△26.15
한국 전력기술 주식회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22	△4.7	△4.89	△5.92	△0.19
		유형자산증가율	△4.35	△3.4	△2.92	0.95	0.52
		매출액증가율	△11.52	3.44	△3.77	14.96	△7.21
		순이익증가율	△60.14	104.05	△23.63	164.19	△127.6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4.96	9.82	6.72	4.86	△3.1
		매출액순이익률	2.98	5.88	4.67	2.9	△1.21
		총자본순이익률	1.69	3.5	2.81	1.81	△0.69
		자기자본순이익률	2.82	5.53	4.07	2.71	△1.47
	안정성	유동비율	113.28	115.24	126.58	1.96	11.34
		부채비율	67.21	49.37	40.11	△17.84	△9.26
		자기자본비율	59.8	66.95	71.37	7.15	4.42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2,938.45	68,020.07	55,753.47	65,082	△12,266

〈표 III-32〉의 계속

(단위: %, %p)

기관	지표		'18년	'19년	'20년	증감(%p)	
						'19년	'20년
한국 전력기술 주식회사	생산성	부가가치액(백만원)	284,718	300,877	288,679	-	-
		부가가치율	65.65	67.07	66.87	1.42	△0.2
		노동소득분배율	81.76	76.7	79.81	△5.06	3.11
		총자본투자효율	37.13	39.94	40.25	2.81	0.31
		설비투자효율	92.59	101.82	100.91	9.23	△0.91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94	91.15	86.5	△2.85	△4.65
한전 KPS(주)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6.7	6.1	△0.7	△0.6	△6.8
		자기자본증가율	8.7	8.1	△1.1	△0.6	△9.2
		매출액 증가율	0.5	0.4	4.5	△0.1	4.1
		순이익 증가율	18.7	△5.0	△43.2	△23.7	△38.2
	수익성	영업이익률	15.4	15.6	10.4	0.2	△5.2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12.98	12.3	6.7	△0.68	△5.6
		총자산순이익률	13	11.6	6.4	△1.4	△5.2
		자기자본이익률	17.1	15	8.2	△2.1	△6.8
	안정성	유동비율	235.3	314.6	297.3	79.3	△17.3
		부채비율	30.16	27.84	28.35	△2.32	0.51
		당좌비율	234.8	314.1	288	79.3	△26.1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26.25	117.26	123.92	△8.99	6.66
		총자산회전율	1	0.9	1	△0.1	0.1
		매출채권회전율	9	9.8	9.7	0.8	△0.1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4.63	18.76	△22.1	14.13	△40.86
		유형자산증가율	△7.85	102.61	△15.78	110.46	△118.39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4.18	2.17	△62.41	6.35	△64.58
		순이익증가율	△3.47	△6.87	△188.85	△3.4	△181.98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21.87	19.73	△48.15	△2.14	△67.88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16.18	14.75	△34.87	△1.43	△49.62
		총자본순이익률	10.38	8.64	△7.95	△1.74	△16.59
		자기자본순이익률	14.21	12.62	△12.01	△1.59	△24.63

〈표 III-32〉의 계속

(단위: %, %p)

기관	지표		'18년	'19년	'20년	증감(%p)	
						'19년	'20년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안정성	유동비율	270.26	215.84	269.52	△54.42	53.68
		부채비율	36.24	55.41	45.65	19.17	△9.76
		자기자본비율	73.40	64.34	68.66	△9.06	4.32
	생산성	부가가치액(백만원)	284,607	306,090	132,312	-	-
		부가가치율	59.25	62.37	71.73	3.12	9.36
		노동소득분배율	45.96	52.65	125.39	6.69	72.74
		총자본투자효율	38.01	36.54	16.36	△1.47	△20.18
		설비투자효율	320.92	236.50	82.84	△84.42	△153.66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85.46	83.86	37.92	△1.6	△45.94
중소기업 은행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9.87	8.36	7.22	△1.51	△1.14
		총자산순이익률	0.63	0.53	0.45	△0.1	△0.08
		자기자본이익률	8.72	7.27	6.4	△1.45	△0.87
	안정성	부채비율	1,272.46	1,296.65	1,338.28	24.19	41.63
		BIS비율	14.50	14.47	14.82	△0.03	0.35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84.72	84.81	85.26	0.09	0.45

주: 기업의 활동성 지표 중 자기자본회전율은 알리오시스템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기관의 결산서와는 수치가 다를 수 있음. 알리오에서 작성한 기준에 따르면, 자기자본회전율 = (순매출액/자본총계)×1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1. 4. 30. 기준)과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결산서(2020), 사업보고서(2020) 및 IR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은 2020년도 결산서를 통해 주요 재무비율지표에 대한 변동 원인 및 추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장마기간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국제연료가 하락으로 인한 연료비 감소, 구입전력비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함.¹⁵⁵⁾
 - 매출액은 1.0% 감소한 반면, 연료비는 19.0%, 구입전력비는 13.9% 감소하여 순이익이 192.4% 증가하였음.

155) 한국전력공사, 『결산서(2020)』, 2021. 3. 참고

- 한국가스공사는 LNG 판매물량 감소, 유가하락, 해외 자원개발 자산 손상인식 등으로 순손실이 발생하였음.¹⁵⁶⁾
 -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은 2019년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주)강원랜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 휴장에 따라 카지노 입장객이 전년동기 대비 79.3% 감소한 599,265명으로 크게 줄어 매출액이 감소하였음.¹⁵⁷⁾
 - 카지노 매출, 순이익 감소에 따른 관광기금 및 폐광기금 감소 등으로 영업비용이 감소하였지만 매출액이 대폭 줄어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성장성 및 수익성지표가 모두 감소하였음.
 - 매출원가 및 마케팅 활동비, 카지노부담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급여 인상 및 경영평가 상여금 증가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함.¹⁵⁸⁾

2. 인력현황¹⁵⁹⁾

가. 임직원 수 현황

- 2020년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정원 기준)¹⁶⁰⁾는 약 43만 6천명으로 국가행정공무원 정원 약 73만 6천명의 59%에 해당하는 규모임.
-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함.

156) 한국가스공사, 『결산서(2020)』, 2021. 3. 참고

157) (주)강원랜드, 『결산서(2020)』, 2021. 3. 참고

158)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결산서(2020)』, 2021. 3. 참고

159)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및 알리오시스템 유관항목 참고

160)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상임임원,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및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포함)에 대한 총 정원

〈표 Ⅲ-33〉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6~2020년)

(단위: 천명, %, %p)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공공기관 임직원(a)	328	346	383	420	436	15	3.7%
국가행정공무원(b)	629	639	649	663	736	73	11.0%
비중(a/b)	52.1	54.1	59.0	63.3	59.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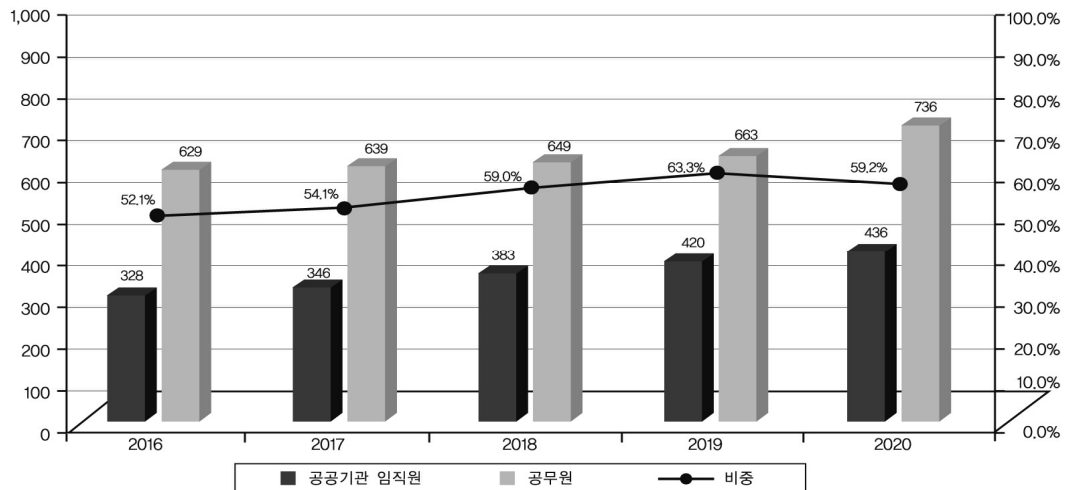
주: 1. *는 %단위임

2.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1. 4. 30. 기준)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9〉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6~2020년)

(단위: 천명,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1. 4. 30. 기준)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필수 분야 신규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1만 5,398명 증가함.

○ 2020년 증원 인력은 일반 증원 0.9만 명, 공공기관 신규지정 0.2만 명, 정규직 전환 0.4만 명 약 1.5만 명 규모임.

-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0.3만 명, 안전조직 신설 등에 따른 SOC 분야의 0.2만 명, 그리고 전력설비 확충 등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0.1만 명 등이 증원됨.¹⁶¹⁾

- 최근 5년간 모든 유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및 현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2020년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9,416명(6.2%) 증가한 16만 1,667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기타공공기관 중 인력증원의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전MCS(주)(1,754명)이고 두 번째로 큰 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1,312명)임.
 - 공기업 유형의 2020년 임직원 정원은 15만 79명으로 2019년 대비 3,034명이 증가하여 2.1%의 정원 증가율을 보임.
 - 시장형 공기업의 2020년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1.5%(981명) 증가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함께 전체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준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2,053명(2.5%) 증가했으며 인력증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도로공사(1,000명)로 준시장형 공기업 유형의 전체 증원 인력 중 48.7%를 차지함.
 - 준정부기관 유형의 2020년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2.4%(2,949명) 증가한 12만 3,988명으로 정원 증가율이 공기업보다는 높고 기타공공기관보다는 낮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1.5%(428명) 증가하여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원 증가율은 2.8%(2,521명)로 나타남.

〈표 III-34〉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2016~2020년)

(단위: 명,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328,479 (308,417)	345,923 (324,312)	383,373 (359,762)	420,336 (393,167)	435,734 (409,374)	15,398 (16,207)	3.7 (4.1)
공기업	126,972 (121,350)	132,715 (127,037)	139,988 (133,948)	147,046 (141,377)	150,079 (144,497)	3,034 (3,120)	2.1 (2.2)
· 시장형	59,888 (57,765)	62,123 (60,029)	64,152 (61,619)	65,804 (63,870)	66,785 (65,176)	981 (1,307)	1.5 (2.0)
· 준시장형	67,084 (63,585)	70,592 (67,008)	75,836 (72,329)	81,242 (77,507)	83,295 (79,320)	2,053 (1,813)	2.5 (2.3)

〈표 III-34〉의 계속

(단위: 명,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준정부기관	93,783 (88,541)	100,786 (94,179)	114,326 (107,336)	121,039 (114,860)	123,988 (117,621)	2,949 (2,761)	2.4 (2.4)
· 기금관리형	22,524 (21,212)	24,497 (22,548)	28,288 (26,440)	29,367 (27,819)	29,795 (28,189)	428 (370)	1.5 (1.3)
· 위탁집행형	71,259 (67,329)	76,289 (71,630)	86,038 (80,896)	91,672 (87,041)	94,193 (89,432)	2,521 (2,391)	2.8 (2.7)
기타공공기관	107,724 (98,526)	112,423 (103,097)	129,058 (118,478)	152,252 (136,930)	161,667 (147,256)	9,416 (10,326)	6.2 (7.5)

주: 1. () 안의 수치는 현원 기준

2. 현원의 경우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1.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증가율은 2018년 10.8%에서 2019년 9.6%, 2020년 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정원 증가율 감소 추세는 모든 공공기관 유형에서 2020년에 동일하게 확인됨.

- 공기업¹⁶²⁾과 준정부기관¹⁶³⁾은 2019년도 2020년 모두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인 반면 기타공공기관¹⁶⁴⁾은 2020년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

□ 2020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정원 기준)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9만 4,811명(40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8만 8,099명(28개 기관), 교육부 4만 9,679명(23개 기관) 순으로 나타남.

○ 임직원 수 증가는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4,028명 증원),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3,259명 증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3,085명 증원) 순임.

162) (2018년) 5.5% → (2019년) 5.0%(△0.4%p) → (2020년) 2.1%(△3.0%p)

163) (2018년) 13.4% → (2019년) 5.9%(△7.6%p) → (2020년) 2.4%(△3.4%p)

164) (2018년) 14.8% → (2019년) 18.0%(+3.2%p) → (2020년) 6.2%(△11.8%p)

〈표 III-35〉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2016~2020년)

(단위: 개, 명, %)

구 분	기관수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2,908	2,971	3,190	3,264	3,341	77	2.4
교육부	23	35,061	36,634	41,774	45,651	49,679	4,028	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24,755	25,330	30,343	31,688	32,467	779	2.5
외교부	3	611	672	737	796	814	18	2.3
통일부	2	78	83	208	216	209	△7	△3.2
법무부	3	1,158	1,155	1,249	1,307	1,319	12	0.9
국방부	3	559	604	638	731	802	71	9.7
행정안전부	3	1,122	1,314	1,527	1,601	1,694	93	5.8
문화체육관광부	32	7,638	8,000	9,345	9,867	9,861	△6	△0.1
농림축산식품부	12	9,830	10,194	12,580	13,029	13,061	32	0.2
산업통상자원부	40	80,605	83,615	86,350	91,552	94,811	3,259	3.6
보건복지부	29	32,396	34,555	38,563	41,788	42,351	564	1.3
환경부	12	10,327	10,977	13,366	14,023	14,660	637	4.5
고용노동부	12	12,833	14,421	17,846	19,049	19,607	558	2.9
여성가족부	5	720	760	996	1,025	1,032	7	0.7
국토교통부	28	59,220	63,493	68,088	85,014	88,099	3,085	3.6
해양수산부	19	3,313	3,447	4,098	4,665	4,860	195	4.2
중소벤처기업부	11	3,635	3,847	4,611	4,942	5,228	286	5.8
국무조정실	27	3,617	3,677	4,500	5,003	5,122	119	2.4
방송통신위원회	2	420	425	529	541	578	37	6.8
원자력안전위원회	3	684	685	731	795	808	13	1.6
금융위원회	8	21,384	22,341	22,996	23,718	24,294	576	2.4
공정거래위원회	2	485	515	546	589	627	38	6.5
국가보훈처	3	5,075	5,368	6,550	6,983	7,326	343	4.9
인사혁신처	1	553	578	658	662	680	1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4	191	468	505	528	526	△2	△0.4
관세청	1	50	50	50	50	50	0	0.0
방위사업청	2	3,784	3,839	4,290	4,424	4,479	55	1.2
경찰청	1	2,595	2,611	2,935	3,001	3,030	29	1.0

〈표 III-35〉의 계속

(단위: 개, 명, %)

구 분	기관수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소방청	1	213	226	271	291	314	23	7.9
문화재청	1	345	335	376	389	394	5	1.3
산림청	4	340	580	774	940	1,230	290	30.9
농촌진흥청	1	228	292	292	315	324	9	2.9
특허청	6	1,525	1,632	1,628	1,663	1,708	45	2.7
기상청	3	221	231	234	238	351	113	47.5
합 계	370	328,479	345,923	383,373	420,336	435,734	15,398	3.7

주: 1. 기관수(370개)는 350개 공공기관(2021년 1월 지정기준)과 그 부설기관(20개 기관)을 합산한 수치임

2. 임직원 수는 2021년 4월 30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한 기관별 임직원 수를 부처 단위로 합산하여 작성하였으며 수 반올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 수'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임직원 수(정원 기준)의 증감을 기관 단위로 살펴보면, 총 34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100명 이상의 인력이 증원됨.

○ 34개 기관에서 총 1만 1,796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2020년 전체 인력증원 규모(1만 5,398명)의 약 76.6%를 차지함.

○ 가장 큰 규모로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한전MCS(주)로 전년 대비 1,754명이 증원되어 임직원 정원이 2019년 2,633명에서 2020년 4,387명으로 증가함.

- 한전MCS(주)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에 신설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다른 자회사와 달리 검침, 고지서 송달, 현장고객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전MCS(주)에 이어 전년 대비 정원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년 대비 1,312명이 증원되었는데, 이는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원임.

〈표 III-36〉 2020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1	한전MCS(주)	기타공공기관	1,754	18	국립중앙의료원	기타공공기관	192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312	19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기타공공기관	189
3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	20	강원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78
4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58	21	충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77
5	코레일로지스(주)	기타공공기관	704	22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73
6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14	23	한국남동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72
7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510	24	한국남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69
8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359	25	제주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57
9	한국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341	26	한국서부발전(주)	시장형공기업	156
10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36	27	국토안전관리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4
11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301	28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1
12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81	29	한국전기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31
13	코레일테크(주)	기타공공기관	249	3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타공공기관	115
14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27	31	차세대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기타공공기관	113
15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25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3
16	한국수목원정원 관리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12	3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3
17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95	34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5

주: 1. 2020년 인력증원 규모는 2019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20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 수' 항목의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반면 전년 대비 임직원 정원이 감소한 기관은 39개 기관으로, 감소한 정원을 합산하면 총 603명인 것으로 나타남.

○ 임직원 정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2020년 정원이 전년 대비 118명 감소한 884명으로 집계됨.

- 이는 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라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 감원으로 인한 것임.

○ 대한석탄공사에 이어 정원이 크게 감소한 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2020년 정원은 전년 대비 78명 감소한 1,633명으로, 이는 무기계약직 정원 감소¹⁶⁵⁾의 영향임.

〈표 Ⅲ-37〉 2020년 인력 감원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1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18	2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기타공공기관	3
2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78	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3
3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4	23	한국교육개발원	기타공공기관	3
4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5	24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3
5	한국석유공사	시장형 공기업	37	25	한국광해관리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6	(재)우체국물류 지원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6	26	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35	2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
8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기타공공기관	29	28	환경보전협회	기타공공기관	2
9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4	29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기타공공기관	1
10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0	30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공공기관	1
11	한국마사회	준시장형 공기업	15	31	코레일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1
12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장형 공기업	12	32	통일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

16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일반정규직 정원은 2019년 817명에서 2020년 831명으로 14명 증가하였으나, 무기계약직 정원은 퇴직자가 다수 발생하여 2019년 891명에서 2020년 799명으로 92명 감소함

〈표 III-37〉의 계속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1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타공공기관	11	3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
14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9	34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1
15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기타공공기관	8	3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
16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	36	한국상하수도협회	기타공공기관	1
17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기타공공기관	5	37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기타공공기관	1
18	동북아역사재단	기타공공기관	4	38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타공공기관	1
19	국제방송교류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	39	한국과학영재학교	기타공공기관	1
20	대한체육회	기타공공기관	3				

주: 1. 2020년 인력감원 규모는 2019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20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 수' 항목의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나. 신규채용 현황

□ 2020년에는 보건의료·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채용인원은 3만 735명으로 나타남.

○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1만 602명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 이후 3년 연속 3만명 이상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표 III-38〉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2016~2020년)

(단위: 만명,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신규채용	2.10	2.25	3.39	4.13	3.07	△1.06	△25.6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모든 공공기관 유형에서 동일하게 보임.
- 2020년 신규채용 감소 규모를 살펴보면, 준시장형 공기업이 전년 대비 2,527명이 감소하여 가장 큰 규모이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전년 대비 178명이 감소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감소 규모가 가장 작음.
 - 2020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의 영향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여행·관광·레저산업 분야 공공기관의 채용 축소¹⁶⁶⁾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III-39〉 신규 채용 현황(2016~2020년)

(단위: 명,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20,954	22,536	33,896	41,336	30,735	△10,602	△25.6
공기업	5,992	6,807	9,076	11,283	7,684	△3,600	△31.9
· 시장형	3,665	3,666	4,208	4,303	3,231	△1,072	△24.9
· 준시장형	2,326	3,141	4,868	6,980	4,453	△2,527	△36.2
준정부기관	6,155	6,965	9,934	9,259	7,461	△1,798	△19.4
· 기금관리형	1,112	1,790	2,672	1,651	1,474	△178	△10.7
· 위탁집행형	5,043	5,176	7,262	7,607	5,987	△1,620	△21.3
기타공공기관	8,808	8,763	14,886	20,795	15,590	△5,205	△25.0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III-40>과 같음.
- 2020년 신규채용 규모가 증가한 부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교육부(1,091명, 15.5%), 국가보훈처(247명, 36.8%), 산림청(100명, 64.8%) 순임.
 - 2020년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한 부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7,536명, △60.8%), 산업통상자원부(△1,550명, △18.5%), 보건복지부(△816명, △21.2%) 순임.
 - 35개 부처 중 24개 부처¹⁶⁷⁾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하였음.

166) 『이데일리』, 「공공기관 채용 6천명 줄었다...고용빙하기에 공공일자리 역주행」, 2021. 4. 1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29015792&mediaCodeNo=257>, 검색일자: 2021. 8. 25.

167) 국토교통부(△7,536명), 산업통상자원부(△1,550명), 보건복지부(△8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460명), 환경부

〈표 III-40〉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2016~2020년)

(단위: 개, 명, %)

구 분	기관 수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304	141	251	205	195	△10	△4.9
교육부	23	4,466	4,476	7,930	7,037	8,128	1,091	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1,397	1,200	2,953	1,756	1,296	△460	△26.2
외교부	3	30	61	87	87	47	△40	△46.3
통일부	2	8	7	5	10	6	△4	△38.5
법무부	3	68	55	95	92	57	△35	△38.0
국방부	3	32	28	23	33	21	△12	△36.4
행정안전부	3	37	85	352	127	66	△61	△48.0
문화체육관광부	32	392	342	481	363	300	△63	△17.3
농림축산식품부	12	339	662	666	551	375	△176	△32.0
산업통상자원부	40	4,697	4,497	5,613	8,384	6,834	△1,550	△18.5
보건복지부	29	2,707	3,135	3,362	3,849	3,033	△816	△21.2
환경부	12	619	617	783	1,165	769	△396	△34.0
고용노동부	12	832	1,292	2,154	1,320	979	△342	△25.9
여성가족부	5	60	56	65	58	117	59	100.9
국토교통부	28	2,338	3,118	4,781	12,402	4,867	△7,536	△60.8
해양수산부	19	276	241	345	385	350	△35	△9.1
중소벤처기업부	11	266	269	511	470	392	△78	△16.6
국무조정실	27	309	237	683	310	276	△34	△11.0
방송통신위원회	2	55	33	35	37	49	12	32.4
원자력안전위원회	3	84	18	54	79	24	△55	△69.6
금융위원회	8	600	1,022	881	906	784	△122	△13.5
공정거래위원회	2	45	50	64	72	39	△33	△45.8
국가보훈처	3	314	262	828	671	919	247	36.8
인사혁신처	1	37	55	50	49	60	11	22.4
식품의약품안전처	4	36	28	71	70	75	5	7.1
관세청	1	3	14	3	8	2	△6	△75.0
방위사업청	2	150	146	371	389	101	△288	△74.0
경찰청	1	116	81	83	137	124	△13	△9.5

(△396명), 고용노동부(△342명), 방위사업청(△288명), 농림축산식품부(△176명), 금융위원회(△122명), 중소벤처기업부(△78명), 문화체육관광부(△63명), 행정안전부(△61명), 원자력안전위원회(△55명), 외교부(△40명), 법무부(△35명), 해양수산부(△35명), 국무조정실(△34명), 공정거래위원회(△33명), 경찰청(△13명), 국방부(△12명), 기획재정부(△10명), 관세청(△6명), 통일부(△4명), 소방청(△1명)

〈표 III-40〉의 계속

(단위: 개, 명, %)

구 분	기관 수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소방청	1	25	18	25	31	30	△1	△3.2
문화재청	1	7	11	24	16	21	5	31.3
산림청	4	129	163	199	154	253	100	64.8
농촌진흥청	1	20	29	8	25	25	0	0
특허청	6	137	67	43	67	68	1	1.5
기상청	3	21	25	22	23	55	33	144.4
합 계	370	20,954	22,536	33,896	41,336	30,735	△10,602	△25.6

주: 1. 기관수(370개)는 350개 공공기관(2021년 1월 지정기준)과 그 부설기관(20개 기관)을 합산한 수치임

2. 임직원 수는 2021년 4월 30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한 기관별 임직원 수를 부처 단위로 합산하여 작성하였으며 수 반올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에 신규 채용이 100명 이상 이루어진 기관은 53개이며 이 중 상위 10개 기관의 총 신규채용 규모(1만 2,884명)가 전체 신규채용(3만 735명)의 약 41.92%를 차지함.
- 신규채용이 많이 이루어진 10개 기관은 보건 의료 분야, SOC 분야 및 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41〉 2020년 신규 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번호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1	한전MCS(주)	기타공공기관	2,011	6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2
2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965	7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945
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751	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903
4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550	9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기타공공기관	836
5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131	10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90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증감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당서울대병원 등 9개 기관에서 2020년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⁶⁸⁾
- 분당서울대병원은 2020년 전체 공공기관 중 신규채용 규모(1,751명)가 세 번째로 크고 전년 대비 신규 채용 증가 인원(866명)은 가장 많음.
 - 이는 2020년 파견용역업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채용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임.
 - 경북대학교병원은 전년보다 698명 증가한 1,131명을 신규로 채용함.
 - 임상실습동 개원을 앞두고 신규 인원이 충원되면서 채용규모가 확대되었음.
 - (주)한국가스기술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229.7%(345명) 증가한 495명을 채용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년 대비 38.2%(249명) 증가한 903명을 채용함.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정책 및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간호인력 채용으로 채용규모가 확대되었음.

〈표 III-42〉 2020년 신규 채용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

(단위: 명, %)

번호	기관명	유형	'19년 신규채용 (A)	'20년 신규채용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885	1,751	866	97.9
2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433	1,131	698	161.2
3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준시장형공기업	150	495	345	229.7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653	903	249	38.2
5	제주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99	326	127	63.8
6	한국남동발전(주)	시장형공기업	137	254	117	85.4
7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3	129	106	458.7
8	전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22	327	105	47.3
9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663	767	104	15.7

주: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임

2. 전년 대비 증감률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68) 『이데일리』, 「코로나에 인력수요 ↑...공공기관 채용증가 'TOP 5'중 4곳이 의료기관 공공기관」, 2021. 4. 1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29015792&mediaCodeNo=257>, 검색일자: 2021. 8. 25.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에 따른 사회형평적 채용 관련 실적은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모두 달성하였으나, 채용 인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¹⁶⁹⁾
-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여성 채용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0년 총 신규채용 규모 감소에 따라 감소함.
- 장애인 채용 규모는 2019년 대규모 채용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8.9% 감소하였으나 2019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전체 채용대비 여성 비중은 46.8%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¹⁷⁰⁾ 과거 5개년 평균(44.9%)보다 높은 수준임.
 - 전체 채용대비 청년의 비중은 73.8%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율정원 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2018~2019년 일시적 채용 증가 효과와 코로나19의 영향¹⁷¹⁾으로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43〉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2016~2020년)

(단위: 명,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장애인	251 (1.2%)	365 (1.6%)	662 (2.0%)	2,048 (5.0%)	636 (2.1%)	△1,412	△68.9
이전지역인재	1,128 (5.4%)	1,464 (6.5%)	1,940 (5.7%)	2,081 (5.0%)	2,049 (6.7%)	△32	△1.5
비수도권 지역인재	11,108 (53.0%)	11,965 (53.1%)	18,655 (55.0%)	19,690 (47.6%)	16,519 (53.7%)	△3,171	△16.1
청년	17,341 (82.8%)	19,207 (85.2%)	27,627 (81.5%)	27,698 (67.0%)	22,668 (73.8%)	△5,030	△18.2
여성	8,571 (40.9%)	9,881 (43.8%)	15,424 (45.5%)	19,584 (47.4%)	14,399 (46.8%)	△5,185	△26.5
총 신규채용	20,954	22,536	33,896	41,337	30,735	△10,602	△25.6

주: () 안의 수치는 총 신규채용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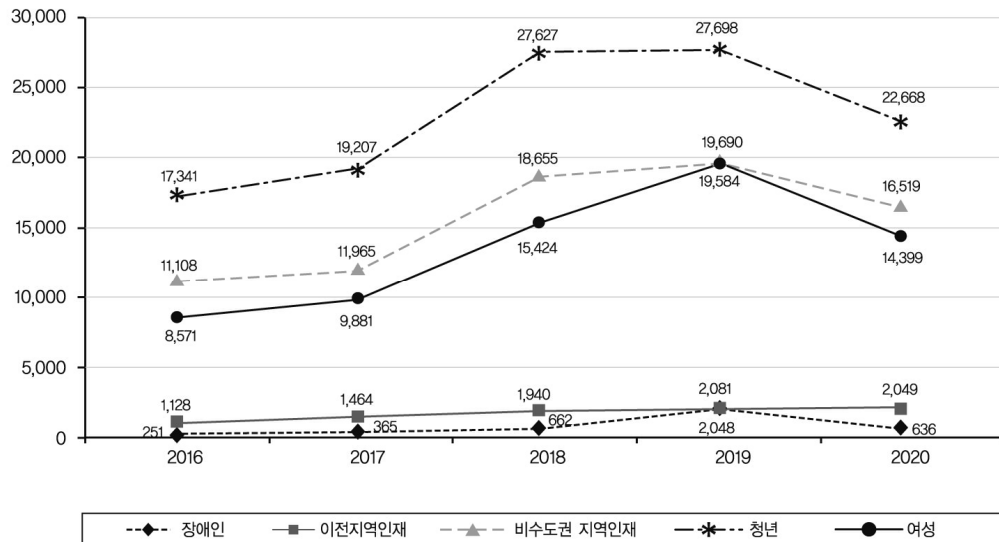
169)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170) 2019년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출범 시 주로 여성이었던 비정규직 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2019년 여성 인력 채용이 급증한 영향으로 2020년 여성인력 채용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모습임

171) 대표적으로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등 3개 기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어 청년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함

〈그림 III-10〉 사회형평적 채용 추이(2016~2020년)

(단위: 명)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를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현황¹⁷²⁾

-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파급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¹⁷³⁾에 청년 미취업자(연령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2020년 기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은 436개이며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303개이고 지방공기업은 133개임.
- 정부는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2021년에는 공공기관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미이행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전개해나갈 계획임.

172) 고용노동부,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3. 5.

173)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

〈표 Ⅲ-44〉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2011~2020년)

(단위: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청년신규고용비율	3.0	3.3	3.5	4.8	4.8	5.9	5.9	6.9	7.4	5.9
의무이행기관비율	42.3	48.1	51.3	72.1	70.1	80.0	80.0	82.1	89.4	84.6

주: 1. 청년의무고용 적용대상인 「공운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체 실적임

2. 2013년까지는 '고용노력의무'의 대상을 만 15~29세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보도자료, 2019. 2. 28. 및 고용노동부,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3. 5.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신규고용비율과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함.

○ 2020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436개소)의 청년신규고용 인원은 2만 2,798명으로 적용기관 전체 정원의 5.9%를 차지하여 국정과제 목표(5%이상)를 상회함.

- 청년 신규고용비율 및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에 기인함.

○ 2020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436개소) 중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84.6%(369개소)이며 미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15.4%(67개소)로 나타남.

-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303개) 중 이행 기관 비율은 83.8%(254개소)이며, 미이행 기관 비율은 16.2%(49개소)임.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최근 6년간 청년 신규고용 및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45>와 <표 Ⅲ-46>과 같음.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고용률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¹⁷⁴⁾해오다 2020년 감소하였으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비율 또한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오다 2020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¹⁷⁵⁾

174) 2015년 5.2% → 2016년 5.8%(0.6%p 증가) → 2017년 6.0%(0.2%p 증가) → 2018년 7.2%(1.2%p 증가) → 2019년 7.8%(0.6%p 증가) → 2020년 5.8%(2.0%p 감소)

175) 2015년 76.1% → 2016년 82.8%(6.7%p 증가) → 2017년 77.5%(5.3%p 감소) → 2018년 82.8%(5.3%p 증가) → 2019년 89.1%(6.3%p 증가) → 2020년 83.8%(5.3%p 감소)

〈표 III-45〉 청년 신규고용 현황(2015~2020년)

(단위: 개소,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합계	408	323,843	15,576 (4.8)	409	326,774	19,236 (5.9)	404	322,123	18,937 (5.9)	447	373,416	25,676 (6.9)	442	385,862	28,689 (7.4)	436	387,574	22,798 (5.9)
「공운법」상 공공기관	276	277,359	14,387 (5.2)	279	281,993	16,326 (5.8)	276	290,800	17,358 (6.0)	308	320,994	23,225 (7.2)	303	332,388	25,786 (7.8)	303	332,383	19,413 (5.8)
지방공기업	132	46,484	1,189 (2.6)	130	44,781	2,910 (6.5)	128	31,323	1,579 (5.0)	139	52,422	2,451 (4.7)	139	53,474	2,903 (5.4)	133	55,191	3,385 (6.1)

주: () 안은 정원 대비 청년고용 비율, 청년고용 비율(%)=청년고용(B)/정원(A)

자료: 고용노동부,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3. 5.

〈표 III-46〉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현황(2015~2020년)

(단위: 개소,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달성	미달	없음		달성	미달	없음		달성	미달	없음		달성	미달	없음		달성	미달	없음		달성	미달	없음
합계	408	286 (70.1)	122 (29.9)	37	409	327 (80.0)	82 (20.0)	25	404	323 (80.0)	81 (20.0)	15	447	367 (82.1)	80 (17.9)	19	442	395 (89.4)	47 (10.6)	18	436	369 (84.6)	67 (15.4)	28
「공운 법」상 공공 기관	276	210 (76.1)	66 (23.9)	15	279	231 (82.8)	48 (17.2)	15	276	214 (77.5)	62 (22.5)	14	308	255 (82.8)	53 (17.2)	11	303	270 (89.1)	33 (10.9)	13	303	254 (83.8)	49 (16.2)	23
지방 공기 업	132	76 (57.6)	56 (42.4)	22	130	96 (73.8)	34 (26.2)	10	128	109 (85.2)	19 (14.8)	1	139	112 (80.6)	27 (19.4)	8	139	125 (89.9)	14 (10.1)	5	133	115 (86.5)	18 (13.5)	5

주: () 안은 청년고용달성 기관수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3. 5.

라.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¹⁷⁶⁾

-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 10월)」에 따라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 10월)」은 2020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¹⁷⁷⁾ 지방공기업 및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 5천명¹⁷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
 -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도에 이어 공공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전환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으며 정규직 고용 관행이 확산되고 있음.
- 2021년 4월 알리오시스템 공시정보 기준, 2020년 말 기준 비정규직 수는 전년 대비 19,178명(23.9%) 감소한 6만 997명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지난 5년간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표 III-47〉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2016~2020년)

(단위: 명,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비정규직 합계	127,004	135,187	104,223	80,175	60,997	△19,178	△23.9

주: 1. 비정규직 합계: 비정규직(기간제) + 소속외인력(파견+용역)

2. 2021년 4월 30일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50개 공공기관(2021년 1월 지정 기준)과 그 부설기관(2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176)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6차)」, 2021. 3. 5. 및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 보도자료, 2021. 3. 5.을 참고하여 작성

177)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 10월)」의 「공공기관」은 2017년 기준 「공운법」상 공공기관 340개와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을 포함한 334개 기관임

178) 기관별 계획 17만 5천명 및 추가전환 여지 3만명 포함

- 2021년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자료 (6차)」에 따른 정규직 전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공운법」상 공공기관(350개)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에 포함된 319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350개의 공공기관 중 2018~2021년에 신규 지정된 31개의 공공기관은 대상기관에서 제외함.
 - 319개 공공기관 기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0만 4,721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110.3%이고, 이 중 실제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0만 249명으로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95.7%로 나타남.
 - 전환결정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127.5%)이었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기타공공기관(96.9%)임.
 - 전환완료 비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99.2%)이 가장 높았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92.1%)이 가장 낮았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결정 인원은 2만 5,841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101.0%이며 전환완료 인원은 2만 5,463명으로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98.5%임.
 - 공공기관 파견 근로자의 전환결정 인원은 7만 8,880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113.7%, 전환완료 인원은 7만 4,786명,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94.8%임.
 -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모두 100%를 초과했으며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기간제 근로자(98.5%)가 파견 근로자(94.8%)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남.

〈표 Ⅲ-48〉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인원 ¹⁾	상시 인원 ²⁾	전환계획 인원 ³⁾ (A)	전환결정 인원 ⁴⁾ (B)	전환결정 비율 (B/A)	전환완료 인원 ⁵⁾ (C)	전환완료 비율 (C/B)
합 계 ⁶⁾	147,145	130,963	94,951	104,721	110.3	100,249	95.7
공기업	72,287	69,284	48,601	58,635	120.6	55,949	95.4
· 시장형	35,954	34,759	25,673	29,404	114.5	27,375	93.1
· 준시장형	36,333	34,525	22,928	29,231	127.5	28,574	97.8
준정부기관	26,127	23,547	19,228	19,808	103.0	19,163	96.7
· 기금관리형	7,847	7,281	6,161	6,825	110.8	6,285	92.1
· 위탁집행형	18,280	16,266	13,067	12,983	99.4	12,878	99.2
기타공공기관	48,731	38,132	27,122	26,278	96.9	25,137	95.7

주. 1. 총인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현원(2017년 특별실태조사)임

2. 상시인원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임

3. 전환계획인원은 2017년 10월 25일 연차별 전환계획상 인원으로, 개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른 잠정적인 정규직 전환계획 인원임

4. 전환결정인원은 전환결정기구(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임

5. 전환완료인원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을 완료한 인원임

6. 고용노동부 자료(334개 기관 기준) 중 2021년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3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출(「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과 2018~2021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11개 기관(사단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한국형수치예보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및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6차)」, 2021. 3. 5.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49〉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인원 ¹⁾	상시 인원 ²⁾	전환계획 인원 ³⁾ (A)	전환결정 인원 ⁴⁾ (B)	전환결정 비율 (B/A)	전환완료 인원 ⁵⁾ (C)	전환완료 비율 (C/B)
합 계 ⁶⁾	46,141	32,966	25,582	25,841	101.0	25,463	98.5
공기업	10,905	9,269	8,147	8,175	100.3	8,164	99.9
· 시장형	1,306	772	466	452	97.0	452	100.0
· 준시장형	9,599	8,497	7,681	7,723	100.5	7,712	99.9
준정부기관	8,244	6,301	5,384	5,245	97.4	5,205	99.2
· 기금관리형	2,038	1,539	1,223	1,203	98.4	1,201	99.8
· 위탁집행형	6,206	4,762	4,161	4,042	97.1	4,004	99.1
기타공공기관	26,992	17,396	12,051	12,421	103.1	12,094	97.4

주: 1. 총인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인원(2017년 특별실태조사)임

2. 상시인원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임

3. 전환계획인원은 2017년 10월 25일 연차별 전환계획상 인원으로, 개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른 잠정적인 정규직 전환계획 인원임

4. 전환결정인원은 전환결정기구(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회위원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임

5. 전환완료인원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을 완료한 인원임

6. 고용노동부 자료(334개 기관 기준) 중 2021년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3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출(「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과 2018~2021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11개 기관(사단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정동극장, IOM이민정책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의료재단법인한일병원,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및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6차)」, 2021. 3. 5.을 참고하여 작성

〈표 Ⅲ-50〉 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인원 ¹⁾	상시 인원 ²⁾	전환계획 인원 ³⁾ (A)	전환결정 인원 ⁴⁾ (B)	전환결정 비율 (B/A)	전환완료 인원 ⁵⁾ (C)	전환완료 비율 (C/B)
합 계 ⁶⁾	101,004	97,907	69,369	78,880	113.7	74,786	94.8
공기업	61,382	60,015	40,454	50,460	124.7	47,785	94.7
· 시장형	34,648	33,987	25,207	28,952	114.9	26,923	93.0
· 준시장형	26,734	26,028	15,247	21,508	141.1	20,862	97.0
준정부기관	17,883	17,156	13,844	14,563	105.2	13,958	95.8
· 기금관리형	5,809	5,742	4,938	5,622	113.9	5,084	90.4
· 위탁집행형	12,074	11,414	8,906	8,941	100.4	8,874	99.3
기타공공기관	21,739	20,736	15,071	13,857	91.9	13,043	94.1

주: 1. 총인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현원(2017년 특별실태조사)임

2. 상시인원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임

3. 전환계획인원은 2017년 10월 25일 연차별 전환계획상 인원으로, 개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른 잠정적인 정규직 전환계획 인원임

4. 전환결정인원은 전환결정기구(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임

5. 전환완료인원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을 완료한 인원임

6. 고용노동부 자료(334개 기관 기준) 중 2021년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3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출(「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과 2018~2021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11개 기관(사단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정동극장, IOM이민정책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의료재단법인한일병원, (주)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및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6차)」, 2021. 3. 5.을 참고하여 작성

3. 재무현황¹⁷⁹⁾

가. 총평

- 2020년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902.4조 원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41.6조 원(4.8%)이 증가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증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투자 확대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 등이 공공기관 자산 증가에 영향을 줌.
- 2013년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2014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2017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부채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0년까지 유지되고 있음.
 - 2020년 부채 규모는 544.8조 원으로 2019년 526.9조 원 대비 약 17.9조 원이 증가함.
 - 부채규모 증가 추세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9.8조 원(2.5%) 증가하였으며, 준정부기관 부채는 전년 대비 3.2조 원(2.7%) 증가, 기타공공기관 부채는 전년 대비 4.9조 원(25.7%) 증가함.

179)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 및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참고

〈표 III-51〉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2016~2020년)

(단위: 조 원, %)

구 분	'16	'17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18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19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20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 부채	500.3	495.1	△5.2 (△1.0)	503.4	8.3 (1.7)	526.9	23.5 (4.7)	544.8	17.9 (3.4)
· 공기업	363.0	364.1	1.1 (0.3)	371.2	7.1 (2.0)	388.1	16.9 (4.6)	397.9	9.8 (2.5)
· 준정부기관	123.4	117.7	△5.7 (△4.6)	117.7	0.0 (0.0)	119.7	2.0 (1.7)	122.9	3.2 (2.7)
· 기타공공기관	13.9	13.4	△0.5 (△3.6)	14.6	1.2 (9.0)	19.1	4.5 (30.8)	24.0	4.9 (25.7)
◇ 자본	299.2	314.8	15.6 (5.2)	324.8	10.0 (3.2)	333.9	9.1 (2.8)	357.6	23.7 (7.1)
· 공기업	200.0	204.9	4.9 (2.4)	208.1	3.2 (1.6)	212.0	3.9 (1.9)	217.8	5.8 (2.7)
· 준정부기관	78.3	87.4	9.1 (11.6)	89.5	2.1 (2.4)	95.8	6.3 (7.0)	109.8	14.0 (14.6)
· 기타공공기관	20.9	22.4	1.5 (7.2)	27.1	4.7 (21.0)	26.1	△1.0 (△3.7)	29.9	3.8 (14.6)
◇ 자산	799.5	809.9	10.4 (1.3)	828.2	18.3 (2.3)	860.8	32.6 (3.9)	902.4	41.6 (4.8)
· 공기업	563.0	569.0	6.0 (1.1)	579.3	10.3 (1.8)	600.1	20.8 (3.6)	615.7	15.6 (2.6)
· 준정부기관	201.7	205.1	3.4 (1.7)	207.2	2.1 (1.0)	215.5	8.3 (4.0)	232.7	17.2 (8.0)
· 기타공공기관	34.8	35.8	1.0 (2.9)	41.7	5.9 (16.5)	45.2	3.5 (8.4)	53.9	8.7 (19.2)

주: 1.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2021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50개 공공기관(2021년 1월 지정 기준) 및 부설기관(2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6~2020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단, 일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9개)의 경우 2018~2020년 신규 지정 및 유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점에 기관별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18년에 한해 과거 한국일반회계 기준(K-GAAP)을 사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서민금융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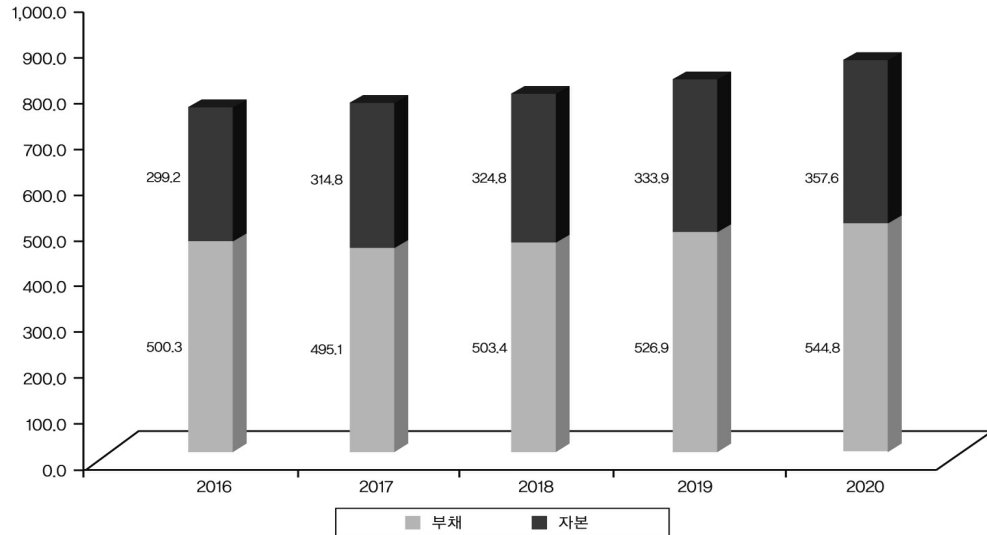
4.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 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5.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1〉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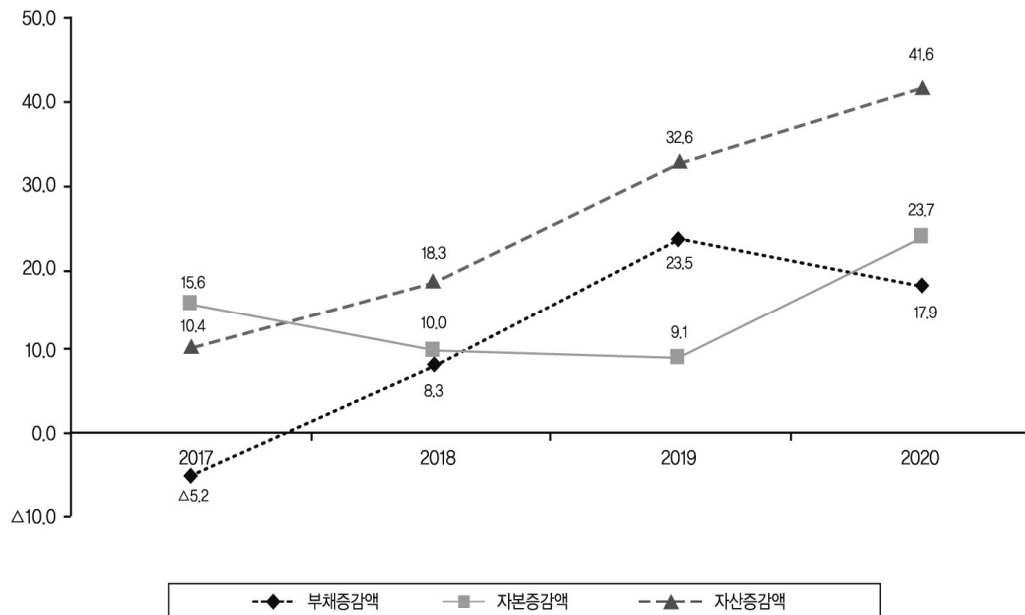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2〉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2017~2020년)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나. 부채 현황

-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544.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9조 원 증가함.
- 공공기관 중 부채 증가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연결재무제표 기준)로 전년 대비 약 3.8조 원의 부채가 증가함.
 - 설비 산업인 발전산업의 특성상 매년 발전소 및 송변전 설비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비가 발생하고, 자금 부족 시 사채발행 및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¹⁸⁰⁾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도로건설을 위한 투자 누계액 증가로 금융부채가 증가하여 부채규모가 전년 대비 1.7조 원 증가함.¹⁸¹⁾
- 「공운법」 제39조의2 및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39개 기관¹⁸²⁾의 2020년 부채규모는 509.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2조 원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160.4%로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함.
- 부채규모는 작년에 수립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2020년 전망치인 521.6조 원보다 약 12.2조 원가량을 개선한 실적임.

180)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

181)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9.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

18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마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강원랜드

〈표 III-52〉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2016~2020년)

(단위: 조 원, %, %p)

구 분	'16	'17	전년 대비 증감	'18	전년 대비 증감	'19	전년 대비 증감	'20	전년 대비 증감
◇ 부채	500.3 (167)	495.1 (157)	△5.2 (△10)	503.4 (155)	8.3 (△2)	526.9 (158)	23.5 (3)	544.8 (152)	17.9 (△6)
공기업	363.0 (182)	364.1 (178)	1.1 (△4)	371.2 (178)	7.1 (0)	388.1 (183)	16.9 (5)	397.9 (183)	9.8 (0)
· 시장형	169.7 (158)	172.2 (163)	2.5 (5)	180.4 (176)	8.2 (13)	196.2 (196)	15.8 (20)	199.1 (205)	2.9 (9)
· 준시장형	193.3 (209)	191.9 (194)	△1.4 (△16)	190.8 (181)	△1.1 (△13)	191.9 (171)	1.1 (△10)	198.8 (165)	6.9 (△6)
준정부기관	123.4 (158)	117.7 (135)	△5.7 (△23)	117.7 (132)	0.0 (△3)	119.7 (125)	2.0 (△7)	122.9 (112)	3.2 (△13)
· 기금관리형	67.1 (153)	60.9 (117)	△6.2 (△37)	57.8 (99)	△3.1 (△17)	57.8 (86)	0.0 (△14)	60.2 (75)	2.4 (△10)
· 위탁집행형	56.3 (163)	56.8 (161)	0.5 (△2)	59.8 (190)	3.0 (29)	61.9 (220)	2.1 (30)	62.8 (213)	0.9 (△7)
기타공공기관	13.9 (67)	13.4 (60)	△0.5 (△7)	14.6 (54)	1.2 (△6)	19.1 (73)	4.5 (19)	24.0 (80)	4.9 (7)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476.1 (178)	472.3 (167)	△3.8 (△10)	479.0 (167)	6.7 (△1)	497.2 (167)	18.2 (0)	509.4 (160)	12.2 (△7)

주: 1. () 안은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2021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50개 공공기관(2021년 1월 지정 기준) 및 부설기관(2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6~2020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단, 일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9개)의 경우 2018~2020년 신규 지정 및 유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점에 기관별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18년에 한해 과거 한국일반회계 기준(K-GAAP)을 사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서민금융진흥원)

4.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 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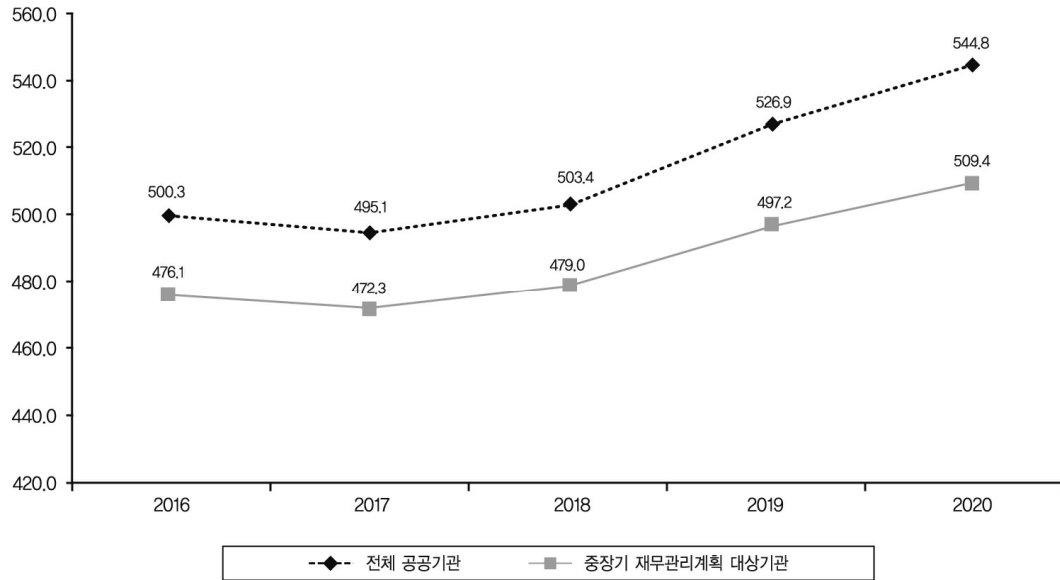
5.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20년(39개)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3〉 부채 규모 추이(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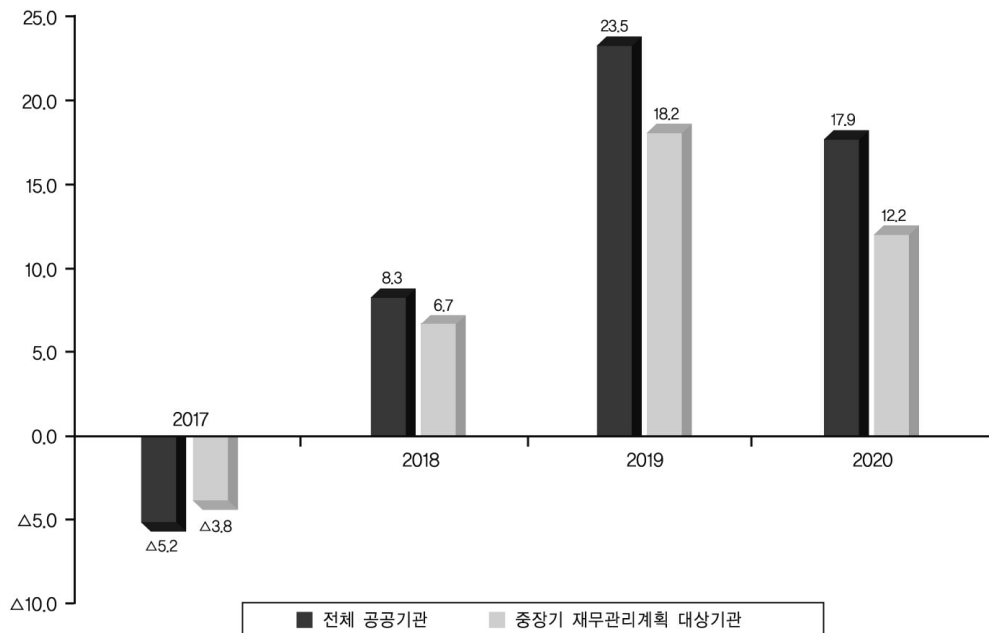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작성 시점에 따라 전체공공기관 개수 및 규모 변동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4〉 부채 증감 추이(2017~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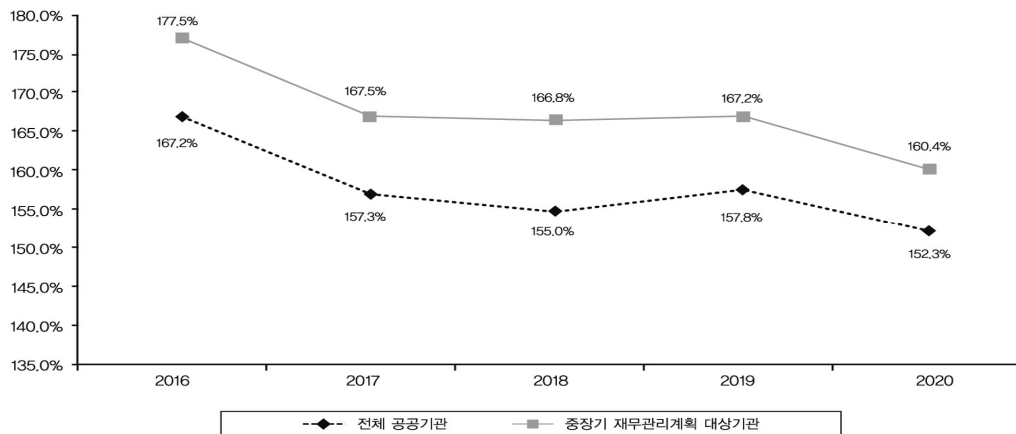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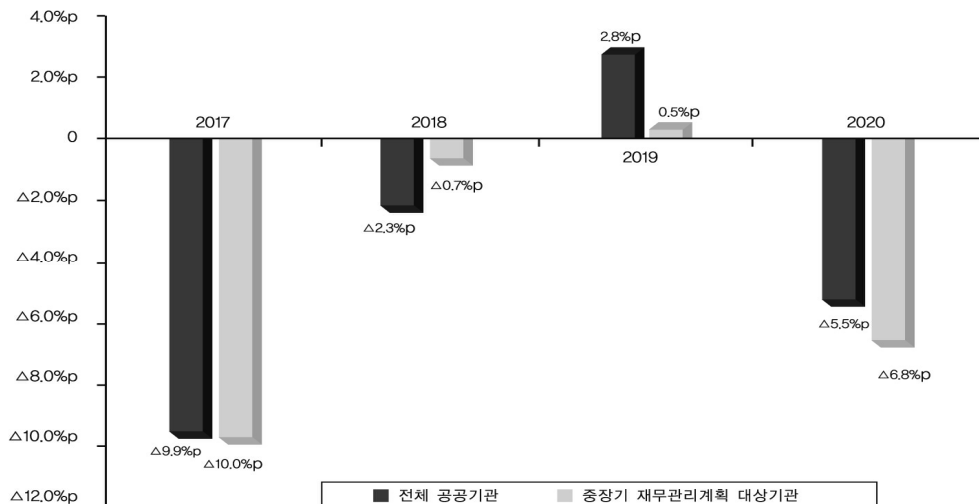
-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¹⁸³⁾은 2013년부터 6년 연속 감소세¹⁸⁴⁾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 잠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하락한 152.3%(△5.5%p)를 나타냄.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39개의 부채비율 역시 2019년 167.2%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하였다가 2020년에는 160.4%로 전년 대비 6.8%p 하락함.

〈그림 III-15〉 부채비율 추이(2016~2020년)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52>의 부채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16〉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7~2020년)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52>의 부채비율 증감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83) 부채비율: 부채/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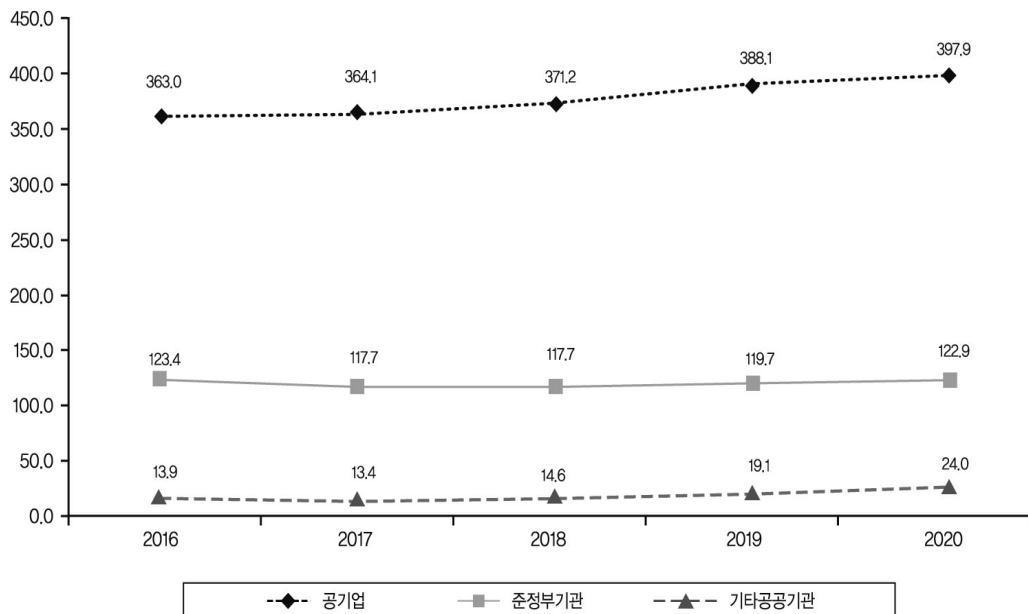
184) 부채비율(%): ('13) 217 ('14) 201 ('15) 183 ('16) 167 ('17) 157 ('18) 155 ('19) 158 ('20) 152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공기업은 최근 5년간 부채규모가 증가했고, 준정부기관은 최근 3년간 부채규모가 증가했으며, 기타공공기관 역시 2017년 잠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부채 규모면에서 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전년 대비 부채 증가액(17.9조 원)의 절반 이상(9.8조 원, 54.8%)이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기인하며 이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 공기업 부채 증가액의 대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형 SOC 기관이 다수 포함된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발생함.¹⁸⁵⁾
 - 준정부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3.2조 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전년 대비 2.4조 원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 부채증가율의 경우, 준정부기관은 2017년 이후로 소폭씩 증가하고 있으나,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019년까지 3년간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그림 Ⅲ-17〉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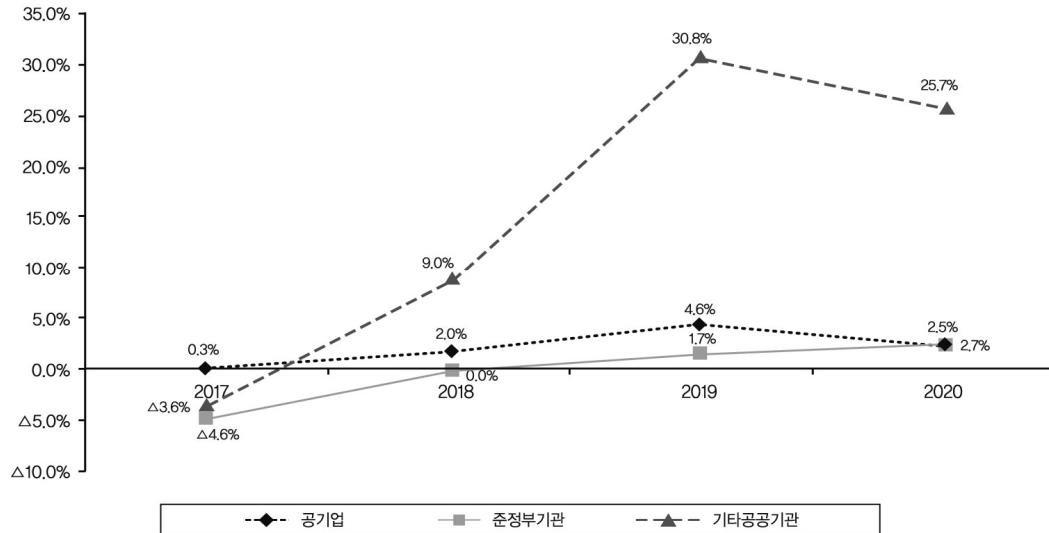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85)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발생한 부채 증가액은 6.9조 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 증가액의 70.4% 차지

〈그림 Ⅲ-18〉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2017~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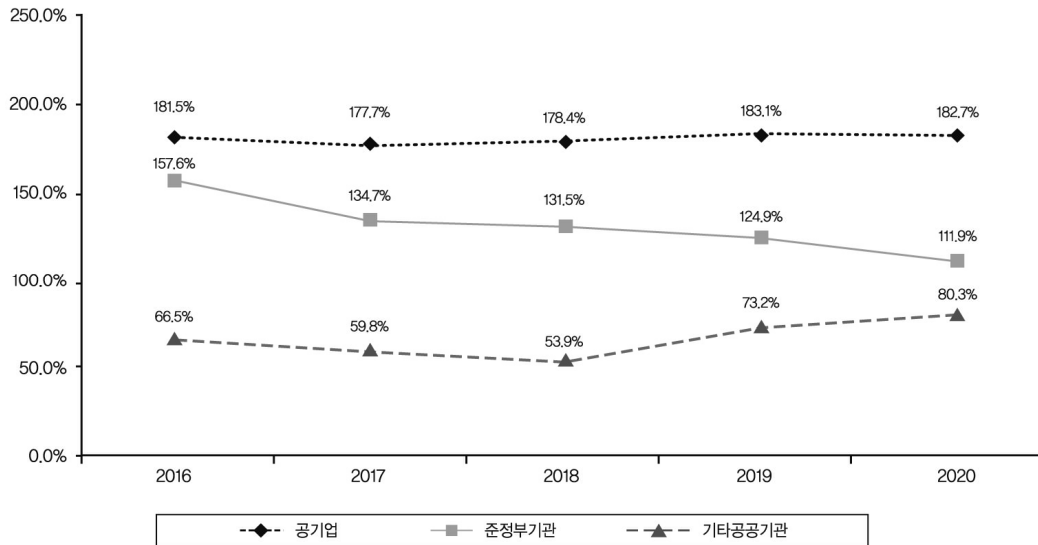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는 상이함.

- 공기업은 2017년 이후 2년간 부채비율이 상승하다가, 2020년에는 다시 하락하였으며, 준정부기관은 2016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기타공공기관은 2016년 이후 하락하다가, 2019년 다시 상승함.
-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대체로 완만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반면 준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부채비율 개선 실적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6년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186)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0년 부채비율은 80.3%로 나타남.
- 부채비율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 개선 실적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임.
 - 준정부기관은 다른 두 유형과 달리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폭은 2018년 소폭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부터는 다시 커지고 있음.
 -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018~2020년 사이 증감폭 변동이 유사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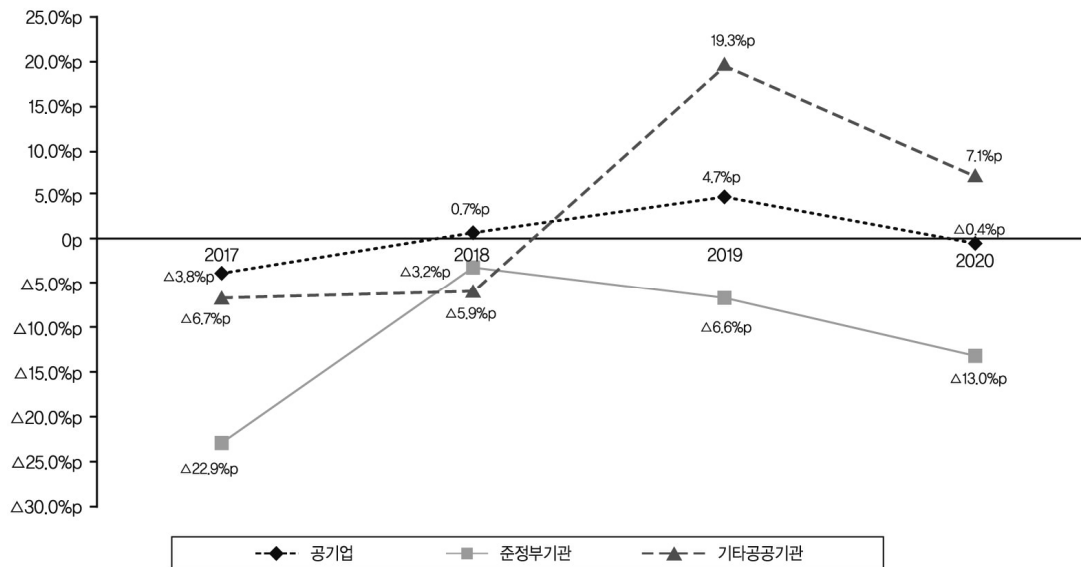
186) 2017년 전년 대비 6.7%p 감소, 2018년 전년 대비 5.9%p 감소

〈그림 Ⅲ-19〉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2016~2020년)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Ⅲ-52>의 부채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7~2020년)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Ⅲ-52>의 부채비율 증감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가 약 207.4조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약 199.1조 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38.1%와 36.6%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전년 대비 약 8.3조 원(4.2%)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인사혁신처로 전년 대비 약 0.3조 원(△4.9%) 감소함.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급증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SOC 분야 공기업의 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¹⁸⁷⁾한 것에서 기인함.
 - 인사혁신처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 감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채 감축 실적(0.3조 원)에서 기인함.

〈표 III-53〉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2016~2020년)

(단위: 개, 억 원, %)

구 분	기관 수	'16	'17	'18	'19(A)	'20(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1,324	1,378	1,456	2,448	3,909	1,462	59.7%
교육부	23	178,506	174,705	175,308	176,457	176,648	191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34,871	31,636	27,936	29,882	32,159	2,278	7.6%
외교부	3	1,215	1,043	1,248	1,120	1,245	126	11.2%
통일부	2	30	30	34	123	160	38	30.8%
법무부	3	481	638	693	700	714	14	2.0%
국방부	3	309	310	274	291	329	37	12.8%
행정안전부	3	318	438	468	540	636	97	17.9%
문화체육관광부	32	23,580	21,478	24,375	23,187	22,410	△777	△3.4%
농림축산식품부	12	92,706	98,701	97,766	104,625	114,714	10,089	9.6%
산업통상자원부	40	1,718,721	1,737,076	1,820,855	1,974,665	1,991,459	16,794	0.9%
보건복지부	29	97,374	88,492	124,844	136,328	137,608	1,280	0.9%
환경부	12	152,232	151,795	155,527	154,759	156,270	1,511	1.0%
고용노동부	12	7,442	7,904	9,238	10,511	10,759	248	2.4%
여성가족부	5	69	66	87	129	130	1	0.9%
국토교통부	28	2,009,775	2,006,495	1,982,866	1,990,899	2,074,160	83,261	4.2%
해양수산부	19	34,542	34,353	42,006	63,037	83,311	20,275	32.2%

187) 한국토지주택공사(3조), 한국도로공사(1.7조)

〈표 III-53〉의 계속

(단위: 개, 억 원, %)

구 분	기관 수	'16	'17	'18	'19(A)	'20(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중소벤처기업부	11	163,360	165,857	174,021	184,416	221,014	36,598	19.8%
국무조정실	27	4,890	4,066	3,934	4,348	4,723	375	8.6%
방송통신위원회	2	3,587	2,713	2,370	2,351	2,567	216	9.2%
원자력안전위원회	3	494	421	610	497	513	15	3.1%
금융위원회	8	394,043	343,432	301,876	326,615	333,344	6,728	2.1%
공정거래위원회	2	86	77	92	91	119	28	31.2%
국가보훈처	3	1,185	753	877	903	981	78	8.7%
인사혁신처	1	73,309	68,052	73,759	68,341	64,984	△3,356	△4.9%
식품의약품안전처	4	59	150	197	368	429	61	16.7%
관세청	1	4	3	3	3	3	△1	△17.6%
방위사업청	2	7,301	7,861	9,441	9,313	10,412	1,100	11.8%
경찰청	1	267	247	444	584	723	138	23.7%
소방청	1	147	152	118	119	141	22	18.6%
문화재청	1	116	107	82	93	118	25	26.7%
산림청	4	139	41	64	189	181	△8	△4.1%
농촌진흥청	1	56	79	137	155	125	△29	△18.8%
특허청	6	872	850	844	900	1,014	114	12.7%
기상청	3	48	62	36	17	31	14	82.6%
합 계	370	5,003,456	4,951,461	5,033,886	5,269,000	5,448,045	179,045	3.4%

주: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2.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 가능
 3. 2021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50개 공공기관(2021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기준 부채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19년 부채 상위 10개¹⁸⁸⁾ 기관과 1개 기관 차이가 나며, 일부 순위변동이 발생하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부채 규모 상위 10개 기관으로 새롭게 편입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제외되었음.

○ 10개 기관 모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이며 이 중 국가철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7개 기관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

188) 2019년 부채 상위 10개 기관의 순위: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국가철도공단, 6. 한국석유공사, 7. 중소기업진흥공단, 8. 한국철도공사, 9. 예금보험공사, 10. 한국수자원공사

〈표 III-54〉 2020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조 원, %, %p)

순위	기관명	2019년	2020년 (A)	증감액	증감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전망치 (B)	전망치 대비 초과감축 (B-A)
1	한국전력공사	128.7 (187)	132.5 (188)	3.8 (1)	2.9 (-)	135.1 (195)	2.59 (7)
2	한국토지주택공사	126.7 (254)	129.7 (234)	3.1 (△21)	2.4 (-)	132.3 (246)	2.55 (13)
3	한국도로공사	29.5 (81)	31.2 (82)	1.7 (1)	5.8 (-)	31.5 (83)	0.33 (1)
4	한국가스공사	31.2 (383)	28.2 (364)	△3.0 (△18)	△9.6 (-)	28.5 (365)	0.33 (1)
5	국가철도공단	20.3	20.3	0.0	0.0 (-)	21.1	0.77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3 (596)	19.5 (562)	3.2 (△34)	19.4 (-)	19.7 (650)	0.20 (88)
7	한국석유공사	18.1 (3415)	18.6 (-)	0.5 (-)	2.8 (-)	20.4 (자본잠식) ¹⁸⁹⁾	1.76 (자본잠식)
8	한국철도공사	16.3 (258)	18.0 (248)	1.7 (△10)	10.3 (-)	16.3 (284)	△1.71 (36)
9	한국수자원공사	13.9 (167)	13.8 (153)	△0.1 (△14)	△0.6	14.5 (163)	0.67 (11)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2.3 (64)	12.4 (59)	0.1 (△5)	0.3 (-)	13.0 (81)	0.62 (21)

주: 1. () 안은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3. 국가철도공단은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5.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계산하는데 일부 오차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다. 자산 현황

□ 2020년 공공기관 자산 총액은 902.4조 원으로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임대자산 증가(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투자 확대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1.6조 원(4.8%) 증가함.

○ 2020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615.7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68.2%)을 차지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은 232.7조 원(25.8%), 기타공공기관은 53.9조 원(6.0%) 수준을 보임.

189)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부채 규모가 자산 수준을 넘어서면서 자본이 (-) 상태인 “자본잠식”을 나타내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도 2020년 부채비율을 “자본잠식”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20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규모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공기업(15.6조 원, 2.6%)과 준정부기관(17.2조 원, 8.0%), 기타공공기관(8.7조 원, 19.2%) 모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유형 중 기타공공기관 자산 증가율이 19.2%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이 0.1조 원 증가하여 가장 작게 증가하였음.

□ 그림 <Ⅲ-21>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표 Ⅲ-55〉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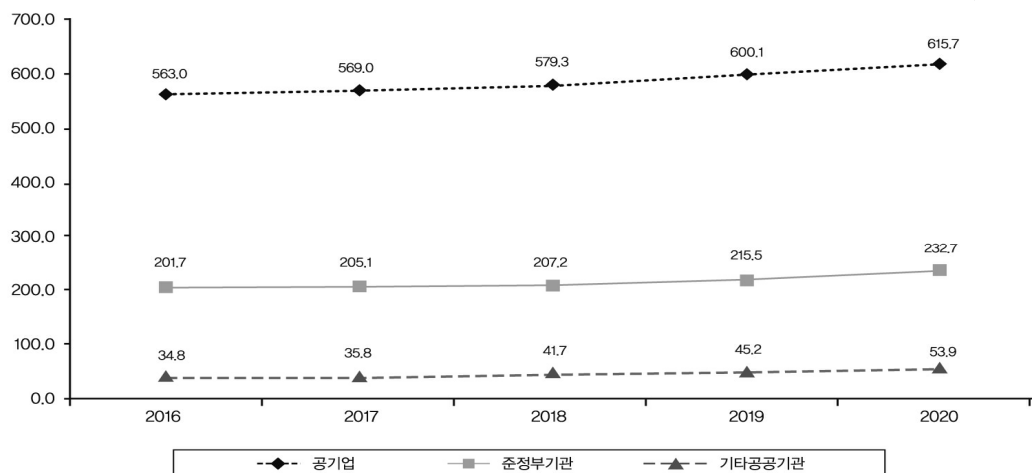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 분	'16	'17	'18	'19(A)	'20(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799.5	809.9	828.2	860.8	902.4	41.6	4.8
공기업	563.0	569.0	579.3	600.1	615.7	15.6	2.6
· 시장형	277.3	278.0	283.0	296.2	296.3	0.1	0.0
· 준시장형	285.7	291.0	296.3	304.0	319.4	15.4	5.1
준정부기관	201.7	205.1	207.2	215.5	232.7	17.2	8.0
· 기금관리형	110.9	113.1	116.0	125.4	140.4	15.0	12.0
· 위탁집행형	90.8	92.0	91.3	90.1	92.3	2.2	2.4
기타공공기관	34.8	35.8	41.7	45.2	53.9	8.7	19.2

주: 소수점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액의 합과 합계가 일부 오차 발생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21〉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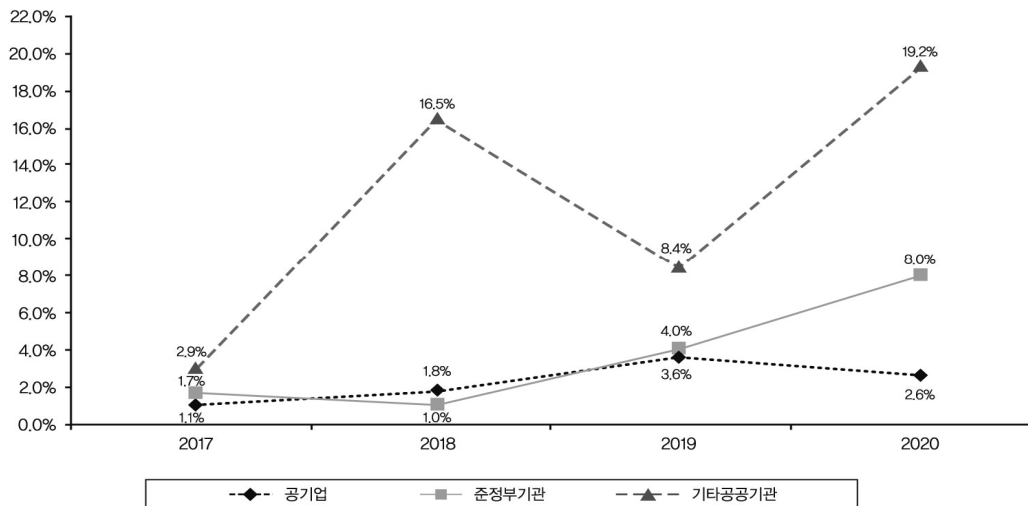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2019년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증가율이 상승한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에 공기업은 증가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크게 상승함.
- 공기업은 2017년 이후 자산증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20년 2.6% 수준으로 소폭 하락함.
 - 준정부기관은 2018~2020년 사이 자산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8.0%의 자산 증가율을 보임.
 - 기타공공기관은 2018년 자산증가율이 16.5%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8.4%로 대폭 하락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2%의 증가율을 보임.

〈그림 III-2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2017~2020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공공기관 자산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가 약 329조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이 약 283조 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함.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은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36.4%, 31.3%로 총 68%에 육박함.
 - 자산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전년 대비 약 15.8조 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년 대비 약 0.2조 원 감소하였음.

〈표 Ⅲ-56〉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2016~2020년)

(단위: 개, 억 원, %)

구 분	기관 수	'16	'17	'18	'19(A)	'20(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6,367	6,644	6,869	8,287	10,209	1,923	23.2%
교육부	23	377,151	393,275	396,337	420,625	445,160	24,535	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122,548	124,696	123,660	126,835	133,772	6,936	5.5%
외교부	3	2,931	2,941	3,205	3,112	2,925	△187	△6.0%
통일부	2	112	108	118	204	226	22	10.6%
법무부	3	2,130	2,185	2,217	2,233	2,252	19	0.9%
국방부	3	595	607	848	878	873	△5	△0.5%
행정안전부	3	746	969	990	1,021	1,173	152	14.9%
문화체육관광부	32	79,440	79,111	89,052	94,687	92,946	△1,740	△1.8%
농림축산식품부	12	141,380	148,170	146,941	154,098	158,940	4,842	3.1%
산업통상자원부	40	2,658,615	2,650,680	2,696,760	2,823,832	2,826,509	2,677	0.1%
보건복지부	29	369,302	364,828	360,776	338,313	357,202	18,889	5.6%
환경부	12	222,097	227,335	236,620	241,471	250,436	8,965	3.7%
고용노동부	12	18,464	18,638	20,415	22,288	23,116	829	3.7%
여성가족부	5	197	191	189	184	172	△13	△6.8%
국토교통부	28	2,924,218	2,992,707	3,050,667	3,127,006	3,285,846	158,840	5.1%
해양수산부	19	122,692	124,616	156,352	177,028	225,365	48,337	27.3%
중소벤처기업부	11	210,662	219,913	228,345	237,145	287,209	50,064	21.1%
국무조정실	27	9,751	9,437	9,392	9,687	9,999	311	3.2%
방송통신위원회	2	6,961	5,964	5,518	5,367	5,737	370	6.9%
원자력안전위원회	3	1,069	964	1,805	1,816	1,843	27	1.5%
금융위원회	8	506,736	512,302	524,901	584,654	662,844	78,190	13.4%
공정거래위원회	2	831	752	717	683	659	△24	△3.6%
국가보훈처	3	4,137	4,013	4,173	4,046	3,866	△180	△4.5%
인사혁신처	1	176,520	177,557	182,138	188,770	198,071	9,301	4.9%
식품의약품안전처	4	75	167	212	357	413	56	15.8%
관세청	1	24	28	33	38	41	2	6.3%
방위사업청	2	21,226	22,313	24,514	25,357	27,468	2,110	8.3%
경찰청	1	3,365	3,214	3,209	2,942	2,969	27	0.9%
소방청	1	1,113	1,257	1,337	1,400	1,452	53	3.8%
문화재청	1	150	146	125	147	176	29	19.9%
산림청	4	1,172	768	774	871	844	△26	△3.0%
농촌진흥청	1	236	190	212	247	257	10	4.1%
특허청	6	2,153	2,241	2,475	2,510	2,715	205	8.1%
기상청	3	78	95	71	53	103	50	92.6%
합 계	370	7,995,243	8,099,020	8,281,966	8,608,193	9,023,786	415,593	4.8%

주: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2.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가능

3. 2021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50개 공공기관(2021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19년 자산 상위 10개 기관¹⁹⁰⁾과 동일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관은 모두 부채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됨.

-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9개 기관이 전년 대비 자산이 증가함.
- 전체 공공기관 중 자산 증가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약 8.8조 원, 5.0% 증가)이며, 자산 증감률이 가장 큰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약 3.9조 원, 20.4% 증가)이고, 자산 감소는 한국가스공사(약 3.4조 원, 8.7% 감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증가로 인한 자산 증가액 규모가 큼.

〈표 III-57〉 2020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 원, %)

순위	기관명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1	한국전력공사	1,975,978	2,031,421	55,443	2.8%
2	한국토지주택공사	1,765,151	1,852,865	87,714	5.0%
3	한국도로공사	657,814	691,876	34,062	5.2%
4	한국가스공사	393,119	359,098	△34,021	△8.7%
5	국민건강보험공단	315,207	332,152	16,945	5.4%
6	한국철도공사	226,606	252,765	26,159	11.5%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14,495	239,038	24,543	11.4%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0,728	229,698	38,970	20.4%
9	한국수자원공사	222,548	229,041	6,494	2.9%
10	한국주택금융공사	190,805	200,326	9,521	5.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9. 요약 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4. 손익현황¹⁹¹⁾

□ 최근 공공기관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년간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흑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공공기관 2016년 15.7조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실현

190)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1)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및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보도자료, 2021. 5. 14. 참고

하였으나 2017년, 2018년 각각 7.3조 원, 0.7조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당기순이익이 0.8조 원, 2020년 5.3조 원으로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2020년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당기순이익이 2019년보다 감소함.
- 공기업의 2020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40%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중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0.9조 원 감소하여 54%의 감소율을 보임.
 -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0년 약 3.1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순이익이 전년 대비 3.6조 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이 4.5조 원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은 2020년 약 2.8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7조 원 순이익이 늘어나 전년 대비 4천% 이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

〈표 III- 58〉 당기순손익 현황(2016~2020년)

(단위: 조 원, %)

구 분	'16	'17	전년 대비 증감	'18	전년 대비 증감	'19	전년 대비 증감	'20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15.7	7.3	△8.4	0.7	△6.6	0.8	0.1	5.3	4.5 (542.0)
공기업	9.0	4.2	△4.8	2.0	△2.2	1.2	△0.8	△0.6	△1.8 (△147.8)
· 시장형	6.3	1.0	△5.3	△1.1	△2.1	△1.7	△0.6	△2.5	△0.9 (△53.6)
· 준시장형	2.8	3.2	0.4	3.1	△0.1	2.9	△0.2	2.0	△0.9 (△32.3)
준정부기관	6.5	2.9	△3.6	△1.3	△4.2	△0.5	0.9	3.1	3.6 (760.7)
· 기금관리형	3.1	2.4	△0.7	2.7	0.3	2.5	△0.2	1.6	△0.9 (△35.1)
· 위탁집행형	3.4	0.5	△3.0	△4.0	△4.5	△2.9	1.0	1.5	4.5 (151.1)
기타공공기관	0.1	0.2	0.1	0.0	△0.2	0.1	0.1	2.8	2.7 (4210.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14.8	6.9	△7.9	0.7	△6.2	0.4	△0.4	2.8	2.4 (681.4)

주: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6~2020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단, 일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9개)의 경우 2018~2020년 신규 지정 및 유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점에 기관별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18년에 한해 과거 한국일반회계 기준(K GAAP)을 사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서민금융진흥원)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을 대상으로 금액 산출

3. 공무원연금, 신보 등 일부 공공기관은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당기순이익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상기 수치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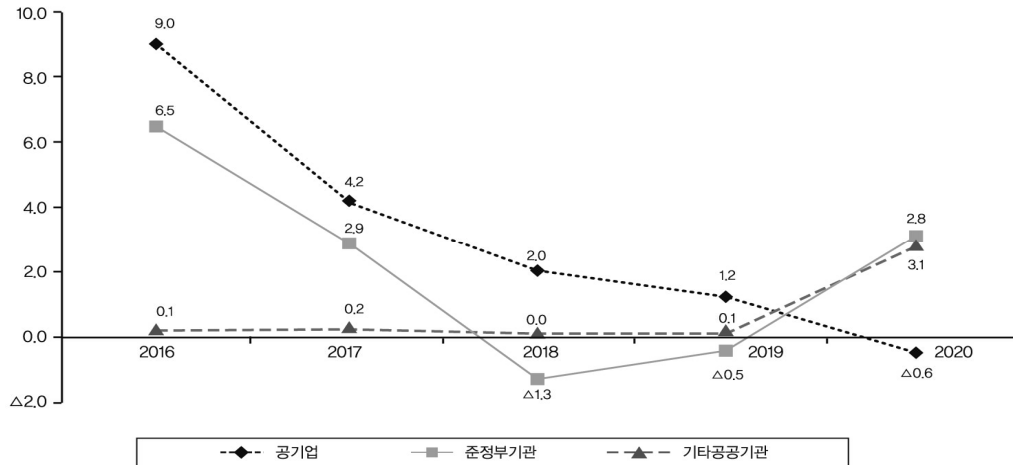
4.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오차 발생가능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20년(39개)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0.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3〉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2016~2020년)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0.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에 순이익을 실현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19년 대상기관¹⁹²⁾과 많은 차이를 보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 1위를 유지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 2위에서 2020년 4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년 5위에서 2020년 7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수변사업 수입 증대 등을 통한 매출 증가(3.6조 원, 전년 대비 0.78조 원 증가), 자금수지 정밀분석을 통한 하반기 무차입 운영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개선됨에 따라 2019년 9위에서 2020년 6위로 상승함.¹⁹³⁾
- 2019년에 당기순이익 상위 10개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레저 및 운송 분야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2020년에는 상위 10개 기관에서 제외됨.
 - 위 4개 기관은 당기순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당기순손실 상위 10개 기관에 해당함.
- 2020년에 신규 편입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위, 한국전력공사는 3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위, 서민금융진흥원은 8위, 대한적십자사는 9위, 한국예탁결제원은 10위에 해당함.

192)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193)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 한국전력공사는 국제 연료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발전원가가 하락하며 영업 비용이 감소되어 2020년 당기순이익이 개선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수입 증가로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이 감소하여 비용은 적게 증가함에 따라 2020년 당기순이익이 개선됨.¹⁹⁴⁾
 - 당기순이익 상위 10개 기관 중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3개 기관¹⁹⁵⁾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예금보험공사는 2020년에는 순이익 4위를 기록하였으나,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함.
- 2020년에 순손실이 발생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19년 대상기관¹⁹⁶⁾과 차이를 보임.
- 2019년 순손실 7위, 3위였던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20년에는 순손실 상위 1, 2위를 차지함.
 -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자산 손상(해외 광산, 유전 등 공정평가 손실)¹⁹⁷⁾으로 인해 2020년 3.7조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대비 두 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약 3조 원 증가하였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8위 → 7위), 한국철도공사(9위 → 3위)로 순위가 변동함.
 -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 2020년에 신규로 편입됨.
 - 2019년에 순손실이 발생한 상위 10개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석탄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기관은 2020년 당기순손실 상위 10개 기관에서 제외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4개 기관의 경우, 2020년 순이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 상위 10개 기관으로 신규 편입됨.

194)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195) 예금보험공사(△295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918억 원), 서민금융진흥원(△974억 원)

196)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197) 기획재정부,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2021. 5. 3.

〈표 III-59〉 2020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 원, %)

순 위	기관명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순이익	1 한국토지주택공사	22,447	33,029	10,582	47.1
	2 한국해양진흥공사	△1,674	26,045	27,719	1,655.6
	3 한국전력공사	△22,635	20,925	43,560	192.4
	4 예금보험공사	19,410	19,115	△295	△1.5
	5 국민건강보험공단	△36,266	16,160	52,426	144.6
	6 한국수자원공사	1,306	3,186	1,881	144.0
	7 주택도시보증공사	3,836	2,918	△918	△23.9
	8 서민금융진흥원	1,996	1,021	△974	△48.8
	9 대한적십자사	179	988	809	451.5
	10 한국예탁결제원	489	978	489	99.9
순손실	1 한국석유공사	△1,548	△24,392	△22,844	△1476.2%
	2 한국광물자원공사	△5,638	△13,543	△7,905	△140.2%
	3 한국철도공사	△469	△13,427	△12,958	△2761.5%
	4 한국마사회	1,449	△4,368	△5,817	△401.5%
	5 인천국제공항공사	8,634	△4,229	△12,863	△149.0%
	6 (주)강원랜드	3,347	△2,759	△6,105	△182.4%
	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61	△2,094	△1,533	△273.1%
	8 한국주택금융공사	5,525	△1,651	△7,176	△129.9%
	9 한국가스공사	583	△1,607	△2,190	△375.8%
	10 한국공항공사	188	△1,487	△1,675	△889.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0. 요약 순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5월 정부는 39개 출자기관 중 올해 배당이 결정된 22개¹⁹⁸⁾ 출자기관의 배당금 1조 4,396억 원 수납을 확정함.

○ 2021년 정부배당금이 전년 대비 356억 원 증가함에 따라, 평균 배당성향¹⁹⁹⁾은 전년 대비 4.34%p 상승한 36.92%p임.²⁰⁰⁾

198) 17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2021년 배당에서 제외

- 당기순손실 발생(11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이월결손 보전 등(6개):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항철도 주식회사, 한국해양진흥공사

199)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 ('17) 31.89→('18) 34.98→('19) 32.48→('20) 32.58(0.10%p)→('21) 36.92(4.34%p)

-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88관광개발(주)는 2020년 무배당기관에서 2021년 배당 실현기관으로 전환됨.
-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출자기관의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 후자 전환 및 배당 실현기관의 실적 개선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정부배당금이 증가함.
- 소관·회계별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가 9,194억 원이고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이 5,023억 원임.

〈표 III-60〉 정부 배당수입 추이(2017~2021년)

(단위: 개, 억 원,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출자기관 수	36	36	38	39	39	-
유배당기관	23	25	21	22	22	-
정부배당금	15,562	18,060	14,382	14,040	14,396	+356
일반회계	7,888	8,622	6,696	6,069	9,194	+3,125
특별·기금	7,674	9,438	7,685	7,971	5,203	△2,768
배당성향	31.89	34.98	32.48	32.58	36.92	+4.34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보도자료, 2021. 5. 14.

〈표 III-61〉 39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 원)

기관명		'20년 배당			'21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71	2,248	3,920	2,275	3,570	5,845
2	중소기업은행	1,662	-	1,662	2,208	-	2,208
3	한국산업은행	1,030	90	1,120	1,925	172	2,096
4	한국전력공사	-	-	-	1,421	-	1,421
5	한국주택금융공사	0	0	0	392	33	425
6	한국수출입은행	713	11	724	273	4	277
7	부산항만공사	201	-	201	238	-	238
8	인천항만공사	15	5	21	157	56	213
9	한국자산관리공사	139	-	139	142	-	142
10	한국도로공사	1	332	334	1	118	120

200) 기획재정부,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보도자료, 2021. 5. 14.

〈표 III-61〉의 계속

(단위: 억 원)

기관명		'20년 배당			'21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11	울산항만공사	107	0.1	107	77	0.1	77
12	한국방송공사	1	-	1	33	-	33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	11	25	-	25
14	한국부동산원	13	-	13	10	-	10
15	한국농어촌공사	165	-	165	9	-	9
16	한국교육방송공사	-	-	-	3	4	8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	13	2	-	2
18	한국공항공사	209	195	404	-	-	-
19	한국가스공사	79	13	92	-	-	-
20	한국조폐공사	39	-	39	-	-	-
21	한국관광공사	-	-	-	-	-	-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
23	한국수자원공사	-	-	-	-	-	-
24	한국석유공사	-	-	-	-	-	-
25	한국광물자원공사	-	-	-	-	-	-
26	한국철도공사	-	-	-	-	-	-
27	서울신문사	-	-	-	-	-	-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
29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30	새만금개발공사	-	-	-	-	-	-
3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	-	-	-	-
32	주택도시보증공사	-	707	707	-	616	616
33	한국투자공사	-	367	367	-	580	580
34	한국지역난방공사	-	-	-	-	39	39
35	대한송유관공사	-	8	8	-	10	10
36	88관광개발주)	-	-	-	-	0.2	0.2
37	인천국제공항공사	-	3,994	3,994	-	-	-
38	공항철도주식회사	-	-	-	-	-	-
39	대한석탄공사	-	-	-	-	-	-
합 계		6,069 (18개)	7,971 (13개)	14,040 (22개)	9,194 (17개)	5,203 (13개)	14,396 (22개)

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신문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공항철도주식회사는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님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보도자료, 2021. 5. 14.

5. 보수수준²⁰¹⁾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 2020년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²⁰²⁾의 평균보수는 약 6,931만 원 수준으로 유형별 평균보수 수준은 공기업(약 8,155만 원), 기타공공기관(약 6,850만 원), 준정부기관(약 6,681만 원) 순으로 높음.²⁰³⁾
- 공기업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약 8,155만 원)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보다 높음.
 - 시장형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약 8,582만 원)는 2020년 전체 기관 유형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1,651만 원, 준정부기관보다 약 1,901만 원, 기타공공기관보다 약 1,732만 원 높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6,681만 원)는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250만 원 낮으며 기타공공기관 유형과 비교해도 약 169만 원 적은 수준임.
 -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는 약 6,482만 원 수준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449만 원 낮은 수준임.

201)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및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21. 4. 30. 기준) 참고

202)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함

203) 직원 평균보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상시종업원 전체에게 지급된 총 보수지급액을 상시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 (여기서 상시종업원은 각월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 정규직원 수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임). 기관별 직원 평균보수는 알리오시스템 공시항목 중 '7.직원 평균보수' 항목에 공시된 '1인당 평균 보수액'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함. 알리오시스템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등의 세부항목으로 지급된 총 금액으로 산출

〈표 III-62〉 직원 평균보수 현황(2016~2020년, 정규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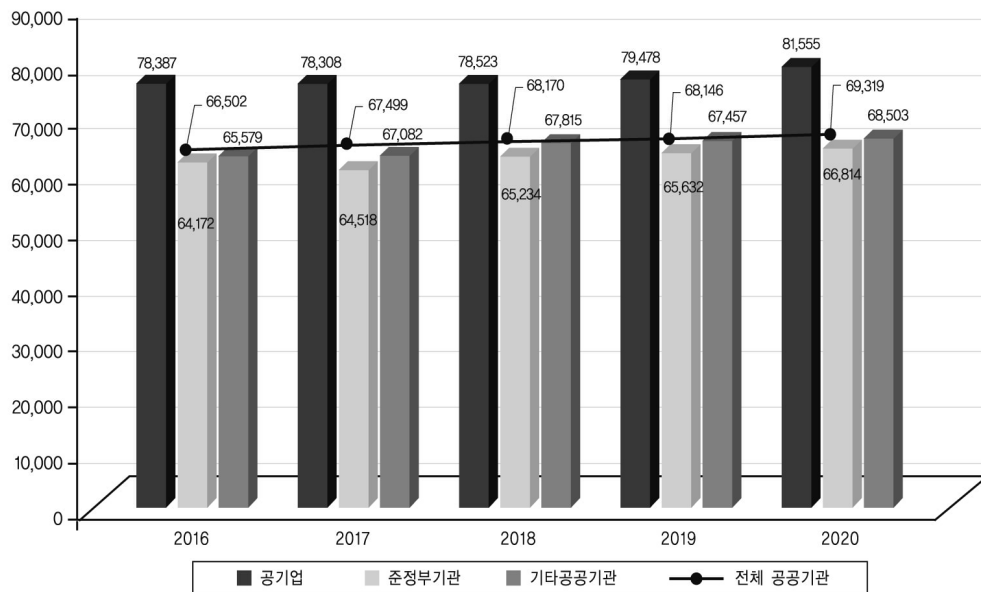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66,502	67,499	68,170	68,146	69,319	1,173	1.7
공기업	78,387	78,308	78,523	79,478	81,555	2,078	2.6
· 시장형	81,249	81,910	82,632	84,300	85,823	1,523	1.8
· 준시장형	76,097	75,427	75,236	75,620	78,142	2,522	3.3
준정부기관	64,172	64,518	65,234	65,632	66,814	1,182	1.8
· 기금관리형	76,703	76,973	77,739	78,649	80,141	1,492	1.9
· 위탁집행형	62,255	62,657	63,366	63,687	64,823	1,135	1.8
기타공공기관	65,579	67,082	67,815	67,457	68,503	1,046	1.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4〉 직원 평균보수 추이(2016~2020년, 정규직 기준)

(단위: 천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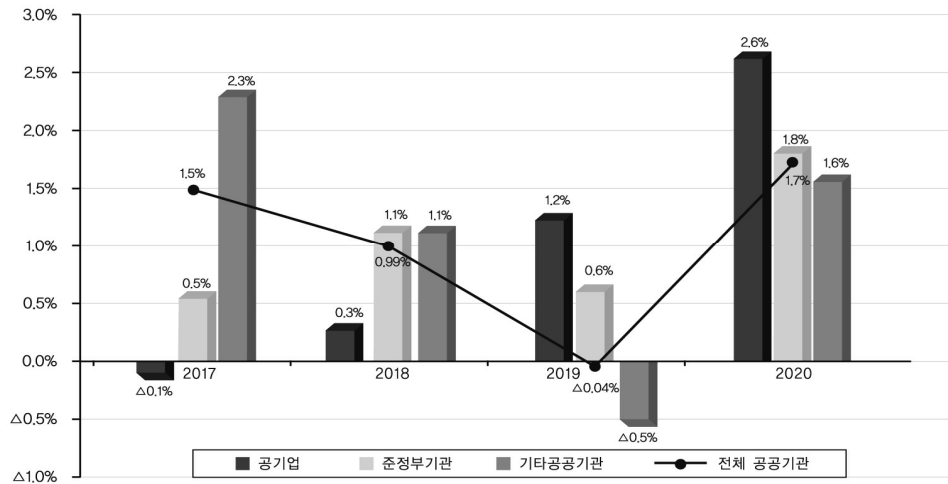
- 2020년 공공기관 전체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전년 대비 1.7%(약 117만 원) 상승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직원 평균보수가 전년 대비 1.6~1.9% 수준 증가함.

- 전년 대비 직원 평균보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전년 대비 3.3%(약 252만 원) 증가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020년 직원 평균보수 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이며, 전년 대비 상승 수준 또한 1.8%(약 113만 원)로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과 비교했을 때 낮은 상승률을 보임.
-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가 1.6%(약 104만 원) 증가하여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임.
 - 기타공공기관 중 58개 기관이 전년 대비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감소율이 5% 이상인 기관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코레일네트웍스(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8개 기관²⁰⁴⁾임.
-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전체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는 2019년도를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약 1~1.7% 수준으로 증가함.
 -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는 2017년 감소(△8만 원, △0.1%)를 제외한 2018~2020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함.
 - 준정부기관의 직원 평균보수는 2016~2020년 사이 매년 0.5~1.8%의 폭으로 증가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은 2019년 감소(△36만 원, △0.5%)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서 직원 평균 보수가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 직원 평균보수 인상률과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²⁰⁵⁾을 비교해 보면, 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지침상의 상한선(2.8%)을 준수함.

20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코레일네트웍스(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유통(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문화재단

205) 202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 편성 시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8%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함.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2018년도 정규직(무기계 약직 포함) 직원의 1인당 평균 임금 수준과 해당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기관법」, 「과기출연연구기관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총인건비 차등인상률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그림 III-25〉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2016~2020년, 정규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²⁰⁶⁾

□ 공공기관 상임임원(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²⁰⁷⁾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에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

○ 임원 보수지침은 상임임원의 기본연봉 책정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해 적용함.

-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하며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해당 연도 차관의 연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설정하고 이하인 경우는 매년 차관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하도록 함.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상한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는 기관장 연봉의 100분의 80과 동액으로 하고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는 매년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

206)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6.임원연봉'과 주요통계 중 '임원 평균연봉' 자료를 활용함. 알리오시스템상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연도말 결산기준으로 상임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액을 의미하며 총보수액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

207) 2018. 3월 공공기관 관련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임원 보수지침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 전체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제한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임원 보수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 중 5개 금융 분야 기관²⁰⁸⁾은 「혁신지침」 제5조(보수) 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준용하여 상임임원의 보수를 책정하여야 함.

□ 2020년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상임)의 평균연봉은 약 1억 7,997만 원 수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약 2억 1,512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3,514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장형 공기업(약 2억 2,951만 원)이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약 2억 432만 원)보다 약 2,519만 원 높은 수준임.
 -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약 2억 3,944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약 1억 8,485만 원으로 공기업보다는 3,026만 원 낮으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487만 원 높은 수준임.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약 2억 3,944만 원)은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데,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5,947만 원 높은 편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 평균연봉 수준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1억 7,630만 원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약 1억 7,196만 원)은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801만 원 낮음.
 -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공기업보다 약 4,315만 원 낮은 수준이고 준정부기관보다 약 1,288만 원 낮은 수준임.

□ 2020년 전체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약 1억 5,068만 원 수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이 약 1억 6,016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947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약 1억 5,171만 원으로 공기업보다는 844만 원 낮으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102만 원 높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평균연봉 약 1억 4,388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680만 원 낮음.

208)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2020년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은 약 1억 6,301만 원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간의 편차가 크지 않은 편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이 약 1억 6,197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103만 원 적고, 전체 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약 1억 6,285만 원으로 공기업 평균보다는 87만 원 높으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16만 원 낮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약 1억 6,390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88만 원 높음.

〈표 III-63〉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2016~2020년)

(단위: 천 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 관 장	전체 평균	166,661	167,800	170,895	176,624	179,975	3,352	1.9
	공기업	201,871	198,607	196,266	210,903	215,120	4,217	2.0
	준정부기관	172,948	171,730	175,680	181,448	184,852	3,404	1.9
	기타공공기관	157,274	160,389	164,199	168,629	171,965	3,336	2.0
상 임 이 사	전체 평균	140,352	141,992	146,140	149,959	150,687	728	0.5
	공기업	152,327	148,945	150,143	156,783	160,164	3,381	2.2
	준정부기관	141,903	141,465	146,665	149,489	151,716	2,228	1.5
	기타공공기관	130,434	137,798	142,868	146,168	143,885	△2,283	△1.6
상 임 감 사	전체 평균	151,297	150,667	156,229	160,621	163,017	2,396	1.5
	공기업	154,010	152,083	152,880	159,493	161,978	2,486	1.6
	준정부기관	157,334	151,893	162,295	163,398	162,857	△541	△0.3
	기타공공기관	144,170	148,578	153,653	159,147	163,905	4,758	3.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1.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최근 5년간의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은 <그림 III-26>, <그림 III-27>, <그림 III-28>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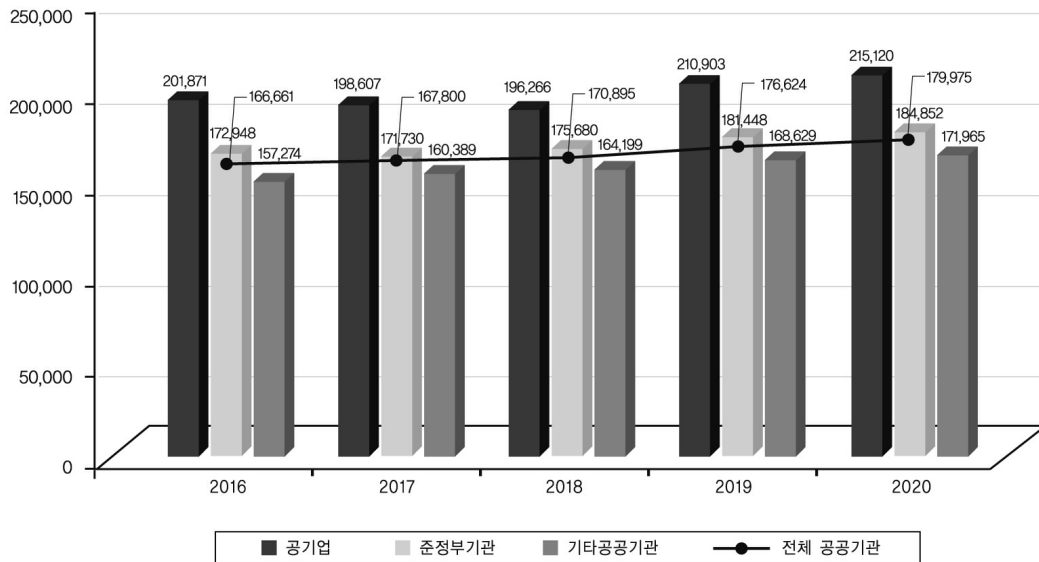
- 기관장(상임)과 상임이사의 전체 평균연봉은 최근 5년 내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상임감사의 전체 평균연봉은 2017년 소폭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음.

- 기관장 평균연봉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의 공기업과 2017년 준정부기관의 소폭 하락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음.
 -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최근 5년 동안 다른 유형의 기관장 연봉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최근 4년간 가장 큰 상승폭(7.5%)으로 인상됨.
 -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17년 소폭 하락했지만 2018년 이후 하락폭 이상을 만회하였으며, 2020년 기관장 평균연봉이 1억 8,485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1억 7,997만 원)보다 487만 원 높은 수준을 보임.
 -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상률 또한 2016~2020년 사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나, 인상률은 2019년 이후로 소폭 감소함²⁰⁹⁾.
-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0.5%(72만 원) 증가하였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꾸준히 상승하다, 2020년에 전년 대비 228만 원(△1.6%) 감소함.
 - 2020년 공기업 상임이사의 평균연봉 상승률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2.2%임.
- 전체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경우,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까지 준정부기관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임감사 연봉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나, 2020년에는 기타공공기관 상임감사 연봉이 475만 원(3.0%) 증가하여 준정부기관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이 2018~2019년 증가하다 2020년에 전년 대비 54만 원(△0.3%)이 감소하고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 인상률이 다소 상승하면서 유형별 상임감사 평균연봉 격차가 다소 줄어들음.

209) 2017년 2.0% → 2018년 2.4%(0.4%p) → 2019년 2.7%(0.3%p) → 2020년 2.0%(△0.7%p)

〈그림 III-26〉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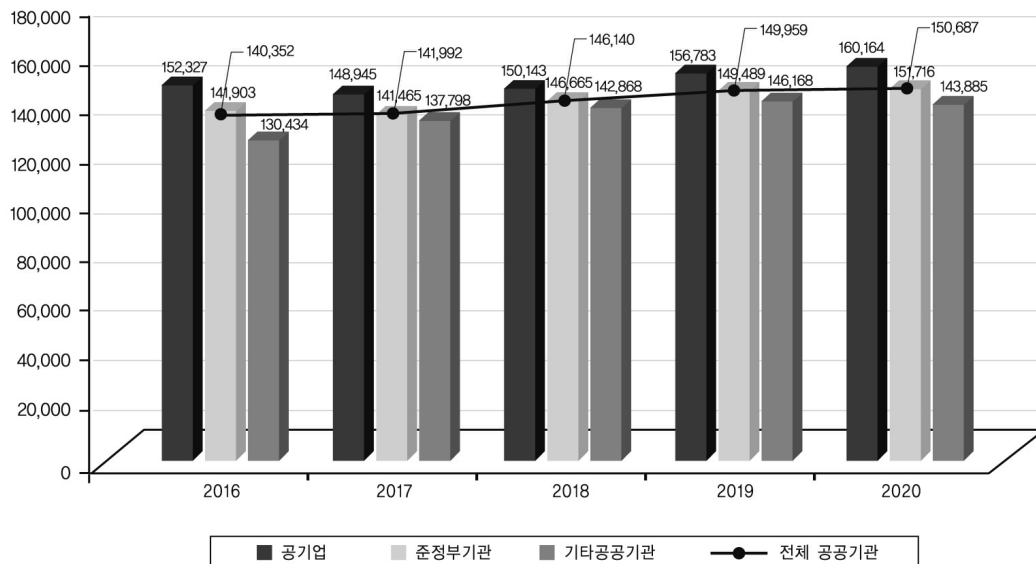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1.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7〉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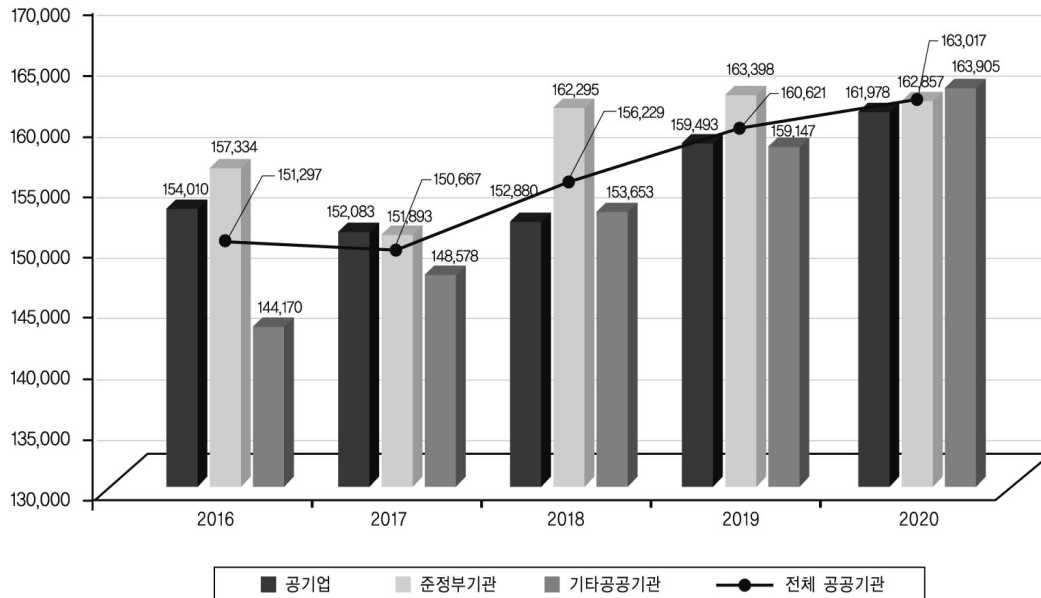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1.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8〉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2016~2020년)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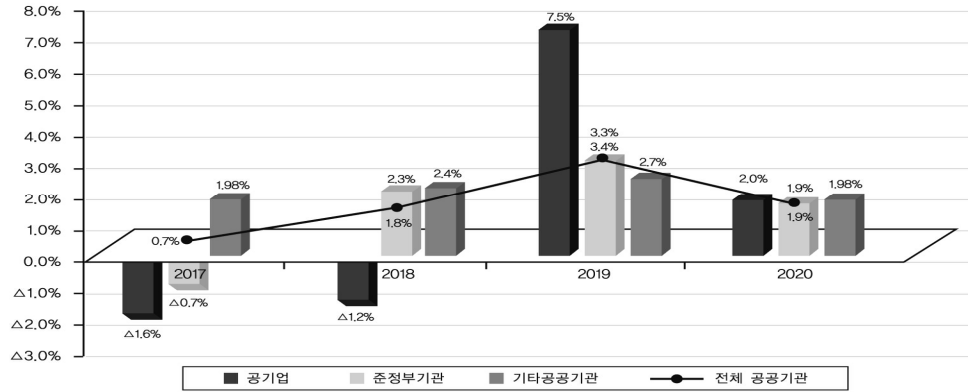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1.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상임임원 평균연봉 수준의 변화를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III-29>, <그림 III-30>, <그림 III-3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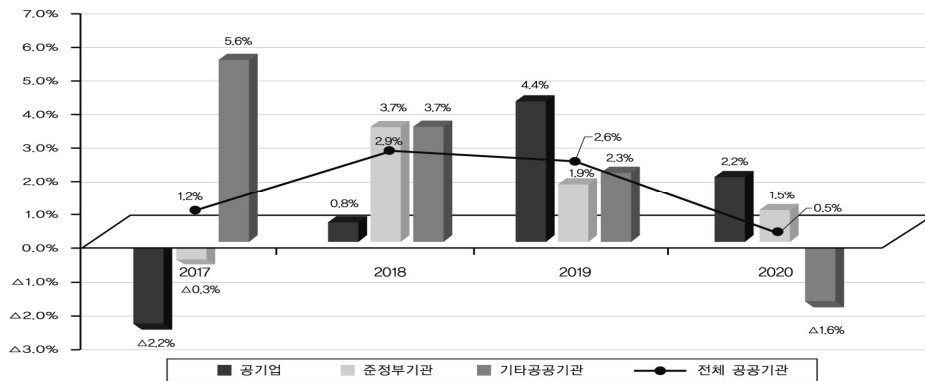
-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전년 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계연도는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경우 2018년이며, 기관장의 경우 2019년임.
- 2018, 2019년 평균연봉 증가율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7년에 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가 준정부기관은 2018년, 공기업은 2019년 다시 증가 추세로 회복됨.
 - 기타공공기관의 전년 대비 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의 평균연봉 증가율은 2020년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Ⅲ-29〉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2017~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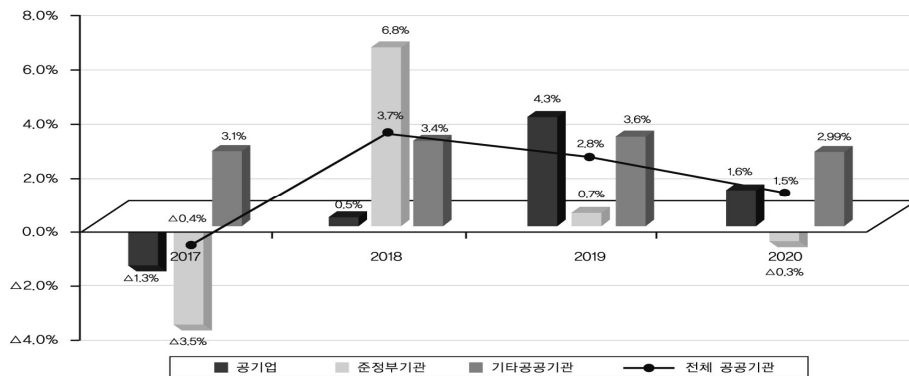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1.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0〉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2017~2020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1.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1〉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2017~2020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1.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다. 복리후생비 수준

- 2020년 중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총 규모는 약 8,605억 원임.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복리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2020년 임직원 수가 전년 대비 3.7%(15,398명)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78억 원, 0.9%)하였음.
 - 공공기관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이 3,766억 원, 준정부기관이 1,905억 원,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이 2,934억 원 수준임.
 - 전체 공공기관의 총 복리후생비 중 각 유형별 복리후생비 비중을 살펴보면, 공기업이 43.8%, 기타공공기관이 34.1%, 준정부기관이 22.1%를 차지함.²¹⁰⁾
 - 2020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공기업은 117억 원(△3.0%) 감소하고, 준정부기관은 28억 원(△1.4%) 감소함.
 - 기타공공기관은 2020년 복리후생비가 223억 원(8.2%) 증가하였는데, 2020년 기타 공공기관 정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9,416명(6.2%) 증가하였으므로 정원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라고 볼 수 있음.

〈표 Ⅲ-64〉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6~2020년)

(단위: 억 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7,669	7,708	8,408	8,527	8,605	78	0.9
공기업	3,562	3,559	4,013	3,884	3,766	△117	△3.0
· 시장형	1,977	1,991	2,138	2,124	2,024	△100	△4.7
· 준시장형	1,585	1,568	1,874	1,760	1,743	△17	△1.0
준정부기관	1,805	1,777	1,862	1,932	1,905	△28	△1.4
· 기금관리형	504	516	551	582	565	△18	△3.0
· 위탁집행형	1,301	1,261	1,311	1,350	1,340	△10	△0.7
기타공공기관	2,302	2,372	2,534	2,711	2,934	223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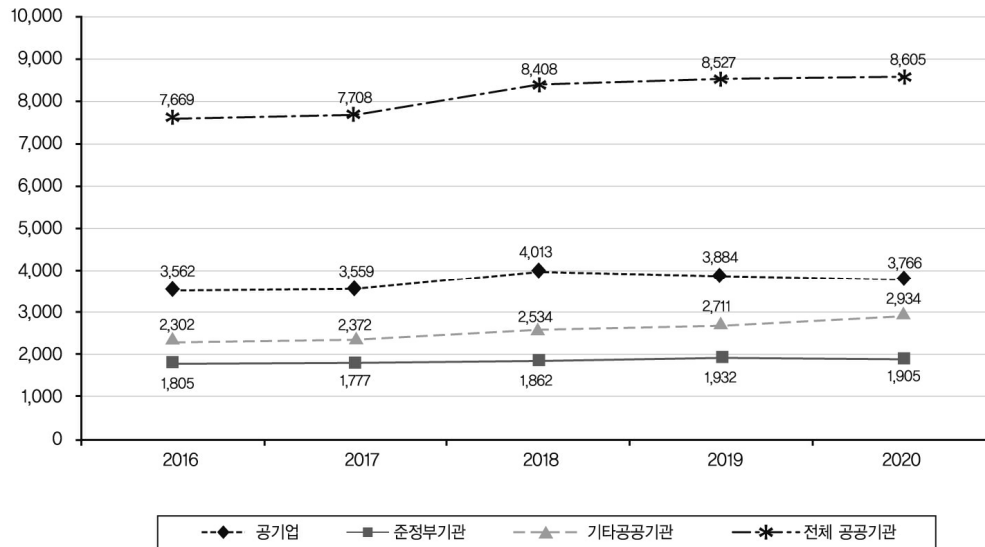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1.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10) 2020년 정원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규모를 비교하면, 기타공공기관(16만 1,667명, 37.1%), 공기업(15만 79명, 34.4%), 준정부기관(12만 3,988명, 28.5%) 순임

- 최근 5년간 무상지급된 복리후생비 총액 추이(<그림 III-32>)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음.
-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약 8,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여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9년부터 상승 폭이 둔화되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9% 증가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2020년 복리후생비가 감소하였지만, 기타공공기관에서 223억 원(8.2%)이 증가하여 2020년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증감률은 0.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지원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인 반면 공기업은 2018년 복리후생비가 반등한 이후로 감소하고, 준정부기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20년 소폭 감소함.
 - 2020년 공기업의 복리후생비는 시장형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감소(△100억 원, △4.7%)에 따라 공기업 전체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117억 원, △3.0%).
 - 준정부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의 변화가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미미한 편이며 2020년에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무상지급 규모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23억 원(8.2%) 증가함.
 - 2016년 대비 2020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증가율은 12.2%이며 유형별 증가율은 공기업 5.7%, 준정부기관 5.5%, 기타공공기관 27.4%로 나타남.
 -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2016년 3,562억 원에서 2020년 3,766억 원으로 약 5.7%(205억 원) 증가하였으며,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6년 1,805억 원에서 2020년 1,905억 원으로 5.5%(100억 원) 증가하였으나 두 유형 모두 전체 공공기관의 증가율(12.2%)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27.4%)을 나타내며, 다른 유형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Ⅲ-32〉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6~2020년, 무상지원 기준)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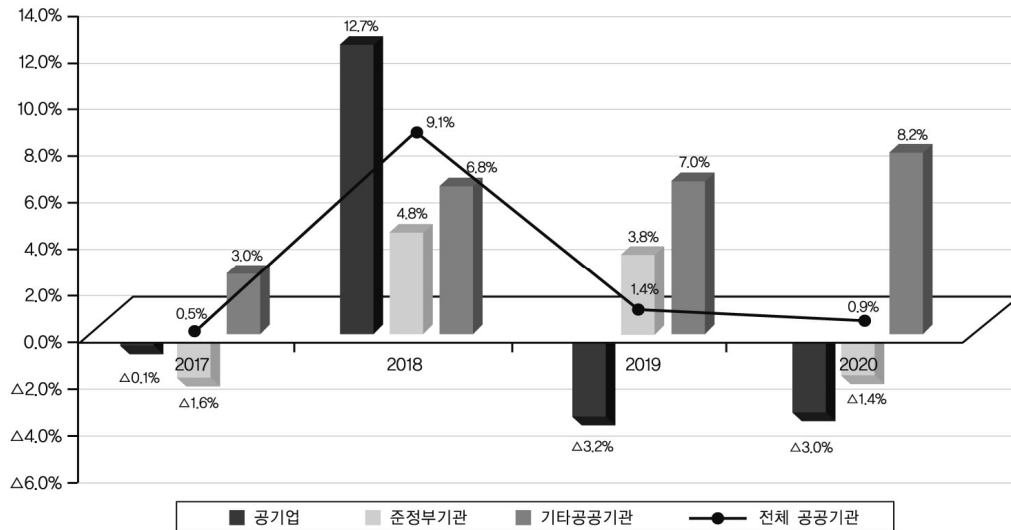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1.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복리후생비 지원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2018년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부터는 다시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임.

- 공기업의 경우, 2018년 12.7%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7년, 2019년, 2020년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2017년과 2020년에 소폭 감소하였고, 2018년과 2019년 각각 4.8%, 3.8%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로, 2020년은 전년 대비 1.2%p 증가하여서 8.2% 증감률을 보임.

〈그림 III-33〉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2017~2020년, 무상지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1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보육비, 문화여가비, 행사지원비, 의료 및 건강검진비, 선택적복지, 학자금 등 주요 복리후생비항목별 지급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I-65>와 같음.

- 보육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보육비는 전년 대비 1억 원(1.1%) 증가함.
 -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보육비 지원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2021년부터는 알리오시스템 보육비 항목의 공시기준이 개정되어 보육시설 설치·운영비²¹¹⁾를 제외한 보육비 지원을 복리후생비상 보육비로 공시해야 함.²¹²⁾
- 문화여가비 및 행사지원비는 2016년 이후로 2019년 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65억 원(△16.5%), 75억 원(△20.2%) 감소함.
 - 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문화활동 및 행사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0년 의료 및 건강검진비는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²¹³⁾
- 선택적 복지는 다른 항목에 비해 규모가 큰 복리후생 항목으로 2020년 규모는 전체 복리후생비의 43.1% 수준인 3,709억 원이며 수혜인원 확대에 의해 선택적

211) 보육시설 운영비(보육교사 인건비·식재료비·기본운영비, 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 이용 수수료, 공동 어린이 집에 대한 기관부담금 등) 및 보육시설 설치비로 복리후생에서 분리공시

21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1. 3. 참고

213) 2016년 대비 의료 및 건강검진비 증가액은 259억 원(35.2%)임

복지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²¹⁴⁾

- 학자금은 2016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411억 원 (△38.7%) 감소하였고, 2019년 대비 247억 원(△27.5%) 감소하였음.
-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학자금 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표 Ⅲ-65〉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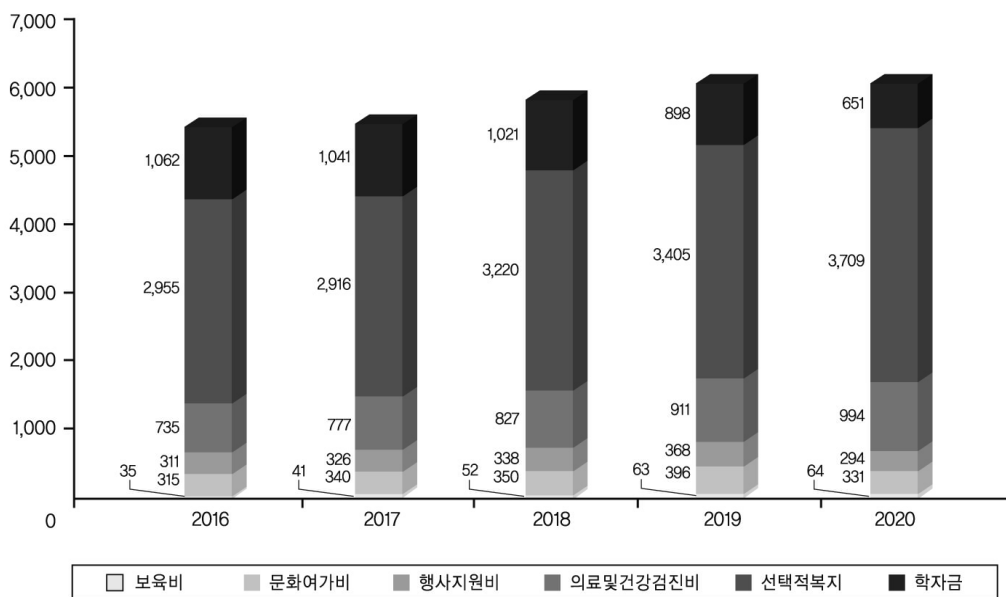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6년 대비6		'19년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보 육 비	35	41	52	63	64	29	83.8	1	1.1
문화여가비	315	340	350	396	331	16	5.0	△65	△16.5
행사지원비	311	326	338	368	294	△17	△5.6	△75	△20.2
의료 및 건강검진비	735	777	827	911	994	259	35.2	83	9.1
선택적복지	2,955	2,916	3,220	3,405	3,709	754	25.5	303	8.9
학 자 금	1,062	1,041	1,021	898	651	△411	△38.7	△247	△27.5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통계다운로드에 게시된 '복리후생비'(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4〉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2016~2020년)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통계다운로드에 게시된 '복리후생비'(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214)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2017년 증가했다가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함(△484억 원, △22.0%).

○ 2020년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총액 1,718억 원 중 공기업 출연금은 약 912억 원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하며, 준정부기관은 전체의 9.8%, 기타공공기관은 전체의 37%를 차지함.

- 2020년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감소한 것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256억 원(△27.2%)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준정부기관의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1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16.3%) 감소하였으며,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모두 전년 대비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각각 14억 원(△10.1%), 20억 원(△30.8%) 감소함.
- 기타공공기관의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6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 원(△27.2%) 감소함.

〈표 III-66〉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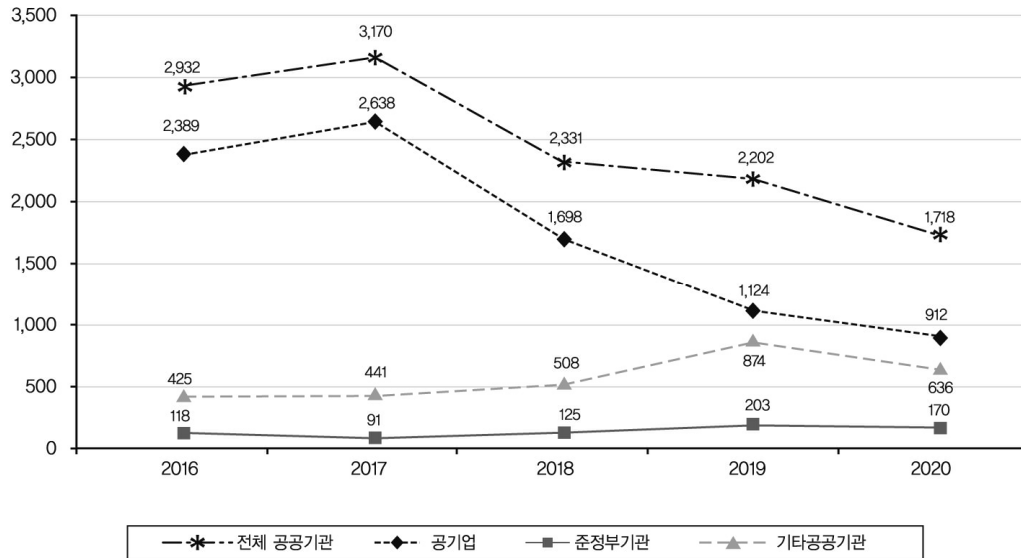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A)	'20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2,932	3,170	2,331	2,202	1,718	△484	△22.0
공기업	2,389	2,638	1,698	1,124	912	△212	△18.9
· 시장형	2,157	2,363	973	183	227	44	24.0
· 준시장형	231	275	725	941	685	△256	△27.2
준정부기관	118	91	125	203	170	△33	△16.3
· 기금관리형	45	33	42	139	125	△14	△10.1
· 위탁집행형	73	58	83	65	45	△20	△30.8
기타공공기관	425	441	508	874	636	△238	△27.2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21.4.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5〉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6~2020년)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21.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6. 외부 평가결과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²¹⁵⁾

1) 기관 평가제도 개요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운법」 제31조(기관장 평가), 제48조(기관 평가)에 근거하여 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함.²¹⁶⁾
- 경영실적평가는 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1984년에 최초 실시되어 38년째 시행 중인 대표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중 하나임.

215)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0. 9.,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2. 2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4. 23.,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6. 25. 및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20. 12. 08. 참고

216) 「공운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기관장평가(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2018년도 평가부터 기관평가에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음

- 기획재정부는 매년 3~6월 사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기관 경영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주무부처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²¹⁷⁾
 -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
 - 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18년 실시한 2017년도 평가부터 경영평가단을 공기업 평가단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함.
 -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체계, 평가유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대상 연도 개시 전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사전에 정하고 있음.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에 대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함.
 - 경영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성과급 지급률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함.
 -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하여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 D등급 이하인 실적부진 기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예산이 삭감(0.5~1%p 이내)될 수 있으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함.
-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공운법」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2021.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2021년 6월 18일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²¹⁸⁾
- 2021년 실시한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을 기준으로 하여 131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을 대상으로 실시됨.

217)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의무는 없음

218) 「공운법」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 2020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유형변경으로 평가대상기관이 전년 대비 2개 증가함.²¹⁹⁾
 - 2021년 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별로 평가단을 구성함.²²⁰⁾
 - 경영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인터넷 공모,²²¹⁾ 시민·사회단체 추천, 관련 부처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풀을 구성함.
 - 특정 전공 쏠림 해소, 지역·여성·특정분야 전문성 등도 고려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공기업 평가단 37명, 준정부기관 평가단 61명 외에 감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²²²⁾하기 위해, 별도로 감사평가단 (10명)을 구성함.
 -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함.
 -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기관별 실사를 진행하였음.
-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영실적평가는 131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됨.
 - 2020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유형 변경으로 평가대상기관의 수가 전년 대비 2개 증가함.
 - 공기업은 2개 유형(공기업1, 공기업2), 준정부기관은 3개 유형(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으로 평가유형을 구분함.
 - 2020년도 평가 대상기관 중 최초로 기관평가를 수검한 기관은 2개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이에 해당함.
 - 이 기관들은 2020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기관평가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평가유형은 강소형에 해당함.

219) 2020.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2개 기관이 해당됨

220) 경영관리 계량지표의 평가는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31명)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후에 합산하여 최종 득점을 산출함

221) 알리오 홈페이지(www.alio.go.kr)를 통해 경영평가위원 공모 실시

222) 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는 감사 개인에 대한 평가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2020년도 평가대상 기관 중 평가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5개 기관임.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9년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2020년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평가유형이 변경되었으며,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은 2019년도 강소형유형에서 2020년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평가유형이 변경됨.

〈표 III-67〉 2020년도 기관평가 대상기관(131개)

유 형		평가대상기관
공 기 업 (36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26개)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 정 부 기 관 (95개)	기금 관리형 (12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형 (42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표 III-67〉의 계속

유 형	평가대상기관
준 정 부 기 관 (95개)	강소형 (41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u>한국건강가정진흥원</u>,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u>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u>,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 1. 신규 평가 대상기관(2개)은 이탤릭체 및 밑줄로 표시

2. 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안전관리원((구)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한국정보화진흥원) 등 4개 기관은 기관명이 변경됨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0. 9., p. 10을 참고하여 작성

□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²²³⁾

-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는 2018년도 평가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²²⁴⁾를 유지한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의 비위 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함.
 - 윤리경영 분야를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 방지시책 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함.
 - 그 결과, 윤리경영 지표의 등급이 미흡 이하(D, E)인 기관이 2019년 66개에서 2020년 73개로 7개 기관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도 반영함.

223)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2. 26. 및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 참고하여 작성

224)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①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 공기업·준정부(‘17년) 11점→(‘18년 이후) 공기업 24점, 준정부 22점
 ② (안전) 안전관련 배점 확대(기존 2점→최대 6점) 및 적부평가제 도입(중대재해+귀책사유시 0점)
 ③ (윤리) 부적절한 채용관행, 갑질 등 윤리경영도 지속 점검: 2019년부터 정례화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반영

- 2020년 9월 2020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도 경영평가편람의 '통제불능성 판단'과 '코로나19 영향보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영실적을 합리적으로 보정하여 평가함.
- 신설된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²²⁵⁾ 가점에 따라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과 성과 등을 반영함.
- 기관별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 집중 점검함.
 - 한국판 뉴딜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성과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연령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가 결정되는 직무급 도입노력 및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
 - 2019년도 평가까지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에 일부 세부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던 직무급 평가내용을 체계화하고 평가배점도 확대한 결과, 직무급 도입 기관이 전년 대비 증가함.²²⁶⁾
 - 직무급 도입초기라 도입 기관수가 18개에 불과하나,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대규모 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함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의 확산 효과가 예상됨.
- 2017년도 평가부터 기관 간 과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 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제도를 적용하였음.
 -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까지는 종합점수와 범주별 점수를 바탕으로 한 상대평가 결과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였으나, 2017년도 평가부터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용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함.
 - 상대평가의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었어도 다른 기관에 비해 개선이 낮으면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함.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통해 각각 산출된 종합점수와 범주별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6개 등급(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으로 기관의 평가등급을 산출함.

225)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비계량 3점): ①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③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226) 직무급 도입기관이 2019년 5개에서 2020년 18개로 증가

2) 2020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2020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이하 '기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²²⁷⁾를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임.
 - 2019년도 대비 양호등급 이상(A, B) 비율이 소폭 하락(55.8% → 55.0%)하고, 미흡등급 이하(D, E) 비율은 소폭 상승함(13.2 % → 14.5%).
 -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 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비율이 각각 61.1%, 53.7%로 높고, 미흡등급 이하(D, E)는 강소형이 높은 비율(19.5%)로 분포하였음.
-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의 상대평가 종합등급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종합등급이 A등급(우수)은 23개 기관, B등급(양호)은 49개 기관, C등급(보통)은 40개 기관, D등급(미흡)은 17개 기관, E등급(아주미흡)은 2개 기관임.
 - 2019년도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전년보다 평가대상기관이 2개 증가하였고, A등급인 기관이 2개 증가하고, B등급인 기관이 2개 감소, D·E등급인 기관이 각 1개씩 증가함.
 - 종합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1개 기관, 그리고 강소형인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6개 기관으로 총 23개 기관임.
 - 총 15개 기관은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도 종합등급 A를 유지함.
 - 이 중 4개 기관이 2017년도부터 4년 연속 종합등급 A를 유지하고 있는 바, 준정부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개 기관, 강소형 중 농업

227)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2개 기관이 해당하고, 공기업에는 해당 기관이 없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임업진흥원 등 2개 기관은 2016년도부터 5년 연속 A등급 유지 기관임.
- 이 외 8개 기관은 2019년도보다 경영성치가 개선되어 평가등급이 상승하였는데, 해당 기관 모두 2019년도 종합등급이 B라는 공통점이 있음.

○ 종합등급 E등급인 기관은 한국마사회, (재)우편물류지원단 등 2개 기관임.

- (재)우편물류지원단은 2019년도에 이어 2년 연속 E등급을 받음.

□ 최근 3년 평균(2017~2019년도)대비, 2020년도 종합등급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2020년도 종합등급이 양호등급 이상(A, B)인 기관의 비율이 55.0%로 3년 평균인 53.9%보다 조금 높음.

〈표 III-68〉 2020년도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상대평가)

(단위: 개)

구 분		연도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공기업		2019	36	0	6	14	13	3	0
		2020	36	0	6	16	10	3	1
준 정 부 기 관	· 위탁집행/ 기금관리	2019	50	0	10	21	12	6	1
		2020	54	0	11	18	18	6	1
	· 강소형	2019	43	0	5	16	15	7	0
		2020	41	0	6	15	12	8	0
전 체		2019	129 (100%)	0 (0.0%)	21 (16.3%)	51 (39.5%)	40 (31.0%)	16 (12.4%)	1 (0.8%)
		2020	131 (100%)	0 (0.0%)	23 (17.6%)	49 (37.4%)	40 (30.5%)	17 (13.0%)	2 (1.5%)
		‘17~’19 평균	(100%)	(0.0%)	(15.3%)	(38.7%)	(32.4%)	(10.5%)	(3.2%)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절대평가 종합등급 분포는 <표 III-77>에 제시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23.에 따른 2018년도 평가결과 수정사항 반영

3. 등급구간은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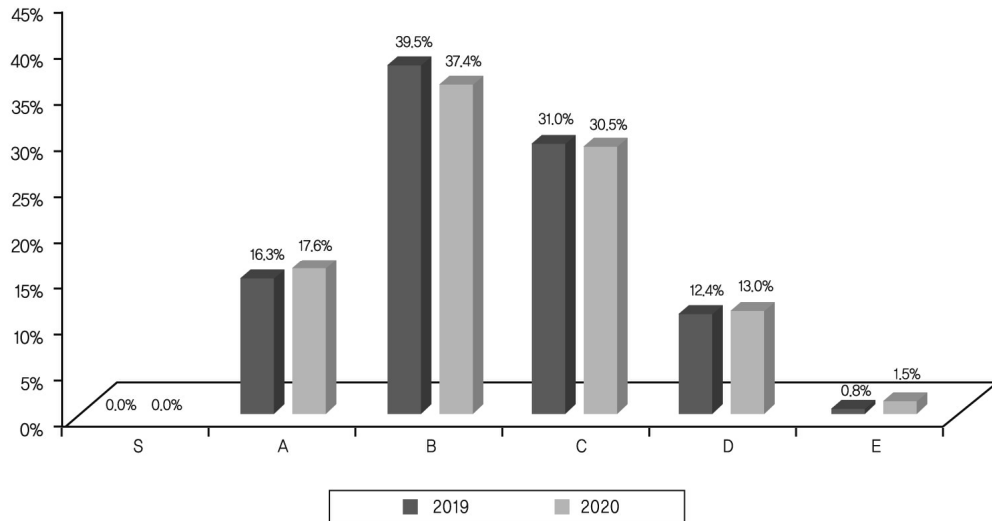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23.,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69〉 2020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상대평가)

등급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54개)	강소형(41개)
S	-	-	-
A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1개)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6개)
B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6개)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18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개)
C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10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개)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2개)
D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개)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송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8개)
E	한국마사회 (1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개)	-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절대평가 종합 평가결과는 <표 III-78> 제시)
 2.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위탁집행 유형의 준정부기관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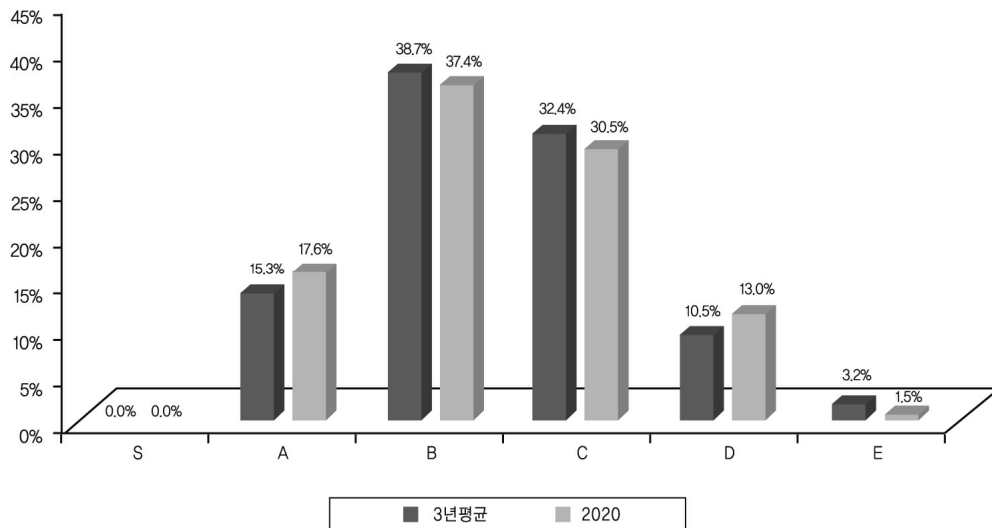
〈그림 III-36〉 전년 대비 2020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7〉 최근 3년 평균 대비 2020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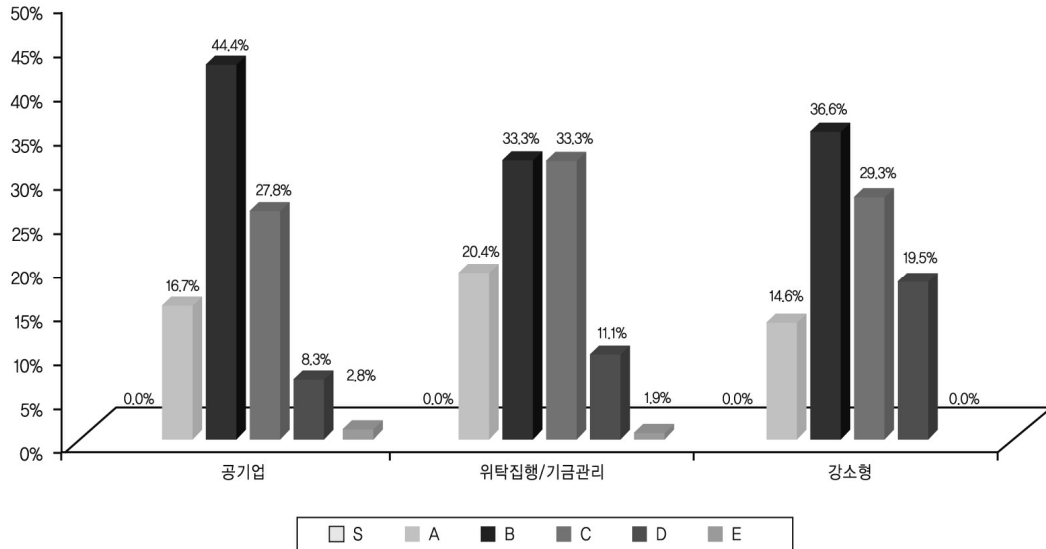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3년평균은 2017년부터 2019년도의 평가결과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23.,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 기관 평가결과의 상대평가 종합등급 분포를 평가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B등급의 분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S등급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함.
- 종합등급 분포는 평가유형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일부 차이가 있음.
 - 공기업과 강소형은 B등급의 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B등급과 C등급이 동일하게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 공기업과 강소형은 B등급 다음으로 C등급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B등급과 C등급 간 비중의 차이가 공기업은 16.7%p, 강소형은 7.3%p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임.
 - 강소형은 다른 유형과 달리 A등급인 기관보다, D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높음.
 - 전년 대비 종합등급 변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A등급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고, B·C등급의 분포는 크게 변화하였으며, 강소형은 C등급의 비중의 변화가 가장 크고, 다른 등급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음.
 - 공기업 유형은 2019년도에 B등급과 C등급 분포의 차이가 작았으나, 2020년도 평가에서는 B등급이 증가하고, C등급이 감소하여 두 등급 간 분포의 차이가 2.8%p에서 16.7%p로 크게 증가함.
 - 이와 반대로 2019년도에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B등급과 C등급 분포의 차이는 18.0%p로 컸으나, 2020년도에는 B등급이 감소하고, C등급이 크게 늘어나 두 등급이 동일한 분포를 보임.
 - 강소형 유형은 2019년도 대비 B등급과 C등급의 분포가 감소하고, A등급과 D등급의 분포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완만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미흡 이하 등급(D, E)의 분포는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공기업과 강소형 유형에서는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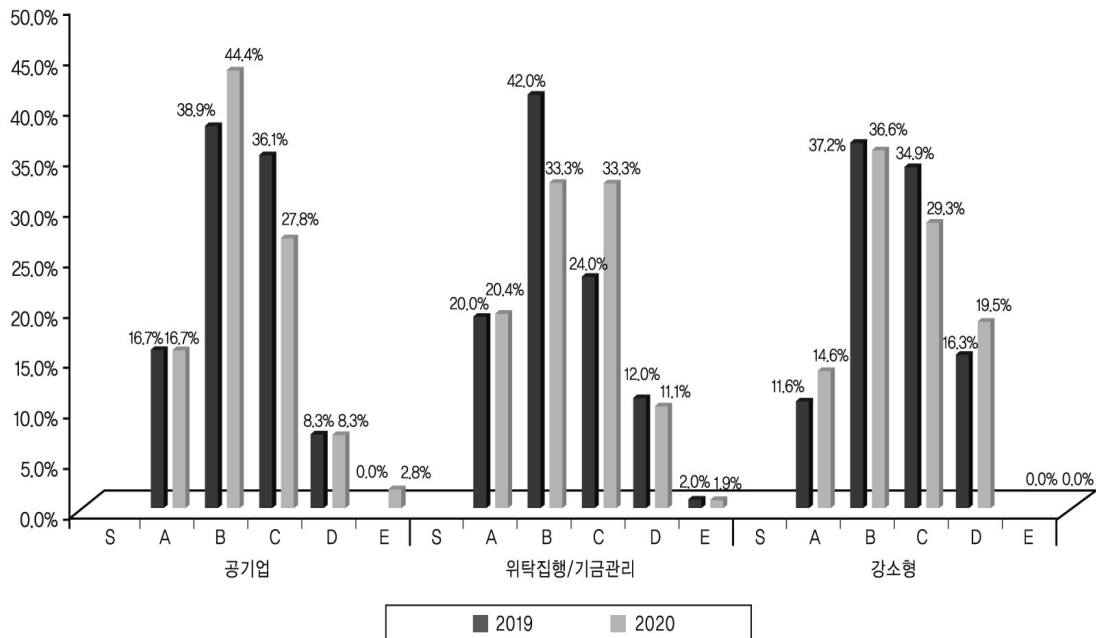
〈그림 III-38〉 2020년도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절대평가의 유형별 등급 분포는 <그림 III-41>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9〉 평가유형별 전년 대비 평가등급 분포 비교(상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도 및 2020년도 기관평가를 모두 수검한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평가등급 변동내역을 살펴본 결과,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31개 기관으로 전체의 24.0%를 차지하고, 평가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25개로 19.4%를 차지함.
- 전년 대비 평가등급이 개선된 기관 중 주식회사 에스알, 창업진흥원 등 2개 기관은 평가등급이 전년도에 비해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8개이고, 이 중 한국연구재단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20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지속적인 경영 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²²⁸⁾
 - 평가등급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기관 중 전년도보다 평가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임.
 -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도 A등급에서 2020년도 D등급으로 평가등급이 3단계 하락하였음.
 -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이며, 3년 연속 평가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없음.

〈표 III-70〉 전년 대비 2020년도 평가등급 변동 요약(상대평가)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129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등급 상승	31 (24.0%)	29	2	-
평가등급 유지	73 (56.6%)	-	-	-
평가등급 하락	25 (19.4%)	19	5	1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2020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19년도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228)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20년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며, 대한석탄공사는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20년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음

〈표 III-71〉 전년 대비 2020년도 평가등급 변동 현황(상대평가)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31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급 유지 (73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공단
등급 하락 (25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2020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19년도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 상대등급을 기준으로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III-72>, <표 III-73>과 같이 나타남.

<표 III-72> 2020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분포(상대평가)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기획재정부	2	-	-	2	-	-	-
교육부	3	-	1	2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2	2	3	2	1
외교부	1	-	1	-	-	-	-
행정안전부	1	-	-	-	-	1	-
문화체육관광부	7	-	1	1	4	1	-
농림축산식품부	6	-	1	1	2	1	1
산업통상자원부	31	-	6	12	10	3	-
보건복지부	9	-	1	4	2	2	-
환경부	5	-	1	2	1	1	-
고용노동부	5	-	-	2	2	1	-
여성가족부	3	-	-	2	-	1	-
국토교통부	15	-	2	5	6	2	-
해양수산부	9	-	-	5	3	1	-
중소벤처기업부	5	-	1	4	-	-	-
방송통신위원회	2	-	-	-	2	-	-
금융위원회	4	-	3	1	-	-	-
공정거래위원회	1	-	-	-	1	-	-
국가보훈처	2	-	-	1	1	-	-
식품의약품안전처	1	-	1	-	-	-	-
인사혁신처	1	-	-	-	1	-	-
경찰청	1	-	-	1	-	-	-
소방청	1	-	-	-	1	-	-
산림청	3	-	1	1	-	1	-
농촌진흥청	1	-	1	-	-	-	-
특허청	1	-	-	1	-	-	-
기상청	1	-	-	-	1	-	-
합 계	131	-	23	49	40	17	2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73〉 2020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현황(상대평가)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2개)	(B등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교육부 (3개)	(A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B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0개)	(A등급)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B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D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E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외교부 (1개)	(A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D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7개)	(A등급) 한국관광공사 (B등급) 한국언론진흥재단 (C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D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6개)	(A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B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C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D등급) 한국농어촌공사 (E등급)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부 (31개)	(A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에너지공단 (B등급)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C등급)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주) (D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보건복지부 (9개)	(A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C등급)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D등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표 Ⅲ-73〉의 계속

주무부처	기관명
환경부 (5개)	(A등급) 한국수자원공사 (B등급)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C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D등급) 국립생태원
고용노동부 (5개)	(B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C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D등급) 한국고용정보원
여성가족부 (3개)	(B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D등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토교통부 (15개)	(A등급)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B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C등급)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공사 (D등급)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9개)	(B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C등급)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D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부 (5개)	(A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등급)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2개)	(C등급)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금융위원회 (4개)	(A등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B등급) 예금보험공사
공정거래위원회 (1개)	(C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2개)	(B등급) 독립기념관 (C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A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사혁신처 (1개)	(C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청 (1개)	(B등급)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C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3개)	(A등급) 한국임업진흥원 (B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D등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표 III-73〉의 계속

주무부처	기관명
농촌진흥청 (1개)	(A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1개)	(B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1개)	(C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 범주별 상대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S등급을 받은 기관에 해당함.
- 공기업 유형 중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이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등 5개 기관임.
 - 한국마사회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모두 E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음.
 -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B등급을 받아 범주 간 등급 차이가 3단계인 기관에 해당하고, 종합등급은 C등급을 받음.
 -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전KPS(주) 등 4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 차이가 2단계인 기관에 해당함.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중 신용보증기금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아, 두 범주에서 모두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에 해당함.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9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6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1개임.²²⁹⁾

-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8개 기관임.
-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1개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개 기관임.
- 강소형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고, 이 기관은 주요사업 범주와 종합등급에서도 A등급을 받은 기관에 해당함.
-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종합등급 모두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2개 기관임.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6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6개 기관임.
- 범주 간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아시아문화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10개 기관임.
- 이 중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범주 간 등급이 3단계 차이나는 기관으로,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았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D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아, 두 기관 모두 종합등급은 C로 평가 받음.

229)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6개 기관이며,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1개임.

〈표 III-74〉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공기업 유형)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6개)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7개)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5개)
B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6개)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14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15개)
C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10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9개)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중부발전(주) (9개)
D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4개)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E	한국마사회 (1개)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2개)	한국마사회 (1개)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절대평가 결과는 <표 III-79>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표 III-75〉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신용보증기금 (1개)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1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9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개)
B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18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17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23개)

〈표 III-75〉의 계속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개)
D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7개)
E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개)	한국농어촌공사 (1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개)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절대평가 결과는 <표 III-80>에 제시)

2.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준정부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표 III-76〉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강소형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개)	-
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6개)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6개)
B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6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8개)
C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2개)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개)
D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8개)	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9개)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7개)
E	-	-	한국보육진흥원 (1개)

주: 강소형 유형은 절대등급이 없으나, 전년도에 준해서 상대등급을 절대등급으로 간주하고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 2017년도 경영평가부터 기관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정하는 절대평가 등급제가 도입된 이후, 2020년도 평가에서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함께 실시됨.
- 총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절대평가 등급이 A등급(우수)는 9개 기관, B등급(양호)는 44개 기관, C등급(보통)은 45개 기관, D등급(미흡)은 30개 기관이고, E등급(아주미흡) 기관이 3개이고, S등급(탁월)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강소형 유형은 절대평가등급이 없으나, 전년도에 준해서 상대평가등급과 절대평가등급이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분석함.
 - 2020년도 평가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종합등급이 모두 A등급인 기관은 9개 기관이고, 절대평가 종합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모두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받음.²³⁰⁾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과 강소형 유형의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고, 공기업 유형은 해당 기관이 없음.
 - 절대평가 종합등급이 E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한국마사회 1개 기관과 위탁집행 유형의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임.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마사회는 상대평가 종합등급도 모두 E등급을 받았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D등급을 받음.
- 전년 대비 2020년도 기관 절대평가 종합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전년도 분포와 상이한 모습을 보임.
- 2019년도 절대평가 종합등급 분포는 B등급 > C등급 > A등급 > D등급 > E등급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2020년도는 C등급 > B등급 > D등급 > A등급 > E등급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 2019년도에 비해 절대평가 결과 B등급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D등급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230) 2020년도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 종합등급에서는 A등급을 받지 못한 기관은 공기업유형의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이며, 이 기관들은 2020년도 절대평가 결과 B등급(양호)을 받음

- B등급 분포는 전년 대비 13.7%p 감소하고, D등급 분포는 14.4%p 증가하여, B등급과 C등급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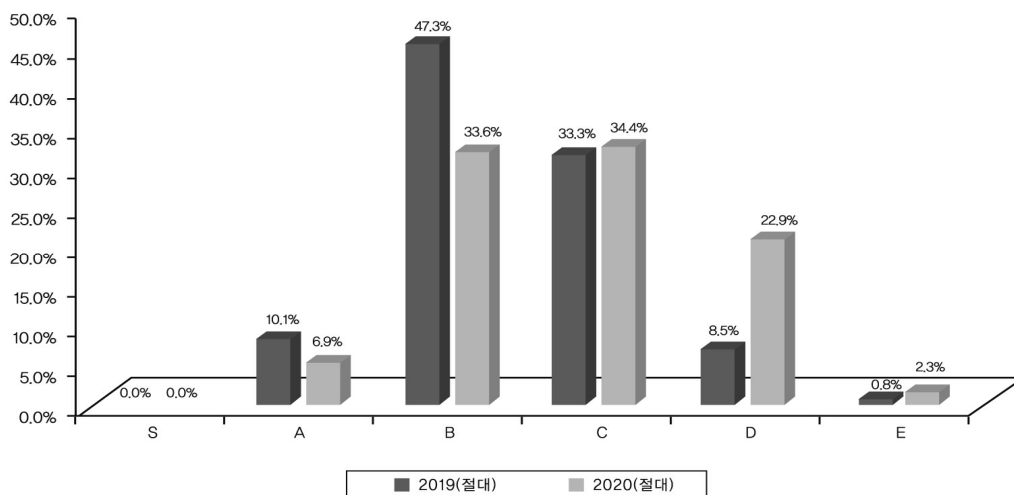
〈표 III-77〉 2020년도 평가유형별 평가등급 분포(상대·절대평가)

(단위: 개)

구 분		구분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계
공기업		상대	0	6	16	10	3	1	36
		절대	0	0	8	16	11	1	
준정부 기관	· 위탁집행/ 기금관리	상대	0	11	18	18	6	1	54
		절대	0	3	21	17	11	2	
	· 강소형	상대· 절대	0	6	15	12	8	0	41
전 체		상대	0 (0.0%)	23 (17.6%)	49 (37.4%)	40 (30.5%)	17 (13.0%)	2 (1.5%)	131
		절대	0 (0.0%)	9 (6.9%)	44 (33.6%)	45 (34.4%)	30 (22.9%)	3 (2.3%)	

주: 강소형 유형은 절대등급이 없으나, 전년도에 준해서 상대등급을 절대등급으로 간주하고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40〉 전년 대비 2020년도 평가등급 분포 비교(절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78〉 2020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절대평가)

등급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54개)	강소형(41개)
S	-	-	-
A	-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3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6개)
B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1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개)
C	(주)강원랜드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16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개)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2개)

〈표 Ⅲ-78〉의 계속

등급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54개)	강소형(41개)
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1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8개)
E	한국마사회 (1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2개)	-

주. 1. 준정부기관(54개)은 기금관리·위탁집행 유형인 준정부기관을 의미

2.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Ⅲ-69>에 제시)

3. 강소형 유형은 절대등급이 없으나, 전년도에 준해서 상대등급을 절대등급으로 간주하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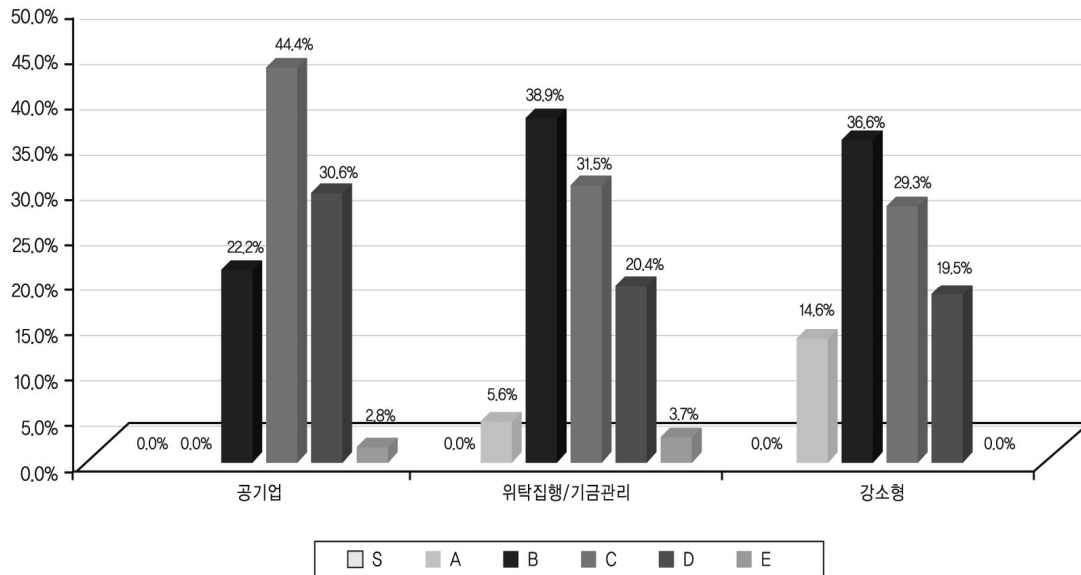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 평가유형별 기관 절대평가 결과의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강소형 유형은 절대등급이 없으나, 비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서 상대등급을 절대등급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 공기업 유형은 C등급인 기관의 분포가 가장 크고, 위탁집행·기금관리유형과 강소형 유형은 B등급인 기관의 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공기업 유형은 C등급 > D등급 > B등급 > E등급 순으로 분포하고 있고, 위탁 집행·기금관리 유형과 강소형 유형은 B등급 > C등급 > D등급 > A등급 > E등급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공기업 유형의 등급이 낮게 나타남.
 - 모든 유형에서 S등급인 기관의 비중은 0%이며, 강소형은 E등급인 기관의 비중도 0%임.
- 등급별 분포의 차이를 보면 공기업 유형과 다른 유형의 차이점이 두드러짐.
 - 공기업 유형에서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는 C등급과 그 다음으로 큰 분포를 차지하는 D등급 분포의 차이는 13.9%p를 보이고 있음.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과 강소형 유형에서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는 B등급과 그 다음으로 큰 분포를 보이는 C등급의 차이는 각각 7.4%p, 7.3%p로 공기업 유형에서의 등급차이의 반 정도에 불과함.

- 공기업 유형은 등급에 따른 편차가 심하고, 다른 유형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분포되어 있음.

〈그림 III-41〉 2020년도 평가유형별 평가등급 분포(절대평가)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의 유형별 등급 분포는 <그림 III-38>에 제시)

2. 강소형 유형은 절대등급이 없으나, 전년도에 준해서 상대등급을 절대등급으로 간주하고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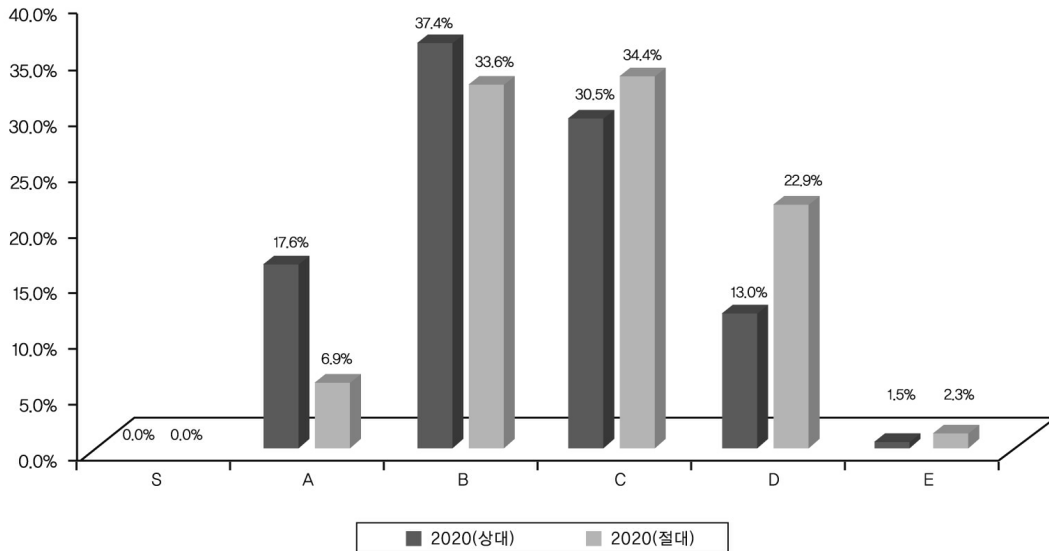
□ 기관의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분포가 다른 모양을 보임.

○ 평가결과 등급이 상대평가는 B등급 > C등급 > A등급 > D등급 > E등급 > S등급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절대평가는 C등급 > B등급 > D등급 > A등급 > E등급 > S등급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 평가결과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관의 비중은 상대평가 55.0%, 절대평가 40.5%로 상대평가 등급의 비중이 14.5%p 높은 데 반해, 평가결과 등급이 D등급 이하인 기관의 비중은 상대평가 결과가 절대평가 결과보다 10.7%p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상대평가 결과 등급의 분포가 절대평가 결과 등급 분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여줌.

〈그림 Ⅲ-42〉 2020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절대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를 참고하여 작성

□ 범주별 절대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개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공기업 유형에서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전KPS(주) 1개 기관임.
 - 경영관리 범주에서 절대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등 2개 기관이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절대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마사회 1개 기관으로, 한국마사회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모두 E등급을 받은 기관에 해당함.
 -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절대평가결과 E등급을 받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B등급을 받아 범주 간 등급차이가 3등급인 기관에 해당하며, 절대평가 종합등급은 D를 받음.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두 범주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은 기관도 없음.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개 기관임.
- 주요사업 범주에서 절대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은 6개 기관이며, 이 중 2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B등급을 받고, 2개 기관은 C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D등급을 받아 범주별 등급 차이가 3등급이 발생하였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 차이가 3등급인 기관에 해당함.²³¹⁾
-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개 기관임.
-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모두 E등급을 받은 기관에 해당함.

〈표 III-79〉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공기업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	-	한전KPS(주) (1개)
B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8개)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7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15개)

231)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고, 경영관리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아 범주 간 등급 차이가 3등급이 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2개 기관이며, 한국전력거래소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B등급을 받고,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아 범주 간 등급 차이가 3등급이 난 기관에 해당

〈표 III-79〉의 계속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주)강원랜드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16개)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7개)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14개)
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0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개)
E	한국마사회 (1개)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2개)	한국마사회 (1개)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III-74>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표 III-80〉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3개)	한국관광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개)

〈표 III-80〉의 계속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1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13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24개)
C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개)

〈표 III-80〉의 계속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D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1개)	국립생태원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6개) (16개)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개)
E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2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개)

주: 1.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함

2.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III-75>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로 ① 부진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한 인사조치, ② 부진기관 경영개선 점검 및 차년도 예산 반영 조치, ③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을 시행함.²³²⁾

○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행함.

-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고, 당해 연도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경고조치의 대상이 됨.
-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건의하고, 나머지 4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함.²³³⁾²³⁴⁾

232)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

233)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마사회 등 2개 기관이며, 2년 연속

- 기관평가 종합등급(상대)이 '미흡이하 등급(D,E)'으로 실적이 부진하여 기관장 경고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19개 이며, 이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5명에 대해 경고 조치함.²³⁵⁾
-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함.
 -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기관임.
-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실적부진 기관, 중대재해 발생기관의 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함.
 -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9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p)하는 등 공공 기관 예산 편성에 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함.²³⁶⁾
 -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잠정, '21. 7월말, 공운위 상정 추진) 등을 반영한 안전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C등급 이상인 120개 기관이고,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률은 범주별로 종합평가 50%, 경영관리 범주 25%, 주요사업 범주 25%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률은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의 경우,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조치를 취함.
 - 2020년도 평가편람에 의하면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 발생 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급 지급률 하향조정이 가능함.²³⁷⁾

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6개 기관임

234)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된 기관의 기관장은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의 기관장이고, 2년 연속 D등급으로 해임건의된 기관의 기관장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임

235) 실적부진기관(19개) 중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의 기관장임

236) 구체적인 사항은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예정임

-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하여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함.
 -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운위 의결함.
- 2020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은 <표 Ⅲ-81>과 같음.

<표 Ⅲ-81> 2020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준정부기관)

(단위: %)

구분		기준	S	A	B	C	D~E
공기업	기관장	(기본연봉 대비)	120	96	72	48	0
			120~0				
	상임이사·감사	(기본연봉 대비)	100	80	60	40	0
			100~0				
	직원	(월기본급 대비)	250	200	150	100	0
			250~0				
준정부기관	기관장	(기본연봉 대비)	60	48	36	24	0
			60~0				
	상임이사·감사	(기본연봉 대비)	60	48	36	24	0
			60~0				
	직원	(월기본급 대비)	100	80	60	40	0
			100~0				
舊정부투자기관 (‘83~’06) 직원	직원	(월기본급 대비)	300	240	180	120	0
			3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를 참고하여 작성

237)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4.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사회공헌에 대한 조치(p.67)

-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재난·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의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²³⁸⁾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고객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만족도 형태로 평가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경영평가를 보완하고자 실시되고 있음.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된 후 추진함.
- 도입 당시에는 구 정부투자기관²³⁹⁾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4년에는 구 정부 산하기관으로, 2005년에 각 부처 자율혁신기관²⁴⁰⁾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이 확대됨.
- 2011년도부터는 직접고객 외에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 체감도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로 대체됨.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7년부터 「공운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제3항에 근거해 실시됨.
- 또한 「공운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III-82〉 「공운법」 제13조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현장의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8)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7. 16. 참고

239) 구 정부투자기관의 대부분이 현재 공기업에 해당

240) 부처 자율혁신기관의 대부분이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해당

- 고객만족도 조사는 주관기관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조사'로 구분되어 시행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및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2020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는 248개 기관이 대상임.²⁴¹⁾
 - '주무부처 주관조사'는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생활과 밀접성이 낮거나 기관 규모가 작아 통합조사의 실익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은 74개임.²⁴²⁾
 - 출연연구기관,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 등이 주무부처 주관조사의 대상이 됨.
 - 2020년에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4개)²⁴³⁾도 예산 확보 등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주무부처 주관조사를 수검하게 됨.
 - 공공기관 중 주된 고객이 중앙행정기관이거나 불특정 외국인 또는 모회사 등으로 고객 형성이 미흡한 기관(18개)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전력공사가 모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자회사(공기업), 외국인이 주된 고객인 세종학당재단 등이 이에 해당함.
- 2015~2018년까지는 기능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그룹 내에서 상대평가 하는 방식을 적용했으나 2019년 상대평가를 완화하기 위해 그룹 분류를 폐지했으며 이러한 기 조는 2020년에도 유지됨.
- 2016년까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5개 그룹과 기타공공기관 4개 그룹으로 분류 하였으나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의 상향평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능 중심으로 조사그룹을 개편함.²⁴⁴⁾
 - 기능과 주요사업에 따라 그룹을 세분화하여 동일 그룹 내 기관 간 동질성을 제고함으로써 상대평가를 강화함.
 - 2017년 개편된 그룹 분류에 따라 공공기관 간 서비스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그 룹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S-A-B-C 등급을 1:4:4:1의 비율로 부여함.

241) 2020년 공공기관 기준임(2021년 공공기관 기준 246개)

242) 2020년 공공기관 기준임(2021년 공공기관 기준 74개)

243)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44) 공기업·준정부기관 10개 그룹(고용·복지, 문화(관람, 관광·예술·언론), 교육, 금융, 에너지, SOC, 공공안전, 산업, 연구 등)과 기타공공기관 9개 그룹(산업, 의료, 교육·연구, SOC, 공공안전, 문화(관람, 체육·언론·예술), 복지, 금융 등)으로 분류

- 2019년 조사부터 기존의 서열등급 부여 방식이 기관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상대평가를 완화하고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그룹 분류가 폐지됨.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15년부터 PCSI 2.0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지수는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함.
- PCSI 2.0 모델은 종전 PCSI 모델을 개선한 것으로 두 모델을 비교하면 <표 III-83>과 같음.
- 개인이 고객인 경우 서비스 환경 품질에 대해 조사하며, 법인이 고객인 경우 관계여건 품질에 대해 조사함.

〈표 III-83〉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구 분		PCSI	PCSI 2.0	
서비스품질 모형	서비스상품 품질	편익성	본원적 문제해결	
		전문성	서비스 효익성	
		혁신성	서비스 완결성	
	서비스전달 품질	지원성	인적상호작용	
		공감성	커뮤니케이션	
		대응성	고객케어	
	서비스환경 품질	공통	개인고객용	법인고객용
		쾌적성	물리적 환경	협력
		편리성	제도/절차/시스템환경	상호호혜
		심미성	인적자원 역량환경	관계 동등성
	사회품질	청렴성	-	
		공익성	-	
		안정성	-	
사회적책임 모형	사회적책임	-	정책타당성	
		-	지속가능성	
		-	윤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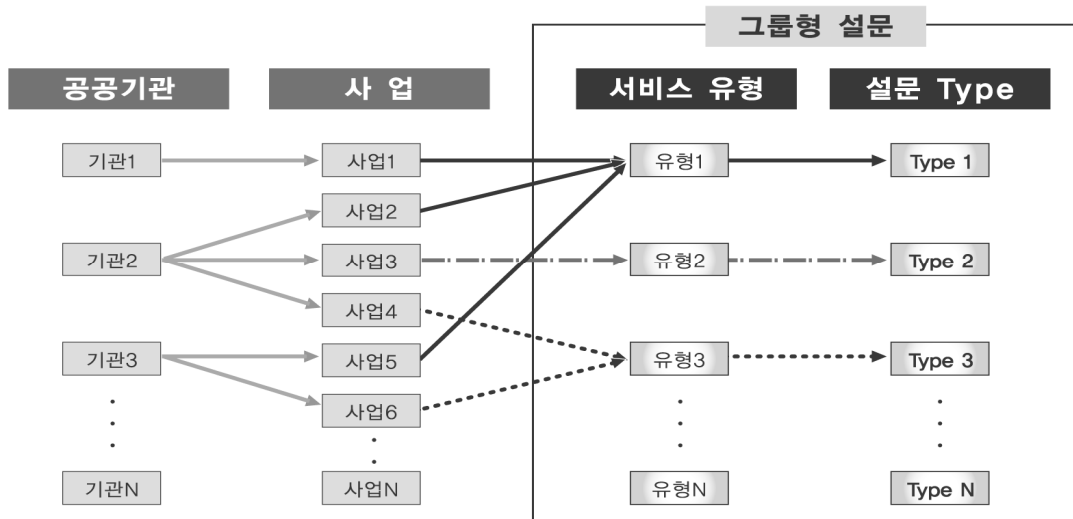
〈표 III-83〉의 계속

구 분		PCSI	PCSI 2.0	
서비스 비교평가 모형	불일치	-	기대 대비 비교	
		-	이상점 대비 비교	
		-	다른 기관 대비 비교	
고객만족 모형	전반적 만족	절대적 만족	-	
		상대적 만족	인지적 만족	욕구 충족
		감정적 만족		체감 만족
	요소만족	서비스 상품만족	감정적 만족	긍정적 감정
		서비스 전달만족		부정적 감정
		서비스 환경만족	-	
	사회적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	
성과모형	기관성과	신뢰	신뢰	
		지지		
		인식전환		
	사회성과	국민행복	국민행복	
		국가발전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6. 7. 1.

- 2017년까지는 전체 기관이 공통 설문문항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8년 조사부터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다양화하였으며 2020년 조사까지 유지됨.
- 2017년까지 유지된 설문지는 기관 설문 유형을 개인과 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조사 대상 기관별,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2018년 변경된 설문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용 동기(자발·비자발), 서비스 형태(유형·무형), 이용 목적(과정지향·결과지향) 등에 따라 8종류로 세분화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응답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그림 III-43〉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개편(2018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8. 8. 24.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일괄 발표하고, 알리오시스템²⁴⁵⁾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경영실적평가의 국민소통 지표에 반영하고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국민소통 지표로 전체 100점에서 0.5점을 반영하고 있음.
 - 2017년까지는 전체 100점에서 2점 반영되던 것을 2018년부터 1점으로 축소하였고, 2020년부터는 0.5점으로 축소됨.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경영실적평가에서 국민평가(고객만족도) 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에 따라 지표와 가중치를 달리 적용함.

〈표 III-8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경영평가 반영안

$$\text{국민소통지수} = (0.8 \times \text{고객만족도지수}) + (0.2 \times \text{사회적가치 기여도지수})$$

* 사회적가치 기여도지수가 없는 경우 결측 처리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7. 16.

245)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공개

2)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선사항

-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19년의 조사제도 개편 기초를 유지하되, 부정행위의 여지를 차단하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계약방식의 변경, 조사방식의 개선, 평가배점의 조정 등을 추진함.
- 2020년에는 기본설계자가 계약사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조사업체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계약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자 제도를 개선함.
 - 2019년까지는 기본설계가 완성되면 공공기관이 조사업체와 직접 고객만족도 조사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 시기나 장소 등의 정보가 기관에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또한, 2020년에는 부정행위의 개연성을 낮추고자 고객만족도조사 기본설계 시 현장 조사의 비중을 축소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함.
 - 부정행위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장조사 비중을 기본설계 과정 중에 최대한 축소하고 전화조사 비중을 확대하여 전화조사 비중이 2017~2019년 78.5%에서 2020년 85%로 상승함.
 - 부득이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에서 현장조사 시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현장조사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4개월로 연장함.
 - 추가적으로 현장조사 시 조사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명찰·어깨띠·유니폼 등의 패용을 금지함.
- 공공기관 간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경영평가 중 고객만족도 배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하였으며 그 외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도 확보를 목적으로 개별 공공기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도록 유도함.
 - 개별 공공기관이 만족도 조사에 개입하는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 위반행위임을 교육하도록 고지하고, 기관 자체 교육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윤리의식 제고 자료를 배포함.
- 또한 2020년 조사에서는 사업평가 방식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지수를 그대로 반영

하던 기존 사업별 평가결과 산출방식에서 최근 3년간 사업별 조사결과 평균치를 기초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S(만족)/U(불만족)²⁴⁶⁾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그룹을 분류하여 그룹 내에서 기관의 점수를 서열 등급화하는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각 사업별 과거 점수를 토대로 S(만족)/U(불만족) 여부만을 판단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개편함.
 - 전년도 유형별(공기업/준정부/기타) 평균점수²⁴⁷⁾를 고려하여 각 사업의 3년간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95~105% 수준으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로 S(만족)/U(불만족)를 판정함.
- 유형별 평균점수 이하인 사업은 점수 상향을 위해 100~105% 수준의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평균점수 이상인 사업은 점수 유지를 목표로 하는 95~100%의 완화된 목표치를 설정함.
 - 구간별 목표치의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은 특정 목표값을 부여하였음.

3)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85>와 같음.
 - 2021년 기준 350개 공공기관 중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기관은 315개 기관임.
 - 공기업·준정부기관 117개와 기타공공기관 198개가 이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기재된 조사대상 기관은 322개 기관이나 이 중 2개 기관²⁴⁸⁾이 2021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며 5개 기관²⁴⁹⁾은 기본계획 발표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2021년 공공기관(350개) 중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0년도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241개 기관으로 수검기관 전체의 76.5%를 차지함.
 - 25개 공기업, 92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124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246) S: Satisfactory(만족), U: Unsatisfactory(불만족)

247) 2018년 유형별 평균점수: 공기업 88.7점, 준정부기관 86.9점, 기타공공기관 84.4점

248)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49)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 2020년도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 74개 기관은 모두 기타 공공기관으로, 23.5%를 차지함.
- 2021년 공공기관(350개) 중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은 기관은 총 35개(250) 기관임.
 -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제외된 35개 기관 중 18개 기관은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개 기관은 고객 특성이 조사에 적합하지 않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기술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 발표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2021년 공공기관 지정 시 신규로 지정된 12개 기관은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음.

〈표 Ⅲ-85〉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조사 미수검 기관 현황					조사 수검 기관 현황		
			합계	조사 제외	조사 유예	신규 지정	수시 지정	합계	기재부 통합조사	주무부처 조사
공 기 업	시장형	16	6	6	0	0	0	10	10	0
	준시장형	20	5	5	0	0	0	15	15	0
	소 계	36	11	11	0	0	0	25	25	0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0	0	0	0	0	13	13	0
	위탁집행형	83	4	4	0	0	0	79	79	0
	소 계	96	4	4	0	0	0	92	92	0
기타공공기관		218	20	8	0	12	0	198	124	74
전 체		350	35 (100%)	23 (65.7%)	0 (0.0%)	12 (34.3%)	0 (0.0%)	315 (100.0%)	241 (76.5%)	74 (23.5%)

주. 1. 2021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수검 사유와 조사 주관기관 현황을 정리

2.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였으나 2021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2개 기관((재)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은 분석대상(350개)에서 제외함

3. 공공기관 유형은 2021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구분함. 따라서 2021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된 1개 기관은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 당시 공공기관 유형(2020년 기준)과 2021년 유형이 다름
- 서민금융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신규지정 및 수시지정은 2021년 중 발생한 건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7. 12.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250) 2021년 신규지정된 기타공공기관 12개를 제외한 수치임(350=241+74+23+12)

- 2021년 공공기관 기준으로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을 조사 주관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I-86>과 같음.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 중 4개 기관은 2019년까지는 주무부처 주관 조사 대상이었으나 2020년도 조사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로 편입됨.
 - 새만금개발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이에 해당함.
 -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15개 기관 중 「공운법」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로 수검하는 기관은 4개 기관임.
 - (재)축산환경관리원,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이에 해당되며 모두 2020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임.

<표 III-86>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2021. 4월 기준)

구분	기관명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41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표 Ⅲ-86〉의 계속

구분	기관명
기획 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41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연구원, (재)한식진흥원, (주)공영홈쇼핑, (주)위터웨이플러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암센터,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환경보전협회

〈표 III-86〉의 계속

구분	기관명
주무 부처 주관 조사 (74개)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축산환경관리원, 88관광개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전직교육원,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산업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조사 미수검 기관 (35개)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세종학당재단,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코레일테크(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MCS(주),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 1. 2021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2021년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함

2. 밑줄 처리된 기관은 2021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7. 16.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6.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1. 7. 12.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조사 수검 315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조사 미실시 등으로 인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서 반영하지 않음.
 -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공항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잡월드가 이에 해당함.

- 307개 공공기관²⁵¹⁾에 대한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87>과 같음.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2018년 조사까지 수준등급과 더불어 그룹별 상대등급을 발표하였으나 2019년 조사부터 상대평가를 완화하고 절대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상대등급은 발표하지 않음.
 - 그룹분류가 폐지됨에 따라 그룹별 상대등급 부여도 폐지됨.
 - 2019년 조사에서는 우수-양호-보통-미흡 4단계의 절대등급만 부여했으며, 2020년 조사결과는 보도자료상 발표된 기준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점수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하였으며, 기존 4단계의 절대등급은 알리오에 공시함.

- 2020년 조사결과를 4단계 절대등급에 따라 분석하면 ‘우수’ 기관이 45개, ‘양호’ 기관이 137개, ‘보통’인 기관이 95개, ‘미흡’ 기관은 30개이며, 307개 기관 중 2020년에 최초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4개 기관은 모두 ‘보통’ 또는 ‘미흡’ 수준임.
 -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개 기관은 고객만족도 등급이 ‘보통’ 수준이며, (재)축산환경관리원과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미흡’ 수준임.
 - ‘양호’ 및 ‘보통’ 수준인 기관이 전체의 75.6%(232개)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최하위 수준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체 307개 기관 중 30개 기관으로 9.77%를 차지함.
 - ‘미흡’인 기관 중 24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미흡’인 기관 전체의 80.0%를 차지함.
 - ‘미흡’인 기관 중 공기업은 3개 기관으로 (주)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에 해당하며, 준정부기관 역시 3개 기관으로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임.

251) 315개 기관 중 고객만족도조사결과를 경영실적평가 시 반영하지 않은 8개 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III-87〉 2020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구분	기관명
우수 (45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기술품질원, 국토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쟁기념사업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양호 (137개))	(공기업)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주)위터웨이플러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해양박물관, 국방과학연구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동북아역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산업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 III-87〉의 계속

구분	기관명
양호 (137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보전협회
보통 (95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재)한식진흥원, 88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암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식품안전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통일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표 III-87〉의 계속

구분	기관명
보통 (95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미흡 (30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재)축산환경관리원, (주)공영홈쇼핑,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과학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기초과학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체육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략물자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유통(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 1. 고객만족도 조사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별 조사에서 측정된 고객만족도 등급을 기재

2. 2021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2021년 신규 지정기관,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3. 밑줄 처리된 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 최초 수검기관(4개)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1. 7. 12.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의 기관유형별 등급 분포는 <표 III-88>과 같음.

- 공기업 유형은 고객만족도가 '우수' 등급인 기관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많아 고객만족도 수준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은 23개 공기업 중 '우수' 등급인 기관이 8개(34.8%)이고 '양호' 등급인 기관도 7개(30.4%)로, '양호' 이상인 기관이 전체의 65.2%를 차지함.
 - 고객만족도 등급이 '보통' 등급인 기관은 5개 기관이며, '미흡' 등급인 기관은 3개 기관임.
-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준정부기관은 92개 기관이며, 이 중 62개 기관(67.4%)이 '양호' 수준 이상임.

- ‘우수’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17개로 전체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호’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45개로 전체의 48.9%를 차지함.
-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양호’ 등급인 기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7개 기관(29.3%)이 ‘보통’ 수준이며 최하위 등급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3개 기관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함.
- 2020년 고객만족도를 수검한 기타공공기관은 192개 기관으로 전체의 77.1%의 기관이 양호 또는 보통 등급을 차지함.
- ‘우수’ 등급인 기타공공기관은 20개인 1.0%이며, ‘미흡’ 등급인 기관은 24개 기관으로 1.3%를 차지함.
-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대부분의 기관(232개, 75.6%)이 ‘양호’와 ‘보통’ 등급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 등급에 분포한 공공기관은 45개로 14.7%, 최하위 등급인 공공기관은 30개로 9.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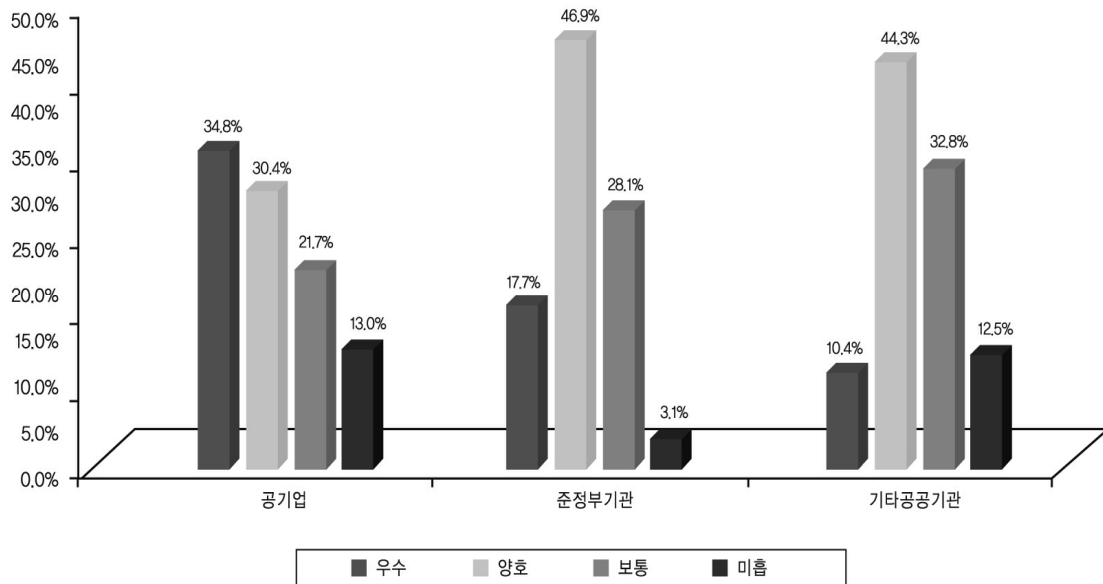
〈표 III-88〉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단위: 개)

구 분			조사대상	고객만족도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공 기 업	시장형	16	8	3	2	2	1
	준시장형	20	15	5	5	3	2
	소 계	36	23	8	7	5	3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13	3	7	3	0
	위탁집행형	83	79	14	38	24	3
	소 계	96	92	17	45	27	3
기타공공기관		218	192	20	85	63	24
합 계		350	307 (100%)	45 (14.7%)	137 (44.6%)	95 (30.9%)	30 (9.8%)

주: 2021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2021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1. 7. 12.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44〉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1. 7. 12.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2019년도 고객만족도 수준과 2020년도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57.9%(173개)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III-89>).

-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기관 중 공기업은 16개, 준정부기관은 60개, 기타 공공기관은 97개임.
- 고객만족도 수준이 2019년도에 비해 개선된 기관은 48개로 분석대상기관(299개)의 16.1%를 차지함.
 - 1개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및 35개 기타공공기관이 전년도보다 고객만족도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고객만족도 등급이 개선된 48개 기관 중 국립생태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단계 상승함.
 - 이 외 46개 기관은 고객만족도 등급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함.
- 2019년도에 비해 고객만족도 수준이 악화된 기관은 78개로 전체의 26.1%를 차지함.
 - 3개 공기업, 20개 준정부기관 및 55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코레일유통(주)는 2019년 '우수'에서 2020년 '미흡'으로 3단계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기관 중 19개 기관은 2단계 하락하였으며, 58개 기관은 1단계 하락함.

-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고객만족도 등급 변동 현황 및 내역은 <표 III-89>, <표 III-90>, <표 III-91>과 같음.

〈표 III-89〉 전년 대비 2020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

(단위: 개)

구 분			2020년도 조사대상기관	2019년도 대비 등급 개선수준			
				분석 대상기관	상승 (▲)	유지 (-)	하락 (▼)
공 기 업	시장형	16	8	8	0	7	1
	준시장형	20	15	12	1	9	2
	소 계	36	23	20	1	16	3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13	13	1	9	3
	위탁집행형	83	79	79	11	51	17
	소 계	96	92	92	12	60	20
기타공공기관		218	192	187	35	97	55
전 체		350	307	299 (100%)	48 (16.0%)	173 (57.9%)	78 (26.1%)

주: 1. 기관 유형은 2021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조사대상기관(307개)은 2021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분석대상기관(299개)은 2021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9년 및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20~2021년 신규지정기관 및 지정해제기관,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1. 7. 12.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90〉 전년 대비 2020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299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등급 상승	48 (16.1%)	46	2	0
등급 유지	173 (57.9%)	-	-	-
등급 하락	78 (26.1%)	58	19	1

주: 2021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9년 및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2020~2021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기관,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1. 7. 12.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91〉 전년 대비 2020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48개)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토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식품안전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코레일로지스(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보건협회
등급 유지 (173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재)한식진흥원, (주)위터웨이플러스, 88관광개발(주), 강원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식품검역인증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표 Ⅲ-91〉의 계속

구분	기관명
등급 유지 (173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산업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전쟁기념사업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급 하락 (78개)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주)공영홈쇼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방전직교육원, 기초과학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예술의전당, 재외동포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유통(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주: 2021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9년 및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집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
 (2020~2021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기관,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1. 7. 12.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부터 도입된 절대평가 방식의 조사결과는 기관사업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2020년 조사부터 결과를 발표함.
- 각 기관은 3년 평균실적을 기초로 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평가 후 달성도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함.
 - 2020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이 기관 전체 사업의 70% 이상인 경우 목표 달성도 평가에서 제외함.
- 2020년 조사결과, '우수' 등급인 기관은 39개, '보통'인 기관은 81개, '미흡'인 기관은 74개이며²⁵²⁾ 47개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조사 미 실시 등으로 결측처리함.
- '우수'는 기관의 모든 평가대상 업무에서 고객만족도가 과거보다 개선·유지된 경우로(목표 달성도 100%),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0개, 기타공공기관 25개가 이에 해당함.
 - '보통'은 '우수'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체사업의 5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경우로,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43개, 기타공공기관 35개가 해당함.
 - '미흡'은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인 경우로, 공기업 11개, 준정부기관 33개, 기타공공기관 30개가 해당함.
- 미흡기관(74개)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임.

〈표 III-92〉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목표 달성도 등급별 분포

구분	기관명
【우수】 1.00 (39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립기념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재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252)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1. 4. 28.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조사대상 기관은 243개로 발표되었으나 이 중 2개 기관이 2021년 지정해제되어 분석에서 제외함에 따라 분석대상 기관 수는 241개임

〈표 Ⅲ-92〉의 계속

구분	기관명
【우수】 1.00 (39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재)한식진흥원
【보통】 1.0미만~ 0.9이상 (81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식품안전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주)위터웨이플러스,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여항공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전력규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재)APEC기후센터
【미흡】 0.9미만 (74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수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표 III-92〉의 계속

구분	기관명
【미흡】 0.9미만 (74개)	(기타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주)공영홈쇼핑, 광주과학기술원,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체육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략물자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로지스(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환경보건협회
달성도 평가 제외 (47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주식회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도로교통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암센터,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잡월드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1. 4. 28.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각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수준등급과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수준등급이 우수한 기관 중 2개 기관은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준등급이 미흡한 기관 중 1개 기관은 목표달성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수준등급이 우수한 기관 중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조폐공사로 2개 기관은 조사의 절대점수는 높으나 해당 기관의 3개년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한 목표점수에는 미치지 못함.
 - 반면, 수준등급이 미흡한 기관 중 목표달성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절대점수는 낮으나 해당 기관의 3개년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한 목표점수를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함.

〈표 Ⅲ-93〉 2020년도 수준등급과 목표달성도 비교

(단위: 개)

수준등급	기관수 (194개)	목표달성도		
		우수	보통	미흡
우수	28 (14.4%)	15	11	2
양호	86 (44.3%)	16	51	19
보통	59 (30.4%)	7	17	35
미흡	21 (10.8%)	1	2	18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1. 4. 28.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1. 7. 12.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함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²⁵³⁾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에 근거하여 청렴도 측정을 실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기능,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권한을 가짐.
- 청렴도는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로 구성됨.
 - 청렴도 설문조사는 전화조사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를 병행하며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함.

253)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0. 6.,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참고

- 2020년도 모형부터는 공직유관단체 I·II 유형에 한해 조사하는 정책고객평가를 종합청렴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기관의 청렴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에 세부 결과 제공.

-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지방의회 등 크게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측정을 실시함.²⁵⁴⁾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며,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이 중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함.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의 경우, 법인격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 대상이 되며,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그 대상이 됨.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의 경우, 국공립대학 및 관련 법인이 대상이 되며,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4개 과학기술원이 그 대상이 됨.²⁵⁵⁾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총 723개 기관으로, 이 중 157개 기관이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94〉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청렴도 측정 유형별)

(단위: 개)

청렴도 측정 유형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	「공운법」상 공공기관 (2021년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중앙행정기관	45	-
	지방자치단체	243	-
	교육청	90	-
	공직유관단체	202	137
지방의회		65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44	16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34	4
합계		723	15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획」, 2020. 6.,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254)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0. 6.,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참고

255)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2)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모형²⁵⁶⁾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며,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도 유사한 모델을 적용하되, 일부 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청렴도 측정은 2002년 최초 시행 이후 두 차례(2008년, 2012년)의 개편을 통해 현재의 종합 청렴도 모형에 이르렀으며, 2020년도에는 기존에 종합 청렴도 산출시 포함되었던 정책고객평가를 제외하는 등 일부 모형을 수정함.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I·II유형에 국한하여 실시하되, 종합청렴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해당공공기관에 조사결과를 별도로 제공도록 함.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감점함.
 - 외부청렴도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부패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민업무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민원인이, 대기관업무일 경우에는 상대 공직자가 평가자가 됨.
 - 내부청렴도란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내부 직원 등이 평가자가 됨.
-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측정범위를 합리화 하고, 정책고객평가 방식 개선 및 부패사건 감점 제외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모형의 타당성을 제고하였으며, 기관 정원 변경 요인 등을 감안하여 기관유형 분류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음.
- 측정범위의 합리화를 위해 2019년도 청렴도 우수기관은 2020년 청렴도 측정을 면제하였으며 부패취약분야 등 심화측정필요 분야의 측정은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측정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격년 측정 등 측정방식을 조정하였음.
 - 공직유관단체 중 '연구원'유형은 격년 측정하도록 하여, 2020년도 측정에서는 제외함.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측정이 곤란한 업무는 제외하고, 부패 개연성이 있는 신규 업무를 발굴하여 측정함.

256)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0. 6.,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참고

- 측정모형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청렴수준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내부적발사례는 제외하고 외부고발 사건은 감점을 적용함.
 - 소극행정도 부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함.
 - 정책고객평가의 경우 유지·심화하되, 기관에 세부결과를 제공하여 청렴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 III~V 유형의 기관수가 보다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기관 정원 분류기준을 소폭 조정함.

〈그림 III-45〉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주: 1.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 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2. 종합청렴도 산출 시에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를 가중합산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²⁵⁷⁾ 결과에 감점²⁵⁸⁾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함.
 -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립대학병원, 국립·지방의료원 등 2개 유형으로 나누어 발표하되, 우수기관면제 기준에 따라 2개 기관(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도 삼척의료원)은 2020년에는 측정이 면제됨.
- 2020년도에는 설문 항목 보완을 통해 측정의 적절성을 제고 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공의료기관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청렴도 조사를 진행함.
 - 유사·중복 응답 가능성이 있었던 부정청탁금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항목을 측정 문항에서 제외하고, 부패방지제도 설문 항목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인식 문항을 조정함.
 - 코로나19로 보호자 출입이 통제된 시기에 조사대상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의 보호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사범위를 일부 조정함.

257) 계약, 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으로 구성

258) 리베이트 등 부패사건 발생현황, 진료비 과다청구 등 반영

〈그림 III-46〉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강의·연구 등 내부 활동의 비중이 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012년도에 특화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과거의 청렴도 사업주기를 고려하여 4년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측정하되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은 부정기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함.
 - 2018년도의 경우 교육대학을 측정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4년제 국공립대학에 한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는 계약,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영역의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함.
 - 계약영역은 대학과 계약업무를 경험한 입찰참가자를 포함한 외부민원인이 평가하며, 연구·행정·조직문화제도 영역은 교직원, 연구원, 조교 등 내부 구성원이 평가함.
-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서는 주관적 응답 가능성을 낮추도록 설문을 개선하고, 소극행정도 부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 영역에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함.
 - 주관적인 응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부패경험 인지 경로에 관한 문항을 추가 개설하여, 소문·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한 경우는 부패경험에서 제외함.

〈그림 III-47〉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3)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²⁵⁹⁾

- 2021년도에 지정된 공공기관(350개) 중 2020년도 청렴도 측정을 수검한 기관은 총 157개 기관으로 전체 대비 45% 정도가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됨.²⁶⁰⁾
- 33개 공기업, 79개 준정부기관 및 45개 기타공공기관이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됨.
 - 157개 기관 중 137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에 분류되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수검함.
 -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95〉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공공기관 유형별)

(단위: 개)

구 분		「공운법」상 공공기관 (2021년도 기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36	33
	준정부기관	96	79
	기타공공기관	218	25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16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4
합계		350	15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참고

-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수는 2019년도에 187개 기관에서, 2020년도 157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측정 기관수가 30개 감소함.
- 조사면제, 조사격년실시, 조사 미실시 및 지정해제 등의 사유로 31개 기관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도에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측정제외되었던 한국부동산원이 측정대상에 포함됨.
- 2019년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4개 기관은 2020년도에 한 해 청렴도 수검을 면제 받음.

259)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0. 6.,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참고

260)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에 따름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중부발전(주)
- 공직유관단체-연구원 유형은 2020년부터 격년 측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0년에는 조사를 수검하지 않아 25개 기관²⁶¹⁾이 측정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기관은 2021년에 측정할 예정이다.
- 공직유관단체⁴ 유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경우, 표본 수 부족으로 2020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제외됨.
- 한국건설관리공사(주)의 경우, 2020년도 청렴도 측정을 수검하였으나, 2021년 공공기관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하 분석에서는 제외함.

〈표 III-96〉 2019년 측정대상 공공기관 중 2020년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

(단위: 개)

구분	해당 기관 수	내 용
조사면제	4	한국중부발전(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조사격년실시	25	공직유관단체-연구원 유형
조사미실시	1	국제방송교류재단(표본수 부족으로 조사 실시하지 못함)
2021년 지정해제	1	한국건설관리공사(주)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참고

- 청렴도 측정 결과는 유형 내 등급으로 발표되며 2020년도 청렴도 측정을 수검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은 유형 내 상대등급으로 부여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공직유관단체는 다시 연구원, 기관규모(정원)에 따른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발표함.
- 2020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기관 정원 변경 요인 등을 감안하여 기관유형 분류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음.²⁶²⁾

261)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 공직유관단체 I 유형(3,000명 이상), II 유형(1,000명 이상~3,000명 미만), III 유형(500명 이상~1,000명 미만), IV 유형(300명 이상~500명 미만), V 유형(300명 미만)
- 결과 발표 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 등 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은 유형구분 없이 하나의 유형으로 결과를 발표함.
- 그동안 청렴도 결과 발표 시, 기관 등급과 함께 청렴도 점수가 발표되어 순위 위주의 보도가 양산되고, 기관 간 지나친 경쟁이 유발되어 우수사례 공유가 저해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부터는 청렴도 등급만 발표하고 있음.

〈표 III-97〉 2020년도 유형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 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 (22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II (33개)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수출입은행,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III (30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62) 'III유형(400명 이상~1,000명 미만), IV유형(200명 이상~400명 미만), V유형(200명 미만)'의 기준을 'III유형(500명 이상~1,000명 미만), IV유형(300명 이상~500명 미만), V유형(300명 미만)'으로 변경함

〈표 III-97〉의 계속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 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Ⅲ (30개)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Ⅳ (22개)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타공공기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투자공사
	Ⅴ (30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노사발전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세라믹기술원, 환경보건협회
공공 의료 기관 청렴도 측정	국립대학 병원 등 (15개)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지방 의료원 (1개)	(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국공립 대학 청렴도 측정	대학교 (4개)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주: 2021년도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참고

〈표 III-98〉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유형 변경 현황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 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	(편입: II → I) 한국환경공단
	II	(편입: III → II) 국방기술품질원 (편입: 2019조사면제 → 재측정) 한국부동산원 (제외: II → I) 한국환경공단 (제외: II → III) 대한석탄공사 (제외: 2019년우수기관/2020년조사면제) 한국중부발전(주)
	III	(편입: II → III) 대한석탄공사 (제외: III → II) 국방기술품질원 (제외: III → IV)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외: 2019년우수기관/2020년조사면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IV	(편입: III → IV)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외: IV → V)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노사발전재단,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환경보건협회 (제외: 표본 수 부족으로 조사 미 실시) 국제방송교류재단 (제외: 2021년 공공기관 지정해제) 한국건설관리공사
	V	(편입: IV → V)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노사발전재단,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환경보건협회
	연구원	(격년 측정으로 변경되어 2020년도 조사 미 실시)
공공 의료 기관 청렴도 측정	국립 대학병원 등	(제외: 2019년 우수기관/2020년 조사면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국립·지방 의료원	

주: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대상은 변경사항 없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1. 1. 29. 참고

4) 2020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²⁶³⁾

- 2020년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은 10점 만점에 평균 8.27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 0.08점 상승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은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대비 동일하였으며, 국공립대학의 경우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함.
-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대부분 속한 공직유관단체 유형의 종합청렴도는 8.53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직유관단체의 외부청렴도가 0.09점 상승한 데 비해 내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0.12점 하락하였음.
-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환자진료 및 부패방지제도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계약, 내부업무, 조직문화 점수의 하락으로 종합청렴도는 작년과 동일한 점수였음.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행정부문을 제외한 계약, 연구, 조직문화제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점수가 상승함.
- 2020년도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그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3등급을 받은 기관이 68개로 가장 많았음.²⁶⁴⁾
- 2020년도에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4개 기관으로, 2019년도 결과 대비 4개 기관이 감소함.

263)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참고

264) 종합청렴도 등급 판정은 측정 대상기관 유형별로 다른 등급구간을 적용하는데, 종합청렴도 등급구간은 유형별로 유형내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함(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5등급이 최하위 등급임)

〈표 Ⅲ-99〉 2019년도 및 2020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비교

(단위: 개)

구 분	「공운법」상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등급 분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0년도	350	157	4	42	68	36	7
2019년도	340	187	8	49	79	41	10
증 감	+10	△30	△4	△7	△11	△5	△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 청렴도 측정 유형별로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I~V 유형과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유형에서 등급별로 기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음.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 정원을 기준으로 I~V 유형으로 구분함.²⁶⁵⁾

- 공직유관단체 I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이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공직유관단체 II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임.
- 공직유관단체 III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이며, 동 유형에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공직유관단체 IV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5등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산자원공단임.
- 공직유관단체 V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5등급 기관도 없었음.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으로 유형이 나뉘는데 대학병원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며, 전남대학교 병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등급을 받음.

- 국립의료원에 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4등급을 받음.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의 경우 울산과학기술원은 3등급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4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두 개 기관²⁶⁶⁾은 5등급을 받음.

265) 공직유관단체 I 유형(3,000명 이상), II 유형(1,000명 이상~3,000명 미만), III 유형(500명 이상~1,000명 미만), IV 유형(300명 이상~500명 미만), V 유형(300명 미만)

266)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표 III-100〉 2020년도 청렴도 측정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공공 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2등급)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전KPS(주) (3등급) (주)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4등급) 대한적십자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II (2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3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4등급) 국가철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III (1등급) 대한석탄공사 (2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3등급)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환경공단 (4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IV (2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투자공사 (3등급)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표 III-100〉의 계속

구분	기관명
공공 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V (4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산자원공단
	V (2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사발전재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정부법무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3등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인천항만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등급) 대한체육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환경보전협회
공공 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국립 대학병원 등 (1등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등급)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3등급) 강원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4등급)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5등급) 전남대학교병원
	국립·지방 의료원 (4등급) 국립중앙의료원
국공립 대학 청렴도 측정	국공립 대학 (3등급) 울산과학기술원 (4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등급)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참고

-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유형에 따라 종합청렴도 등급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의 경우,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가 1등급을 받았으며, 전체 측정 대상 공기업의 81.8%가 3등급 이상을 받아 청렴도 수준이 다른 유형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의 경우, 3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72.2%에 해당하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연속 1등급을 받음.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3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66.7%를 차지하며 다른 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9년도의 63.9%에 대비하면 상승한 모습임.
- 최하위등급(5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3개 등 총 7개 기관이었음.
- 공기업 중 5등급 기관은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유일함.
 -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았던 대한석탄공사는 유형이 공직유관단체 II에서 공직유관단체 III으로 유형이 변경되었고 2020년도 측정에서 등급이 대폭 상승하여 1등급을 받음.
 - 준정부기관 중 5등급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산자원공단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렴도 등급이 2단계 하락하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청렴도 등급이 각각 1단계 하락함.
 - 기타공공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기관이 5등급을 받음.
 - 광주과학기술원은 4년 연속 5등급, 전남대학교병원은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원도 2016년 이후 주로 4~5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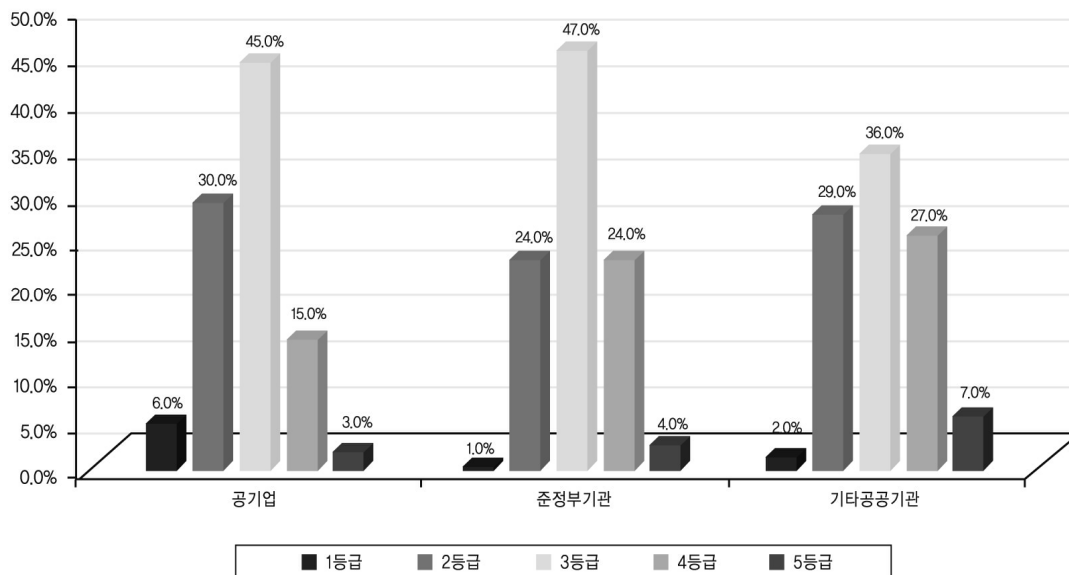
〈표 III-101〉 2020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 대비 등급 개선수준

(단위: 개)

구 분			종합청렴도 등급					전년 대비 등급 개선수준			
			측정 대상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공기업	시 장 형 (16)	14	1	3	9	0	1	14	4	7	3
	준시장형 (20)	19	1	7	6	5	0	18	4	11	3
	소 계 (36)	33	2	10	15	5	1	32	8	18	6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13)	11	0	4	6	0	1	11	2	6	3
	위탁집행 (83)	68	1	15	31	19	2	68	16	30	22
	소 계 (96)	79	1	19	37	19	3	79	18	36	25
기타공공기관 (218)		45	1	13	16	12	3	45	21	19	5
전 체 (350)		157 (100%)	4 (3%)	42 (27%)	68 (43%)	36 (23%)	7 (4%)	156 (100%)	47 (30%)	73 (47%)	36 (23%)

주: 1. 공공기관이 수집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2021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9년도 및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집하고 점수결과를 공개한 15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3.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측정 면제로 등급개선수준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48〉 2020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등급 상승 폭이 큰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 중 대한석탄공사는 유형이 변경되면서,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년 대비 등급이 대폭 상승하였음.
 - 준정부기관 중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2단계 상승함.
 - 기타공공기관 중 서울대병원, 정부법무공단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각각 등급이 2단계 상승함.
- 전년 대비 2단계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준정부기관 5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 등 8개 기관임.
- 준정부기관 중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중소기업진흥진흥공단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2단계 하락함.
 - 기타공공기관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2단계 하락함.

〈표 III-102〉 2020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1등급 (4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공공기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등급 (42개)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타공공기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노사발전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정부법무공단,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표 III-102〉의 계속

구분	기관명
3등급 (68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기술품질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영화진흥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병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가철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부산대학교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환경보건협회
5등급 (7개)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산자원공단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주: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부처별로 등급 분포와 등급 개선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표 III-103>, <표 III-104>와 같음.

<표 III-103>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0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 대비 개선수준
(단위: 개)

구 분	종합청렴도 등급						전년 대비 등급 개선수준			
	소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기획재정부	4	0	4	0	0	0	4	2	2	0
교육부	17	1	4	6	4	2	17	7	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0	1	7	4	2	14	3	9	2
외교부	1	0	0	1	0	0	1	1	0	0
행정안전부	1	0	0	1	0	0	1	0	1	0
문화체육관광부	7	0	2	2	3	0	7	4	3	0
농림축산식품부	6	0	2	3	1	0	6	2	2	2
산업통상자원부	31	2	8	16	4	1	31	7	15	9
보건복지부	12	1	1	6	4	0	12	3	6	3
환경부	7	0	1	2	4	0	7	3	2	2
고용노동부	6	0	1	4	1	0	6	2	2	2
여성가족부	2	0	0	1	1	0	2	0	1	1
국토교통부	13	0	3	5	5	0	12	1	6	5
해양수산부	9	0	2	4	2	1	9	1	4	4
중소벤처기업부	5	0	1	1	2	1	5	1	2	2
방송통신위원회	1	0	1	0	0	0	1	1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1	0	0	0	1	1	0	0
금융위원회	7	0	4	3	0	0	7	3	3	1
공정거래위원회	1	0	0	1	0	0	1	1	0	0
국가보훈처	1	0	0	1	0	0	1	0	1	0
인사혁신처	1	0	1	0	0	0	1	1	0	0
경찰청	1	0	0	0	1	0	1	0	1	0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1	0	0	1	0	1	0
소방청	1	0	1	0	0	0	1	0	1	0
방위사업청	1	0	0	1	0	0	1	0	1	0
농촌진흥청	1	0	1	0	0	0	1	0	1	0
기상청	1	0	1	0	0	0	1	0	1	0
산림청	1	0	0	1	0	0	1	0	1	0
법무부	2	0	1	1	0	0	2	2	0	0
특허청	1	0	1	0	0	0	1	1	0	0
전 체	157	4	42	68	36	7	156	47	73	36

주: 1. 공공기관이 수집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측정 수집기관이 없는 부처는 제외하고 작성

3.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측정 면제로 등급개선수준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10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0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4개)	(2등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17개)	(1등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등급)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3등급) 강원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북대학교병원, 한국장학재단 (4등급)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5등급) 전남대학교병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개)	(2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등급)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외교부 (1개)	(3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3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7개)	(2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3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4등급)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6개)	(2등급)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3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4등급)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 (31개)	(1등급)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2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주) (3등급)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표 III-104〉의 계속

주무부처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31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4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5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보건복지부 (12개)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2등급) 국민연금공단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4등급)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7개)	(2등급) 국립생태원 (3등급)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환경보건협회
고용노동부 (6개)	(2등급) 노사발전재단 (3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여성가족부 (2개)	(3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13개)	(2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3등급) 국토안전관리원(舊.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4등급) 국가철도공단(舊.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9개)	(2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3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4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
중소벤처기업부 (5개)	(2등급) 기술보증기금 (3등급) 한국벤처투자 (4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5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표 Ⅲ-104〉의 계속

주무부처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1개)	(2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2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 (7개)	(2등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3등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정거래위원회 (1개)	(3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1개)	(3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혁신처 (1개)	(2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청 (1개)	(4등급) 도로교통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3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방청 (1개)	(2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방위사업청 (1개)	(3등급) 국방기술품질원
농촌진흥청 (1개)	(2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상청 (1개)	(2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림청 (1개)	(3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법무부 (2개)	(2등급) 정부법무공단 (3등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특허청 (1개)	(2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 1. 공공기관이 수집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측정 대상이 없는 부처는 제외
 3. () 안은 부처별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중 등급을 공개한 기관수를 의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를 참고하여 작성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²⁶⁷⁾

1) 통합공시제도 개요

-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은 「공운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함.
 - 2021년 9월 현재 경영공시 의무대상인 350개 공공기관과 20개 부설기관이 알리오 시스템에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공시 중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통합공시기준’)」 제4조와 <별표1>에 의거하여 5개 대항목 하위에 총 41개 항목에 대한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2021년 3월 통합공시기준 개정을 통해 유관 경영정보의 공시 항목을 일원화하고 공시항목을 통·폐합하여 2020년까지는 42개였던 공시항목을 41개로 정비함.
 - <표 III-105>와 같이 통합공시기준 <별표1>에 명시된 공시대상 항목과 항목별 공시기준은 「공운법」 제11조 제1항 1호에서 16호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통합공시 항목 41개 중 3개 항목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²⁶⁸⁾
 -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시주기(정기공시/수시공시) 및 항목의 중요도(중요항목/기타항목)를 기준으로 공시항목을 구분함.
 - 통합공시 매뉴얼에서는 통합공시 항목(41개)을 5개 대항목²⁶⁹⁾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세항목과 세세항목을 두고 있음.
 - 5개 대항목에 대한 항목 체계와 공시주기 현황은 <표 III-106>과 같음.

26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1. 3.,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4. 9. 및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4. 9.을 참고하여 작성

268)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3개 항목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임

269) 5개 대항목은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로 구성

〈표 Ⅲ-105〉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관련 「공운법」 조항 및 주요 변동내역

구 분		관련 「공운법」 조항 (제11조 제1항 각 호)	2020년 대비 변동사항
대항목	공시항목명		
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1호	
II. 기관운영	2. 임직원 수	제3호	
	3. 임원현황	제3호	
	4. 신규채용 현황	제3호	항목명 변경 공시내용 조정 (타항목 이동)
	5. 임·직원 채용정보	제16호	대항목 변경
	6. 임원연봉	제3호, 제4호	
	7. 직원 평균보수	제4호	
	8. 기관장 업무추진비	제16호	
	9. 복리후생비	제4호	공시내용 조정 (타항목 이동)
	10.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제4호, 제16호	공시내용 조정 (타항목 이동)
	11. 임원 국외출장 내역	제16호	
	12. 노동조합 관련현황	제16호	공시내용 통합
	13. 정관 및 내부규정	제9호	
	14. 징계현황	제13호	
	15.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제14호	
	16.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제16호	공시내용 통합
	17.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제16호	대항목/항목명 변경 공시내용 추가
	18. 사회공헌 활동	제16호	대항목/항목명 변경 공시내용 통합

〈표 III-105〉의 계속

대항목	구 분	관련 「공운법」 조항 (제11조 제1항 각 호)	2020년 대비 변동사항
	공시항목명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9. 요약 재무상태표	제2호	
	20. 요약 손익계산서	제2호	
	21. 수입·지출현황	제1호, 제2호, 제4호	
	22. 주요사업	제16호	
	23. 투자집행내역	제16호	
	24.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제2호	
	25. 장단기 차입금현황	제2호	
	26.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제5호, 제16호	항목명 변경 공시내용 통합
	27. 경영부담비용 추계	제16호	공시내용 통합
	2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15호	
	29.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정보	제16호	
	30. 납세정보 현황	제16호	
	31. 감사보고서	제2호, 10호	공시내용 통합
Ⅳ. 대내외평가	32. 국회 지적사항	제12호	
	33.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제11호, 제12호	
	34. 경영실적 평가결과	제8호	
	35. 경영평가 지적사항	제8호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6호	
	37.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제7호	
	38. 이사회 회의록	제9호	항목명 변경 공시내용 조정 (타항목 이동)
Ⅴ. 정보공개	39. 경영혁신사례	제16호	
	40. 계약정보	제16호	공시내용 추가
	41. 연구보고서	제16호	

주: 2020년 대비 변동사항은 2021년 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2021. 2. 26.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 메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1. 3.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106〉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21. 9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항목별 하위 단위수준			공시주기(93개 세항목 기준)		
	항목	세항목	세세항목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항목	기타항목	
	41	94	121	22	47	24
I. 일반현황	1	1	1	0	1	0
II. 기관운영	17	51	77	14	27	10
I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3	27	28	8	12	6
IV. 대내외평가	7	8	8	0	4	4
V. 정보공개	3	7	7	0	3	4

주: 공시주기는 94개 세항목 중 세세항목 간의 공시주기가 상이한 1개 세항목을 제외한 93개 세항목을 대상으로 구분
 - 26-2 퇴직임·직원 재취업현황 세항목의 세세항목 중 '퇴직임원 재취업현황'은 수시공시에 해당하고 '퇴직직원 재취업현황'은 정기공시(주요항목)에 해당되어 분석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1. 3.을 참고하여 작성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련 정책 현안과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공운법」 제11조 및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하고 공시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정비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7년 2월에는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하여 일·가정 양립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이에 관련된 세부공시기준을 추가하여 2017년도 정기공시부터 반영함.²⁷⁰⁾
 - 추가된 세부공시기준은 유연근무제 성별 실시 인원수, 육아휴직 제도현황 및 성별 사용자수, 출산휴가 제도현황 및 성별 사용자수, 유산·사산휴가 제도현황 및 사용자수,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제 운영현황 등 5개임.
- 2018년 2월에는 아래 사항에 대해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²⁷¹⁾
 - 성별 임금현황,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채용단계별 상세정보에 대한 세부공시기준을 추가함.
 - 공공기관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 갱신주기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함.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요약대차대조표 (또는 요약재무상태표)' 항목 명칭을 '요약재무상태표'로 변경함.

270)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확정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보도자료, 2017. 2. 9.

27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2. 22.

- 2018년 3월에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²⁷²⁾
 -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되,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함.
 - 공시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함.
 - 대항목인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VI)'을 삭제하고 하위 2개 항목을 정비하는 등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을 개정함.
- 2018년 8월에는 「공운법」 개정 시행(2018. 9. 27. 시행)²⁷³⁾에 앞서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²⁷⁴⁾
 - 투자 및 출자현황 항목에 공시하던 출자회사 정보 중 퇴직 임원에 한해 공시 하던 채용정보를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퇴직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공시하도록 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항목을 신설하여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함.
- 2019년 3월에는 「공운법」 개정(2018. 12. 31 개정, 2019. 7. 1 시행)과 「공공기관 안전 강화종합대책」 수립으로 이와 관련된 공시항목의 세부 공시기준을 정비함.²⁷⁵⁾
 - 「공운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기존 공시내용인 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과 함께 추가적으로 임원의 성별 임금현황도 공시하기로 함.
 - 공공기관의 자발적 안전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 분야 공시 항목(사망자 수 및 재해통계,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신설함.
 - 이 외에 공공기관의 공시부담 경감과 공시주기 현실화를 위해 퇴직직원 취업현황 항목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항목의 공시주기를 수사에서 정기²⁷⁶⁾로 변경함.

27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3. 8.

273) 「공운법」 개정사항(2018. 3. 27. 일부 개정) 중 통합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제11조 제1항 제5호)

- 경영공시사항에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추가하여 일반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1항 제15호 신설)

27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8. 24.

27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9. 3. 28.

276) 퇴직직원 취업현황 항목은 연 4회 분기별로 정기공시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항목은 연 1회 10월에 정기 공시하기로 함

- 2020년 2월에는 통합공시기준 제12조(정의),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및 <별표2>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기준을 개정하여 공시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관의 공시담당자 개인에 대한 페널티를 완화함.²⁷⁷⁾
 - 불성실공시 유형을 세분화하여 위반 수준에 따른 별점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통합공시기준 제12조를 개정하여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되었던 ‘허위공시’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 과실(경과실)에 의한 수정은 ‘공시 오류’로 별도로 구분함.
 - 그리고 세분화된 불성실공시 유형에 따라 <별표2>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 기준도 정비하여 기존의 단순했던 허위공시 별점체계(4단계)를 허위공시와 공시 오류로 구분하여 각각 2단계의 별점체제로 개편함.
 - 기관 공시담당자 개인에 대한 페널티 완화를 위해 통합공시기준 제14조를 개정하여 종전의 불성실공시기관²⁷⁸⁾ 전체에 요구하던 기관 담당자 인사조치를 연간 별점 중 고의·중과실에 의한 별점이 50% 초과하는 불성실공시 기관에만 요구하기로 기준을 완화함.
 - 이 외에 공시 정보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1인당 복리후생비 공시 기준을 일원화²⁷⁹⁾하고 경영평가 조치결과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²⁸⁰⁾ 공시시기를 종전 차년도 1분기 정기공시에서 당해 연도 4분기 정기공시로 변경함.
 - 또한 2017년부터 기금계정의 공시기준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완전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재정상태표 기준의 작성을 폐지하고 요약재정상태표로 작성 기준을 일원화함.
- 2020년 12월에는 공시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관의 부담이 큰 공시항목의 별점 기준을 개선하여 경영공시 품질을 제고하고자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²⁸¹⁾
 - 공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타공공기관의 ‘우수 공시기관’ 지정요건을 완화²⁸²⁾하고, 전년 대비 별점이 50% 이상 개선된 기관은

27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2. 26.

278) 연간 별점 40점 초과 기관

279)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 산출(1인당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상시근로자수)

280) 알리오시스템 ‘35.경영평가 지적사항’ 항목에 당해 연도 실시한 경영평가의 지적사항을 3분기에 공시하고, 이에 후속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시하고 있음

28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12. 8.

-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추가 인센티브 추가²⁸³⁾ 및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근거²⁸⁴⁾를 마련함.
- 경영공시 별점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관의 공시부담이 큰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의 별점을 50% 축소(3점 → 1.5점)하고 공시 건수가 많은 수시항목의 공시 변경 별점을 공시건수에 비례해서 부과²⁸⁵⁾하기로 함.
 - 그 외에도 신규지정 공공기관은 공시 숙련도가 낮음을 감안하여 우수공시기관과의 1:1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제공하고, 당해 연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 불성실공시기관 또는 기관주의 대상기관 지정에서 면제해주기로 함.
 - 또한 단일 오류로 인해 한 공시항목 하위의 여러 세항목에서 허위공시나 공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1회만 별점을 부과하기로 함.
- 2021년 2월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구현과 정보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의 신설 및 조정을 추진함.²⁸⁶⁾
- ‘기타정보공개’ 항목을 ‘사회공헌활동’으로 변경하여 하위 세항목에 ‘봉사활동 실적’을 신설하고 ‘연간 출연 및 증여’ 항목에 있었던 ‘증여’를 ‘기부’로 명칭 변경하여 이동시킴.
 - 종전의 ‘안전관리’ 항목을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항목으로 항목명을 변경하고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3개 세항목을 신설했으며, 기존 세항목 ‘사고현황’,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 보고서’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개편함.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항목에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과 관련된 4개 세항목을 추가함.
 - ‘복리후생비’ 항목의 세세항목인 ‘보육비’에 포함되어 있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282) 기타공공기관에 한해 우수공시기관 및 공시향상기관 지정 시 기간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기타 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3년 기준을 유지함

283)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국민소통’ 지표(계량, 1점)를 통해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반영하는 것에 추가하여 우수공시기관에 한해 2021년도 경영평가부터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비계량, 1점)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공시향상기관에 대해서는 공시점검 관련 경영평가 득점(최대 1점 이내)에 최대 0.05점까지 추가 배점할 수 있도록 개선함

284) 우수공시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기타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공시기준 개정

285) 입찰정보 항목과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에 한해 공시변경에 따른 별점 체계를 공시 건수(두 항목의 공시 건수 합계)에 따라 차별화하기 위해 공시 건수 100건 이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점 0.1점 부과, 101~1,000건은 별점 0.05점 부과, 1,001~5,000건은 0.025점 부과, 5,000건 이상은 0.01점 부과로 개편함

28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2. 26.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항목의 세항목으로 이동시킴.

-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으나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던 혁신조달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계약정보’ 항목의 세부항목으로 신설하여 공시하도록 함.
- 정보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유사 공시내용을 통합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재무정보 관련 공시항목²⁸⁷⁾, 내·외부 감사 관련 공시항목²⁸⁸⁾, 기타항목²⁸⁹⁾ 등을 정비함.

□ 기획재정부는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해 통합 공시기준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에 따라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정보 및 첨부자료의 정확성, 충분성, 적시성 등을 확인 및 검증하고 있음.

- 2006년 알리오시스템 구축과 2007년 최초 통합공시 이후 공시항목이 꾸준히 증가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공시정보의 품질 관리가 중요해짐.
-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공시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을 꾸준히 추진함.
 - 2013년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복리후생 관련 공시정보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성실히 공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2014년 초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됨.
 - 2015년에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기준을 개선하여 불성실공시를 공시 불이행, 허위공시, 공시변경으로 유형화하고 공시유형별로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을 달리 부과하도록 벌점체계를 전면 개편함.
 - 2016년에는 종전의 처벌위주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자 통합공시기준에 우수 공시기관 선정근거를 명문화하고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시작함.²⁹⁰⁾

287) ‘투자 및 출자현황’, ‘연간 출연 및 증여’ 및 ‘경영부담비용 추계’ 등 3개 공시항목을 통해 공시되던 ‘출자·출연’과 ‘보증’ 관련 공시내용을 정비

288) 종전 ‘감사보고서’ 및 ‘이사회회의록 및 내부감사결과’ 등 2개 공시항목에 나누어 공시하던 내·외부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 항목에서 일원화하여 공시

289) ‘신규채용현황’ 항목에서 공시하던 유연근무 현황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항목에서 공시하고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항목에서 공시하던 노조 관련 공시내용을 ‘노동조합 관련현황’ 항목에서 공시하기로 함

- 2018년에는 우수공시기관의 선정기준²⁹¹⁾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교육 실시, 정부-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간 Q&A코너 개설, 공시 미흡 기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공시품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함.
- 2019년에는 종전까지 연 1회 실시하던 공시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여 공시 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위해 노력함.
- 2020년에는 공시점검에 따른 기관 공시담당자 인사조치가 과도하여 담당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 개인에 대한 인사조치 요건을 강화하고 불성실공시 유형을 세분화하여 위반수준에 따른 벌점 체계를 정비함.
-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공기관과 신규 지정 공공기관²⁹²⁾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매뉴얼 교육, 멘토 지정 등 공시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²⁹³⁾
- 2021년에는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점검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 100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점검단'이 공시·통계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사항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공시기준 제13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항목의 중요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벌점을 달리 부과함.

- 2020년 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를 미공시(고의·중과실/경과실), 허위공시, 공시오류, 지연공시, 공시변경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함.
 - '허위공시'는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하여 외부에 적발된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과실에 의한 수정은 '공시오류'로 분류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유형을 세분화함.
- 위반 수준은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되는데, 중과실은 공시 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이며,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함.
 - 수치 입력의 오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미공시 등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단순한 계산의 실수, 첨부파일 오류나 매뉴얼이 모호한 경우 해석상 오류 등은 경과실 사례로 볼 수 있음.

290) 2015년에는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 규정은 없었으나, 우수공시기관은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291) ('16년) 무벌점기관 → ('17년) 무벌점기관이면서 최근 3년간('15~'17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

292) 2020년 상반기 통합공시 점검('20.3.31.) 결과에 따라 총 25개 공공기관이 선정됨

293) 기획재정부, 「기재부, 공공기관 공시 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 시행」, 보도자료, 2020.6.17.

- 최근 경영공시 별점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2020년 1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을 통해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과 ‘입찰정보’ 항목과 같이 기관 부담이 큰 공시항목에 한해 별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함.
- 구체적인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기준은 통합공시기준 <별표2>에서 정하며 이를 요약하면 <표 Ⅲ-107>과 같음.

<표 Ⅲ-107>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별점 부과 체계

구분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항목		기타항목			
		고의·중과실	경과실	고의·중과실	경과실	고의·중과실	경과실
불성실공시 유형	미공시	5점	3점	3점	1.5점	3점	3점
	지연공시	-				1~2.5점	
	허위공시	5점	-	3점	-	3점 (1.5점)	-
	공시오류	-	3점	-	1.5점	-	1.5점 (0.75점)
	공시변경	0.5점				0.1점 (0.1점×1/조정계수)	

주: 1. 지연공시는 수시공시 항목에만 적용되며 공시시한 위반수준(위반일)에 따라 별점을 차등 적용함

(1주일 이내 1점, 1주일 초과~1개월 이내 1.5점,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2점, 6개월 초과 2.5점)

2. 수시공시항목인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에 한하여 허위공시와 공시오류에 대해 ()의 별점 적용

3. 수시공시항목인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과 ‘입찰정보’에 한하여 공시변경에 대해 ()의 별점을 적용하며 조정계수는 상기 2개 항목의 공시건수의 합계에 따라 달리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2021. 2. 26.을 참고하여 작성

- 통합공시기준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에 따라 점검결과 별점이 부과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점 정도에 따라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사후조치로 ‘기관주의’ 조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을 실시함.
- 연간 누적별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의 대상이 되며, 연간 누적별점이 40점을 초과한 기관이거나 2년 연속 별점 20점을 초과하고 전년 대비 별점이 증가한 기관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됨.
-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기관과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 공시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 ‘불성실공시기관’은 알리오시스템에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내역이 3개월간 게시되며 전체 별점 중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별점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인사조치를 요구받게 됨.

〈표 III-108〉 통합공시 점검 별점에 따른 사후조치

구분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기준	· 연간 20점 초과	· 연간 40점 초과 · 2년 연속 연간 별점 20점 초과하고 전년 대비 증가
조치 내역	· 개선 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 개선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 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3개월) · 고의·중과실 별점이 50%이상 시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 이 외에도 사후조치로 무별점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알리오시스템에 게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점검결과를 반영함.
- 해당연도 무별점기관 중 최근 3년 동안 별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은 우수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기관 명단을 공개함.
 - 3년 연속 무별점기관의 경우 차기 점검 1회에 한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반영(가중치 1점) 하여 평가함.
 - 2020년부터 공시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 점수에서 공시오류의 경중에 따라 점검결과 반영점수 구간을 세분화²⁹⁴⁾해 경영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함.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을 통해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 기관에 경영평가상 인센티브를 강화²⁹⁵⁾한 바 있는데, 이는 2022년 실시하는 2021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임.

294) 최저 0.0점, 최고 1.0점

295)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국민소통’ 지표(계량, 1점)를 통해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반영하는 것에 추가하여 우수공시기관에 한해 2021년도 경영평가부터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비계량, 1점)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공시향상기관에 대해서는 공시점검 관련 경영평가 득점(최대 1점 이내)에 최대 0.05점까지 추가 배점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331개²⁹⁶⁾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함.

- 공공기관의 공시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하반기 2회²⁹⁷⁾에 나누어 점검을 실시함.
 - 기관이 제출한 공시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서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항목의 중요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 별점을 부과함.
 - 2020년도 통합공시점검에서는 42개의 통합공시항목²⁹⁸⁾ 중 기관운영 및 재무와 관련된 19개 항목²⁹⁹⁾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함.
- 2020년도 상반기 통합공시점검 대상항목의 전년 대비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20년도 상반기 기관운영 관련 점검항목은 5개로 전년 대비 '징계 현황' 및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항목이 점검대상에 추가되었고 '직원평균보수' 항목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됨.
 - 2020년도 상반기 재무 관련 점검항목은 5개로 2019년도에 비해 '내부 감사 결과' 및 '계약 정보' 항목이 추가되고 '연간 출연 및 증여' 및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항목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됨.
- 2020년도 하반기 통합공시점검 대상항목의 전년 대비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20년도 하반기 기관운영 관련 점검항목은 5개로 전년 대비 '임원연봉' 및 '노동조합 관련현황' 항목이 추가되고 '임직원 수' 및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항목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됨.
 - 2020년 하반기 재무 관련 점검항목은 4개로 전년도 점검항목인 '수입·지출현황', '장단기차입금 현황', '납세정보 현황',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등 4개 항목이 점검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자본금 및 주주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경영부담비용추계' 등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선정됨.

296) 202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 중 2019년도 통합공시점검 시 3년 연속 무벌점기관(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었던 9개 기관은 2020년도 점검대상에서 제외

297) 상반기 점검은 2020년 9월에서 12월 사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점검은 2021년 1월에서 3월 사이 실시

298) 2020년도 통합공시항목 기준

299) 통합공시 점검항목은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국민적 관심 측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함

〈표 III-109〉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항목

구분	기관운영 항목	재무 항목
상반기 점검항목	복리후생비,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징계, 소송 및 법률자문, 임·직원 채용정보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내부감사 결과, 계약 정보
하반기 점검항목	임원연봉, 그밖의 복리후생 제도, 노동조합 관련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임·직원 채용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자본금 및 주주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경영부담비용추계/기타

주: 밑줄 친 항목은 정기공시항목 중 주요항목에 해당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통합공시점검에 따른 별점 현황과 사후조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I-110>과 같음.

- 2020년도 점검결과에 따르면, 평균별점(6.6점)과 사후조치 대상기관의 수(8개)가 통합공시점검이 최초로 실시된 201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
 - 2017년도 점검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평균별점과 사후조치대상 기관의 수가 2018년도 점검에서는 공시점검 2회 실시, 점검 대상항목 확대(300) 및 채용정보 중점 점검의 영향으로 별점 수준이 다소 증가했으나 2019년도 점검부터는 다시 평균별점과 사후조치 대상기관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 2020년도 점검결과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유형의 평균별점이 4점대로 사후조치 대상(별점 20점 이상)이 된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공공기관의 평균별점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반면 우수공시기관 수는 2014년도 3개에서 2018년도 35개로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2019년도 22개, 2020년도에는 15개로 다소 감소하는 모습임.
- 점검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임원연봉, 채용정보, 복리후생 등 기관운영 항목의 지적 건수가 수익계약, 손익계산서 등 재무 항목보다 많은 편임.
 - 기관운영 항목 대상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지적 건수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다수가 경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0년도 점검 시 최근 3년 내 미점검 항목인 단체협약 정보 등이 점검대상에 포함되었고 임원연봉과 일·가정 양립 등 점검항목이 2개 이상의 세항목으로 구성되어 실제 점검

대상이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재무 항목 대상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지적 건수가 감소하는 등 공시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점검항목인 재무상태표의 경우 매년 공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지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자회사를 신설한 공공기관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지적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함.

〈표 Ⅲ-110〉 공공기관 통합공시 별점 현황(2014~2020년)

(단위: 개, 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
점검 대상	296	311	319	329	335	331	331	32	92	207
평균 별점	21.3	10.8	9.5	7.4	8.5	7.7	6.6	4.0	4.3	8.1
우수공시기관	3	16	18	22	35	22	15	3	3	9
사후조치대상	151 (50.2%)	43 (13.8%)	26 (8.1%)	20 (6.0%)	27 (8.0%)	20 (6.0%)	8 (3.0%)	-	-	8
기관주의	129	35	23	17	20	16	6	-	-	6
불성실공시기관	22	8	3	3	7	4	2	-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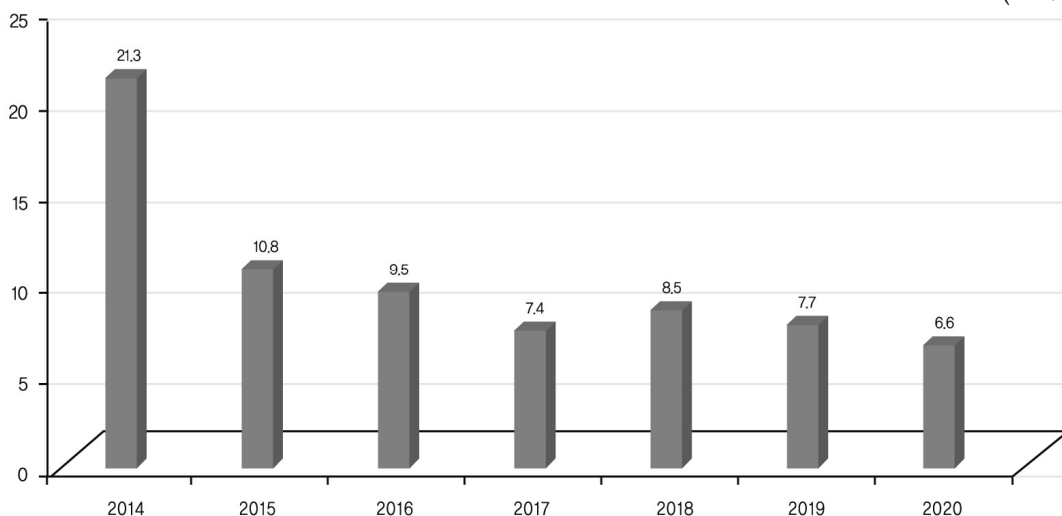
주: 1. 2014년도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의 수는 2014년 당시 별점기준으로 지정된 사후조치 대상기관이 아닌 2015년도에 개정된 별점 기준을 적용한 결과임

2. 공공기관 유형은 해당연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49〉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별점(2014~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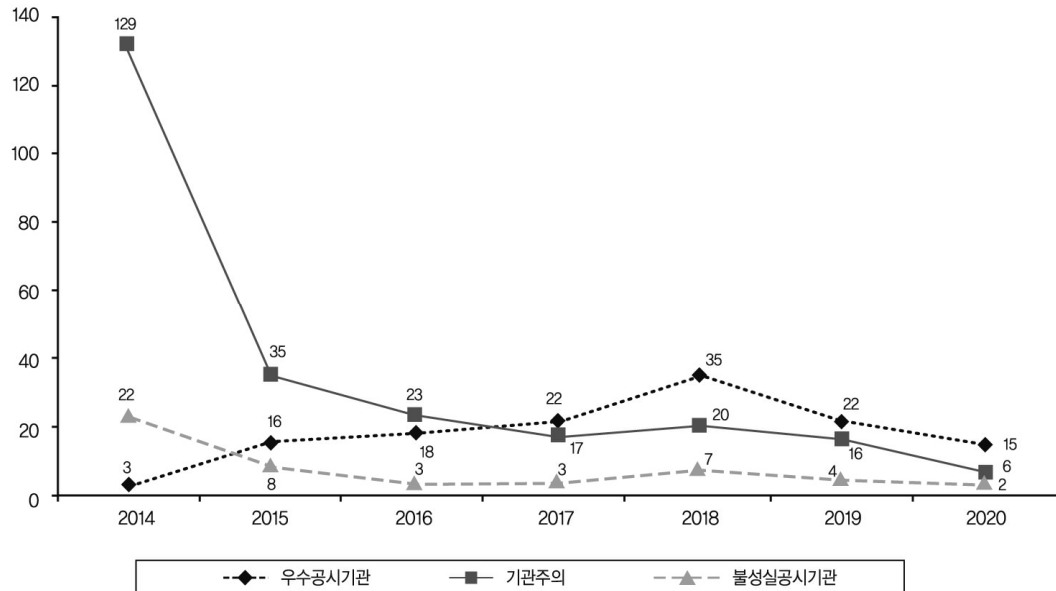
(단위: 점)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50〉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2014~2020년)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15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³⁰¹⁾으로 선정되었으며 알리오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공시기관임을 게시하게 됨.
 -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2018~2020년) 연속으로 무벌점인 기관은 없음.
 - 15개 기관 모두 무벌점기관 중 최근 3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에 해당함.
-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불성실공시기관 및 기관주의 등 사후조치 대상기관은 총 8개 기관임.
 - 불성실공시기관³⁰²⁾은 2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2개 기관이 감소함.
 -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벌점 40점 초과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됨.
 - 2년 연속 벌점이 20점을 초과하고 전년 대비 벌점이 증가하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음.

301) 최근 3년 연속 무벌점기관 또는 2020년 무벌점기관 중 최근 3년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

302) 2020년도 누적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하고 전년 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

-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을 받아야하며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불성실공시 지정내역이 3개월간 게시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³⁰³⁾를 요구받을 수 있음.
- 기관주의 조치 대상인 기관은 6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10개 기관이 감소함.
- 연간 별점이 20점을 초과하되 40점 미만인 기관³⁰⁴⁾은 기관주의 조치를 대상이 되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을 받아야함.

〈표 Ⅲ-111〉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구 분	판단기준	기관명	후속조치
우수 공시 기관 (15개)	3년 연속 무별점	-	▪ 차년도 점검 시, 무별점으로 간주 ▪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무별점기관 중, 최근 3년 별점이 지속 감소기관 (15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준정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공공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의료국가지시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알리오·기관 홈페이지 게시
불성실 공시 기관 (2개)	별점 40점 초과 (2개) ²⁾	(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개선계획서 제출 ▪ 고의·중과실 별점 50% 이상시 인사조치 ▪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별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 중 전년 대비 별점이 증가한 경우	-	
기관주의 (6개)	별점 20점 초과 (6개) ²⁾	(기타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산업연구원, 전남대학교병원, 한국저작권보호원	▪ 개선계획서 제출

주: 1. 공공기관 유형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재)축산환경관리원은 별점 규모가 각각 불성실기관 및 기관주의에 해당하나 2020년도 신규지정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2020. 12. 8)」에 따라 사후조치 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4. 9.

303) 고의·중과실 별점이 50% 이상인 경우 인사조치 요구

304) 별점 20점 초과~40점 미만 기관 중 2019년도 점검에 이어 2020년도 점검에서도 별점이 2년 연속 20점을 초과하고 전년 대비 별점이 증가한 기관은 기관주의가 아닌 불성실공시 대상으로 지정됨

□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별점 구간별 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112>와 같음.

- 2020년도 점검대상인 331개 기관 중 별점 0점인 기관은 37개(10.3%)이고 사후조치 대상이 되는 별점 20점 초과³⁰⁵⁾ 기관은 10개(3.0%)임.
 - 대부분의 공공기관(284개, 85.8%)은 별점 0점 초과~2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함.
-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별점 분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데 별점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별점 0점, 별점 10점 초과~20점 이하 구간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유형 모두 별점이 20점을 초과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공공기관은 별점 10점 초과~20점 이하인 기관이 23.2%(61개)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점 20점 초과인 기관도 4.8%(10개)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112>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 분	소계	0점	0점 초과 ~ 10점 이하	10점 초과~ 20점 이하	20점 초과~ 30점 이하	30점 초과~ 40점 이하	40점 초과
공기업	32 (100)	5 (15.6)	24 (75.0)	3 (9.4)	0 (-)	0 (-)	0 (-)
준정부기관	92 (100)	16 (17.4)	66 (71.7)	10 (10.9)	0 (-)	0 (-)	0 (-)
기타공공기관	207 (100)	16 (7.7)	133 (64.3)	48 (23.2)	6 (2.9)	1 (0.5)	3 (1.4)
합계	331 (100)	37 (11.2)	223 (67.4)	61 (18.4)	6 (1.8)	1 (0.3)	3 (0.9)

주: 1. () 안은 비중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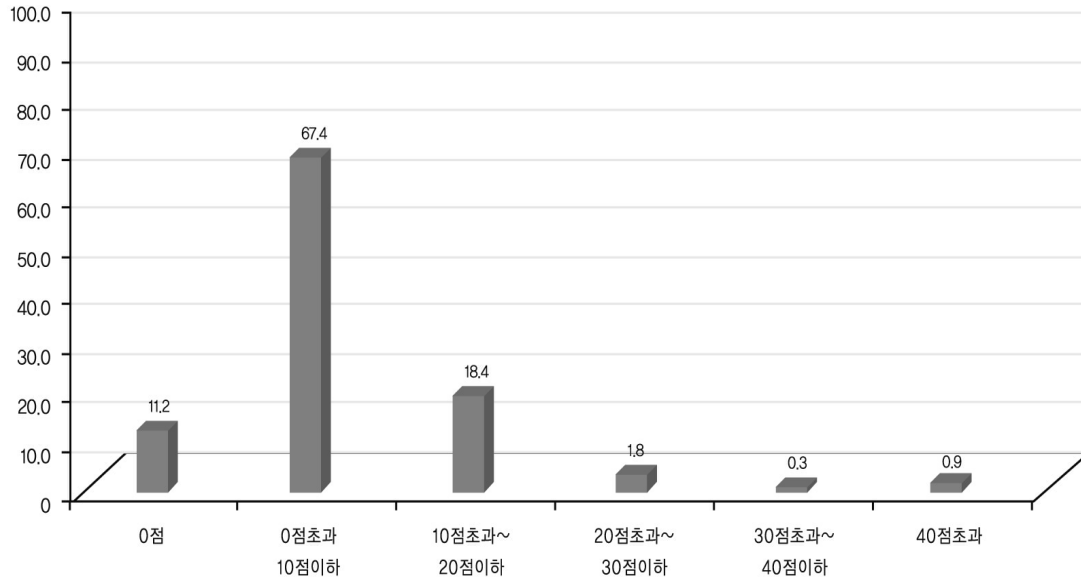
2. 2년간 별점이 20점을 연속 초과하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결과에 대해서 해당 표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3. 공공기관 유형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및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51〉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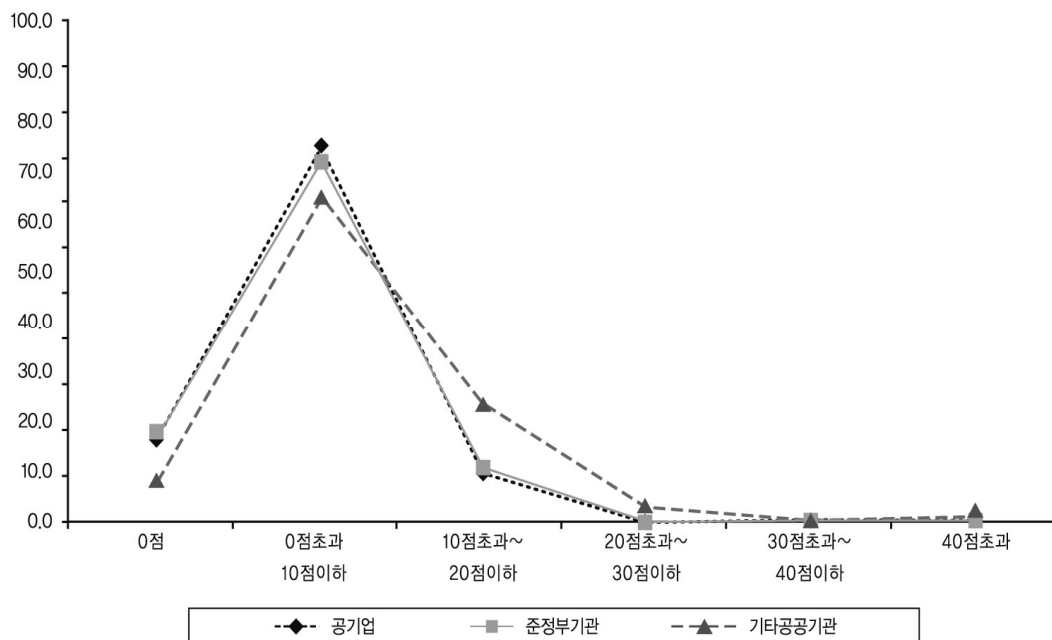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및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4. 9.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52〉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유형별)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및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4. 9.을 참고하여 작성

□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의 별점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113>과 같음.

〈표 III-113〉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단위: 개)

구 분	소계	0점	0점 초과~ 10점 이하	10점 초과~ 20점 이하	20점 초과~ 30점 이하	30점 초과~ 40점 이하	40점 초과
기획재정부	4	2	2	0	0	0	0
교육부	22	1	12	8	1	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4	28	11	2	0	0
외교부	3	1	2	0	0	0	0
통일부	2	0	1	1	0	0	0
법무부	3	0	3	0	0	0	0
국방부	3	0	1	2	0	0	0
행정안전부	3	0	3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32	2	24	5	1	0	0
농림축산식품부	12	1	8	1	1	1	0
산업통상자원부	36	7	25	4	0	0	0
보건복지부	26	4	14	7	0	0	1
환경부	11	0	10	1	0	0	0
고용노동부	10	0	8	2	0	0	0
여성가족부	5	0	5	0	0	0	0
국토교통부	24	3	17	4	0	0	0
해양수산부	16	2	11	3	0	0	0
중소벤처기업부	11	1	7	3	0	0	0
국무조정실	23	4	12	5	1	0	1
방송통신위원회	2	0	0	2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3	0	0	0	0
금융위원회	7	2	4	1	0	0	0
공정거래위원회	2	1	1	0	0	0	0
인사혁신처	1	0	1	0	0	0	0
국가보훈처	3	0	3	0	0	0	0
관세청	1	0	1	0	0	0	0
방위사업청	2	0	2	0	0	0	0
문화재청	1	0	1	0	0	0	0
산림청	4	0	2	1	0	0	1
농촌진흥청	1	0	1	0	0	0	0
특허청	5	2	3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4	0	0	0	0
기상청	2	0	2	0	0	0	0
경찰청	1	0	1	0	0	0	0
소방청	1	0	1	0	0	0	0
합계	331	37	223	61	6	1	3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및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을 참고하여 작성

-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체 통합공시점검 대상기관 331개 중 34개 기관이 전년도에 비해 후속조치 수준이 개선된 반면 20개 기관은 후속조치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후속조치 수준이 전년 대비 1단계 개선된 기관은 30개 기관으로, 2019년도 점검 결과상 기관주의를 받았다가 2020년도 점검결과상 사후조치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 16개 기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전년 대비 후속조치 수준이 2단계 이상 개선된 기관은 4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은 2019년도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사후조치대상³⁰⁶⁾에서 제외됨.
 - 후속조치 수준이 전년 대비 1단계 악화된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2019년도에는 우수공시기관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사후조치대상이 아니게 된 기관이 12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전년 대비 후속조치 수준이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2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9년도에는 사후조치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년도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됨.

〈표 III-114〉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 대비 변동 현황

구 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34개)	1단계 개선 (30개)	[사후조치대상 아님 → 우수 공시기관(14개)] (공기업: 3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준정부기관: 3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공공기관: 8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관주의 → 사후조치대상 아님(16개)] (준정부기관: 2개) 아시아문화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공공기관: 14개) (주)공영홈쇼핑,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환경연구원

306)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표 III-114〉의 계속

구 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34개)	2단계 개선 (4개)	[불성실 공시기관 → 사후조치대상 아님(4개)] (기타공공기관: 4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하락한 기관 (20개)	1단계 하락 (18개)	[우수 공시기관 → 사후조치대상 아님(12개)] (공기업: 4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정부기관: 4개)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타공공기관: 4개)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사후조치대상 아님 → 기관주의(6개)] (기타공공기관: 6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산업연구원, 전남대학교병원, 한국저작권보호원
	2단계 하락 (2개)	[사후조치대상 아님 → 불성실 공시기관(2개)] (기타공공기관: 2개)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공공기관 유형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
및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을 참고
하여 작성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 보도자료, 2021. 3. 5.
- _____,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3. 5.
- _____,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보도자료, 2019. 2. 28.
- _____,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6차)」, 2021. 3. 5.
-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 안전자료, 2020. 6. 5.
-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 계획」 등 심의」, 보도자료, 2020. 2. 11.
-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 _____,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 _____,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획」, 2020. 6.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0. 6.
- _____,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 _____,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 _____,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 2020. 12.
- 국토교통부, 「'20년도 이전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 2021. 3. 5.
- _____, 「2020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2021. 7. 7.
- _____, 「국토부·이전기관 손잡고 경제활성화·지역인재 힘 모은다」, 보도자료, 2021. 5. 4.
- _____,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보도자료, 2019. 12. 25.
- _____,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에서도 지역인재 뽑는다」, 보도자료, 2020. 5. 27.
- 기획재정부,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4. 9. 22.
- _____,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 _____,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 _____,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 _____,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 _____,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 _____,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0. 9. 1.
- _____, 「'20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5.
- _____, 「'21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 _____,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6. 7. 1.
- _____,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확정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보도자료, 2017. 2. 9.
- _____,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8. 8. 24.
- _____,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 _____,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
- _____,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8. 26.
- _____, 「2020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 _____, 「2020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가이드」, 2021. 1.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2. 26.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1. 4. 28.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7. 16.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8. 26.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 _____,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20. 1. 29.

- _____,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9. 12. 4.
- _____,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4. 9.
- _____,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1. 2. 23.
- _____,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보도자료, 2021. 5. 14.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 _____,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 _____,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21. 4. 9.
- _____,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20. 12. 8.
- _____,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23.
- _____, 「공공기관 공정채용 정착지원 추진 현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0. 30.
- _____,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실적 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 _____,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5.
- _____,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 추진실적 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2. 29.
-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2. 8.
-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2. 26.
-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1. 3.
-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2. 26.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2021. 2. 26.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2. 22.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8.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8. 24.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

- _____,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020. 12. 29.
- _____,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2020. 12. 8.
- _____, 「기재부, 공공기관 공시 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 시행」, 보도자료, 2020. 6. 17.
- _____,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2021. 5. 3.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0. 9.
- _____, 『2021 기금현황』, 2021. 6. 4.
- _____, 『2021 나라살림 개요』, 2021. 2.
- _____, 『2021년 공공기관안전관리등급제 심사편람』, 2021. 2.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20. 10.
-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수립」, 보도자료, 2013. 12. 29.
- _____, 「공무원·공공기관·군·경찰 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보도자료, 2020. 8. 31.
- 한국재정정보원, 『2021 회계기금 운용구조』, 2021. 4. 21.

- (주)강원랜드, 『결산서(2020)』, 2021. 3.
- _____, 『사업보고서(2020)』, 2021. 3.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결산서(2020)』, 2021. 3.
- _____, 『사업보고서(2020)』, 2021. 3.
- 중소기업은행, 『사업보고서(2020)』, 2021. 3.
- 한국가스공사, 『결산서(2020)』, 2021. 3.
- _____, 『사업보고서(2020)』, 2021. 3.
- 한국전력공사, 『결산서(2020)』, 2021. 3.
- _____, 『사업보고서(2020)』, 2021. 3.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결산서(2020)』, 2021. 3.
- _____, 『사업보고서(2020)』, 2021. 3.
- 한국지역난방공사, 「IR(2020년 4분기 경영실적)」, 2021. 2.
- _____, 『사업보고서(2020)』, 2021. 3.
- 한전KPS(주), 『사업보고서(2020)』, 2021. 3.

- 『이데일리』, 「공공기관 채용 6천명 줄었다...고용빙하기에 공공일자리 역주행」, 2021. 4. 1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29015792&mediaCodeNo=257>, 검색일자: 2021. 8. 25.
- _____, 「코로나에 인력수요↑...공공기관 채용증가 ‘TOP 5’ 중 4곳이 의료기관 공공기관」, 2021. 4. 1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29015792&mediaCodeNo=257>, 검색일자: 2021. 8. 25.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 <http://innocity.molit.go.kr/v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http://www.alio.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3.do

(주)강원랜드, <http://kangwonland.high1.com>

그랜드코리아레저(주), <http://www.grandkorea.com>

중소기업은행, <http://www.ibk.c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전력공사, <http://home.kepco.co.kr>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http://www.kepco-enc.com>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www.kdhc.co.kr>

한전KPS(주), <http://www.kps.co.kr>



부 록

-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 부록 3. 이전 공공기관별 2020년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 부록 4. 2021년 기금 현황
- 부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 부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 부록 7. 2020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부 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350개, 2021. 1월 현재)

(단위: 개)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6)		기타공공기관(218)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3)	
기획재정부 (4)		한국조폐공사 (1)		한국재정정보원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교육부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7)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기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부설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부설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 한국뇌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기관: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원(부설기관: 고등과학원, 나노융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6)		기타공공기관(218)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부설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37)
외교부 (3)				한국국제협력단	(1)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2)
통일부 (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
법무부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국방부 (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3)
행정안전부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문화체육관광부 (3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2)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4)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5)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6)		기타공공기관(218)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3)	
농림축산식품부 (12)		한국마사회 (1)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보협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6)
산업통상자원부 (40)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1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5)	한국무역보험공사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3)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9)
보건복지부 (27)			국민연금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부설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18)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6)		기타공공기관(218)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3)	
환경부 (12)		한국수자원공사 (1)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주)위터웨이플러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건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7)
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공단 (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7)
여성가족부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국토교통부 (28)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6)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13)
해양수산부 (17)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3)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기관: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8)
중소벤처기업부 (11)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3)	(주)공영흡소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6)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6)		기타공공기관(218)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3)	
국무조정실 (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부설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25)
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시청자미디어재단 (1)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
금융위원회 (8)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4)	서민금융진흥원 (1)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3)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국가보훈처 (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88관광개발㈜ (1)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1)		
식품의약품안전처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6)		기타공공기관(218)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3)	
관세청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 (1)	
소방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단 (1)
산업청 (4)				한국입업진흥원,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3)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
농촌진흥청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특허청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부설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
기상청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

부 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2021. 1월 기준, 350개)³⁰⁷⁾

1 공기업(36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1] 시장형 공기업(16개)						
(주)강원랜드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8.06.29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 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 함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kangwonland.high1. com
부산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4.01.16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 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 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 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www.busanpa.com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 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999.02.01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 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 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 발 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www.airport.kr
인천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5.07.11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www.icpa.or.kr

307) 2021년 1월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시장형 공기업)과 한국광해관리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통합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작성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308) 2021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법(2021. 3. 9. 제정)」 시행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산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 출범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가스공사법	1983.08.18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www.kogas.or.kr
한국공항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	2002.03.02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www.airport.co.kr
한국광물자원공사 ³⁰⁸⁾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1967.06.05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www.kores.or.kr
한국남동발전 ^(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www.koenergy.kr
한국남부발전 ^(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30~35층	www.kospo.co.kr
한국동서발전 ^(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www.ewp.co.kr
한국서부발전 ^(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www.iwest.co.kr

폐광지역의 복구 및 경제활성화와 자원확보를 통한 산업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석유공사법	1979.03.03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05	www.knoc.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www.khnp.co.kr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전력공사법	1961.07.01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www.kepco.co.kr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함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www.komipo.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1985.11.01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www.kdhc.co.kr

[2] 준시장형 공기업(20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한국가스공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993.05.27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전국 주배관망 등 천연가스 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비를 통해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www.kogas-tech.co.kr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5.09.06	외국 관광객 유치증진 및 외화획득증대, 한국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이익금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주주 가치의 극대화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www.grandkorea.com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석탄공사법	1950.11.01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www.kocoal.or.kr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11.08.19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www.ygpa.or.kr
울산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7.07.05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마린센터	www.upa.or.kr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국토 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2002.05.15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 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www.jdcenter.com
주식회사 에스알	국토 교통부	상법 및 철도사업법 제5조	2013.12.27	이용자의 고속철도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12	www.srail.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 교통부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	1993.04.24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보증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www.khug.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1969.02.15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www.ex.co.kr
한국마사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마사회법	1949.09.29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함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www.kra.co.k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12.05.23	광고판매 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통신 광고 진흥사업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www.kobaco.co.kr
한국부동산원	국토 교통부	한국부동산원법	1969.04.25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www.kab.co.kr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법	1967.11.16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www.kwater.or.kr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75.10.01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민족과 인류번영을 추구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울곡동)	www.kepco-enc.com
한국조폐공사	기획 재정부	한국조폐공사법	1951.10.01	은행권·주화·주민등록증·여권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공공보안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수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www.komsco.com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철도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철도공사법	2005.01.01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www.kora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9.10.0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www.lh.or.kr
한전KDN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92.01.23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SI) 및 시스템운영(SM) 사업 수행,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수행, 지능형 전력망 (Smart-Grid) 관련 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61	www.kdn.com
한전KPS(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84.04.01	발전·송전 등 전력설비 성능과 신뢰도 제고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www.kps.co.kr
해양환경공단	해양 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2008.01.2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녹색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www.koem.or.kr

② 준정부기관(96개, 부설기관 4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개)						
공무원연금공단	인사 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1982.02.01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www.geps.or.kr
국민연금공단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법 제24조	1987.09.18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1995.05.0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할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www.kcomwel.or.kr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1989.04.01	기술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www.kibo.or.k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1974.01.11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www.tp.or.kr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1989.04.20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www.ksp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1976.06.01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www.kodit.co.kr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3조	1996.06.01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www.kdic.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1979.01.17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www.kosmes.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제37조	1992.07.07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	www.ksure.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2010.02.0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www.kpf.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962.04.06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의 지원,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amc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4.03.01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통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229-1) 부산국제금융센터	www.hf.go.kr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3개, 부설기관 4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80.08.26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www.pola.or.kr
(재)한국우편사업 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30.12.03	우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를 창달함으로써 우정사업 발전과 국민문화 생활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3 (영등포동 7가)	www.pos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2000.07.0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반곡동)	www.hira.or.kr
국가철도공단	국토 교통부	국가철도공단법	2004.01.0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www.kr.or.kr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법	1987.07.01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반곡동)	www.knp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10.28	생태와 생태계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www.nie.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2000.07.01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www.nhis.or.kr
(부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62조	2000.03.03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www.nhimc.or.kr
(부설)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70조	2014.11.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 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 (세곡동 520번지)	www.서울요양원.kr
국제방송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1996.04.10	방송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우호 친선 도모하고, 방송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지원해 방송영상광고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www.arirang.com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16조	2002.12.30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평가 및 신기술 심사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교통기술 발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www.kaia.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토안전관리원	국토 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법	2020.12.10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www.kalis.or.kr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2012.05.23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로 19 (반곡동 772-3)	www.epis.or.kr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2009.10.0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45 (빛가람동 352-1)	www.ipet.re.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 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3조	2009.09.07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함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송학동 381)	www.fact.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1962.06.21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3	www.kotra.or.kr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도로교통법 120조	1954.02.1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반곡동)	www.koroad.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독립기념관	국가 보훈처	독립기념관법	1986.08.20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민족 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www.i815.or.kr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016.09.23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 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 5층	www.kinfra.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014.01.01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2~3, 11, 16, 18층	www.semara.or.kr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법 제90조의2	2015.05.15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교육·체험·홍보,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미디어 격차 해소,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 미디어 사업에 이바지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 3~5층	www.kcmf.or.kr
아시아문화원	문화체육 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015.10.01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국립아시아문화전당)	www.aci-k.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005.09.01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공공 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www.innopolis.or.kr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66.04.30	우체국 금융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의 향상발 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6(당산동4가)	www.posid.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 관리원	국토 교통부	민법 제32조	1997.12.23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및 성능평가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 건설기계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 유지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www.kcesi.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2009.08.24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 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www.nipa.kr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2014.03.31	국가 SW정책 중앙연구소로서 SW를 활 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 하고자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A동 4층	www.spri.kr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2002.01.2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www.tipa.or.kr
창업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2019.10.24.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기반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촉진시켜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www.kised.or.kr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법 제36조	2001.07.27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ekape.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1974.01.11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www.kgs.or.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 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2015.01.0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4~6층	www.kihf.or.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2014.07.29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평 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80 보건복지행정타운 10층	www.khealth.or.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2006.03.31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고 용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www.keis.or.kr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1967.12.2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 삼릉빌딩	www.kofac.re.kr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	1962.06.26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kto.visitkore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광해관리공단 ³⁰⁹⁾	산업통상 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6.06.01	광해방지사업과 석탄산업 지원사업 및 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산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	www.mireco.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1999.04.22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 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동내동) KERIS 빌딩	www.keris.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 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1981.07.0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 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울곡동)	www.kotsa.or.kr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1991.04.0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이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 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www.koica.go.kr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 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	1977.07.0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 수행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www.lx.or.kr

309) 2021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법(2021. 3. 9. 제정)」 시행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산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 출범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폐광지역의 복구 및 경제활성화와 자원확보를 통한 산업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2009.12.30.	기상산업의 진흥 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로 2가, 충정빌딩)	www.kmiti.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2005.12.27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 인증 평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www.kordi.or.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1967.12.01	농수산식품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 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빛가람동)	www.at.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0.01.01	환경친화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www.ekr.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1970.05.19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www.kidp.or.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파법 제66조	1972.07.21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통신 전파 진흥에 기여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www.kca.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2007.04.04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oh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999.02.06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hidi.or.kr
한국보육진흥원	보건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8조	2009.12.23	효과적인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등 수요자의 만족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4,5,6층	www.kcpi.or.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981.11.0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지에 대한 의학작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반곡동)	www.bohun.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2009.12.07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www.ssis.or.kr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2016.04.18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둔산동 아너스빌)	www.fowi.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2009.05.04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7, 12-14, 16-17층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2009.05.04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술평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8길 32	www.keit.re.kr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1997.01.10	산업단지의 조성 및 산업의 집적을 활 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	www.kicox.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1987.12.09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 쓰도록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www.kosh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982.03.18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 및 공급의 효율화를 도모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교동)	www.hrdkorea.or.kr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1983.11.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www.kpetr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1977.06.01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www.kfi.or.kr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	1987.07.01	소비자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www.kca.go.kr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	2017.05.17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3층	www.kiam.or.kr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2010.11.18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www.fir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5조	2016.07.01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www.koelsa.or.k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2.13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www.haccp.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1980.07.04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산업육성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 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www.energy.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법 제13조	2009.05.04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국가에너지 수급구조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4	www.ketep.re.kr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	2009.06.26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www.nrf.re.kr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한국연구재단 정관 제18조의3	2014.04.01	ICT R&D 기획 및 전략수립,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기술사업화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www.iitp.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2009.01.0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www.korad.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2009.07.23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와 관련한 국제 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www.kisa.or.kr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2012.01.26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www.kofpi.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1990.09.01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www.kead.or.kr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09.05.07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고등교육 장학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www.kosaf.go.kr
한국재정정보원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법	2016.07.0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남대문로 5가)	www.kpfis.or.kr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1974.06.07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홍보 등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www.kesco.or.kr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사업법 제35조	2001.04.02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www.kpx.or.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1987.01.30	지능정보사회데이터·디지털 정부 등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역기능 해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53	www.ni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여성 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1993.02.15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www.kyci.or.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 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2010.08.18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 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 5층	www.kyw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2009.05.07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www.kocca.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5조의2	2012.12.21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과정에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계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www.kista.re.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9.07.01.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www.komsa.or.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1998.01.01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도모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www.seaman.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	2010.01.0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www.keco.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09.04.08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www.keiti.re.kr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2005.11.1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10층	www.kimst.re.kr

③ 기타공공기관(218개, 부설기관 16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사)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통일부	민법 제32조	2007.05.18	정부 위탁업무 수행 및 정책건의, 남북교 류협력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센터빌딩 601호	www.sonosa.or.kr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	민법 제32조	2005.06.09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및 변동의 파급 효 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상기후 감시 및 최적의 기후예측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아·태지역 의 변형 실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www.apcc21.org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민법 제32조	2010.01.22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연구·조사· 정보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발 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www.origin.or.kr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6.01.12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 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길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2층	www.gokams.or.kr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00.11.23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 리·운영으로 우정자산의 적극적 활용 및 가치향상을 도모, 우정시설의 최적화와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및 우정 사업 중 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구의동) 동서울우편물류센터 4층	www.poma.or.kr
(재)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행정 안전부	민법 제32조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2014.06.03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추모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 연구 등 피해구제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www.ilje.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축산환경관리원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8조의2	2015.05.08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 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 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나성동, 한림프라자)	www.lemi.or.kr
(주)공영홈쇼핑	중소벤처 기업부	상법	2015.03.05	중소기업 상품 및 농축수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문 화와 국민경제 건인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www.gongyoung.kr
(주)워터웨이플러스	환경부	상법	2011.04.26	벚길경관유지 관리, 마리나 운영, 강문화관 운영·관리 및 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옥로 270번길 74	www.waterway.or.kr
88관광개발(주)	국가 보훈처	상법 및 보훈기금법 제7조 제6항	1987.07.30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보훈 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88골프 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설립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169(청덕동)	www.88countryclub. co.kr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2003.06.27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및 수입식용축산물 검역을 통해 축산물의 위 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 및 축산 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이름서길 21	www.lhc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1997.05.07	치의학에 관한 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 로써 치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www.gwnudh.or.kr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0.05.08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 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 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www.knuh.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97.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10층	www.cw.or.kr
건축공간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2020.11.20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 세종타워B 7~9층	www.auri.re.kr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3.12.23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www.grac.or.kr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07.02.10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www.knuh.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6.06.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치의학 및 치의학 관련 학문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www.knudh.kr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87.02.2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www.gnuh.c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05.07.01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3,4,8,9층	www.nrc.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³¹⁰⁾	국무 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제4조의2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관 제5조의2	2005.09.30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개발 관련 연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 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 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www.kicce.re.kr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 교통부	민법 32조	2019.11.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와 공간정보 품질 관련 정책 및 연구 개발 등을 통해 공간 정보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국회대로 543, 15층(당산동4가, 동양타워빌딩)	www.siqms.or.kr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12.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활용·확산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충정로3가) 삼창빌딩 7층, 10층	www.compa.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1.05	과학기술 및 관련 혁신에 대한 제반문제 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수립하 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5,6,7층, 연구지원동(A동) 3층	www.steipi.re.kr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법	1993.11.17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 기술인재 양성, 국책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응용연구, 국내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및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활성화 등을 목적 으로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www.gist.ac.kr

310) 육아정책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설기관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14.06.3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5,6,7층	www.nst.re.k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2011.12.27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생명과학 및 그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연구, 개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과 관리를 추구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등 생명윤리정책 구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 다동빌딩 4,5,8층	www.nibp.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19조	2008.02.15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www.nile.or.kr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7.23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전 시·교육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www.sciencecenter. or.kr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환경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015.06.03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www.nnibr.re.kr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6.24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 교육프로 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함 으로써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 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 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대로 6길 20	www.dnsm.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2004.07.20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박물관·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www.cfnmk.or.kr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2015.07.13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동남권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6로 59	www.sciport.or.kr
국립암센터	보건 복지부	암관리법 제27조	2000.03.22	암관리법에 따라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www.ncc.re.kr
국립중앙의료원	보건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0.04.02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www.nmc.or.kr
국립항공박물관	국토 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법	2019.12.23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공항동)	www.aviation.or.kr
국립해양과학관	해양 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2020.05.20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8	www.kosm.or.kr
국립해양박물관	해양 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법	2012.07.09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www.knmm.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04.20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 자원의 보전 및 해양수산업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www.mabik.re.kr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환경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020.08.21	섬과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생물주권 조기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hnibr.re.kr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1970.08.06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과 민간 장비의 시험·평가 지원 사업을 수행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www.add.re.kr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32조	2006.02.02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기술기획, 연구와 기술 정보의 확보, 유통, 관리, 품질보증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 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www.dtaq.re.kr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2015.01.0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 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창곡동)	www.moti.or.kr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제29조의2	2012.02.10	미국·캐나다 및 칠레, 뉴질랜드 등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아시아메미나방(ACM) 검사 및 증명서 발급으로 국내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식물의 검역 및 방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 받은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제903호	www.ipab.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10.04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www.krihs.re.kr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11.11.2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도룡동 3-1)	www.ibs.re.kr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및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37조의2	2005.10.01	전문적인 수학연구를 통해 수학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수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과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www.nims.re.kr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민법 제32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007.04.05	노사공동 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 노사관계 발전 도모, 노사공동의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 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www.nosa.or.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	2004.05.19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에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www.apfs.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004.09.07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www.dgist.a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뇌연구촉진법 제17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	2011.12.14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 제를 유지·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www.kbri.re.kr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4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 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커뮤니케이션센터	www.dgmif.re.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2.29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p.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구조법 제8조	1987.09.01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 사 변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www.klac.or.kr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2005.11.25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 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및 시·도 지부를 지원·육성하고 유형별 장애인체육 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선 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국 제스포츠 교류활동을 통한 국제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www.koreanp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905.10.27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 정신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www.redcross.or.kr
대한체육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1920.07.13	체육운동 범국민화로 국민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며 올림픽즘의 원칙과 가치 확산,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올림픽컨벤션)센터	www.sports.or.kr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06.09.22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본관	www.nahf.or.kr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행정 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01.11.12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www.kdemo.or.kr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56.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www.pnuh.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1.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www.pnudh.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2010.09.2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5-14층	www.koreahana.or.kr
산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1.07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t.re.kr
새만금개발공사	국토 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	2018.09.21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sdco.or.kr/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1978.07.15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h.org
(부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정관 제4조	2003.04.15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www.snubh.org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2004.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dh.org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2012.10.24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7, 11, 12층	www.ksif.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0.07.22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www.slc.or.kr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 제67조	2009.06.25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식품안전관리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원남동, 보령빌딩)	www.foodinfo.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2000.08.07	16개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도모, 재보증업무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15층 (월평동)	www.koreg.or.kr
아동권리보장원	보건 복지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2019.07.16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6~7층	www.ncrc.or.kr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6.09.01	에너지 시장 및 산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에너지 정책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www.keei.re.kr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1999.06.07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연령별로 등급분류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3층	www.kmrb.or.kr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1973.04.03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산학캠퍼스 13,14층	www.kofic.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예술의전당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1987.01.07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www.sac.or.kr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보건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5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으로 육성 하고 국내 의료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www.kbiohealth.kr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법	2007.09.13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 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www.unist.ac.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 복지부	의료법 제58조의 11	2010.10.26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통합, 환자안전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증진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10층	www.koiha.or.kr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국토 교통부	민법 제32조	1978.04.18	국가기간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위탁교육 등 포함)을 대행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www.kicte.or.kr
재단법인 국악방송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0.02.14	방송을 통해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국민에 홍보·보급·교육함으로써 국악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발전 및 지역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12 7, 10~12층	www.igbf.kr
재단법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008.02.19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으로 장애 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www.debc.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7.06.27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 익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적절한 수급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7, 1006호	kptb.kr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2006.12.2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지속적 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홍보,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홍로 152	www.koref.or.kr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 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2019.07.16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5층	www.kdissw.or.kr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7.04.01	뇌사 또는 사망자의 송고한 기증 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안전한 기증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의학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공단충정로사옥 5층	www.koda1458.kr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법	1997.10.30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와 거주 국의 모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www.okf.or.kr
전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3.03.27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www.cnuh.com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대외무역법 제29조	2007.06.05	전략물자의 수출입업무와 관리업무를 효 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6층	www.kosti.or.kr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4.07.04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www.jbuh.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	1989.01.31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www.warmemo.or.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4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www.kisdi.re.kr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2008.02.15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www.kgls.or.kr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1.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 및 제주 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13길 15	www.jejunuh.co.kr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2항	1998.09.28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한 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 및 임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충무공동 225-8)	www.kohom.or.kr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1995.12.2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도·소매, 홍보·전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목동)	www.sbdc.or.kr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1961.08.01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50번지)	www.ibk.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	2004.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통해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 77	www.kosi.re.kr
차세대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기상청	민법 제32조	2020.09.01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파크스퀘어 4F	www.kiaps.org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72.07.0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www.cnuh.co.kr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1.07.20	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www.cbnuh.or.kr
코레일관광개발(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08.11	철도 인프라와 민간관광 전문경영 노하우 접목을 통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철도 부가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www.korailtravel.com
코레일네트웍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09.21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부대수의 창출 및 사업다각화로 철도 경영개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9(한강로 2가 391) 용산푸르지오써밋 13층, 14층	www.korailnetworks.com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코레일로지스(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3.12.31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 국가물류장애 발생 시 적극적 대응 조치를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 및 철도수송의 약점인 일관수송 (Door-to-Door)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편 의 및 철도수송량 증대를 목적으로 함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www.koraillogis.com
코레일유통(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12.02	철도 역사 구내영업과 광고사업의 체계적인 개발운영을 통해 철도고객의 니즈 충족 및 한국철도공사 수익경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www.korailretail.com
코레일테크(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12.09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 차량 등 정비 외주화 위탁업무 수행으로 철도공사 인력효율화와 경영개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www.korailtech.kr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005.07.01	태권도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에 기 여함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원	www.tpf.or.kr
통일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2.02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 및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1998.02.05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 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 산업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www.kopo.a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개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1.03.11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 하고 국민의 이해 증진,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 관련 사업 및 연구, 국제화를 위 한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re.kr
(부설)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 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정관 제4조	1997.12.05	개발 및 공공정책, 공공관리 분야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및 자문 수행을 목 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school.ac. 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6.11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www.kict.re.kr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2020.10.05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 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 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229	www.keli.kr
한국고전번역원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법	2007.11.23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85	www.itkc.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10.04.01	창의적인 공예문화, 디자인문화, 전통생활 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4~5층	www.kcdf.or.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2007.12.03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 고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 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 율성을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www.kofair.or.kr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1999.02.01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 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 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www.kistep.re.kr
(부설)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3조	2007.11.01	과학기술인력의 자기개발과 변화·혁신에 필요한 교육 제공 및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R&D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www.kird.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6.02.10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 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www.kist.re.kr
(부설) 녹색기술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2조의2	2013.02.01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녹색기술 관련 국가 간 연계·협력 등의 지원을 목적 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www.gtck.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1971.02.16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kaist.ac.kr
(부설) 고등과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및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4조	1996.10.01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세계적 수준의 기초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미래형 과학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www.kias.re.kr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4조	2004.05.0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nnfc.re.kr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및 제14조의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4조	1990.09.07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 조기 발굴 및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체계적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5-47	www.ksa.hs.kr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2.01.01	국가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www.kisti.re.kr
한국교육개발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2.08.30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한 종합적·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적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www.ked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8.01.0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교학로 8	www.kice.re.kr
한국교통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8.25	교통·물류 정책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 연 구·개발을 수행하고, 교통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www.koti.re.kr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법	1987.03.0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 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www.kida.re.kr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991.12.30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 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www.kf.or.kr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보건 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006.08.18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 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빌딩 6~8층	www.kofih.org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www.kimm.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1991.11.02	고급기술·기능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이론과 현장실기 및 학습조직화 능력을 겸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 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600	www.koreatech.ac.kr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8.01	국가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 시설·장비 및 분석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kbsi.re.kr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003.12.23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www.kanc.re.kr
한국노동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5.09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이와 함께 고용·노동·사회정책을 개발하며, 국민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지향함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www.kl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04.01	농림경제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빚가람로 601	www.krei.re.kr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93.02.04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7~8층	www.kdata.or.kr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토 교통부	상법	2019.05.09	유료도로 이용료 수납 및 이에 관련된 콜센터와 교통방송 제공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205호	www.exservice.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2013.08.2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 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 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8층	www.kcgp.or.kr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008.07.21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활동 지원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상로67(비래동)	www.komount.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41조	2010.06.24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 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www.kiria.org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학진흥법 제13조	1996.05.06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 및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발전 및 세계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www.litkorea.or.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2002.12.04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추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www.kcti.re.kr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2005.02.03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 으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IN 뉴스퀘어 10~12층	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2005.08.26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 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 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빚가람로 640	www.ark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문화재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9조	1980.04.01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 전통생활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www.chf.or.kr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2.12.23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8층	www.kcisa.kr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제288조	1984.01.2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 (삼동)	www.newseoulgolf.co.kr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2조	1994.12.26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www.kipa.org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953.03.05.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 활동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www.koreha.or.kr
한국법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0.07.30	국내외 법제 및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등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입법 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www.klr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 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1	2005.06.29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www.kvic.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0.07.20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 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 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 는 데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www.kihasa.re.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	2008.12.23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 성·유효성 및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과 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여 국민건강 향 상에 기여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재원 투자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www.neca.re.kr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1992.04.20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 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 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www.kuksiwon.or. kr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989.12.04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원 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www.kasfo.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952.02.15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 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공덕동)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www.bokji.net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고용 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2010.12.31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 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 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www.socialenterpr ise.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1966.04.13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한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0 (충무공동)	www.ktl.re.kr
한국산업은행	금융 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1954.04.01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 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www.kdb.c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수도법 제56조	2002.01.21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여 공공복리 증진, 물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대림동 651-5)	www.kwwa.or.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1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공인 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국가생명과학기술, 산업 발전 및 국가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www.kribb.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 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www.kitech.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2	2009.05.04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정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세라믹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	www.kicet.re.kr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환경부	민법 제32조	2017.12.20	건전한 물 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물관련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한 정 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 분석·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목적 으로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1103~1105호),12층	www.kihs.re.kr
한국수출입은행	기획 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1976.07.01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www.koreaexim.go. kr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2011.02.25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추진함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www.foodpolis.kr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12.31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 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www.kfri.re.kr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 및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10.01.01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국내 김치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성장동 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함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 (임암동)	www.wikim.re.kr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여성 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2003.03.05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 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igepe.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부	어촌·어항법 제57조	1994.03.30	어촌 및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텔리 12층	www.fipa.or.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7.09.07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www.kier.re.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1992.03.25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 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www.keia.or.kr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013.01.04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활성화 및 제도·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층 309호	www.wiset.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2019.12.19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성평등 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는 사회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www.stop.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4.21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수립과 국민 행복의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wdi.re.kr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1974.01.18.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www.koreafilm.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제8조	2012.11.19	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www.kawf.kr
한국예탁결제원	금융 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1974.12.6	증권등의 발행 및 유통 원활화 등 종합증권서비스 제공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지원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sd.or.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990.02.14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www.kins.re.kr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2012.11.06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사업 및 국제 협력을 기획, 관리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www.kofons.or.kr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59.02.03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www.kaeri.re.kr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3조의2	1963.12.17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와 암 진료, 국가적인 방사선비상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www.kirams.re.kr
(분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 제32조의2	2010.07.16	정부의 과학기술진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확대와 핵심연구기능의 지방분산 정책시행방사능 재난시 현장 비상진료기능 및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www.dirams.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	2006.06.30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18	www.kinac.re.kr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제42조	2012.05.18	국내·외 신개발 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 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지원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305호	www.nids.or.kr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012.04.09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	www.k-medi.or.kr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68조의3	2012.01.06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 정보·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 등의 안전 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 평가·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4~6층	www.drugsafe.or.kr
한국잡월드	고용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2011.11.03	청소년 및 청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지원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koreajobworld.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1989.04.28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 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www.koddi.or.kr
한국재료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 소재 연구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소재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www.kims.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22조2	2016.09.30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 심의,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저작권보호기술 연구 등의 수행을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www.kcop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12조	2009.07.23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5 층	www.copyright.or.kr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29	전력·전기 관련 연구개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 전력·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10번길 12	www.keri.re.kr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 자원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30조	2011.09.19	전력 및 원자력산업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실무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여 세계적인 에너지변화 흐름에 앞장서며,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육성하여 한국 원전의 해외수출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www.kings.ac.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미래기술의 연구개발,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www.etri.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2.07.15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www.kipf.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5조의2	2020.08.05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통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1조	2005.12.09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www.kiip.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48.09.13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www.kigam.re.kr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9.10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krivet.re.kr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4.09.13	천문우주과학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 천문우주과학의 국가적 발전을 달성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www.kasi.re.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6.03.02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www.krr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6.17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nypi.re.kr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관광부	상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1990.07.25	88 서울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복합문화 및 레저 공간 제공으로 국민건강과 행복 증진,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역도경기장	www.ksponco.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2012.07.27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www.kpipa.or.kr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	2005.07.01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7,18,19층	www.kic.kr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1995.07.07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둔산동, KDB빌딩)	www.kipi.or.kr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35조	2011.07.15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특허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조사·분석·제공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기술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www.pipc.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5.12.24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대표 기관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www.kriss.re.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민법 제32조	1978.06.30	한국문화의 심층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 국학을 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의 좌 표를 탐구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www.aks.ac.kr
한국한의학진흥원	보건 복지부	한의학육성법 제13조	2019.06.12	한의학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학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 (갑제동)	www.nikom.or.kr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4.08.06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www.kiom.re.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0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 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www.kari.re.kr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 수산부	항로표지법 제41조	2018.07.18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9 다올비즈니스센터 601호~ 603호	www.katon.or.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2012.07.01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 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www.kiost.a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극지연구소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2004.04.16	남·북극이 갖는 정치적·경제적 중요성 증 대에 따른 극지활동의 확대와 국제수준의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www.kopri.re.kr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2013.10.28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 개발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연구역량 확보를 통 하여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 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www.kriso.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4.18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및 그와 관련된 물류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 발전 및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www.kmi.re.kr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 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2006.01.31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제도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 공을 위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 (호서대벤처타워)	www.khra.kr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2018.07.05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 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씨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www.kobc.or.kr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 교통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2018.06.08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발굴, 개발, 금융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 고 살기 좋은 지구촌 건설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여의도동, Three IFC)	www.kindkore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2020.11.20.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www.kfe.re.kr
한국행정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9.27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www.kipa.re.kr
한국형사·법무정책연 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3.16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 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며,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 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www.kic.re.kr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9.02	화학 및 관련 융·복합 기술분야의 연구개 발과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화학산업 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RICT.re.kr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2조의2	2002.01.01	화학·바이오 등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연구, 관련 기술개발, 산학연 지원 등 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itox.re.kr
한국환경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3.01.29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8층~11층	www.ke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식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한식진흥법 제16조	2010.03.10	한식, 식문화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27 aT센터 601호	www.hansik.or.kr
한전MCS(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2019.03.25	한국전력공사가 위탁하는 전력서비스 사 업을 영위함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길 7, 506호(빛가람동, 예가람타워)	www.kepcomcs.co. kr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82.11.11	고품질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연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자립에 이바 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www.knfc.co.kr
항공안전기술원	국토 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법	2013.04.19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 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 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 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www.kiast.or.kr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1978.10.06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 육·홍보 및 생태복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 6, 8층	www.epa.or.kr

부 록 3 이전 공공기관별 2020년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³¹¹⁾312)313)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전체 합계 (108개)	'20	5,152.6	1,516.8	29.44
	'19	5,886	1,527	25.9
	'18	6,076	1,423	23.4
부산 지역 합계 (11개 기관)	'20	299.5	101.5	33.9
	'19	431.0	154.0	35.7
	'18	511.0	164.0	32.1
게임물관리위원회	'20	-	-	-
	'19	-	-	-
	'18	8	2	25
영상물등급위원회	'20	-	-	-
	'19	-	-	-
	'18	-	-	-
영화진흥위원회	'20	6	2	33.3
	'19	6	5	83.3
	'18	-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	-	-	-
	'19	-	-	-
	'18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	-	-	-
	'19	-	-	-
	'18	-	-	-

311) '이전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별표1>의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적용받으며 2020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은 24.0%임

312) (주)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지역)는 2023년까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기능이 승계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공운법」상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313) 세종 지역 소재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규정을 적용받음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	-	-	-
	'19	-	-	-
	'18	6	3	50
한국남부발전(주)	'20	92	37	40.2
	'19	199.5	84.5	42.4
	'18	120	61	50.8
한국자산관리 공사	'20	68	23	33.8
	'19	94	28	29.8
	'18	124	33	26.6
한국주택금융공사	'20	55.5	14.5	26.1
	'19	53.5	12.5	23.4
	'18	83	18	21.7
한국예탁결제원	'20	35	12	34.3
	'19	50	13	26
	'18	43	11	25.6
주택도시보증공사	'20	43	13	30.2
	'19	28	11	39.3
	'18	127	36	28.3
대구 지역 합계 (9개 기관)	'20	358.3	123.5	34.5
	'19	425.8	122.0	28.7
	'18	511.8	141.5	27.7
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	'20	46	13	28.3
	'19	14	5	35.7
	'18	19	6	3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	-	-	-
	'19	-	-	-
	'18	7	2	28.6
한국산업단지공단	'20	32.3	12	37.2
	'19	37.25	9	24.2
	'18	22	10	45.5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사학진흥재단	'20	11	5	45.5
	'19	8	7	87.5
	'18	15	10	66.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	39	18	46.2
	'19	7	2	28.6
	'18	8.75	3	34.3
한국가스공사	'20	60	18	30
	'19	165	43	26.1
	'18	329.5	80	24.3
신용보증기금	'20	108	32.5	30.1
	'19	126.5	32	25.3
	'18	78.5	20.5	26.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	28	11	39.3
	'19	35	12	34.3
	'18	17	7	41.2
한국장학재단	'20	34	14	41.2
	'19	33	12	36.4
	'18	15	3	20
경북 지역 합계 (8개 기관)	'20	616.0	170.0	27.6
	'19	710.5	183.5	25.8
	'18	613.0	144.0	23.5
한국도로공사	'20	158	40	25.3
	'19	190	43	22.6
	'18	206	41	19.9
한국교통안전공단	'20	85	24	28.2
	'19	120	30	25
	'18	83	17	20.5
한국건설관리공사	'20	-	-	-
	'19	-	-	-
	'18	-	-	-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0	41	15	36.6
	'19	54	16	29.6
	'18	31	10	32.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	8	5	62.5
	'19	18	4	22.2
	'18	-	-	-
대한법률구조공단	'20	-	-	-
	'19	-	-	-
	'18	-	-	-
한국수력원자력(주)	'20	317	84	26.5
	'19	320.5	87.5	27.3
	'18	293	76	25.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	7	2	28.6
	'19	8	3	37.5
	'18	-	-	-
광주·전남 지역 합계 (13개 기관)	'20	1,280.0	346.0	27.0
	'19	1,610.5	395.5	24.6
	'18	1,698.0	359.0	2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	36	9	25
	'19	33	8	24.2
	'18	22	5	2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	-	-	-
	'19	-	-	-
	'18	-	-	-
한국전력공사	'20	819	219	26.7
	'19	992	217	21.9
	'18	1123	219	19.5
한국농어촌공사	'20	17	8	47.1
	'19	32	16	50
	'18	38	8	21.1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전력거래소	'20	23	6	26.1
	'19	39	11	28.2
	'18	87	23.5	2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	-	-	-
	'19	-	-	-
	'18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	9	3	33.3
	'19	15	5	33.3
	'18	16	4	2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	-	-	-
	'19	-	-	-
	'18	-	-	-
한국콘텐츠진흥원	'20	14	7	50
	'19	17	9	52.9
	'18	-	-	-
한전KPS(주)	'20	258	66	25.6
	'19	338	86	25.4
	'18	203	43	21.2
한국인터넷진흥원	'20	26	7	26.9
	'19	24	9	37.5
	'18	15	9	60
한전KDN	'20	71	19	26.8
	'19	112.5	31.5	28
	'18	184	46.5	25.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	7	2	28.6
	'19	8	3	37.5
	'18	10	1	10
울산 지역 합계 (7개 기관)	'20	120.0	35.0	29.2
	'19	370.8	101.0	27.2
	'18	491.5	116.8	23.8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석유공사	'20	7	2	28.6
	'19	-	-	-
	'18	33	7	21.2
한국동서발전(주)	'20	20	8	40
	'19	62	18	29
	'18	127	26	20.5
한국에너지공단	'20	-	-	-
	'19	54	16	29.6
	'18	28	7	25
에너지경제연구원	'20	-	-	-
	'19	-	-	-
	'18	-	-	-
근로복지공단	'20	17	6	35.3
	'19	38.75	12	31
	'18	160	41.75	26.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	62	15	24.2
	'19	106	25	23.6
	'18	46.5	9	19.4
한국산업인력공단	'20	14	4	28.6
	'19	110	30	27.3
	'18	97	26	26.8
강원 지역 합계 (10개 기관)	'20	330.0	87.0	26.4
	'19	650.0	166.0	25.5
	'18	497.0	144.5	29.1
한국관광공사	'20	33	8	24.2
	'19	33	8	24.2
	'18	33	6	18.2
한국광물자원공사	'20	-	-	-
	'19	-	-	-
	'18	-	-	-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대한석탄공사	'20	-	-	-
	'19	20	10	50
	'18	-	-	-
한국광해관리공단	'20	8	3	37.5
	'19	8	3	37.5
	'18	8	3	37.5
도로교통공단	'20	21	7	33.3
	'19	102	24	23.5
	'18	14	4	28.6
국립공원공단	'20	-	-	-
	'19	-	-	-
	'18	19	9	47.4
국민건강보험공단	'20	187	41	21.9
	'19	367	90	24.5
	'18	299	94.5	3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	68	22	32.4
	'19	40	9	22.5
	'18	46	12	26.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	5	2	40
	'19	71	16	22.5
	'18	78	16	20.5
대한적십자사	'20	8	4	50
	'19	9	6	66.7
	'18	-	-	-
충북 지역 합계 (10개 기관)	'20	76.8	29.8	38.8
	'19	212.0	58.0	27.4
	'18	151.0	32.0	2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	-	-	-
	'19	-	-	-
	'18	-	-	-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가스안전공사	'20	30	10	33.3
	'19	122	36	29.5
	'18	57	12	21.1
한국소비자원	'20	10	5	50
	'19	23	6	26.1
	'18	26	5	19.2
한국교육개발원	'20	-	-	-
	'19	-	-	-
	'18	7	2	28.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	-	-	-
	'19	-	-	-
	'18	-	-	-
한국고용정보원	'20	-	-	-
	'19	54	13	24.1
	'18	31	6	19.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	-	-	-
	'19	-	-	-
	'18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	6	3	50
	'19	-	-	-
	'18	-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	-	-	-
	'19	-	-	-
	'18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	15.8	6.8	42.9
	'19	13	3	23.1
	'18	30	7	23.3
전북 지역 합계 (6개 기관)	'20	346.0	98.0	28.3
	'19	400.0	102.0	25.5
	'18	610.0	119.0	19.5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국민연금공단	'20	177	43	24.3
	'19	141	35	24.8
	'18	219	44	20.1
한국전기안전공사	'20	18	13	72.2
	'19	19	10	52.6
	'18	94	21	22.3
한국국토정보공사	'20	126	33	26.2
	'19	220	51	23.2
	'18	297	54	18.2
한국식품연구원	'20	-	-	-
	'19	-	-	-
	'18	-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	-	-	-
	'19	-	-	-
	'18	-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	25	9	36
	'19	20	6	30
	'18	-	-	-
경남 (10개 기관)	'20	518.0	126.0	24.3
	'19	822.0	185.0	22.5
	'18	816.0	164.5	20.2
한국토지주택공사	'20	195	47	24.1
	'19	438	96	21.9
	'18	352	65	18.5
한국남동발전(주)	'20	179	43	24
	'19	77	17	22.1
	'18	73	15	20.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	-	-	-
	'19	-	-	-
	'18	-	-	-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세라믹기술원	'20	-	-	-
	'19	-	-	-
	'18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75	18	24
	'19	54	13	24.1
	'18	124	27	21.8
국토안전관리원	'20	24	6	25
	'19	50	12	24
	'18	7	2	28.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	10	3	30
	'19	117	28	23.9
	'18	250	51.5	20.6
한국저작권위원회	'20	-	-	-
	'19	-	-	-
	'18	-	-	-
주택관리공단(주)	'20	-	-	-
	'19	-	-	-
	'18	10	4	40
국방기술품질원	'20	35	9	25.7
	'19	86	19	22.1
	'18	-	-	-
제주 지역 합계 (3개 기관)	'20	28.0	9.0	32.1
	'19	23.0	5.0	21.7
	'18	31.0	6.0	19.4
공무원연금공단	'20	28	9	32.1
	'19	23	5	21.7
	'18	31	6	19.4
한국국제교류재단	'20	-	-	-
	'19	-	-	-
	'18	-	-	-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재외동포재단	'20	-	-	-
	'19	-	-	-
	'18	-	-	-
충남 지역 합계 (2개 기관)	'20	158.0	54.0	34.2
	'19	230.0	55.0	23.9
	'18	146.0	32.0	21.9
한국중부발전(주)	'20	56	19	33.9
	'19	140	34	24.3
	'18	101	23	22.8
한국서부발전(주)	'20	102	35	34.3
	'19	90	21	23.3
	'18	45	9	20
세종 지역 합계 (19개 기관)	'20	13.0	6.0	46.2
	'19	-	-	-
	'18	-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	-	-	-
	'19	-	-	-
	'18	-	-	-
국토연구원	'20	-	-	-
	'19	-	-	-
	'18	-	-	-
한국법제연구원	'20	-	-	-
	'19	-	-	-
	'18	-	-	-
한국개발연구원	'20	4	1	25
	'19	-	-	-
	'18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	-	-	-
	'19	-	-	-
	'18	-	-	-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	-	-	-
	'19	-	-	-
	'18	-	-	-
한국교통연구원	'20	-	-	-
	'19	-	-	-
	'18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	-	-	-
	'19	-	-	-
	'18	-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	-	-	-
	'19	-	-	-
	'18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	-	-
	'19	-	-	-
	'18	-	-	-
한국환경연구원	'20	-	-	-
	'19	-	-	-
	'18	-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	-	-	-
	'19	-	-	-
	'18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	-	-	-
	'19	-	-	-
	'18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	9	5	55.6
	'19	-	-	-
	'18	-	-	-
산업연구원	'20	-	-	-
	'19	-	-	-
	'18	-	-	-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노동연구원	'20	-	-	-
	'19	-	-	-
	'18	-	-	-
축산물품질평가원	'20	-	-	-
	'19	-	-	-
	'18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	-	-	-
	'19	-	-	-
	'18	-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	-	-	-
	'19	-	-	-
	'18	-	-	-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해당공공기관 장이 미리 정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로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피하여 채용목표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보도자료, 2020. 2. 19. 및 「'20년도 이전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 2021. 3. 5.를 참고하여 작성

부록 4 2021년 기금 현황(67개 기금)³¹⁴⁾
1 사회보험성 기금(6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78조	1995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76조	1960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1조	1988년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47조	1960년	국방부	국방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1974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2002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31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 기금현황』, 2021. 6. 4. 참고(<부록 5>과 <부록 6>에 동일하게 적용)

② 금융성 기금(8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1989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1972년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1985년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제30조	196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1994년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1976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2003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1987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

③ 사업성 기금(48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1992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2011년	기획재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1991년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2017년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1996년	국방부	국방부	-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1993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3조	2002년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1991년	통일부	-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1966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1981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1986년	기획재정부	-	한국수출입은행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1973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	2010년	문화재청	문화재청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2000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	2011년	법무부	법무부	-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1981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28조	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1989년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2011년	환경부	환경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물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6조	1999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수산물발전기금 사무국)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1967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1996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1996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1994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1998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1	2017년	국토교통부	-	손해보험협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1991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제48조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산업단)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2005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1981년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1978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제53조	1989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3조	1974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0조	1999년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④ 계정성 기금(5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1994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2003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2004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제25조	199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	1967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부 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³¹⁵⁾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 ³¹⁶⁾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	한국연구재단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제질병퇴치기금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한국국제협력단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공단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	-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315) 2021년 9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별표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총 67개로 이 중 35개 기금을 30개 공공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음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 ³¹⁶⁾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한국무역보험공사	-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용보증기금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	-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위원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법	-	한국연구재단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 ³¹⁶⁾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법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산업단)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한국언론진흥재단

316) 기금의 관리운용주체인 소관부처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임

부 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³¹⁷⁾

1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76조 ○ 목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			
(2)설치연도	1960년	(3)운용개시연도	1960년	
(4)주무부처	인사혁신처	(5)관리주체	공무원연금공단	
(6)조성재원 (제66조 및 제76조)	○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제76조)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 보수예산 및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9.0%를 각각 징수하며, 부족분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전금으로 충당 (제66조)			
(7)기금의 용도 (제73조)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74조)	○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재정자금에의 예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 기타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Tel: 064-802-2055)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317)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 기금현황(2021.6.4)』 내용 중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35개 기금에 대한 개요부분을 발췌함

②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목적: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효율적 지원				
(2)설치연도	1992년	(3)운용개시연도	1992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조성재원 (제22조제2항)	○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금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등 * 복권수익금: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중 12.583%				
(7)기금의 용도 (제22조제3항)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35조)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채신관서, 기타 금융회사에의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Tel: 044-202-484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기금관리팀(Tel: 042-869-6021)			
		인력규모: 7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614	614	618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③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민연금법 제101조 ○ 목적: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2)설치연도	1988년	(3)운용개시연도	1988년	
(4)주무부처	보건복지부	(5)관리주체	보건복지부	
(6)구성재원 (제101조)	○ 연금보험료 ○ 기금 운용 수익금 ○ 적립금 ○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7)기금의 용도 (제46조, 제50조, 제102조)	○ 국민연금급여 지급(제50조)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제46조) ○ 기금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제102조)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과 허용범위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군별 배분비율 및 기대수익률 등을 설정 ○ 기금운용자산군: 주식, 채권 및 기타금융상품, 대체투자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Tel: 044-202-3605)		
	위탁관리	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예산부(Tel: 063-713-5132)		
		인력규모: 7,186명(본부 1,239명, 일선기관 5,947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64,921	74,125	78,725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④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 목적: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그 밖의 경비 지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		
(2)설치연도	1972년	(3)운용개시연도	1989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구성재원 (제20조제2항)	가. 국민체육진흥계정(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 관리) ○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제2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 관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제1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22조)	가. 국민체육진흥계정(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 관리) ○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 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 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 관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제2항 -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센터 운영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폴 등				
(9)회계방식	○ 국민체육진흥계정 : 복식부기 방식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국가회계				
(10)기금관리방식	국민체육 진흥계정	직접 관리	부서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금운용팀(Tel: 02-410-1314)		
	사행산업 중독예방 치유계정	위탁 관리	기관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금관리팀(Tel: 02-740-9152)		
			인력규모: 1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⑤ 국유재산관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 목적: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 증진			
(2)설치연도	2011년	(3)운용개시연도	2012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기획재정부	
(6)조성재원 (제26조의3)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유재산법 제26조의 4에 따른 차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와 관련된 수입금 -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26조의5)	○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의 예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권에 예치 ○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Tel: 044-215-525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기금운용부(Tel: 051-794-4881)		
		인력규모: 18명 (※기금운용 5명, 위탁개발 1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2,465	2,648	2,816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⑥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 목적: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				
(2)설치연도	1991년	(3)운용개시연도	1992년		
(4)주무부처	외교부	(5)관리주체	한국국제교류재단		
(6)조성재원 (제14조)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 기금 운용 수익금 ○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6조)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적립 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운용 ○ 운용 기금: 환금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국제교류재단 대외협력부(Tel: 064-804-1075)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7 국제질병퇴치기금 (한국국제협력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 목적: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성			
(2)설치연도	2017년	(3)운용개시연도	2017년	
(4)주무부처	외교부	(5)관리주체	외교부	
(6)조성재원 (제3조)	○ 정부 출연금 ○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제1항 근거) ○ 기금운용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4조)	○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지원 ○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8조)	○ 금융기관에의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Tel: 02-2100-8363)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질병퇴치기금실(Tel: 031-740-0592)		
		인력규모: 8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346	543	73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⑧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 목적: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2)설치연도	1993년	(3)운용개시연도	1994년	
(4)주무부처	고용노동부	(5)관리주체	근로복지공단	
(6)조성재원 (제88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 복권수입금의 35% 중 5.310%배분, 전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0내 가감 조정 ○ 보증료, 구상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91조)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또는 지원 ○ 저소득근로자의 보증부담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 퇴직연금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의 예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투자물에 예치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근로복지공단 기획조정본부 조직예산부 (Tel: 052-704-7778)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9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1989년	(3)운용개시연도	1989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기술보증기금	
(6)구성재원 (제13조제1항)	○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정부의 출연금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28조)	○ 기술보증 ○ 기술평가 ○ 보증연계투자 ○ 구상권관리 ○ 기술·경영지도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예치 ○ 연기금투자펀드 투자 ○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술보증기금 경영기획부(Tel: 051-606-7401) 자산운용실 (Tel: 051-606-7565)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㉔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 목적: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			
(2)설치연도	1991년	(3)운용개시연도	1991년	
(4)주무부처	통일부	(5)관리주체	통일부	
(6)조성재원 (제4조)	○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자금 ○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8조)	○ 남북한 주민의 남북왕래에 필요한 경비지원 ○ 남북간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 ○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적격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정기예금, CD, MMDA 등) ○ 국채, 공채의 매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기타 유가증권(수익증권/MMF 등, 한정)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Tel: 02-2100-574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Tel: 02-3779-6639)		
		인력규모: 36명(본부 35명, 일선기관 1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2,250	2,250	2,20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Ⅱ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 목적: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2)설치연도	1966년	(3)운용개시연도	1968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조성재원 (제55조)	○ 정부의 출연금 ○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농산물 수입이익금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57조)	○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 농산물의 수출촉진 및 보관·관리와 가공 ○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기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60조의2)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Tel: 044-201-222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재무관리처 기금관리부 (Tel: 061-931-1120)		
		인력규모: 10명(본사 1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1,417	1,354	1,221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1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 목적: 거대재해로 인하여 농작물과 양식수산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위험을 국가가 일부 인수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농어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설치연도	2005년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구성재원 (제22조)	○ 법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2항에 따른 차입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7)기금의 용도 (제23조)	○ 재보험금의 지급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의 지출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에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Tel: 044-201-1797)		
	위탁관리	기관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Tel: 02-3771-6850)		
		인력규모: 5명 (본부 5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575	592	599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Ⅲ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목적: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			
(2)설치연도	1981년	(3)운용개시연도	1981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조성재원 (제32조)	○ 정부출연금 ○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관리부담금 납입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 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			
(7)기금의 용도 (제34조)	○ 농지의 매매·매입사업, 장기임대차사업, 교환,분리·합병사업, 재개발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34조3)	○ 금융기관에 예치 ○ 다른 기금으로 예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Tel: 044-201-173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Tel: 061-338-5931)		
		인력규모: 13명(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1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1,762	1,758	1,746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	-	-

14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 목적: 개도국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			
(2)설치연도	1986년	(3)운용개시연도	1987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기획재정부	
(6)조성재원 (제4조)	○ 정부출연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7조)	○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 ○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12조)	○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Tel: 044-215-877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Tel: 02-6255-5680)		
		인력규모: '20년말 현재 215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18,003	20,243	20,82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㉔ 무역보험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무역보험법 제30조 ○ 목적: 무역보험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2)설치연도	1969년	(3)운용개시연도	1969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6)조성재원 (제31조, 제35조제1항)	○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보험료, 회수금, 이자, 기타 기금운용수익 및 공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7)기금의 용도 (제35조제2항)	○ 보험금, 이자, 공사 운영경비 및 기타 기금 운용 필요경비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33조)	○ 금융기관에의 예입 ○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제2호,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무역보험공사 기획조정실 기금예산팀 (Tel: 02-399-6238)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16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 목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2)설치연도	1973년		(3)운용개시연도	1973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조성재원 (제17조)	○ 정부의 출연금 ○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하여 출연하는 금액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18조)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 연기금투자폴 예치 등 ○ 기타 금융상품 투자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조정부 (Tel: 061-900-212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 목적: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2)설치연도	2009년	(3)운용개시연도	2009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6)구성재원 (제29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29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8)여유자금 운용범위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table><tr><th colspan="2">구분</th><th>투자기간</th><th>투자 가능 자산군</th></tr><tr><td rowspan="2">단기 자금</td><td>현금성</td><td>3개월 미만</td><td rowspan="2">(확정형) MMDA, CD, CP, 정기예금, RP (실적형) MME, 연기금투자폴 혼합형 상품 (단기매치형)</td></tr><tr><td>유동성</td><td>3개월~1년미만</td></tr><tr><td colspan="2">중장기자금</td><td>1년 이상</td><td>(확정형) CD, 정기예금 (실적형) 주식형 펀드(국내, 해외), 채권형 펀드(국내, 해외), 혼합형 상품 대체투자 상품</td></tr></table>				구분		투자기간	투자 가능 자산군	단기 자금	현금성	3개월 미만	(확정형) MMDA, CD, CP, 정기예금, RP (실적형) MME, 연기금투자폴 혼합형 상품 (단기매치형)	유동성	3개월~1년미만	중장기자금		1년 이상	(확정형) CD, 정기예금 (실적형) 주식형 펀드(국내, 해외), 채권형 펀드(국내, 해외), 혼합형 상품 대체투자 상품
구분		투자기간	투자 가능 자산군															
단기 자금	현금성	3개월 미만	(확정형) MMDA, CD, CP, 정기예금, RP (실적형) MME, 연기금투자폴 혼합형 상품 (단기매치형)															
	유동성	3개월~1년미만																
중장기자금		1년 이상	(확정형) CD, 정기예금 (실적형) 주식형 펀드(국내, 해외), 채권형 펀드(국내, 해외), 혼합형 상품 대체투자 상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Tel: 044-203-5340)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Tel: 02-6456-8510)																
		인력규모: 10명(본부 10명, 일선기관 -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1,256	1,377	1,379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Ⅷ 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 목적: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2)설치연도	2000년 ³¹⁸⁾	(3)운용개시연도	2000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구성재원 (제25조제5항)	○ 통신 주파수 할당대가의 일부(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배분) ○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26조)	○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채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예탁 ○ 연기금투자폴에의 예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Tel: 044-202-6224)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Tel: 02-2110-137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Tel: 061-350-1230) 인력규모: 27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 지급 방식	부서운영비 ³¹⁹⁾ 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4,161	4,276	4,313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318) 2000년 1월 기금설치 이후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

319) 기금 징수운용관리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를 의미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 목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2)설치연도	1974년	(3)운용개시연도	1975년	
(4)주무부처	교육부	(5)관리주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조성재원 (제53조의2)	○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7)기금의 용도 (제4조)	○ 부담금의 징수 ○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 자산의 운용 ○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유가증권의 매입 ○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그 밖에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투자전략실 (Tel: 02-769-411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㉔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 목적: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함			
(2)설치연도	1989년	(3)운용개시연도	1989년	
(4)주무부처	교육부	(5)관리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6)조성재원 (제18조)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주택 도시기금 차입금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19조)	○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사학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통화금융기관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사학진흥재단 자산운용부(Tel: 053-770-255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 목적: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2)설치연도	1994년	(3)운용개시연도	1995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6)조성재원 (제31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 보증료 수입 ○ 기금의 운용수익 ○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기금의 용도 (제32조)	○ 보증채무의 이행 ○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28조)	○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 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포함)·사채· 그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Tel: 053-430-4477)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22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 ○ 목적: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			
(2)설치연도	2015년	(3)운용개시연도	2015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6)조성재원 (제37조의4, 제37조의5)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료 ○ 오존층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가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정부 또는 정부외의 출연금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37조의4, 제37조의5)	○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또는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연기금투자품 ○ 자금의 안정성·유동성이 높고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금융상품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Tel: 044-203-4517)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금관리팀(Tel: 02-6009-4330)		
		인력규모: 9명(일선기관(부담금관리) 별도 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1,199	1,200	1,18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㉓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목적: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2015년	(3)운용개시연도	2015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중소벤처기업부	
(6)조성재원 (제20조)	○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한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			
(7)기금의 용도 (제21조)	○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Tel: 042-481-3989)		
	위탁관리	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조정실 기금관리실 (Tel: 042-363-7100)		
		인력규모: 5명(본부 5명, 일선기관 -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24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2)설치연도	1976년	(3)운용개시연도	1976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6)구성재원 (제6조제1항)	○ 정부의 출연금 ○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 기업의 출연금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23조)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경영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40조)	○ 금융회사 등에 예치 ○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Tel: 053-430-411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㉔ 언론진흥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 목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의 진흥			
(2)설치연도	2010년	(3)운용개시연도	2010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한국언론진흥재단	
(6)조성재원 (제34조제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35조제1항)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지원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에 원칙)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예산팀(Tel: 02-2001-7711)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26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목적: 영화예술의 질적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			
(2)설치연도	2007년	(3)운용개시연도	2007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영화진흥위원회	
(6)조성재원 (제24조)	○ 정부의 출연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영화상영권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25조)	○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의 예입 ○ 국채, 지방채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기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			
(9)회계방식	○ 기업회계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획조정본부 기획예산팀(Tel: 051-720-4837)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 목적: 금융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 상환			
(2)설치연도	2003년	(3)운용개시연도	2003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예금보험공사	
(6)조성재원 (제26조의3)	○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제26조 제1항에 따른 차입금 ○ 제30조의3에 따른 특별기여금 ○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상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밖의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26조의3)	○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 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25조)	○ 국채·공채의 매입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실(Tel: 02-758-0161)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1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2)설치연도	1996년	(3)운용개시연도	1997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조성재원 (제17조제3항)	○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 발전용원자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 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동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19조)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시행령 제 2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매입 ○ 금융회사 등에 예치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Tel: 044-202-465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재정기금실(Tel: 042-869-6024)		
		인력규모: 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106	106	106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28-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 따른 안전규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2)설치연도	2016년	(3)운용개시연도	2016년	
(4)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5)관리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6)조성재원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 제1항)	○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등			
(7)기금의 용도 (제111조의4 제2항)	○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 원자력통제 ○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확정금리형 상품 ○ MMF, MMDA, RP, CD 등 ○ 연기금 투자품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및 기타 수익증권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Tel: 02-397-738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원자력안전재단(Tel: 031-626-9735)		
		인력규모: 7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1,552	1,384	1,313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 ○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			
(2)설치연도	2004년	(3)운용개시연도	2004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조성재원 (제14조제3항)	○ 정부의 출연금 ○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차입금, 수입이익금, 기금운용수익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에 따른 전입금			
(7)기금의 용도 (제15조)	○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여유자금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6조 및 제27조)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Tel: 044-201-172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Tel: 061-931-1120)		
		인력규모: 5명(본부 5명, 일선기관 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842	585	635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30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전력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전기사업법 제48조 ○ 목적: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충당			
(2)설치연도	2001년	(3)운용개시연도	2001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6)구성재원 (제50조)	○ 부담금 및 가산금 * 부담금: 전기요금 × 3.7%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49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전력수요 관리사업 ○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원사업 ○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 연기금 투자폴 예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Tel: 044-203-5150)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Tel: 02-6007-0321)		
		인력규모: 41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5,825	6,162	6,382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㉔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 ○ 목적: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			
(2)설치연도	2005년 ³²⁰⁾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조성재원 (제42조)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44조)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채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예탁 ○ 연기금투자폴에의 예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Tel: 044-202-622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 (Tel: 061-350-1230)		
		인력규모: 12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 ³²¹⁾ 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24,758	24,546	24,448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320) 1993년 1월 기금설치 이후, 1996년 1월부터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개편하여 일반 및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운용해오다 2005년 1월부터 현재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함(기존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계정만 승계, 일반계정은 폐지)

321) 기금 징수운용관리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를 의미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 목적: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활성화 및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			
(2)설치연도	1987년	(3)운용개시연도	1988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6)조성재원 (제56조, 제59조의3)	○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 ○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보증료 수입금,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정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			
(7)기금의 용도 (제57조, 제59조의4)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58조, 제59조의5)	○ 금융기관에의 예치 ○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의 매입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주식(출자증권 포함)·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Tel: 051-663-8495)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33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 목적: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2)설치연도	1981년	(3)운용개시연도	1981년	
(4)주무부처	국토교통부	(5)관리주체	국토교통부	
(6)조성재원 (제5조)	○ 자체재원: 대출금 회수, 이자수입 등 ○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주택법」 제56조 제 2항 등 - 차입금: 국민주택채권, 기타민간예수금(청약저축) 등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등 - 정부내부지출: 농특·공자기금 예수금, 복권기금전입금 등			
(7)기금의 용도 (제9조)	○ 국민주택의 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 정비사업 용자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용자 ○ 예탁금·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차관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9조4 및 시행령 제17조)	○ 현금성 및 유동성: MMDA, MMF 등 ○ 중장기: 정기예금, Wrap, 연기금투자폴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Tel: 044-201-3339)		
	위탁관리	기관명: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Tel : 051-998-2212)		
		인력규모 : 182명(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 현원)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242,161	213,373	242,729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목적: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2)설치연도	1978년	(3)운용개시연도	1979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조성재원 (제64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채권발행 조성자금 및 복권수익금, 공자기금 예수금 ○ 기금운용 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67조)	○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 등 융자지출 ○ 연수사업, 창업성공패키지 등 경상지출 ○ 전산시스템구축,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 자본지출 * 사용 용도는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요약시 위 내용과 같음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실 (Tel: 055-751-9431~2, 9435)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㉔ 지역신문발전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 목적: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2004년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문화체육관광부	
(6)조성재원 (제13조제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15조)	○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Tel: 044-203-3219)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Tel: 02-2001-7821)		
		인력규모: 4 명(본부 4명, 일선기관 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 원)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552	514	592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9실지급	‘20실지급	‘21계획
		-	-	-

부 록 7 2020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³²²⁾³²³⁾³²⁴⁾³²⁵⁾
① 공기업 유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4	17	7
	- 일자리 창출	7	4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1
	- 안전 및 환경	5	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업무효율	5		5
	4. 조직·인사·재무관리	7	4	3
	- 조직·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	2	
	- 재무예산 운영·성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	2	3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	5.5	3
주요사업 (45)	- 보수 및 복리후생	3.5	3.5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6. 혁신과 소통	4.5	3	1.5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1.5		1.5
	소 계	55	35.5	19.5
주요사업 (4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45	21	24
합 계		100	56.5	43.5

322)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0. 9.

323) 평가지표체계는 평가유형(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에 따라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가 다르게 구성

324)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결속 처리

325) 기관별 협업·혁신·시민참여 우수사례의 성과반영은 2020년도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최대 1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가산하고, 우수 협조기관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가점을 부여(최대 0.3점)

②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강소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5	7
	- 일자리 창출	6	3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5	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4	3	1
	- 조직·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	2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	5.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5	3.5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혁신과 소통	4.5	3	1.5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1.5		1.5
	소 계	45	32.5	12.5
주요사업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5	24	31
합 계		100	56.5	43.5

③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지표 및 가중치³²⁶⁾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0)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5	7
	- 일자리 창출	6	3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5	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9	3	6
	- 조직·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	2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5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	5.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5	3.5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혁신과 소통	4.5	3	1.5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1.5		1.5
	소 계	50	32.5	17.5
주요사업 (5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0	24	26
합 계		100	56.5	43.5

326)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평가유형은 강소형 유형이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므로 기금관리형 유형의 평가지표 체계를 적용

연구총괄

- 변민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장)

분야별 집필진

- 강연지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연구원)
- 김정은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연구원)
- 오윤미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유승현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이주경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이 슬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정예슬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1팀 선임연구원)
- 최예나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연구원)
- 홍소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2팀 선임연구원)

문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044-414-2306)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oe.kipf.re.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1 공공기관 현황편람

발행일 : 2021. 11.

발행처 : 기획재정부

(044) 215-55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44) 414-2306

인 쇄 : 일지사(02-503-6971)



2021

공공기관 현황편람